

'99-142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총 5권중 제3권

1999. 11. 20



농 림 부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0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임·삼협조합, 농업기반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0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PC통신(AFFIS)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FFIS문의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개발과(전화 589-2039, 589-2042)
 - 구입문의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전화 589-2032, 589-2048)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자율사업	14
제3장 공공사업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4
제5장 보칙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9
2. 주요골자	30
3. 주요 변경사항	34
4. 해설	38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003호)	57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002호)	109
V. 참고자료	137
1.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추진	139
2. 제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45조원) 계획	143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145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51
1. 영농규모화(쌀전업농육성)사업(자율)	153
2. 토양개량사업(자율)	207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공공)	226
4. 발기반정비사업(공공)	236
5. 경지정리사업(공공)	263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공공)	302
7. 배수개선사업(공공)	316
8.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공공)	339
9. 대중규모용수개발 및 지표수보강개발(공공)	375
① 대중규모 용수개발 ② 지표수 보강개발	
10.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조사연구사업(공공)	415
① 생산기반종합정비 ② 지하수 개발조사	
③ 해외농업 투자환경조사 ④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11.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공공)	451
12. 지역특화사업지원(공공)	468
13. 서남해안간척사업(공공)	499
II. 농업기계화	519
14. 농기계구입지원(자율)	521
15. 농기계사후관리지원(차율)	545
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②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16. 농기계생산지원(공공)	574
III. 생산및유통개선	591
17.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자율)	593
18. 협동조합육성지원(공공)	610
① 협동조합 합병지원 ② 협동조합 유통활성화	
19.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공공)	619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②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제3권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679
20. 고품질 우량종자개발(공공)	681
II. 사육기반확충	691
21.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자율)	693
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② 축산분뇨처리 시설 ③ 경주마 육성사업	
22. 가축 계열화사업(공공)	751
23.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공공)	766
24. 가축개량사업(공공)	768
① 한우개량 ②젓소개량 ③ 돼지개량 ④ 닭 개량 ⑤가축개량기반구축	
III. 생산및유통개선(원예)	809
25.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자율)	811
① 물류표준화 ② 규격출하 ③물류기기 공동이용 추진	
26. 생산자 조직육성지원(자율)	850
①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 ②공동규격출하추진 ③인삼생산장려사업	
27. 산지유통 기반확충(자율)	873
① 산지유통센터건설 및 집하장시설보완 ②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28. 농수산물도매시장및공판장지원(공공)	929
① 도매시장건설 ② 공판장건설 ③ 농산물유통시설보완 ④ 농수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29. 농산물 물류센터(종합유통센터) 지원(공공)	970
① 농산물 물류센터건설 ② 소비자단체 물류시설 ③ 물류센터출하촉진자금지원	
30. 농산물 직거래시설지원(공공)	1003
① 직거래장터지원 ②파머스마켓지원 ③ 직거래자금지원	
31. 채소 수급안정사업(공공)	1023
32. 농축산물 판매촉진(공공)	1030
33.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1035
34. 농산물 무역진흥센터건설(공공)	1057
35.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공공)	1063
IV. 생산및유통개선(축산)	1081
36. 축산물 종합처리장 및 공판장건설(공공)	1083
①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②축산물공판장건설	
37.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1094
① 축산물가공유통시설 ② 소매유통시설 ③ 축산물종합처리장공판장 및 도매시장 운영활성화자금	
④규격돈생산출하촉진자금 ⑤축산물등급판정 ⑥우수축출하포상금	
38. 가축공제 및 기술개발(공공)	1142
① 가축공제 ②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39. 축산 기자재 생산시설지원(공공)	1149
40. 사료제조시설 및 사료원료구입(공공)	1155
41.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공공)	1170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② 축산 위생시설 자금지원	
42. 학교 우유급식사업(공공)	1195
43. 축산자조금지원(공공)	1203

제4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 개선	1207
44.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 및 친환경농업육성지원(자율)	1209
①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② 친환경농업지구조성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45. 농촌가공산업육성지원(자율)	1257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농산물가공산업 경영·기술지도	
③ 특산단지육성 ④ 명품개발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341
46. 농림기술개발사업(공공)	1343
47.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352
① 농업인건강관리시설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48. 기술보급사업*(공공)	1372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III. 인력육성	1411
49. 후계농업인육성지원(자율)	1413
50. 귀농자영농창업자금지원(자율)	1448
51.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자율)	1467
52.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498
53.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510
IV. 소득원개발	1549
54.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자율)	1551
55. 농공단지육성사업(공공)	1600
56. 한계농지정비사업(공공)	1617
57.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1631
① 농업경영자금 ② 축산경영자금	
V. 생활환경개선	1645
58.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공공)	1647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도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59.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1725

제5권 [임업및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1749
60.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751
61. 영림계획(자율)	1755
62.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760
63.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공공)	1765
① 임도시설 ② 임도시공장비지원 ③ 사방사업	
64. 임업기술지도(공공)	1779
II. 생산및유통개선	1783
65. 임산소득증대(자율)	1785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경수·분재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66. 임산물이용가공 및 합판보드류시설지원(차율)	1813
①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지원 ② 합판·보드류시설지원	
67. 임업협동조합육성(공공)	1830
68.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1833
① 임산물 유통개선 ②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③ 임산물저장시설	
III. 인력육성	1879
69.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자율)	1881
70. 임업전문인력양성(공공)	1886
IV. 산림 복지기능 증진	1893
71.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1895
72. 산촌종합개발(공공)	1902
V. 산림자원조성	1911
73. 해외조림사업(차율)	1913
74. 산림조성(공공)	1920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② 산림생태보전	

I. 생산기반확충

여 백

20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과(과장 이덕로, 농업서기관 허순범)입니다

1. 목적

- 고품질 우량종자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육채종시설 및 신품종 육종자금 등을 지원하므로써 농업생산 기반 구축 및 종자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종자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채소종자 지원에서 과수, 화훼, 버섯종균 등의 비 채소종자 부문 개발 지원 강화
- 업체별로 지정된 전문작물 중심으로 품종개발을 지원하여 전문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외 경쟁력 향상도모
- 종자사고 예방과 신품종 개발능력 향상을 위하여 종자 품질관리 및 품종육종기자재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종자산업법 제16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년	2002-2004
사업량		338품종 (97,211평)	98 (3,120)	86	54 (미정)	미정	미정
사업비	계	백만원 23,640	5,367	4,286	3,486	7,857	35,000
	보 조	-	-	-	-	-	-
	용 자	16,378	3,757	3,000	2,440	5,500	24,500
	지방비 자부담	- 7,262	- 1,610	- 1,286	- 1,046	- 2,357	- 10,500

※ 주) 사업량의 ()내서는 육채종시설자금 지원규모임

5. 200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자금지원대상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 규정에 의거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 및 개인육종가

(2) 지원단가

- 육채종시설 : 신청시설별로 기준단가 적용
 - 저온저장고 2,000천원/평, 일반창고 700천원/평, 실험실 1,600천원/평, 온실 1,300천원/평, 망실 및 비닐하우스 50천원/평, 첨단유전공학기자재 및 종자품질관리 기자재 시가 적용
- 신품종육종 : 품종당 50백만원이내에서 실제단가

(3)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4) 지원내용

사업구분	사업내용	지원기준
○ 육채종 시설·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생산 및 보관·저장 시설 온실, 실험실, 망실 및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 첨단유전공학 기자재(신규) 고속원심분리기, 식물배양기, 전기영동기 등 ○ 종자품질관리 기자재(신규) 종자소독, 종자정선 및 가공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의 신청 시설·기자재 별로 기준단가 및 시가적용 융자지원
○ 신품종 육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당 50백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3,486	2,440	-	2,440	-	1,046
육채종시설 · 기자재	미정	786	550	-	550	-	236
신품종육종	54품종	2,700	1,890	-	1,890	-	810

*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후 7년상환

※ 주)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과(02-503-7281/2)
- 시·도 : 농산유통과(농정과, 농산지원과, 농업특작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해당 시·군에 사업을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 최근 1년간 종자분쟁으로 인하여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 대상자는 제한 또는 제외
- 최근 1년간 동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사업도중 사업을 포기한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미시행으로 배정된 사업비를 불용시킨 사업대상자, 사업도중 사업계획 변경이 많은 사업대상자는 제한 또는 제외
- ※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3조에 따른 신용조사 결과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는 제외

(2) 우선순위

- 종자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별로 지정한 전문작물별로 육채종 시설 및 신품종육종자금을 신청한 사업대상자 우선지원
- 육채종 시설자금은 저온저장고, 실험실, 온실등 육종시설에 우선지원
- 종자수출액이 많은 사업대상자 우선선정
-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개인 육종가 우선지원
- 기타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여 농림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3)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내용을 토대로 자체 경영계획에 맞게 품종의 연차별 개발 계획, 시설·기자재의 활용계획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종자산업관련협회장의 추천을 받아(개인육종가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음) 해당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별로 당해 품종의 연차별 개발 계획, 시설·기자재의 용도 등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감안 사업대상자를 확정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정부가 제시한 지원내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가 자체 경영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대상자 선정후 사업변경등이 없도록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지원단가가 제시되지 않은 사업(첨단유전공학기자재등)을 신청할 경우는 객관적인 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사업단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발생시 당해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수립시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변경승인 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자부담금 조달 및 투입내역 등 사업의 실적(금융 거래자료,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 등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함)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자부담 비율제외)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함)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여기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자부담 미사용, 사업계획의 부당변경 및 중도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 사업자는 시설 등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후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목적외 사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사업계획서 제출 : 1999.12월말까지[별지 제1호서식]
- 사업진도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2호서식]
- 사업추진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3월20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주 시설 소재지의 해당 시·군

나.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 규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및 개인
육종가.

다. 신청절차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작성
하여 주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2000.1.20)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서식 준용)
- 종자산업관련협회장의 추천서(개인육종가의 경우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의
추천서)
- 사업대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근거(필요시)등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우선순위, 선정절차 : 5 <추진체계> 다항 내용과 동일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기타사업도 신청할 수 있음
- 2001년이후 융자금 금리는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심사제외

()사업 지원계획 보고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농가수 (호)
				계	음자	자부담	
합 계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량을, “단위”는 사업내용에 적합한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 나.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자별로 지원계획을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 다. 농가 수는 사업대상자수를 표기하고 ()에 전체 수혜농가수를 표기

(별지 제2호서식)

심사제외

()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지역 :
2. 사업자 :
3. 사업진도(총괄)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별	사업량			사업진도		사업비					
	계획	실적	비율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		용자		자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계			%		%						

- 주) 가. “사업지역”은 번지수까지 기재
 나.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다. “세부사업별”란은 개별사업의 단위사업명을 기재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명,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계획대비 보고전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바.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자별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총공통-9

()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품목별 또는 단지명	대표 자 ()외 농가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D/ C)
		세 부 사 업 명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 A)	계	국 고 보 조 (C)	용 자	지 방 비 보 조	자 부 담	계	국 고 보 조 (D)	용 자	지 방 비 보 조	자 부 담			
합계				%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예냉시설 등을 기재
-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라.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적성, 첨부

여 백

Ⅱ. 생산기반확충

여 백

I.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사무관 이상수)입니다.

1. 목 적

-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초식가축 조사료 적정비율 급여 및 축산물의 생산비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유흥지와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료생산 확대
 - 조사료 생산 기계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2. 시행 및 추진방향

- 초식가축(한우·젓소 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
-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볏짚등 부존 조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용
-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공급체계 확립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지원)
- 초지법 제13조(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7	'98	'99	2000	2001-2004
총사업비	52,191	60,631	54,376	50,000	280,000
보 조	15,256	19,677	17,128	17,000	96,000
응 자	16,397	17,499	15,374	15,000	64,000
지 방 비	6,225	6,017	3,185	-	-
자 부 담	14,313	17,438	18,689	18,000	120,00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지원사업

- 기반시설 : 목장 및 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 필요한 목로개설·용수개발·전기시설·부지정지·목책시설 및 진입로개설사업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종자·비료대, 벧짚등 암모니아처리사업
 - 기계·장비 기타 : 곤포silage제조사업, silo시설, 조사료생산장비 등
 - 조사료물류유통기지지원사업 : 물류창고, 저온저장고, 부대시설 등
- ※ 위 세부사업내용은 <별표1> 참조

나. 지원대상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 ※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의 경우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벧짚등 곤포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 제주도마을공동목장

다.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도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지원분(경쟁력강화사업,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포함) : 5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 및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이내

○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등 지원비율은 <별표 2> 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융자 조건
 - └ 융자기간 : 15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 금 리 : 연 5%

라. 사업 시행체계

- 사업 신청(사업희망자→시·군)→사업타당성 검토(시·군)→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정심의회)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시·도예산배정(농림부)→시·군예산배정(시·도)→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사업대상자(농가)

마. 사업타당성 검토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함

바. 2000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계
용 자	보 조	계			
15,000	17,000	32,000	-	18,000	50,0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정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농산과(축산계)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사업시행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사업비지원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3) 공사 및 기계·장비 구입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시공 제한 및 정산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할 것
 - 계약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군 관계관 입회 및 청약자·낙찰자 공개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체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는 시공자(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징구토록 할 것

라. 기타사항

- 지방 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사업의 지도·감독 및 평가실시
- 축협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비료·암모니아가스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은 <별표 3>에 의하여 추진
- 농촌지도기관 및 관련단체
 - 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은 『농가유형별·경영규모별 조사료확보 보급모델』을 개발하여 시·군단위 행정 및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사업 대상자에게 보급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관리
- 시·군에서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추진 기록장부와 사업진척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함과 아울러 매월 소요액을 시·도로 신청하고 시·도에서는 농림부에 신청, 농림부에서는 월별 소요액을 용자기관 및 시·도에 배정하고 용자기관에서는 이에 따라 사업비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여 지원자금 집행
- 시·도 및 축협중앙회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반드시 확보토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자금에 대하여는 정산시 자금회수 또는 집행 제외
 -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시 별첨[서식2]에 의거 정산실시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신규초지조성	보조금 교부일	15년	초지전용,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사망,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 군수의 판단하에 사후관리를 해제할 수 있음
-기성초지보완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사후관리 기간중 전용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나. 보 고

○ 사업계획·대상자 선정결과 및 추진실적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비 고
- 사업계획 (대상자 선정결과)	시·도	매년 3. 10한	< 서식 1 >
- 사업추진실적	시·도	매분기 익월 20일한	< 서식 1 >
- 사업추진완료	시·도	이월사업 익년 1.20한	< 서식 1 >

1)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함.

2) 사업추진완료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총괄하여 보고

6. 2001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 ※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의 경우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의 쌀 전업농(생벚짚등 곤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기관에 제출

라. 구비 서류

-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시행지침서의 관련서식)
-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

마. 선정 우선순위

< 농 가 >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사업만을 단독으로 신청한 자
- 초지·사료포부지를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율 규모화·단지화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중 한우, 젓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순위자
-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벚짚등 곤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

< 협업체 · 영농조합법인 · 축협조합 >

- 조사료생산사업단, 낙농전문파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 초지 · 사료포동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 및 조합
- 농업회사법인(생뽕짚등 곤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
- 조사료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업체 또는 조합
- 공동구매 · 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 · 법인 및 조합
-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 · 법인 및 조합
- 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협업체 · 법인 및 조합

바. 선정절차

- 시 · 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 · 허가등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 ·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시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 · 도에 보고
- 시 · 군에서는 시 · 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다. 기타사항

- 2000년 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세부사업내용

1. 조사료생산 기반시설

가.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 시설이 필요한 목장
- 진입로(목로)개설 : 목장·초지의 진입로·목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나.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한하여 지원하되 2~3개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다. 초지용 목책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영구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 2ha 이상 초지에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

2. 조사료생산 이용

가. 초지조성

-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및 지원단가
 - 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조성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 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하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
- 사업비정산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하여야 함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나. 기성초지보완

- 하급초지에 한하여 지원

다. 사료작물 재배

- 시·군은 농촌지도소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료작물재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연회 등을 개최

< 종자공급 >

- [별첨3]의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에 의거 종자 공급

< 비료공급 >

- 시장·군수는 재배농가별 비료수요량을 조사하여 농·축협을 통하여 재배농가에 공급(다만, 비료를 공급코자 하는 농·축협은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급할 수 있는 비료는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비료를 공급)
 - 보조금은 농·축협에 직접 지급토록 하며 농가에게는 현물로 보조
농가에서 구입한 비료에 대하여 현금지원은 불가
 - 사료작물용 비료를 일반농사용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
 - 종자대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사료작물재배용 비료소요량 : 시장·군수가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농촌지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주요 사료작물의 파종량 및 시비량(예시)

(단위 : kg/ha)

작 물 명	파종량	기준 시비량 (질소-인산-가리)	가축분 퇴비 사용기준		
			가축분 퇴 비	보충시비소요량	
				질 소	가 리
호 맥	180	150-100-100	4,000	80	54
이탈리안라이그라스	40	200-150-150	10,000	140	155
수수, 수단그라스	50	200-150-100	7,500	125	101
연 맥	180	150-150-100	4,000	80	74
유 채	20	150-150-100	4,000	110	54
옥 수 수	30	200-200-150	7,500	125	101

- 시장·군수는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가급적 가축분퇴비를 사용토록 권장·지도

라. 벧짚(보리짚) 암모니아처리사업

-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
- 1기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암모니아가스는 축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
- 축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매년 수립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벧짚준비 등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결정(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 시·군과 지역축협(낙협)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

3. 기계·장비 기타

가. 지원내역 : [별표4] 참조

- 사료작물, 생볏짚 등 곤포silage제조
 - 대상자조건
 - 대상작물 이용면적이 전체 20ha이상의 집단화된 생산지역을 확보
 - 재경지정리지역 또는 50ha이상 논의 경지정리지역(평야지대) 확보
 - ※ 대상자조건에 미달되거나 확보계획인 사업신청자는 시·군에서 판단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조사료 저장용silو 설치
 - silo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silo 등
 - silo용량(1기당) : 50톤(78m³)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맞게 조정가능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 농기계 보관창고(50평이내)
- 2호이상의 농가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시 공동명의로 지원가능
 -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공동체의 운영방법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대상자선정시 사업적정성 검토 및 각 농가별 지원한도액 초과제한, 공동 이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별도로 관리
 -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농가간 민원발생시 자금회수 조치가가능
 - 공동지원후 한 농가가 소유·개별사용코자 할 경우 자격요건(면적확보, 지원한도액 등)을 확인 및 개별소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환해야 함

다.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A/S기간이 1년이상인 기종선정을 의무화하고 1년미만인 기종은 지원제외
- 축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군 또는 지역축협(낙협)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개별 구입에 대해 구매알선 병행

4. 조사료 물류유통기지 설치

- 시·도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을 통하여 축협(낙협)에 지원
- 사업내용 : 물류창고, 저온저장고, 부대시설등 지원
- 기 능 : 조사료 및 목초·사료종자 상설판매소

<별표 2>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별		지 원 비 율 (%)				지 원 단 가
		지방비	보 조	용 자	자부담	
기 반 시 설	목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영구목책시설 진입로개설	-	-	70	30	km당 45백만원(노폭 4m) 공당 30백만원 km당 5.5백만원 ha당 5백만원 ha당 3백만원 km당 100백만원, 선별적 지원(노폭 4m, 포장 3m)
	초지조성	-	50	50		별도시달
조 사 료 생 산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 - 종 자 - 비 료	-	50	-	50	종자·비료대 실소요액
	볏짚등암모니아처리					암모니아gas·주입비 실소요액 * 비닐구입은 자담
장 비 기 타	곤포silage silo시설 조사료생산장비 장비보관창고	-	-	70	30	<별표 4>참고 1기(50톤)당 5백만원 <별표 4>참고 50평이내(평당30만원)
물류유 통기저		-	-	70	30	개소당 2,000백만원

※ ① 지원단가는 상한액이며 그 이상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

② 부지구입비는 자부담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

종자공급원칙

종자신청 · 보조사업자가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직접 신청

종자공급 ·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직접공급

종자대정산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축협(낙협)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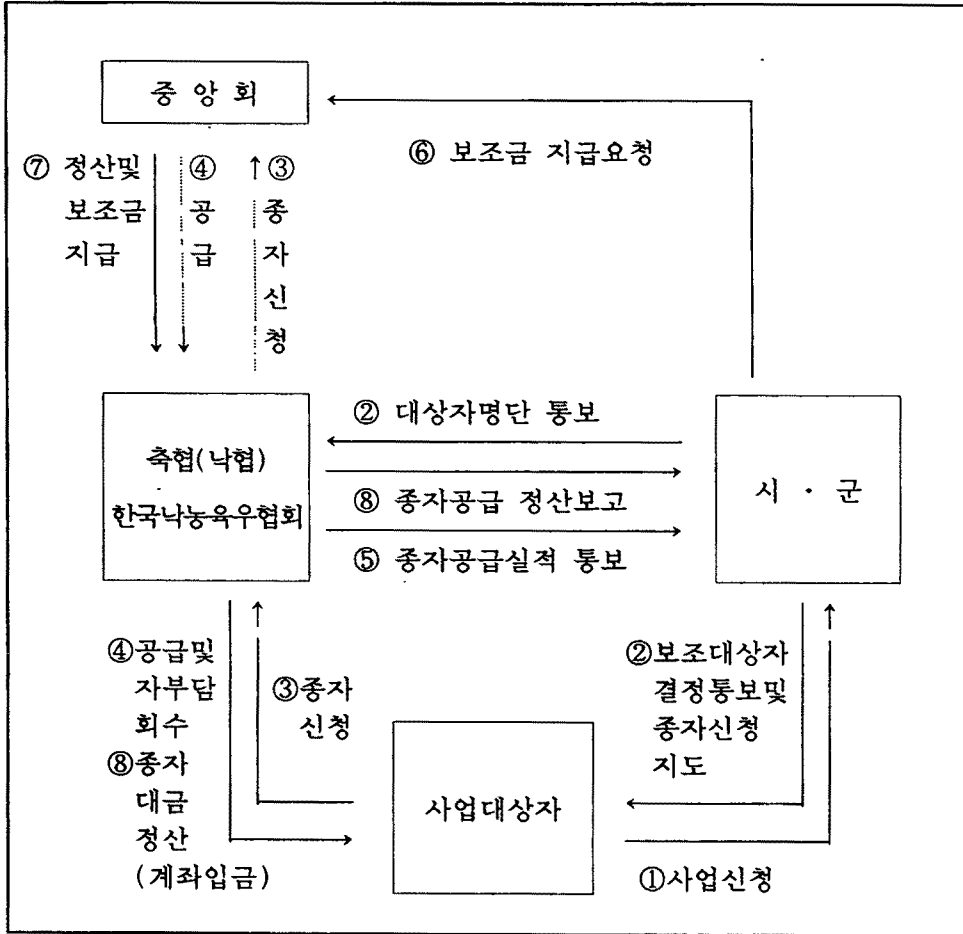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초지조성 및 관리, 사료작물재배)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각각 통보
 - ※ 한국낙농육우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TEL 02-588-7055, FAX 584-5144)
- 종자신청지도
 - 사업대상자가 직접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종자를 신청토록 지도(특히 이중신청이 되지 않도록 지도)
-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종자인수전에 사업대상자가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납부토록 지도
 - 보조금 : 축협(낙협)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의 종자 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 확인)하고 축협중앙회(도지회)에 촉발기금 지급 요청
- 축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지원금액이 적은 1개기관 공급분에 대하여만 지원가능

□ 축협(낙협), 한국낙농육우협회

- 종자관리법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종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종자를 구입
 - 종자구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 구입된 종자는 사업대상자에게 현물 공급
- 종자신청
 - 시장·군수가 확정·통보한 사업대상자로부터 직접 종자 신청 접수.
단, 축·낙협 및 한국낙농육우 협회에 이중 신청금지
 - 이중신청한 경우 지원액이 적은 1개 기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가 종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전대상자로부터 신청토록 지도하여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농가의 신청분은 자담추진
- 종자공급
 -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신청농가에 직접 공급
 -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종자대정산
 - 농가자담분 : 공급자 책임하에 종자 인계전에 사업대상 농가로부터 징수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축발기금 지급요청 확인후 중앙회와 보조금 정산
 - 낙농육우협회에서는 종자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지원분을 농가로부터 선정수후 정산가능(정산시에는 반드시 사업농가 실명계좌에 입금조치)
 - 시장·군수에게 농가별 정산보고

종자 공급 체계도



주) 1. —————→은 축협·낙협만 해당됨

2. ⑧ 종자대금정산시 계좌입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 한함.

<별표 4>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예시)

작업명	농기계명	규격	예시가격	비고
동력원	농용트랙터	70HP내외	34,000천원	벼농사용 농기계사용 (자력확보)
경운	플라우	4연	2,200	"
정지	로타베이터리	200cm	3,300	"
시비	퇴비살포기	4톤	8,700	"
파종	파종기	320kg	7,400	"
방제	동력분무기 (주행형)	400ℓ	2,800	"
운반	트레일러	4톤	2,600	"
예취	모우어	2.1m	7,600	"
집초	레이크	3.0m	3,800	곤포장비로 지원가능
곤포장비	결속기	원형베일러 드림폭 174cm내외	27,000	
	랩피복기	랩피복기	13,000	
	적재기	적재기	4,500	
합계			116,900	

- 주) 1. 생볏짚 등 곤포silage 제조사업은 곤포장비만 지원가능
 2. 세부항목별 가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시 시장·군수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

<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추진실적

〇〇시·도

(단위 : 호, 천원)

세부사업내용	농가수	물 량	축 발 기. 금			자 담	합 계
			보 조	용 자	소 계		
기 반 시 설	목로개설	km					
	용수개발	공					
	전기시설	km					
	부지정리	ha					
	목책시설	km					
	진입로개설	km					
	소 계						
조 사 료 생 산	신규초지조성	ha					
	기성초지보완	ha					
	종 자 대	kg					
	비 료 대	kg					
	암모니아처리	기					
	소 계						
기 계 · 장 비 기 타	곤포Silage	개소					
	사 일 로	기					
	조사료장비	대					
	기 타	개소					
	소 계						
물류유통기지		개소					
합 계							

주) 농가수 소계는 중복농가에 관계 없이 각 사업별 총 농가수를 기재하되
합계는 중복농가를 제외한 실제 농가수 만을 기재

<서식 2>

○○○○사업완료 및 정산서

(시·군·보관)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합계	국고			지방비보조	자부담
		보조	용자	소계		
	(100%)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계 ○○○○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 ·						
합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II. 축산분뇨처리시설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이상길, 사무관 최염순)입니다.

1. 목 적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확대로 오염원 삭감
-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장려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액비로 자원화 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방류처리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大江 유역과 새만금지역등)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신규로 해야할 대상농가에 지원
- '93년말 이전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를 보완해야할 농가에 지원
- ※ 汚糞法에 의한 특정지역·수변구역등 축산신규입지 제한지역내에는 축사시설 자금의 신규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다만, 기존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은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汚糞法 제25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농림어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촉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992~1997	1998	1999	2000	2001	2002~2004	
사업량	51,920	4,662	4,367	4,200	3,100	9,000	
사업비	계	632,683	157,250	107,250	76,200	82,700	247,900
	보조	257,597	81,600	56,625	25,260	24,800	74,400
	유자	281,356	45,400	30,375	50,940	57,900	173,500
	자부담	93,730	30,250	20,250	-	-	-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지역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 및 새만금지역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기지원지구,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
-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분뇨처리대책 지역
- 나환자 정착촌(농원) 지역

(2) 사업대상자

(가) 단독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할 축산농가
 - 汚糞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기지원분을 포함한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3.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나) 공동시설·툽밥제조시설등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협조합(툽밥제조시설은 임업조합 포함)
 - 공동시설은 1993.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다) 정착촌구조개선

-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축산농가 및 한성협동회
 - 법인체·한성협동회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각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내에서 지원
 - 정착촌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3.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3) 사업내용

(가) 단독시설

-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사, 액비저장조, 건조장
- 정화방류시설 : 활성오니법시설, 산화구법시설, 톱밥토양여과법시설, 저장조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소형·이동식 톱밥제조기·파쇄기,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액비운반탱크(압력박스), 스키드로다,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타, 경운기, 축산분뇨운반·살포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공동시설

- 부산물비료(축분퇴비)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공동 저장액비화시설, 공동퇴비사, 액비저장조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바큇카, 압력카, 축분·액비살포차량, 적재용 팔렛트, 축산분뇨운반탱크(압력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 스키드로다, 왕겨팽연화장비, 축분퇴비포장기

(다) 정착촌구조개선 : 나환자정착촌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가)단독시설 또는 (나)공동시설

- 정착촌안의 공동시설에 한하여 생활오수·빗물과 분리된 “축산폐수전용차집관로”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혼합 하수관로는 제외)

(라) 톱밥제조시설등 : 공동시설공급용 톱밥제조시설, 이동식 톱밥제조기

(마) 지원규모 및 조건

1) 축종별 축사m²당 사업비 적용기준

-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m²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

- 축종별 축사m²당 사업비단가 (단위 : 천원/m²)

축종	돼지	한·육우	젖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74	30	33	21	34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등록된 축사면적기준
- ②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은 닭, 평사, 말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오리·산양·말 이외 기타가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공사단가를 적용
- ⑤ 1993.12월말 이전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노후기계설비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내에서 노후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건물은 제외)
- ⑥ 나환차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농가중 시설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

2)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호당·법인체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분	돼지	한우	젖소	닭	
				평사	케이지
단독시설	300	200			
공동시설	1,500	800		1,000	
투박제조시설등	120				

-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고,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 ② 나환차 정착촌 : 법인체·한성협동회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
-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④ 닭 케이지의 경우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무창계사 포함)
- ⑤ 돼지 무창돈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 전체 돈사가 무창돈사일 경우에만 1.4배를 가산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여 적용
- ⑥ 노후기계설비 보완을 위한 지원은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 노후기계설비의 교체에 따른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되 기존 건물의 개·보수비는 자부담

3) 지원조건

- 단독시설 · 공동시설 · 톱밥제조시설
 - 지원비율 : 보조 30%, 용자 70%
 - 용자조건
 - 용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리 : 연 4.0%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용자 30%

4) 부대 기계 · 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 축산분뇨퇴비 처리장비 : 10백만원이내
- 축산분뇨 운반 · 살포용차량,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팽연화장비(공동시설용에 한함) : 30백만원이내

(4) 2000 사업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농특회계)		
		보 조	용 자	계
개별 · 공동시설	4,160	20,700	48,300	69,000
정착촌구조개선	30	4,200	1,800	6,000
톱밥제조시설 · 이동식 톱밥제조기	10	360	840	1,200
합 계	4,200	25,260	50,940	76,200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가) 단독시설 · 톱밥제조시설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나) 공동시설 · 정착촌구조개선 : 시 · 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신청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조정,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사업계획변경 승인, 자금집행, 사업시행과 그 지도 · 감독, 사후관리, 평가 및 보고등 본 사업추진상의 제반업무 수행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504-9431~3)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부서(산업과·축산과·농업기술센터)

(3) 사업기간 : 2000.1.1부터 2000.12.31까지(1년)

(4) 사업 시행체계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정심의회) →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 → 시·도에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에 예산배정(시·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 사업대상자(농가) → 보조사업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경유 시·도) → 보조사업 교부결정(시·군, 시·도가 시·군 경유 → 사업대상자) → 축산분뇨시설 허가·신고(시·군) → 사업완료(사업자) → 준공검사(시·군) → 보조금집행(시·군, 시·도) → 사업실적·정산보고(사업대상자 → 시·군→ 시·도 → 농림부)

(5)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한 예산액 범위내에서 이미 신청한 사업희망자별 사업계획을 기초로하여 2000.1.15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000.1.31한 선정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또는 도의 농정심의회에 공개심의를 거쳐 보조사업계획 확정
 -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에 축산분뇨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기술연구소·축협중앙회·농업기반공사의 전문컨설팅팀 또는 민간전문컨설팅기관(정착촌은 한성협동회 포함)에 협조를 받아 사업타당성을 평가의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지원금액을 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서식1>에 의한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사육규모, 축산분뇨(세정수포함) 발생량, 처리시설능력, 운영비 부담등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내용의 보조금교부조건을 반드시 붙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 신청 및 융자금 신청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등 통지시에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 한도액을 함께 통지

(6) 사업계획 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당초 합리성 있게 검토하여 확정 통지한 보조금교부결정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되, 부득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변경조치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 변경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변경승인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변경승인 내용을 시·군은 시·도에, 시·도는 농림부에 각각 보고

(7)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汚糞法 제24조2의 규정등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이행
- 사업대상자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때는 허가청은 汚糞法 제26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를 한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8) 축산분뇨처리장비등의 정보자료 제공

- 축협중앙회는 汚糞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자,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설업의 등록자와 축협중앙회가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업체”로 선정한 업체의 각 현황을 시·도, 시·군 및 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에 각각 배부하여 안내
-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는 협회자체의 축산분뇨처리시설기계품질보증업무 규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축산기술연구소 및 축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축산분뇨처리 시설, 기계·장비 등의 종류별 시공 또는 제조·판매업체, 장비의 제원(처리능력·규격·용량 등), 거래가격,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시·도, 시·군, 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에 배부하여 우량 시공업체와 기계·장비를 적극 알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및 자금계획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량 시공업체와 기계·장비를 선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기계·장비에 관한 시세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축협중앙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가축분뇨자원화협회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이를 활용하거나 사업대상자에게 알선

(9)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공동시설과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단독 시설을 발주하거나 부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 축협중앙회의 선정업체,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가축분뇨자원화협회 및 관련전문기관에서 안내하는 우량 업체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법령에 의하는 경우 그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체결)
- 본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체결시 입회하고, 계약청약자 또는 낙찰자를 공개
- 사업대상자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2>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축산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시에도 이를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의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위의 우량 유자격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지도

(10) 지명경쟁입찰제 도입실시

- 실시주관 : 사업대상자(사업주관기관과 축협이 상호 협의하여 행정업무 지원)
- 입찰대상 : 사업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상범위를 정하여 실시
- 입찰참여 시공업체 : 사업대상자가 건설업 면허소지업체(건물)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시공업 등록업체(기계설비) 등 시공능력이 있는 우량유자격업체를 시공업체로 선택하고, 이중 2개업체 이상 입찰에 참여하였을 때 유효
- 기타사항 : 낙찰예정가,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참여업체의 시공능력평가서를 작성 등 지명경쟁입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시에 사업주관기관이 정하여 시행

※ 기타 입찰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참조

(11)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모든 사업대상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해야하며, 이 경우 “축산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 '99.8) 및 “축산폐수정화시설표준설계도”(환경부, '95.11)등을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설한 시공 추진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농업기반공사 또는 설계 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축산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자재 및 기계·장비의 규격화·국산화 촉진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규격기준품을 사용하고, 기자재는 축협조합 등을 통해 공동구매 장려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농업기반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
 - 시·도는 공동시설에 대한 “설계및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단독시설은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나환자 정착촌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한성협동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검사시 각각 확인)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게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취하고, 향후 시공업체의 사업참여를 제한토록 조치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한 후 ②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③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12) 기타사항

(가) 사업추진상의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관리방법 등 기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축협중앙회·농업기반공사의 전문컨설팅팀 및 지역축협·업종조합의 축분처리기술상담실을 활용
- 축협중앙회는 2000년도 본 사업대상자 교육계획을 2000.1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착수 이전에 실시
- 시·도는 가급적 汚糞法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원화(퇴비·액비) 시설의 설치 권장
 - 저장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살포할 농경지등을 확보(자가 또는 임차농지 포함)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면적(환경부 고시제1999-110호, '99.7.8)

구 분	초 지	농 경 지	
		논	밭
소	520㎡/두이상	990㎡/두이상	640㎡/두이상
젓 소	1,610㎡/두이상	3,080㎡/두이상	1,990㎡/두이상
돼 지	340㎡/두이상	640㎡/두이상	420㎡/두이상

-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은 톱밥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톱밥 대체 수분조절재 사용의 공법 권장
 - 수분조절재로 톱밥 및 왕겨를 사용하는 경우 발효된 수분조절재를 건조시켜 재차 수분조절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운영경비 절감 유도
- 표준설계도서 이외의 방법으로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의 (11)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지침에 의하여 汚糞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처리용량을 설계·시공토록 지도·감독
- 사업대상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후관리 및 사후봉사(A/S)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 정화방류시설과 저장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농가) 설치대상자에게는 축분을 퇴비화 할 수 있는 퇴비사를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
- 저장조를 설치하는 농가의 경우 汚糞法 제25조제2항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지도·감독 철저
- 스킨드레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농가에 지원하되 구입기종은 중기등록 대상이 아닌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
- 트랙터 부착용 스킨드레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소형 톱밥제조기, 가공왕겨분쇄기 및 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톱밥원료목 또는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나)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활용

- 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99.8)
 - 종류 :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퇴비사, 저장액비화, 통풍식·교반식 축분발효시설)
 - 열람처 : 시·도 및 시·군 축산과(축산담당부서), 축협조합 등에 비치분 열람
- 환경부('95.11)
 - 종류 : 축산폐수정화시설 표준설계도(톱밥토양여과상, 회분식활성오니법, 산화구법)
 - 열람처 : 시·도 환경보호과에 비치분 열람

※ 시·도는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을 매 반기별로 집계보고

다. 사업자금의 집행과 정산

(1) 적용 원칙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자금(보조금·융자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2000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시행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등 관계법·규정과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제13조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여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2)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시·군은 축산법 제3조 및 汚糞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지역의 축산여건 등을 고려한 시·군의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축산법 제3조 및 汚糞法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시·도의 실정에 맞는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
- 시·도는 시·군의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과 예산요구내용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해당 시·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예산을 배정

(3)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말 까지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매월 25일까지 농림부(축산정책과)에 자금을 배정요구
 - 보조금 및 융자금 구분 기재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자금배정요구를 종합하여 농림부(축산정책과)에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매월 배정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요구
 - 다만, 사업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신청액중 부족액을 다시 신청을 받지 않고서도 배정요구 가능
-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은 매달 25일까지 농림부에 도착한 예산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4)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서식 3·4 참조>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서식3·4>에 기재된 증거서류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구비서류 첨부)에 의하여 확인
 -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도급표준계약조건은 농림부 축정51573-79('98.2.6)호 참조
- 사업주관기관은 축협중앙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및 한국가축분뇨자원화협회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자료, 2개이상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의 가격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세조사결과등을 근거로 하여 축산분뇨처리의 시설단가와 기계·장비 종류별 공급단가의 타당성과 사실여부를 철저히 검정하여 정산함으로써 지원자금이 실제 시세보다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정산을 철저히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로 확정 통지한 보조·융자사업의 축산분뇨처리 시설,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업체명, 규격, 수량과 사업비 명세서(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 내역등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실제 사업자금 집행금액을 국고 보조 30%이내, 용자 70%(정착촌구조개선은 국고보조 70%, 용자 30%)의 비율을 지켜 검정 및 정산처리(정산서의 1만원 미만은 사사오입)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지침에 의하여 축종별 축사m²단위당 사업비단가와 개소당 사업비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을 지켜 정산하여야 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는 낮은 가격의 공사단가를 적용)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사업에 대한 검정 및 정산(자부담분 포함) 임무가 있으므로, 특히 용자금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축협조합이 대출을 취급했다고 하여 검정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및 용자금을 유용·전용하거나 허위,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용자금을 지급받아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자부담분 포함)에 충족되는 시설과 기계·장비가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조치
 -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등에 의거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대상자(가족 포함)의 자가노력비는 본 사업비의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관기관은 2000.9.30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라. 행정사항

(1)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동 상태 등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통해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회수 등 적절히 조치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법 적 근 거
○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5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등

(2) 사업추진상황 전산입력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 및 농림업무평가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침서에 의거 별지 <서식5>에 의한 2000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추진상황을 사업대상자별로 작성하여 시·군(시·도)의 농정담당부서의 전산망을 통하여 2000.4.30한 전산입력
- 입력자료는 <서식5>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담당계장이 작성하고, 담당과장이 최종 확인하여 시·군(시·도)의 농정담당부서에 전산입력을 의뢰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본 사업추진상황을 별지 <서식5>에 의하여 작성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전산입력

(3)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 고
○ 2000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선정결과보고	2000.3.31한	시·군(시·도) →시·도(농림부)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보고사항 별지 <서식 6>
○ 2000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 사업추진 중간실적보고	2000.6.30한	"	
- 사업완료 및 정산실적보고	2000.12.31한	"	
○ '99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01.1.31한	"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반기)	2000.6.30한 및 12.31한	시·군(시·도) →시·도(농림부)	별지 <서식 7>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단독시설 : 시·군·자치구(축산담당부서), 읍·면
- 그외 시설 : 시·군·자치구 경유 시·도

나. 신청자격

(1) 단독(개별)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할 축산농가
- 축산분뇨시설을 1994.12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2)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협조합
- 공동시설은 199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3) 정착촌구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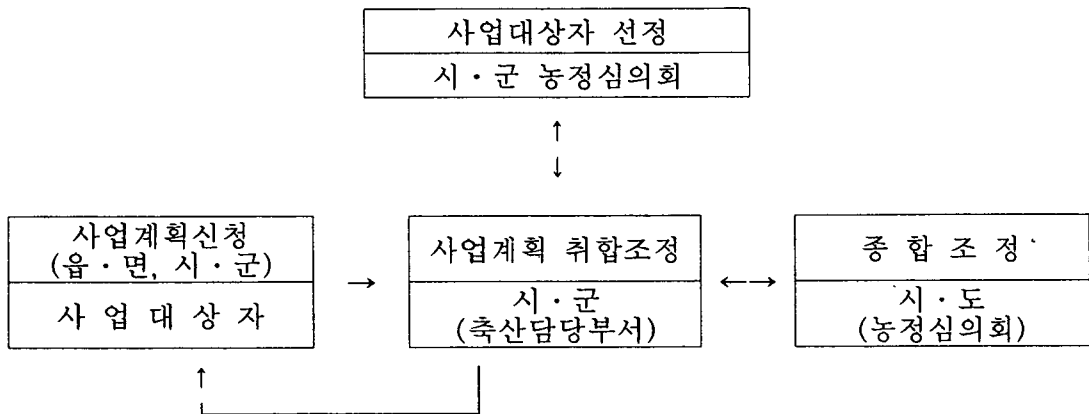
-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또는 축산농가

다. 신청절차

(1) 단독시설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2000.1.20까지 시·군(또는 읍·면장을 경유 시·군)에 제출
- 시·군은 단독시설의 사업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2000.2.28까지 제출
- 시·도는 2000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0.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도 및 시·군별 예산배정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시·도는 확정된 시·군별 예산배정내역을 2000.12월말까지 시·도에 통보
- 시·군은 자체사업 확정후 예산요구서에 제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2001.1.15까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2)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 등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축산 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2000.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0.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위의 단독시설의 신청절차에 준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늦어도 2000.10월말까지는 제출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2001.1.15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라. 지원조건

- 단독시설·공동시설 : 보조 30%, 융자 70%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융자 30%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 리 : 연 4.0%

마.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과 첨부서류
 - 사업희망자는 시·군(시·도)에서 정한 경우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바.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본 사업지침에 의함

사. 기타사항

- 2000년도 본 사업지침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 될 수 있음
-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신고기관
 - 중 앙 : 환경부 생활오수과(02-504-9255, 500-4296)
 - 시·도 : 환경담당부서
 - 시·군 : 환경담당부서

7. 2000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단독·공동시설				정착촌·툽밥제조시설				합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비 보조	융자	계		국비 보조	융자	계		국비 보조	융자	계
대구	8	41	97	138	-	-	-	-	8	41	97	138
인천	2	7	17	24	-	-	-	-	2	7	17	24
광주	3	15	35	50	-	-	-	-	3	15	35	50
대전	7	38	88	126	1	13.5	31.5	45	8	51.5	119.5	171
울산	-	-	-	-	-	-	-	-	-	-	-	-
경기	750	3,403	7,940	11,343	1	36	84	120	751	3,439	8,024	11,463
강원	220	1,030	2,402	3,432	2 (1)	106 (70)	114 (30)	220 (100)	222	1,136	2,516	3,652
충북	190	884	2,064	2,948	1 (1)	210 (210)	90 (90)	300 (300)	191	1,094	2,154	3,248
충남	900	4,702	10,971	15,673	1 (1)	280 (280)	120 (120)	400 (400)	901	4,982	11,091	16,073
전북	640	2,904	6,774	9,678	7 (6)	736 (700)	384 (300)	1,120 (1,000)	647	3,640	7,158	10,798
전남	510	2,311	5,391	7,702	6 (4)	772 (700)	468 (300)	1,240 (1,000)	516	3,083	5,859	8,942
경북	340	1,565	3,652	5,217	10 (9)	736 (700)	384 (300)	1,120 (1,000)	350	2,301	4,036	6,337
경남	260	1,169	2,729	3,898	8 (7)	736 (700)	384 (300)	1,120 (1,000)	268	1,905	3,113	5,018
제주	120	561	1,310	1,871	-	-	-	-	120	561	1,310	1,871
미통지	210	2,070	4,830	6,900	3 (1)	934.5 (840)	580.5 (330)	1,515 (1,200)	213	3,004.5	5,410.5	8,415
합계	4,160	20,700	48,300	69,000	40 (30)	4,560 (4,200)	2,640 (1,800)	7,200 (6,000)	4,200	25,260	50,940	76,200

※ ① 단독·공동시설의 사업비중 미통지(예산액의 10%)분은 '99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도에 별도 추가배정 예정

② ()내서는 정착촌구조개선사업 배정분임

<서식1>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 소
성 명(명칭)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4. 사업 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액

(단위: 원)

구 분	총소요액	국비보조금	읍자금(농특회계)	자 부 담
금 액 부담율(%)				

7. 첨부서류

가. 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 (※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나. 보조금 교부 조건

다.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등

위와 같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2000년 월 일

시장·군수(시·도지사)

인

<서식2>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갑)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 체 상 금 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및 A/S 책임기간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p>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불입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연대보증인 및 입회관계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불입서류 : 1.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지명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축분처리시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p> <p style="text-align: right;">갑(법인 대표) 인 을(공사수급인) 인 을의 연대보증인 인</p>			

<서식3>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기계·장비>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제 조 회사명	규격 (형식)	제조 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영세율적용 여부(○,×)	비 고
						계	국고보조	용 자	지방비 조	자부담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및 사업주관기관명 : 단독시설, 톱밥제조시설(시장·군수), 공동 시설·정착촌구조개선 등(시·도지사)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 집행액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 구입대상 신품의 기계·장비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 기계·장비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

<서식4>

○○○○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 시 설 >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비보조	읍 자	지방비보조	자 부 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명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	계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 ·						
합 계	·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및 사업주관기관명
 - 단독시설(시장·군수) : 퇴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 톱밥제조시설(시장·군수) : 톱밥제조시설, 이동식 톱밥제조기
 - 공동시설(시·도지사) : 부산물비료(축분퇴비)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 정착촌구조개선(시·도지사) : 축분발효시설, 공동액비화시설, 공동퇴비사등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④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외의 자(사업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을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참조)
 - ⑤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 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사업비(보조금·융자금) 금전출납부와 거래통장,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
 - 특히, 보조 및 융자사업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와 통장거래는 따로 개설하여 정산 증빙자료 활용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 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 확인하여 검정 실시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구분 기재

<서식5>

2000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작성자	소속	(계장)	확인자	소속	(과장)
	성명	(인)		성명	(인)

사업주관기관	시·군(시·도)	¹ 조사기준일	년	월	말기
--------	----------	--------------------	---	---	----

1. 일반사항

² 사업체명	³ 사업시작년도	⁴ 구분	1.개인 2.법인 3.회사 4.공동 5.농협 등		
⁵ 대표자	⁶ 주민번호	-	⁷ 전화번호	-	-
⁸ 주소	시도	시군 읍면동 리	⁹ 학력	<input type="checkbox"/> 1.농수산계 2.기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1.대졸 2.전문대졸 3.고졸 4.중졸 5.국졸 6.무학	
¹⁰ 직업	1.농업 2.축산업 3.어업 4.임업 5.기타		¹¹ 영농종사경력	개월	¹² 교육훈련
¹³ 경영장부기록여부	1.일별기록 2.주별기록 3.월별기록 4.미기록				

2. 생산기반 사항

[단위 : 평]

¹⁴ 기반	자작지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대지	기타
	차용지							
	대부지							
	합계							
¹⁵ 시설	축사	창고	관리사	운동장	싸이로	자동급이급수	목책시설	기타
¹⁶ 농기구	트랙터	경운기	벼짚수거기	예취기	기타조사료생산장비	차량	우형기	기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¹⁷ 가축	한우	젓소(♂)	두	돼지	두	닭	수 송아지	두 기타가축
	두							

¹⁸ 퇴비처리장비	스키드로다	소형톱밥제조기	고액분리기	분뇨건조기	왕겨분쇄기	기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¹⁹ 분뇨운반장비	바큇카	살포차량	교반기	기타	축사형 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대		1.슬러리 2.스크레파 3.개폐식 4.톱밥축사 5.재래식등 기타

3. 농어가 경제현황

[단위 : 천원]

²⁰ 부채	조합	시중은행	기타	총계	²¹ 자산평가액
²² 예금액	저축	현금		총계	²³ 연간소득
²⁴ 농어업수입		²⁵ 농어업경영비		²⁶ 농어업소득	²⁷ 농어업이외소득

4. 사업현황

²⁸ 사업축종	<input type="checkbox"/> 1. 소 2. 돼지 3. 닭		²⁹ 사육두수	두(수)	
분뇨처리 시설유형	³⁰ 단독사업	부업규모처리 시설	<input type="checkbox"/>	1.저장액비화 2.퇴비화 3.톱밥축사 4.정화조 5.톱밥토양여과상 6.기타	
		전업규모처리 시설	<input type="checkbox"/>	1.활성오니 2.저장액비화 3.퇴비화 4.톱밥축사 5.정화조 6.톱밥토양여과상 7.기타	
	³¹ 공동사업	비료화시설	<input type="checkbox"/>	1.통풍식 2.교반식 3.건조식 4.화력건조식 5.기타	
		축산발효시설	<input type="checkbox"/>	1.교반식 2.건조식 3.통풍식 4.생석회 5.기타	
	정착촌구조개선	<input type="checkbox"/>	1.축분발효시설 2.공동저장탱크 3.공동퇴비사 4.활성오니등 기타		
	분뇨저장탱크	면적	m ²		
³² 일분뇨발생량	톤	1일처리량	톤	³³ 비료생산량	톤/년 ³⁴ 민원발생건수 회
분뇨처리시설용량	톤/일	총사업비	천원		

5. 운영실태

³⁵ 비료제조업허가	<input type="checkbox"/> 1.유 2.무	비료 판매실적	톤/년
³⁶ 정화방류시설 가동실태	<input type="checkbox"/> 1.정상가동 2.수질기준초과 3.수시가동		

6. 추진상황 ³⁷

사업명	사업량	계 획				실 적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사업량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합	계					합	계			

【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보고서 기재요령 】

1. 조사시점
2. 사업대상자 또는 단체명
3. 사업대상 선정년도
4. 사업대상자 구분 표시
5.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대표자 성명
6.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대표 주민등록번호
7. 사업대상자의 시설설치장소 전화번호
8.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현주소
9.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대표자 최종학력
10.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대표자 직업
11.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대표자의 총영농종사경력
12.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대표자의 전문교육훈련실적
13. 경영장부기록 여부사항을 기재
14.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소유, 차용, 대부(임대)한 토지
15. 소유시설 평수
16. 소유농기구 대수
17. 소유 가축두수
18. 소유 퇴비처리장비 대수
19. 소유 분뇨운반장비 대수 및 축사형태
20. 조합, 시중은행, 사채등 부채상황을 기입
21. 2. 생산기반사항의 자산평가액
22. 예금 및 현금액수 기입
23. 1년간 총소득액
24. 농축어업의 해당년도의 경영결과로 얻은 총수입
25. 농축어업의 조수입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일체의 비용
26. 농축어업의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잔액(24-25)
27. 농축어업이외의 총수입
28.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의 사육 축종
29.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의 사육두수 현황
30. 사업대상자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유형 기입
31. 사업대상단체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유형 기입
32.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의 1일 분뇨발생량 및 1일 처리량
33. 비료화시설 설치시 비료생산량
34. 사업과 관련 민원발생 회수
35. 비료화시설 설치 개인 및 단체의 비료제조업 허가 유무 및 비료판매실적
36. 정화방류시설 설치시 가동실태
37.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서식6>

2000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중간·완료 및 정산>

[총괄]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 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업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 보조	융자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국비 보조	융자		
단 독 시 설	자원화 시 설																
		계															
	정방시 화류 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공 동 시 설	자원화 시 설																
		계															
	정방시 화류 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 보조	융자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국비 보조	융자		
정착촌구조개선	자원화 시설																
		계															
	화류 시설																
		계															
	부대기계 · 장비																
	소 계																
툰밥제조시설 이동식툰밥제조 기																	
합 계																	

- ※ ① 1. 한육우, 2. 젓소, 3. 돼지, 4. 닭, 5. 기타가축(오리·산양·말)별로 각각 구분하여 본 서식에 의하여 별지에 작성 첨부함
- ②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개별·공동시설 구분표시) 및 툰밥제조시설·이동식툰밥 제조기는 사업대상자별(농원별)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함

<서식 7>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이용실적보고서(반기)

①도서종류 및 명칭	②공고번호 및 연월일	⑤활용실적		비 고
		③수량	④용도	

Ⅲ. 경주마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축산정책과장 이상길, 사무관 이주일) 입니다.

1. 목 적

- 국산 경주마 사육기반 확대 조성으로 경주마 자급도 제고
- 우수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산 경주마 생산기반 확대조성에 필요한 사업 종합지원
- 경주마 생산농가의 역할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
- 사육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7	'98	'99	2000년 (예산안)	2001	2002-2004
사 업 량		721두	67	77	316	174	522
사업비	계	19,763	5,621	2,995	9,876	8,225	24,075
	용 자	13,833	3,935	2,365	6,941	4,775	1,4325
	보조(국고)	-	-	-	300	300	600
	지 방 비	-	-	-	300	300	600
	자 부 담	5,930	1,686	630	2,335	2,850	8,55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사업기간 : 1년

○지원대상

- 경주마를 1년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영농조합법인, 축협, 경주마 생산자협회

○지원내용

- 종빈마, 기반시설, 사육시설, 육성조련시설, 장비 및 기타 경주마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별표1] 참조),

○지원규모([별표 1] 참조)

- 개별농가 : 호당 3억원이내
- 영농조합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등 : 자기자본의 200%이내
- 농가공동육성조련시설 : 개소당 6억원이내(보조 3억원, 융자 3억원)
- 축협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에서 지원

○지원조건([별표 1] 참조)

- 지원조건 : 융자 70%, 자담 30%. 단 농가공동육성조련시설은 보조 3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10%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후 10년 균분상환
(단, 종빈마도입자금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리5%)

나. 2000 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융자(기금)	보조(국고)		
계	68호	9,876	7,241	6,941	300	300	2,335
종빈마 도입	316두	3,160	2,844	2,844	-	-	316
사육시설등	68호	6,716	4,397	4,097	300	300	2,019

주 :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504-9431)
- 시·도 : 축산과 또는 농정과
- 시·군 자치구 : 축산과 또는 산업과(축산계)
- 한국마사회 : 마사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가 공동육성조련시설은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검토를 받아 시장·군수 주관하에 추진
 -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조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회수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육규모의 확대와 시설개선등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업양축농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소규모의 다수농가에게 소액 분산지원하여서는 아니됨.
 - 월별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에 의함
- 기 타
 - 대구획 재경지정리 지역은 정책자금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등 보다 후위순위로 인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 회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태를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사업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부터	까지		
공동육성 조련시설	2000년	2007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5조

나. 보고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도	2월말까지	
○사업추진실적	시·도	반기별	

6. 2001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축산과 또는 산업과

나. 신청자격

- 종빈마를 1년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
-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경주마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
- 축협(업종조합 포함), 영농조합법인,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구성원의 2/3이상이 해당 축종 사육경력 3년이상이어야 하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축산과 또는 산업과 →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후 대상자 선정

※ 사업성 검토

- 시장·군수는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조치
- 한국마사회는 종부지원 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라. 구비서류

- 시행지침서에 의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통합신청서

마. 선정 우선순위

-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의 종부지원계획에 포함된 농가
- 초지, 방목장(600평 이상)을 많이 확보한 농가
- 농정심의회 지원순위 결정은 대상자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되 동순위자 중에서는 자부담을 많이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별 표 1]

경주마 생산사업비 지원기준

구 분	세부사업	지원조건(%)		지원규모		비 고
		융자	자담	호당, 두당	단 가	
○종빈마	○종빈마 도입	90	10	신규 5두이내 기존 10두이내	12,000 천원/두	○자금지원한도 : 11백만원 -도입단가가 120만원 이하일 경우 투자비율 준수
○기 반 시 설	○진입로 ○목로개설 ○용수개발 ○전력인입	70	30		100백만원/ km 45/km 30/1개공 5.5/km	○노폭 4m, 포장 3m ○노폭 4m ○한전산출실비 적용 가능
○사 육 시 설	○마 사	70	30	4.5평/두이내	900천원/평	○사육규모(확보계획두수포함) ×4.5평이내에서 지원가능
	○관리사	70	30	15평/호이내	1,500천원/평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15평이내만 지원
	○창 고	70	30	2평/두이내	600천원/평	○사육규모×두당 지원 규모 범위내에서 지원
	○패 독	70	30	12평/두이내	100천원/평	○12평×마방수 범위내에서 지원
○육성조 련시설	○실내마장	70	30	300평/개소	1,000천원/평	
	○자동 보행기	70	30	0.17대/두	4,900천원/ 두	○종빈마 보유두수의 50%규모내에서 지원
	○약.목욕장	70	30		500천원/평	○제주도만 지원
	○주 로	70	30		70천원/평	○폭 15m
-공동육성조련시설		보조 3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10, 10억원/개소		
○장 비	○수송차량	70	30	1대/호	35,000천원/대	○2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그레이더 (주로정지)	70	30	1대/호	1,300천원/대	○주로 보유시만 지원
	○트랙터등 기타장비	70	30			

※ 조사료생산관련사업비(초지조성 및 장비포함)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지원

※ 상기 지원기준 및 세부사업 이외에는 지원 불가

※ 신규참여농가의 경우 육성조련시설 및 장비지원은 2년차이후 지원

※ 지원단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담 추진

※ 기 지원실적을 포함하여 호당 3억원 초과 지원 불가(공동육성조련목장은 제외)

※ 지방비 보조가 있는 경우 투자비율조정 가능(단 융자는 70%초과 못함)

※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사업추진실적 보고

1. 투자실적

구 분	사업 대상자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종빈마도입									
기 반 시 설									
사 육 시 설									
조 련 시 설									
장 비									
합 계									

2. 사육실태

구 분	개별농가		축협, 법인등		합 계	
	현재	추진후	현재	추진후	현재	추진후
초지보유(ha)						
사육두수(두)						
자마생산(두)						
경주마공급(두)						
사업대상자수(명)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 및 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 및 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소계 ○○○ ○○○						거래처등 기타필요한 사항
○○○○	소계 ○○○ ○○○						
○○○○	소계 ○○○ ○○○						
합 계							

22	가축계열화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사무관 김동훈)입니다.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므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출산업과 연계하여 계열주체를 육성
- 계열사업체의 신규지정을 지양하고 기존계열사업체의 경영개선 방향으로 추진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7까지	'98	'99	2000예산안	2001~2004
○ 돼 지	물 량	15(13)	5(3)	6	3	
	금 액	48,374	5,290	15,161	7,456	
○ 닭	물 량	20(12)	5(1)	2	2	
	금 액	57,016	7,546	3,497	6,600	
합 계	물 량	35(25)	10(4)	8	5	
	금 액	105,390	12,836	18,658	14,056	

※ ()내는 신규선정 업체수임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 사업기간 : 2000~2001년(신규사업은 3년차로 추진)
- 지원내용 : [별표1] 참조
- 대상축종 : 돼지, 닭
- 가축계열사업형태 : 완전계열화, 부분계열화, 조합형계열화
- 자금지원대상자 :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하 축협중앙회·한냉포함)과 연계·참여한 업체

나. 자금지원방법

-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
 -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양돈계열화 사업의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할 경우에만 지원
- 민원발생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원해결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단 재신청시 대상지이외 사업계획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 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
-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주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출규격돈 생산 소요액의 50% 범위내에서 자금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

- 계열화사육비 집행계획서 작성방법

- 지원대상업체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한 계열주체로서 규격돈을 생산하는 업체
- 지원내용 :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양돈단지 포함)가 운영하고 있는 양돈장에서 소요되는 종돈입식 또는 자돈구입비, 사료비,약품비, 위탁사육 수수료
- 작성내용 : 계열화 사업체계도, 계열농가명단, 계열농가별 사육형태 및 사육두수, 월간 및 연간생산·입식·출하두수, 수출규격돈 생산계획두수, 1회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 연간 종돈입식비, 기타운영사항

○ 지원조건 : [별표 1] 참조

다.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개소, 백만원)

	신규사업		계속사업		보완사업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돼지	1	798	1	2,158	1	4,500	3	7,456
닭	1	2,100			1	4,500	2	6,600

※ 업체별 지원내역은 별도 통보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산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축산담당(축산계)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의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주관 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
-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요원확보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이며,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경영 및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조정 :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

(2) 계열화업체의 준수사항

○ 협의체 구성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사이에 가축계열화 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와의 계약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등을 지도

○ 계열화 업체의 이행사항

-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 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성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육두수 조절 및 수매·비축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 양돈계열주체는 계열농가 선정시 양돈단지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보
- 양돈계열주체가 운영하는 종돈장의 관리자와 계열농가는 「양돈전문기술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농가경영기술을 향상시켜야 함.

< 행정사항 >

가. 지원집행 세부요령(사업주관기관)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감독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기술직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기계, 장비구입비 및 사업비 집행시는 관련 증빙자료 비치(축발기금운영 규정 제14조 제7항에 의함)
- 계열주체가 계열화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유)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토록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나. 사업계획변경

- 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계획변경시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전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임에 유의하여 당초 사업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다. 사후관리

- 사후관리는 '91년이후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로 하며 자금 상황이 만료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별표3)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 대한 규격품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및 경영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년2회이상 계열화사업자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한다(추진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시정지시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한다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한다. 다만, 이 경우 계열농가에게 지원된 생산시설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회수대상에서 제외

라. 보 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사업계획서	시·도	3. 31까지	별표3
○기축계열화 평가 운영 실태(추진실적)보고 - 미완료된 업체포함	시·도	매분기 익월5일까지	별표3, 별표4

6. 2001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관할 시·군(1월말까지)→시·도→축협중앙회
사전심사(2월말까지)→시·도(적합 또는 보완된 사업계획)→예산신청
(3월말까지)

다. 대상자선정

(1) 신청자격

- 축산법, 축협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등록된 부화업, 종축업 및 도축(도계)업, 축산물종합처리장(육가공업 포함), 배합사료제조업을 하는 자 및 축산업협동조합(지역, 업종) 및 중앙회
- 축산관련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사업장 건설대상토지가 확보된 자 (축산단지조성사업의 부지확보 조건 준용)
- 가축별로 다음에 정하는 계열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
 - 돼지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육계 : 종계 및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계장, 육가공장 사업중 2종이상 보유자
- 기 타
 -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야 함
 -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및 자부담, 운영자금에 대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함
 - 육계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사업실적(사업신청 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50만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우선순위

-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3) 신청절차

- 계열사업자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자격요건 및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축협중앙회의 사전심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신청기한 엄수)

(4)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축협중앙회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학계, 축협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축협중앙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축협중앙회의 사전심사 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가축계열화 사업계획서 사전심사요령”에 의거 실시하고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한다.
 - 주요심사내용 : 계열주체 자격요건, 부지확보여부 지역주민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사항 유무, 계열요소구비사항, 사업계획서 타당성, 계열농가와의 계약여부, 경영기록사항, 자금상환능력 등
- 축협중앙회장은 심사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한 경우 “적합”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 보고
 -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완 요청
- 시·도지사는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
 -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보완하게 한 후 심사하여야 하며,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동 사유가 충족되기 이전에는 다시 심사 요청할 수 없음.

- 수출업체와 연계한 계열주체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한 계열주체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자축구입비 및 사료비 등 계열화사육비를 신청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 신청자격 : 수출을 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계열주체
 - 지원대상 :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양돈단지 포함)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요되는 자축구입비, 사료비,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신청범위 : 지원대상 사업비의 50%이내
 - 신청방법 : 계열주체는 사업주관기관(시·군 경우)에 계열화 사업체제도, 계열농가명단, 계열농가별 사육형태, 사육두수, 연간생산·입식·출하두수, 1회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 등을 제출

(5) 계열화사업자 지정(별표2)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계획이 확정되거나 시·도지사가 계열화사업 요건을 갖춘 자라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추진요령 시행이전에 가축계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원받은 자는 본 요령에 의하여 계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라. 기타사항

- 대상축종 : 돼지, 육계(산란계는 제외)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춘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계열사업 완성년도, 연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연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 사업추진규모
 - 돼 지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1.5천두×2회×15호)이상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이상 (중계 40천수×100수)
농가확보 : 25호이상
- 사업추진 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
 - 돼지 : 상기 규모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기반시설
 - 닭(육계) : 상기 규모이상의 병아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중계장과 부화장 (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2000년도 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2001년에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에 포함될 경우 세부사업추진절차, 지원내용 및 방법 등은 그 사업요령에 의함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생산기반시설	○자돈 및 모돈생산시설, 종돈장 시설 ○중계장 및 부화장 시설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 8%(축협등 생산자단체 5%)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2.계열주체사육 시설	○계열주체직영 비육돈·육계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 으로 추진	“	가축을 도축, 도계 및 가공 하여 수출하는 계열주체만 지원
3.계열농가생산 시설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리 5% -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축산종합자금 사업과 동일
4.가공시설(육가공 공장등)	○ 가공장시설 및 부대시설 (오폐수처리시설포함)	“	
5.유통·판매시설	○ 유통·판매장 및 부대시설 ○ 냉장·냉동·물류등 유통· 판매시설	“	부지·건물 구입비 및 임차료는 제외
6.계열화사육비	○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 자돈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등	- 소요액 50%이내 - 연리8%, 2년이내 상환	수출규격돈 생산에 한함 (2000년)

※ 1.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2. 닭계열화사육비는 2001년부터 지원계획임

(수출용 닭을 생산하는 계열주체를 우선지원)

[별표2]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사업장소재지			
주사업내용			

축산업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2000. . . .

사업주관기관의 장 (인)

[별표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지정년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년도				()년도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진척도 (%)	합계	용자	자담	진척도 (%)
생산기반시설 ()													
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도계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 주) ○ 미완료 사업분은 계획으로, 기지정 완료분은 실적으로 하여 계열주체별로 작성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추가지원분 공란에 추가 기재
 ○ 생산기반시설,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에는 「별표1」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비 고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주) ○ 미완료 사업분은 계획으로, 기지정 완료분은 실적으로 기재하여 계열 주체별로 작성

○ 양돈의 경우 계열농가호수는 번식 또는 비육농가로 비고란에 구분하고, 자축공급란에 번식농가에는 종돈공급두수, 비육농가에는 자돈공급두수를 기재

[별표4]

계열화사업추진실적보고(추진실태점검)

1. 현 황

- 지정년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실적(기간 : -)

사업명	사업량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당 기 실 적				누 계 실 적				비고	
			합계	유자	자담	합계	유자	자담	진척도 (%)	합계	유자	자담	진척도 (%)		
생산기반시설 ()															
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도계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 주) ○ 미완료 사업분은 계획으로, 기지정완료분은 실적으로 하여 계열주체별로 작성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추가 지원분 공란에 추가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실적(기간 : -)

구 분		()년도 계획		당기실적			누계실적			비 고
		사업량	금액	사업량	비율	금액	사업량	비율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가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23.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서기관 노수현)입니다.

1. 사업 목적

-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재원을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번식농가의 한우번식기반을 유지
 -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
- 사업대상은 한우번식농가로서 한우암소
-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참여농가 부담금 납부
 - 참여농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액의 부담금 납부
 - 중앙정부는 잔여 소요액 부담

3. 과거지원실적 및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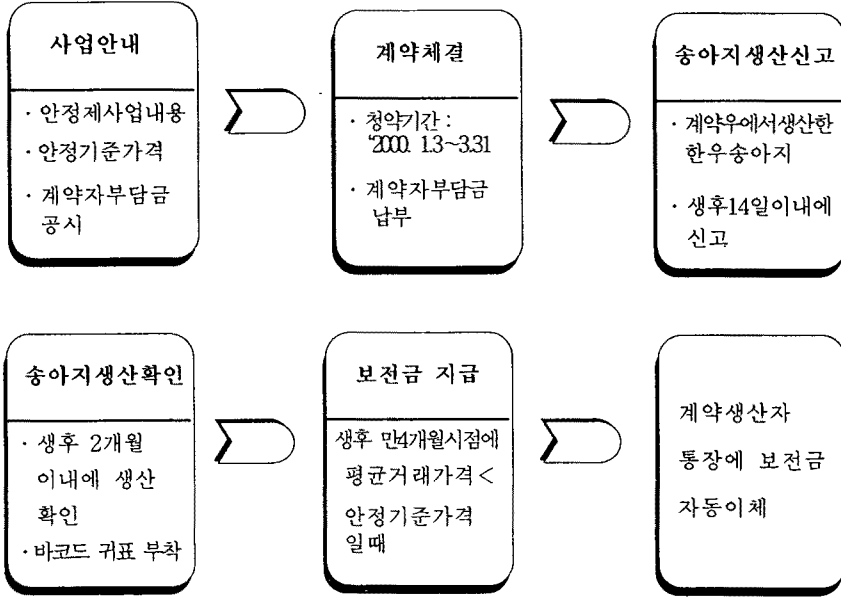
구분	'97까지	'98	'99	'2000	2001~4	계
사업량	-	(112,150)	112,150두	417,000	1,668,000	2,197,694
		백만원				
사업비	-	490	11,736	63,008	253,360	431,495
-축발	-	490	9,494	54,748	220,000	284,732
-농특	-	-	-	-	-	-
-지방비	-	-	1,121	4,170	16,680	21,971
-자부담	-	-	1,121	4,170	16,680	219711

4.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업무추진절차



나. 2000년도 사업비 예산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농가
			계	보전금	관리비		
계	417천두	63,088백만원	54,748	50,040	4,708	4,170	4,170
관리비	-	4,708	4,708	-	4,708	-	-
보전금	417	58,380	50,040	50,040	-	4,170	4,170

다. 사업계약기간 : 1년간

라. 사업대상 지역 : 전국

* 세부 사업내용 및 행정사항

○ 사업추진체계를 보완중에 있으므로 추후별도 시행할 계획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축산정책과장 이상길, 사무관 이주일)입니다

I. 한우개량사업

1. 목 적

- 순수개량방법에 의한 한우능력 향상
- 우량종우 생산기반 구축, 우량한우 보호 및 순수혈통 보전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한우보증종모우 선발
 - 이들의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여 한우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정확한 개체능력 조사 및 기록유지등으로 활용도 제고
- 한우개량농가와 한우능력검정 연계추진
 - 계획교배로 검정대상 송아지생산 및 당·후대검정을 통해 우량종모우 선발
 - 선발된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및 정액생산·공급
 - 한우개량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7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년	2002~2004
사업량		2	2	2	2	2	2
사 업 비	계	112,903백만원	23,698	19,642	20,275	19,828	55,391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67,903 45,000	23,698	19,642	20,275	19,828	55,391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가) 한우개량농가육성

○ 사업추진배경

- '79년부터 단지 조성, '95년부터 「개량농가」로 참여 확대, '99년부터 개량농가 중심으로 육성·관리

○ 사업내용

- 개량농가의 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중 심사에 합격된 등록우관리
- 추천종모우에 의한 등록우 계획교배
- 계획교배에 의한 송아지생산 관리 및 등록
- 등록우에 대한 발육 및 번식실태 조사 실시

나)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당대검정 및 후대검정을 통한 우량 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 암소와 숫소간 계획교배로 생산된 숫송아지중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종모우의 후손에 대한 산육능력검정 및 도체성적 평가로 보증종모우 선발

○ 한우정액생산·공급

- 보유중인 보증종모우로부터 고품질 청정정액을 생산하여 개량농가등 양축농가에 공급

(2) 지원내용

가) 한우개량농가육성

- 등록우 관리비, 농가조사 사례비등 지원

나)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시설, 검정축구입등 고정투자와 인건비, 재료비등 소요자금 지원

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한우개량농가, 한우등록우관리조합,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보조사업비,기금사업비, 고정자산비)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0,275	20,275	20,275			
○ 한우개량농가	180천두	10,377	10,377	10,377			
○ 정액생산공급	1 개소	9,898	9,898	9,898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 협조기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0-3330)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개량총괄과(전화 0455-663-8635)
- (사)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한우개량농가육성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2000년도 사업계획

등록우관리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180천두	100천두	70

○ 등록우관리

- 개량농가의 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중 심사에 합격된 것
- 등록우 관리카드 작성·보존·활용(개체표식은 바코드 귀표번호로 통일, 개체별 등록우 관리자료를 PC로 작성관리, 개량정보 농가제공등)
- 귀표부착 : 신규등록우(수송아지 포함) 및 기존귀표 탈락시 지도원이 부착
- 기존 관리우중 자질이 불량한 등록우 및 혈통등록우중 고등등록 심사에서 탈락된 개체와 심사기피 개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 한우개량농가 추가지정 및 정비
 - 기존 개량농가에 대하여 수시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우 5두미만 보유 부적합한 농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 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

- 한국축육개량협회장은 개량농가별로 등록우의 체형을 조사·분석하여 등록우 결점 보완 및 근친교배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종모우를 추천하고 축협중앙회장에 통보. 단, 농가 희망시 특정종모우 정액사용을 허용하되 친자확인등 검증체계 확립
- 개량농가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는 추천종모우에 의한 계획교배 실시 및 철저한 수정기록 유지로 정확한 혈통관리
- 등록우에 추천종모우 정액으로 인공수정후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즉시 생시체중을 측정하여 어미소의 개량자료 조사표에 기재, 사료지급 신청서와 함께 관리조합에 송아지생산 신고
- 관리조합은 어미소의 등록여부(등록증과 사육자 및 등록우 연령, 특징등), 추천종모우 정액에 의한 수정여부, 수정일과 분만예정일 적합 여부, 시술자와 수정상황 및 농가·조합비치 관리카드 정비여부, 개량자료 조사표 기재사항의 정확한 측정·기재여부 등을 확인
- 생산된 송아지는 분만후 5일이내에 확인하여 등록우 관리자료에 생산내역을 기록, 3개월령 이내에 심사, 합격축은 혈통등록과 동시에 귀표부착후 관리
- 한우개량농가의 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후대축을 심사하여 합격한 전두수를 대상으로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
- 우량 후대축 매각방지를 위해 송아지생산 확인시 예비심사 실시로 합격이 가능한 후대축은 이동 억제토록 지도

○ 참여농가의 규모화 및 정예화

- 개량농가중 소규모 사육농가는 연차별 관리대상에서 제외. 단, 고등등록우는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관리두수에 포함

	'96	'98	2000	2002
지원제외 규모	1두사육농가	2두	3두	4두

- 개량정도가 낮은 기초등록우는 연차별로 관리대상에서 제외. 단,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기초등록우에서 생산된 혈통등록우 및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기초등록하여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은 포함

	2001	2002	2003
지원제외 단지 및 개량농가	'95조성단지(50개소) '95개량농가	'96~'97 개량농가	'98~'99 개량농가

- 등록우 조사사업
 - 발육능력조사 : 생시, 이유시, 12개월령, 등록(혈통, 고등, 육종)시
 - 번식능력조사 : 초종부일령, 초산일령, 번식간격, 수태당 종부회수 등
- 개량농가 관리
 - 관리조합은 등록우 이동방지와 세대축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 도 종축장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년 1회이상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사양 및 개량관련 교육 실시
- 개량자료 농가조사사례비 지원
 - 지원대상 : 계획교배로 송아지를 생산한 등록우 사육농가
 - 지원기준 : 기초등록우 35천원, 혈통등록우 50천원, 고등등록우 70천원 상당 사료지원
 - 지원방법 : 등록농가는 송아지생산시 개량자료 조사표, 송아지생산 신고 및 조사사례비 지급신청서를 해당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에서는 동 조사표 및 신청서가 추천종모우 교배등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인공유 및 번식우사료 지급
- 등록우 관리비 지원
 - 등록우 관리지도원의 등록우 관리실적에 따라 등록우 관리조합에 두당 36천원/년 지원(분기별로 분할지원)
 - 등록우 관리두수에 대한 경제형질조사, 송아지 생산, 번식관련기록의 분기별 전산입력 결과에 따라 관리비 지원(분기별 개체관리기록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나)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축협중앙회장은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당대검정
 - 검정기관 : 축협한우개량부
 - 검정목표 : 당대검정 500두, 후보종모우 선발 60두
 - 당대검정축 및 당대검정우 생산용 빈우 확보 : 축협 자체생산우, 개량기관 및 개량농가에서 매입 확보(산지평균시세의 130% 수준에서 매입)
 - 검정기관장은 검정 완료시 개체별 검정성적을 가축개량총괄기관장에 통보

- 후보종모우 선발 및 확보
 - 축협중앙회장과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당대검정 성적을 종합분석(유전평가)하여 가축개량실무위원회에서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검정기관 : 축산기술연구소(남원지소, 대관령지소)
 - 검정목표 : 후보종모우 공시 60두, 후대검정 600두, 보증종모우 선발 20두
 - 후대검정용 솥송아지(검정대상축) 확보
 - 축협중앙회 한우개량부와 축산기술연구소간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확보하되 산지평균 시세의 130% 수준에서 매입
 - 축협중앙회장과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한우개량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한우현장검정계획을 수립
- 검정성적 평가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후대검정대상우의 성적을 후보종모우 별로 종합 정리하여 분석·평가
- 보증종모우 선발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후보종모우별 유전능력평가 결과등 근거로 하여 가축개량협의회(한우분과)에서 보증종모우 선발
- 검정방법 : 한우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7-18호, '97.3.6)에 의하여 실시
- 당·후대검정 사료의 생산·공급
 - 검정기관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 검정사료 소요량을 축협 청주배합사료공장에 신청
 - 동 사료공장은 한우검정요령중 농후사료 배합비율 및 영양성분 기준을 준수한 검정사료를 일괄 생산·공급
- 정액생산 및 공급
 - 후보종모우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종모우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증감
 - 축협중앙회장은 정액 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공급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비경후색등) 생산여부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써 민원방지
- 사업비지원
 - 축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 집행
 - 축산기술연구소의 후대검정 비용에 대하여는 국고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축협중앙회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간의 용역계약에 의거 집행

(2) 기타사항

- 한우개량사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하여 참여농가 및 관리조합의 역할증대 노력 경주
- 한우능력검정 참여기관의 역할 조정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한우 후대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축사건축비, 검정축 구입, 검정사업비등) 확보에 최대한 노력 경주
 - 여건변화에 따른 한우개량체계 전환등을 감안하여 후대검정규모등 조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후보종모우·보증종모우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공급으로 대양축가 써비스 강화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한우능력검정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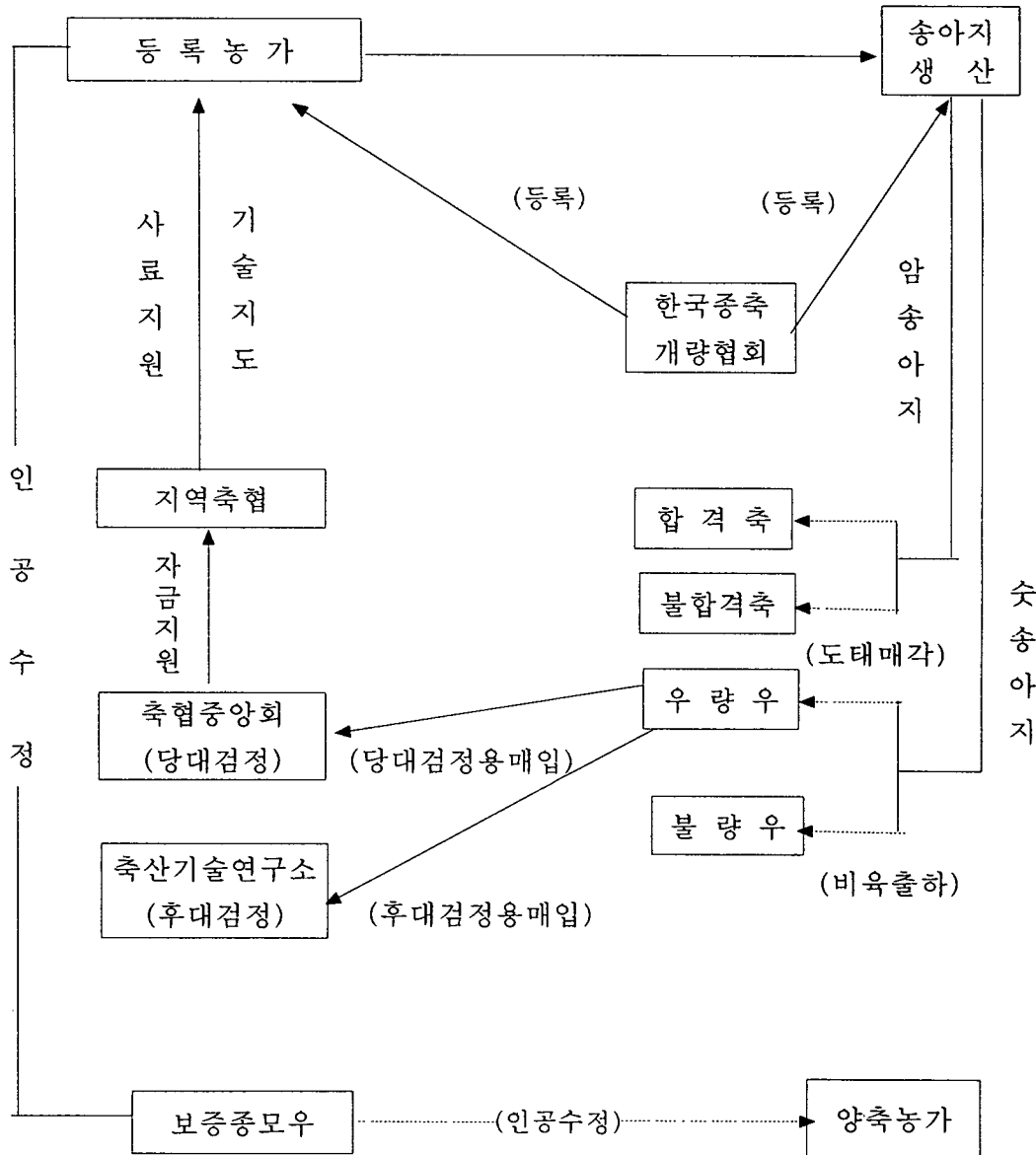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개량농가 운영장비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 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 불가시는 조합 자담 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 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 할 수 있음

나. 보 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2000세부사업추진계획서 : 2000.2월말까지
- 후보종모우 선발 및 매입결과 : 매입 완료후 1개월이내
- 보증종모우 선발결과 : 선발완료후 1개월이내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별표 1]

< 사업시행 체계도 >



[별표 2]

개량자료조사표

분만우내역	개체번호	등록번호		바코드번호	생년월일	등록구분			
변식상황	수정내역				분만내역				
	산차	수정회수	수정종모우	최초수정일	마지막수정일	분만일	성별	생시체중	분만상태
송아지특징	모색	비경	면선	미선	배선	이모색	이상형질		
분만우 발육상황	구분	생시	이유시	혈통등록시	12개월령	고등등록시	육종등록시		
	조사일	kg							
	체중	cm							
	체고	cm							
	십자부고	cm							
	체장	cm							
	흉폭	cm							
	흉심	cm							
	요각폭	cm							
	곧폭	cm							
	좌골폭	cm							
	고장	cm							
	흉위	cm							
	전관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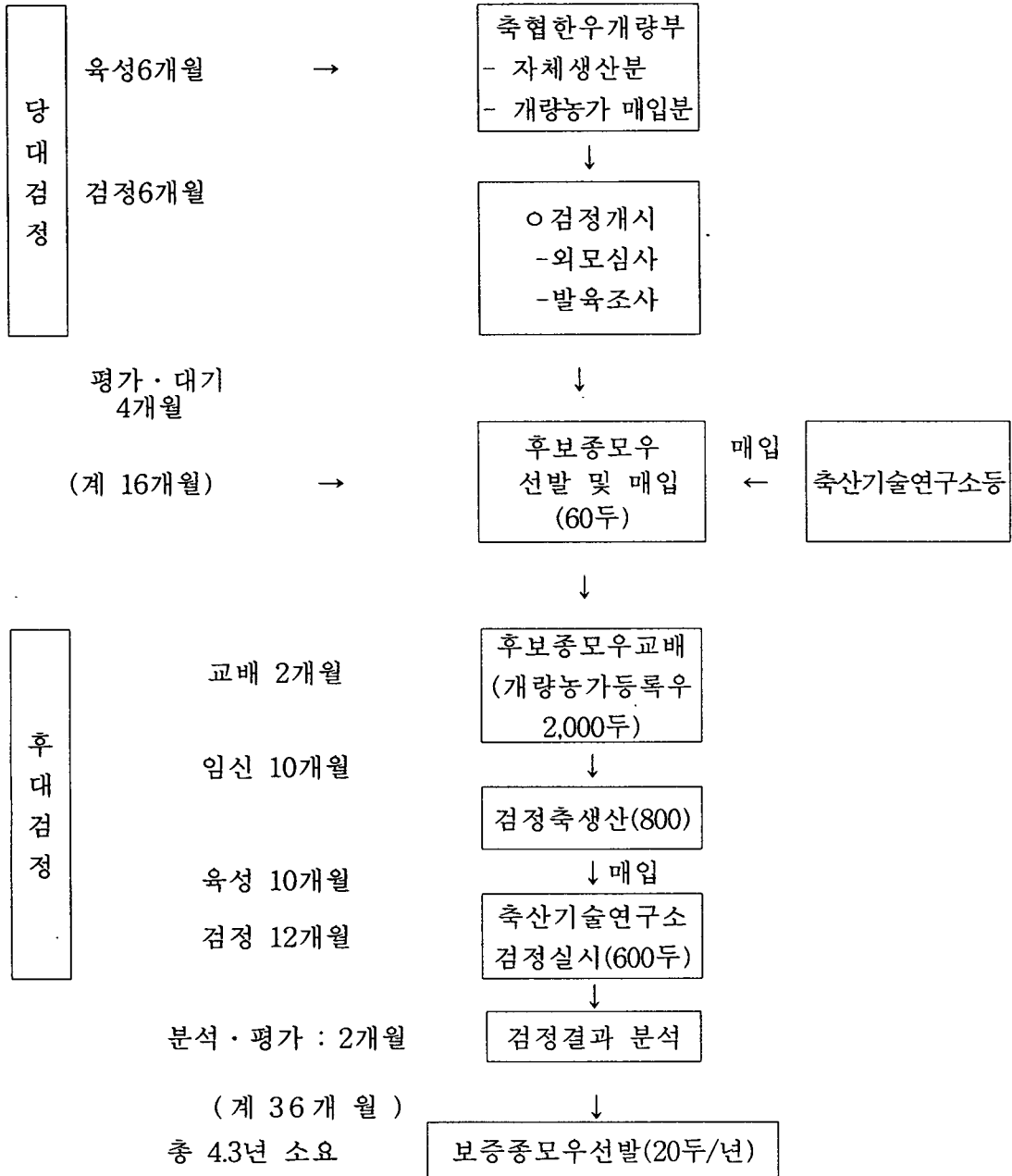
※ 소를 이동, 판매시는 본 조사표를 구매자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량자료조사표 작성요령 >

- 개체번호 : 등록우관리조합에서 부여한 번호로써 귀표를 확인하여 기재
- 등록번호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번호로써 해당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바코드번호 : 소 귀에 부착된 바코드 귀표번호를 확인하여 9자리 수를 기재
- 생년월일 : 해당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등록구분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시 명시된 기초, 혈통, 고등등록으로 구분하여 기재
- 번식사항 : 처녀우는 최초 종부부터, 경산우는 최종 분만이후 금번 분만 까지의 기간중 종부상황 기재
- 산 차 : 분만한 회수를 기재 예) 초산, 2산, 3산 등
- 수정회수 : 금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최초수정부터 마지막 수정까지의 수정회수를 기재
- 수정종모우 : 인공수정시 종모우명 기재
- 성 별 : 암수로 구분하되 쌍태임 경우는 암1, 수2, 암·수중 선택기재
- 생시체중 : 송아지 출생시 체중을 측정하여 기재
- 분만상태 : 정상분만, 조력분만, 난산, 유산, 사산중 선택 기재
- 송아지 특징 : 분만시 송아지의 특징 기재(혈통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사항)
예) 모색 : 황, 면선 : 하, 미선 : 결, 배선 : 후, 비경 : 황, 이모색 : 백반, 이상형질 : 프리마틴
- 조사일 : 체중 및 체위를 측정한 연월일 기재
- 체중 및 체위측정 : 우형기, 체척기, 캘리퍼, 줄자를 이용한 측정기를 기재
 - 생시, 이유시, 혈통등록시, 12개월령, 고등등록시, 육종등록시로 구분하여 체중 및 체위 등 12개 형질 조사

[별표 3]

< 단계별, 기관별 사업추진방법 >



※ 상기 기간 및 두수는 현지사정에 의거 조정 가능

한우능력검정사업추진실적·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1. 당대검정							
o 교배	두	사업량					
- 개량본부	"						
- 개량농가	"						
- 축산연	"						
o 수송아지생산	"						
- 개량본부	"						
- 개량농가	"						
- 축산연	"						
o 검정	"						
o 후보종모우선발	"						
2. 후대검정							
o 검정축생산	"						
- 개량본부	"						
- 개량농가	"						
o 검정	"						
o 보증종모우선발	"						
3. 정액생산 공급							
o 종모우 사육	두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o 정액생산	천st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o 정액공급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용 자	합계(B)	보 조	용 자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 도(%)	
				계 획(B)	실 적(C)	C/B	C/A
등록우관리운영 - 개량농가	조 합	사업량					
o 등록우관리 - 관리조합 - 개량농가	두 " "						
o 인공수정 - 관리조합 - 개량농가	" " "						
o 송아지 생산 - 관리조합 - 개량농가	" " "						

2. 사업비 집행실적

세 부 사 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용자	합계(B)	보 조	용자	
한우개량농가육성 - 농가지원 - 등록우관리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II. 젓소개량사업

1. 목 적

- 젓소의 자질개량 및 능력향상
- 젓소개량을 위한 기반확충 및 인식도 제고와 낙농경영의 합리화 유도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젓소보증종모우 도입 및 선발
 - 이들의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여 젓소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우군능력검정과 젓소 후대검정 연계추진
 - 국내 우량종빈우의 계획교배로 검정대상 송아지생산
 - 당·후대검정을 통한 우량종모우 선발과 도입 및 정액생산·공급
- 유우군능력검정은 검정소 및 참여농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두당 일정액 보조지원
 - '97년도 두당 월별보조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액하여 10년후에는 자담으로 전환
 - 정확한 개체혈통 및 능력조사와 기록유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57조(기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7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년	2002~2004
사업량		2	2	2	2	2	2
사 업 비	계	28,211백만원	6,542	6,216	8,294	6,100	17,720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24,611 3,600	6,542	6,216	8,294	6,100	17,72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유우균능력검정
 - 축협중앙회장은 검정희망 검정소 및 농가에 대하여 "젖소산유능력검정 세부실시요령"(축정 51530-823, '96.12.9)상의 구비요건을 심사하여 검정소 및 검정농가 선정
 - 검정성적을 분석하여 농가 사양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 각 검정소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검정결과 통보·설명 및 경영지도
- 젖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젖소능력검정을 통한 우량 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 암소와 숫소간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숫송아지에 대한 발육능력 및 외모심사로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종모우의 후손에 대한 산유능력검정으로 보증종모우 선발
 - 보유중인 보증종모우로부터 고품질 청정정액을 생산하여 양축농가에 공급

(2) 지원내용

- 유우균능력검정 : 검정참여농가에 연간 두당 검정비용의 일부 보조지원
- 젖소정액생산·공급 : 시설, 검정축구입, 인건비 및 재료비등 지원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축발기금보조(기금사업비, 고정자산비)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	8,294	8,294	8,294			
○ 산유능력검정	100천두	3,527	3,527	3,527			
○ 젖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1개소	4,767	4,767	4,767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젖소개량부
- 협조기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0-3330)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젖소개량부(전화 0344-965-9587)
- (사)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유우군산유능력검정

- 축협중앙회장은 유우군산유능력검정에 대한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젖소검정기준(농림부 고시 제97-19호, '97.3.6)과 유우군능력검정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
 - 검정소 및 검정농가 선정, 농가사양관리 및 경영개선지도등

○ 사업비 지원방법

- 지원대상 : 검정업무를 수행중인 단체등 검정소
- 지원조건 : 검정우 두당 31.1천원/년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 ※ 단, '97년도 월간 두당보조금(3,700원)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축하여 10년후에는 자부담 사업으로 전환하여 계획적인 사업참여 및 추진유도
- 지원방법 : 각 검정소 검정결과 검정성적 통보서상의 검정두수를 기준으로 1비유기 두당 31.1천원을 월별(월 2,590원) 분할 지급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대하여 지원하되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검정이 실시된 후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30±5일 간격으로 검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는 지원제외
- ※ 단, 질병치료, 품평회등 공식행사 참여 및 검정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월에 검정이 안될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검정중지우에 대하여는 1비유기중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허용

나) 젖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축협중앙회장은 젖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에 대한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 계획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고능력 정액도입 및 수정란에 의한 국내 송아지생산매입과 낙농선진국의 Young Bull도입으로 당대검정축 확보(연간목표 30두)
 - 당대검정기록, 선대능력, 외모심사점수, 발육상태, 정액성상등을 감안하여 가축개량협의회(젖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종모우 선발(연간목표 15두)
 - 유우군능력 검정우를 활용한 계획교배를 통하여 후대검정용 낭우(검정대상축)를 확보하고, 축산기술연구소와 도 종축장은 각각 독립된 축군(Herd)으로 간주
 - 가축개량 협의회 자문 및 후대검정성적, 외모심사 점수등을 종합한 유전능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보증종모우(3두 내외) 선발
 - 보증종모우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증감 가능
- 인공수정용 정액생산·공급
 - 축협중앙회장은 정액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공급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송아지(이모색, 유전적결함등)생산 여부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서 민원방지
- 사업비 지원방법
 - 축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집행 실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연간 산유능력검정성적을 종합 분석하여 각 검정소, 관련 기관등에 배포
- 축협중앙회장은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 공급으로 대양축가 서비스 강화
 - 젖소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7-19호, '97.3.6)에 의거 관리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능력검정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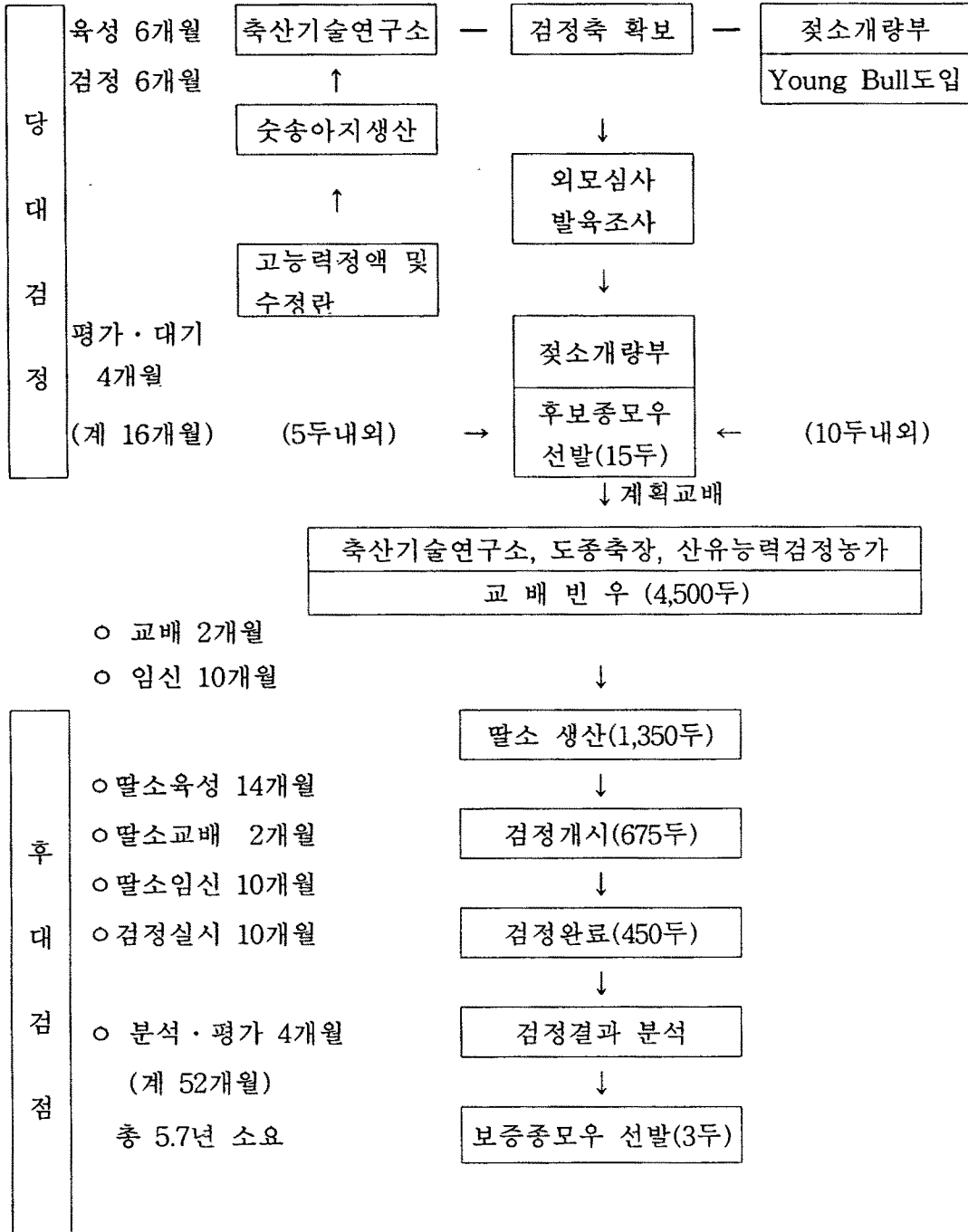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검정용 기구, 기자재 및 차량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 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 불가시는 조합 자담 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 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 할 수 있음

나. 보 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2000세부사업추진계획서 : 2000.2월말까지
- 후보종모우 선발 및 매입결과 : 매입완료후 1개월이내
- 보증종모우 선발결과 : 선발완료후 1개월이내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별표 1]

< 단계별, 기관별 사업추진방법 >



※ 상기 기간 및 두수는 현지사정에 의거 조정 가능

유우균능력검정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단 위	평가구분	계획 (A)	2/4 분기까지		진 도 (%)	
				계획 (B)	실적 (C)	C/B	C/A
○ 검정소 운영	개소 명 호 두	사업량					
○ 검정원							
○ 검정농가							
○ 검정두수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 (A)	보 조	응 자	합계 (B)	보 조	응 자	
젓소산유능력검정							

* 검정성적 분석후 보조금 정산처리하므로 보조금 집행이 익월에 처리됨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4. 향후과제

젯소후대검정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2/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1. 후보종모우 확보		사업량					
o 정액도입	st						
o 수정란 도입	"						
o 종빈우 교배	두						
o 수정란 이식	"						
o 후보우 확보	"						
2. 후대검정							
o 후보우 선발	"						
o 빈우 선정	"						
o 낭우 생산	"						
o 검정두수	"						
o 보증종모우선발	"						
3. 정액생산 공급							
o 종모우사육	"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 종모우 도입	"						
o 정액생산	천st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o 정액공급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도 (B/A)
	합계(A)	보 조	용 자	합계(B)	보 조	용 자	
젯소능력검정 및 정액 생산공급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Ⅲ. 돼지개량사업

1. 목 적

- 종돈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 위생수준이 높은 종돈의 생산·공급으로 질병피해 방지
- 고능력 종돈의 인공수정 활용으로 우수유전자 보급 확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 병행 추진
 - 격리조기이유(SEW)방식 도입 추진 및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돈 선발 보급
 - 능력검정요원의 전문화, 검정방법의 공정화,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검정결과에의 공표를 통한 양축농가의 종돈구입 편익 증진
 - 능력검정결과 우수종돈의 정액처리업체 활용 유도
- 전문종돈업육성
 - 원종돈(GGP)농장과 종돈(GP)농장의 분리 및 상호연계로 전문성 제고
 - 자돈, 육성돈, 성돈의 분리사육(2~3Site)으로 질병감염기회 차단
 - 2000년대 종돈소요 두수의 40% 수준을 전문종돈업체에서 생산·공급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7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년	2002~2004
사업량		2	2	2	2	1	1
사 업 비	계	29,034백만원	12,954	25,547	23,057	280	840
	보 조	1,919	362	263	280	280	840
	용 자	27,115	12,592	25,284	22,777		
	자부담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종돈능력검정
 - 시·도지사에게 종돈업신고를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
 - 2000년도 검정계획
 - 농장검정 : 희망농장 및 물량에 한함(세부운영요령 별도작성 시달)
- 전문종돈업육성
 - 종돈사육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원종돈(GGP)농장을 운영하면서 계약된 종돈(GP)농장에게 GP종돈을 공급하는 한편,
 - 사양관리, 개량관리, 위생관리등을 협의·지도하므로써 능력이 우수하고 위생 수준이 높은 종돈 및 모돈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농장
 -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종돈업 등록업체중에서 원종돈농장을 선정하고 이들과 GP종돈 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2단계 또는 3단계 분리사육(2~3Site)에 필요한 자금지원

(2) 지원내용

- 능력검정
 - 돼지정액처리업체가 인공수정용으로 적합(축산업시행규칙[별표1])한 검정소 및 농장검정돈을 구매할 경우 낙찰가격 또는 구입비의 일정액 지원
 - 농장검정 활성화를 위하여 농장검정비용의 일부 지원
- 전문종돈업육성
 - 격리조기이유(SEW)방식도입 및 자돈, 육성돈, 성돈의 분리사육(2~3Site)을 위한 돈사건축비에 한하여 년차별 축발기금 융자 지원
 - 기존돈사 활용시에는 지원단가 80%이내에서 내부구조 개보수비 지원
 - ※ 분뇨처리시설비는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신청시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부지구입비, 원종돈 및 종돈구입비, 부대시설등은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0% 융자, 30% 자부담(년리 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	23,057	23,057	280	22,777		
○ 돼지능력검정	4,680두	280	280	280			
○ 전문종돈업육성	34 개소	22,777	22,77		22,777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 능력검정
- 시·도지사 : 전문종돈업육성
 -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사업장시설(Site시설)이 산재되어 있을 경우 선정된 사업 대상자의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주관기관이 됨
- 사업시행기관
 - 시·도지사(시·군) : 전문종돈업육성
 - (사)대한양돈협회,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돼지능력검정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시·도 축산과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0-3330)
- 대한양돈협회(전화 : 협회 02-553-3942, 제1검정소 0336-32-2426)
- 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 02-588-9301)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종돈능력검정

- 농장검정은 별도 정한 세부실시요령에 의하여 추진
- 대한양돈협회장은 검정소 연간 검정계획 및 운영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나) 전문종돈업육성사업

- 각각의 원종돈농장 및 종돈농장은 별도로 격리된 2단계 또는 3단계 분리사육(2~3Site)을 하여야 하며 자돈의 이유시기는 가급적 생후 2주령 이내로하여 모체감염 방지
- 원종돈농장은 종돈관리전산시스템 도입 및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종돈농장에 종돈관리, 위생관리 및 사양관리 기술지도 실시
- 종돈농장은 질병오염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종돈농장이 종돈공급을 할 수 없는 계약기간중에는 원종돈농장으로부터 종돈공급을 받아야함
- 원종돈 농장은 하이브리드(Hybrid)종돈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육성돈사의 일부에 검정시설을 갖추어 생산된 자돈에 대해서 검정소 검정 또는 농장검정을 받아야함

(2) 사업추진방법

- 검정방법 : 돼지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7-20호, '97.3.6)에 의하여 실시
- 전문종돈업육성
 - 농림부(사업총괄 및 예산확보) → 시·도(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및 축산기술연구소(사업추진상황 점검·지도 및 평가) → 사업대상자(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축협중앙회(자금지원 및 관리)

(3) 사업비 지원방법

- 능력검정
 - 농장검정 추진 세부 실시요령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 대한양돈협회 검정소 검정 및 농장검정을 필한 고능력종돈 인공수정 활용 지원

- 전문종돈업육성
 - 자금지원기간 : '96~2000년(5년간)
 - 선정된 농장별 총융자액은 3~4년에 걸쳐 분할지원을 원칙으로 함
 - 측정 51530-609('97.9.8)호로 시달한 보완대책에 의하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기 승인한 세부사업추진계획서상의 연도별 농장별 사업비 지원 계획에 따라 융자금 확보 지원
 -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집행된 융자액의 타용도 사용, 의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액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대상자(개별농장 기준)가 사업초년도말까지 부지확보 및 축사 건축 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 배정된 융자금의 불용조치 및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농장 선정 불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종돈검정결과는 축산관련 전문지등을 통하여 농장·품종별 검정성적 공표
- 종돈 검정성적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하고 혈통대장에 명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설 및 기구등 취득 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협회 자담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 전문종돈업 육성사업 사후관리지침

- 농림부 : 사업총괄, 소요예산 확보 및 자금지원
- 축산기술연구소 : 세부사업추진계획 승인, 종돈개량체계 확립등 기술적사항
- 도지사(시장·군수) : 사업관리, 사업추진진도 확인·점검, 각종 인허가등 행정적 사항
- 사후관리기간
 - 축산기술연구소 : 사업대상자 확정일부터 사업완료후 5년간
 - 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 사업대상자의 세부사업추진계획서 변경 승인
 - 선정된 사업대상자(GP농장을 포함하며 이하같음)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사업장소, 사업량, 사업비(융자금 포함), 융자금 소요시기등 사업추진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세부사업추진계획서(당초 승인된 계획서 참고)를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및 도지사를 경유하여 축산기술연구소장(종축개량부)에게 승인 요청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사업대상자별 당초 승인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원종돈농장 및 종돈농장)와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전문종돈업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등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그룹별 GGP농장, GP농장별로 세부사업추진계획서 변경 승인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세부사업추진계획을 변경 승인한후 GP농장 및 GP농장의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도지사(시장·군수)와 농림부 및 사업대상자에게 변경 승인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서 1부를 송부
-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년차별 소요예산은 기 승인된 세부사업추진계획서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직접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 추진
- 기 승인된 세부사업추진계획서상의 사업대상자는 부지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관할 도지사(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도지사(시장·군수)는 사실확인 및 세부사업추진계획서와 비교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진도를 사업대상자 및 자금대출 기관에 통보하여 원활한 융자금 대출이 되도록 조치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애로사항등이 포함된 " 전문중돈업육성 사업 추진실적보고 " 서식을 작성하여 선정된 사업대상자 및 도지사(시장·군수)에게 통보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상기 서식에 의거 매분기 실적을 익월말까지 축산기술연구소장 및 관할 도지사(시장·군수)에게 보고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사업완료후 5년동안 년 1회이상 사업대상그룹별로 기 승인된 세부사업추진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이행 여부, 종돈개량 및 질병방역체계확립등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지도 실시
-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집행된 융자액의 타용도 사용, 의무사항 불이행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액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할 수 있음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사업대상자 대표 및 도·시군 축산과장, 축협중앙회, 종돈개량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 전문중돈업 육성사업 추진협의회 " 운영
 - 동 협의회는 추진방향 설정, 애로사항 해소, 종돈개량 촉진, 질병방역등을 위한 방안등을 협의결정하여 사업대상자 지도등 필요한 조치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세부사후관리지침을 수립·작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시행

나. 보고

- 능력검정 : 대한양돈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전문중돈업육성사업 :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2000세부사업추진계획서 : 2000.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 지원사업이 완료될 경우 완료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사업검정 및 정산실시

돼지능력정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o. 검정소 검정 (sew 검정)	두	사업량					
o. 농장 검정 - 양돈협회 - 종개협	“ “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응 자	합계(B)	보 조	응 자	
돼지 능력검정 - 양돈협회 - 종개협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 및 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 및 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소계 ○○○ ○○○						거래처등 기타필요한 사항
○○○○	소계 ○○○ ○○○						
○○○○	소계 ○○○ ○○○						
합 계							

IV. 닭개량사업

1. 목 적

- 종계의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 우량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종계 선택지표 제공
- 양계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양계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 병행 추진
 - 검정에 의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계의 선발 보급
- 능력검정요원의 전문화, 검정방법의 공정화,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검정결과의 공표를 통한 양축농가의 종계구입 편의 증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6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년	2002~2004
사업량		1	1	1	1	1	1
사 업 비	계	1,979백만원	246	173	142	142	426
	보 조	1,971	246	173	142	142	426
	용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시·도지사에 종계장 등록을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을 병행하여 추진
 - 검정소 검정 42,480수(산란계 30,000, 육용계 12,480)
 - 농장검정 및 종계일반검정 : 희망농장 및 물량에 한함

(2) 지원내용

- 검정소 검정시설 및 장비와 검정사료비등 지원
 - 지원대상 : (사)대한양계협회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검정사료비, 시설 및 장비등 검정사업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	142	142	142			
○ 닭능력검정	42,480수	142	142	142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 능력검정
- 사업시행기관 : (사)대한양계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시·도 축산과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0-3330)
- 대한양계협회(전화 : 협회 02-588-7561, 검정소 0334-675-7139)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대한양계협회장은 연간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2) 사업추진방법

- 검정방법 : 닭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7-21호, '973.6)에 의하여 실시

(3) 사업비 지원방법

- 양계협회의 검정시설 및 장비와 검정사료비(닭능력검정에 한함)등 축협중앙회장이 개산급으로 지원후 정산 실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종계검정결과는 축산관련 전문지등을 통하여 농장·계종별 검정성적 공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설 및 기구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 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 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협 회 자담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대한양계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2000세부사업추진계획서 : 2000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닭경제능력검정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o 검정수수	수	사업량					
- 육용계	"						
- 산란계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용 자	합계(B)	보 조	용 자	
닭 능력검정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V. 가축개량기반구축

1. 목 적

- 우량종축의 혈통보존 및 활용도 제고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보급 확대를 통한 가축개량 촉진
- 가축개량에 대한 농가 인식도 제고
- 가축개량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반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종축등록
 - 종축의 등록, 심사 및 검정사업 확대 추진
 - 정액혈통관리 및 등록농가에 대한 개량교육·지도 강화
- 가축개량관련 기술 보급
 - 소수정란 제조·이식 및 가축인공수정기술 교육
 - 가축인공수정기술 향상을 위한 자가인공수정기술등 교육
 -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 능력검정기술교육등 가축개량기술교육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6조(가축의 등록) 가축의 혈통·능력·체형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등록
- 축산법 제10조(가축의 인공수정) 및 제12조(수정사의 교육)
-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7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년	2002~2004
사업량		2	2	2			
사업비	계	5,884백만원	825	557			
	보조	5,166	825	557			
	용자 지방비 자부담	718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종축등록 : 종축등록 희망농가에 대하여 종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등록, 심사, 검정 및 부대사업 추진
- 가축개량관련 기술 보급 : 수정란생산·이식기술교육, 소 자가 인공수정기기술교육 및 장비보급, 돼지정액 생산 및 인공수정기술교육, 능력검정교육등 기타 개량총괄기관에서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 지원내용

- 종축등록 : 종축등록등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비등 소요자금중 일부 보조지원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기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성비용등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종축개량협회(종축등록)
축협중앙회(수정란생산·이식, 소 자가인공수정기술, 돼지정액 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기타 능력검정교육등)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종축등록 ○가축개량기술교육 -수정란제조·이식 -돼지인공수정교육 -자가인공수정 -능력검정교육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사업시행기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종축등록
- 축협중앙회 : 수정란제조·이식, 소 자가인공수정기술 및 자재공급,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기타

○ 협조기관 : 각 도지사(소 자가인공수정기술교육), 축산기술연구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0-3330)
- 시·도 축산과, 도 종축장
- 축협중앙회 가축개량본부(전화 0455-63-8635), 축산경영지원부(전화 02-224-8433)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종축등록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사업시행기관장은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장소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교육계획
 - 수정란제조·이식기술교육 : 이식 8회 80명, 제조 2회 10명
 - 소 자가인공수정기술 교육 및 인공수정기 보급 : 2,000농가
 -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 10회, 100명
 - 능력검정기술교육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의 교육계획에 따라 조정

(2) 사업추진방법

○ 종축등록

- 축종별·종축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규정에 의하여 실시
 - 등록요원, 등록물량 확대에 필요한 위축등록요원 확보
 - 위축등록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 및 등록업무 교육
- 종축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바코드 귀표번호로 대체
 - 외국에서 도입된 정액 또는 종축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선대 혈통은 외국의 종축등록번호를 사용
 - 바코드 귀표장착을 거부하는 농가의 소는 종축등록대상에서 제외

○ 가축개량관련 기술 보급

- 수정란제조 및 이식 기술교육
 - 교육시행기관 및 협조기관장은 세부교육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교육계획 홍보를 통한 대상자 확보에 만전을 기함
 -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축산기술연구소장 또는 축협중앙회장이 교육 이수증 발급
-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 각 도지사는(시·군)은 관내 한우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인공수정교육 및 수정기 구입희망 조사
 - 각 도지사(시장·군수)는 교육희망농가와 자가 인공수정기 구입 희망농가 및 구입예정일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각 도 축산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교육 실시 및 자가인공수정기 보급 등 추진

(3) 사업비 지원방법

○ 종축등록

- 축협중앙회장은 보조금 지원내용에 따라 개산금으로 지원하고 정산 실시

○ 가축개량관련 기술 보급

- 교육비용은 교육예정인원 및 예산단가에 의거 분기별로 개산금으로 지급하고 다음 분기초에 정산. 단 자가인공수정기 보급은 추진실적에 따라 지원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종축등록
 - 등록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교육으로 등록종축의 활용도 제고
 - 혈통관리의 중요성, 계획교배방법 및 필요성, 종축의 이동신고 및 등록증의 인수인계등
 - 정액혈통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 실태조사·지도
- 가축개량관련 기술 보급
 - 반복교육으로 농가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 자치단체의 역할제고를 위한 자체프로그램개발 추진
- 축산기술연구소장 및 축협중앙회장은 가축개량관련 기술교육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는지의 여부등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교육용 기구, 기자재 및 차량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과손등으로 사용 불가능하는 조합 또는 협회 자담으로 대체 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 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 할 수 있음

나. 보 고(사업시행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2000세부사업추진계획서 : 2000.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종축등록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1. 등록							
○ 한우	두	사업량					
- 기초등록	"						
- 혈통등록	"						
- 고등등록	"						
○ 젖소	"						
- 기초등록	"						
- 혈통등록	"						
- 고등등록	"						
○ 돼지	"						
- 혈통등록	"						
- 고등등록	"						
2. 심사	"						
○ 한우	"						
○ 젖소	"						
○ 돼지	"						
3. 한우 번식능력 및 발육조사	"						
4. 종돈F ₁ 증명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응 자	합계(B)	보 조	응 자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가축개량신기술보급 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사업량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용 자	합계(B)	보 조	용 자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Ⅲ. 생산 및 유통개선(원예)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상용, 농업 사무관 박백화)입니다.

I. 물류표준화

1. 목 적

-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기계화
-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Unit Load System)에 맞는 장비·시설을 보급하여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하역기계화 할 수 있는 일관 수송체계 구축
- 농산물뿐만 아니라, 비료·사료·농자재 등에 다용도로 연계 사용토록 추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 제6조, 제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2-'98까지	'99 실적	2000 예산(안)
사업량(개소)		212	292	200
사업비	계	15,975	19,000	12,000
	보조	-	9,500	6,000
	융자	12,780	5,700	3,600
	지방비	-	-	-
1. 자부담	3,195	3,800	2,400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장비 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 관련시설·장비 등을 지원
 - 현행 “표준출하규격”을 ULS통칙에 맞도록 정비
 - 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ULS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
 - 파렛트를 이용한 출하체계(Pallet pool system)와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구축

나. 대상사업

- 파렛트(개소당 100매이내),플라스틱상자(개소당 1,000매이내)·지게차·전동차·광폭차량구입비, 선과기·밴딩기·롤펍기·제합기 등 포장화를 위한 부대 시설비
 - 단, 포장화 부대시설비의 경우·신규 건설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대상자

- 생산자조직(농협 및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법인화된 조직 등)
- 공영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 수집상 등), 농산물 물류센터, 농협유통(주), 정부지원 가공공장저온 저장업체 등
 - 단, 공영도매시장·농산물 공판장의 포장화 부대 시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개소(조직)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 100백만원

- 한도액 범위내에서 생산자조직(업체)이 대상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시설장비의 운용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지원

마.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단가	비 고
○ 파렛트 (PE재질, 1.1×1.1m)	30	○ 나무 및 상자(철재) 파렛트 단가는 실거래 가격 적용
○ 플라스틱상자	5	○ 표준출하규격상자에 한정
○ 지게차	20,000	○ 핸드잭 단가는 실거래 가격 적용
○ 전동차	7,000	○ 실거래가격 적용
○ 광폭차량	25,000	○ 표준파렛트 2열적재가능5톤이상광폭차량
○ 포장화 부대시설비	80,000	○ 선과기, 밴딩기, 롤펍기, 제합기 등으로 실거래 가격 적용

바.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사업비 단가 기준 50%보조, 30%융자, 자부담 20%
 -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시
- 융자조건 : 연 5%, 3년거치 7년상환

사. 2000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 업 비			
	계	보조	융자	자부담
물류표준화사업	12,000	6,000	3,600	2,400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나. 신청자격

- <사업개요>. “다”항의 지원대상자

다. 신청절차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라.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기준에 따라 선정
 - 공영도매시장 등은 취급물량,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통 시설에 대한 물류진단 실시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의 물류진단 결과 제출시 우선권 부여
- 우선 순위
 - ① 물류진단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등)으로부터 물류진단을 받은 생산자 조직 또는 업체
 - ② 산지유통 시범농협,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 ③ 생산자단체, 작목반(회)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평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 ④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 선정절차

- 사업자는 농림사업 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 및 물류진단표(별지제2호서식)를 시·군에 제출
 - 서울시 소재 사업자는 서울시에 제출
- 시장·군수는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사업자의 능력,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시·도별 예산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유통정책과)에 제출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유통정책과 (02 - 504-9412)
- 시·도 : 농정과 또는 농산물유통과
- 시·군 : 농산과, 유통과 또는 산업과

다. 사업시행

1)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및 개별기기·기준단가 범위내에서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대출실행 또는 보조금 지급
 -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948호, '98. 7.23) 제13조 및 제14조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비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교부된 보조금은 조직대표의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
 - 기계 및 장비구입시에는 물품구입 영수증 확인으로 정산가능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당해연도에 지원된 장비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지원자금 회수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원장비·시설의 선량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 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장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구입시 농촌환경보존을 위하여 폐비닐 등을 이용한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권장

나. 보 고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는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다음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종료시 완료보고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시·군

나. 대상사업 : 파렛트·플라스틱상자·지게차·전동차·광폭차량구입비, 선과기, 밴딩기, 랩핑기, 제함기 등 포장화를 위한 부대시설비

다. 지원대상자

- 생산자조직(농협 및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법인화된 조직 등)
- 공영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 수집상 등), 농산물 물류센터, 농협유통(주), 정부지원 가공공장저온 저장업체 등
 - 단, 공영도매시장·농산물 공판장의 포장화 부대시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신청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림사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준용) 1부.

바.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평가에 따라 선정
 - 공영도매시장 등은 취급물량,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우선 순위

- ① 물류진단을 받은 조직(업체)
- ② 산지유통 시범농협,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 ③ 생산자단체, 작목반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평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 ④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 선정절차

- 사업자는 농림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 서울시 소재 사업자는 서울시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지원우선순위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분야별 지원규모를 조정·배정

【 별첨 】

생산자조직 분류기준

등 급	활 동 기 준
최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별 품질이 균일 (선과장, 산지유통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선별) ○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 공동계산제 실시 ○ 조직원의 총 출하량중 공동출하 비율이 70% 이상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요원이 출하품 점검을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산지유통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이상
일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적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하며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별지제1호서식)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 조직명) :

2. 현 황

조직 현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전년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출하시기			
		ha			톤						
전년 시설 운영 상황	총출하량	일반출하량		공동출하량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선별(과)량			
	톤	톤		톤		톤	톤	톤			
	(100%)	(%)		(%)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활 용 일 수										
	주요 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공동 유통 시설 보유 현황	집하장	직판장	선별 (과)장	저 온 저장고	일반 창고	예냉고	선별 (과)기	기타공동 시설및장비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물류 기기 보유 현황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운송차량			핸드잭	컨베이어			
	매	대	대	○톤 : ○대 ○톤 : ○대 계 : ○대			대	대			

3. 기기구입 및 포장화 부대시설 계획

가. 기기구입 계획

(단위 : 천원)

기기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용자	자부담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 · ·							
계							

나. 포장화 부대시설

(단위 : 천원)

시설명	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용자	자부담	
선과기 밴딩기 롤펍기 제함기							
계							

(별지 제2호서식)

물 류 진 단 표

- 주요취급품목 :
- 물류진단 실시내역
 - 기 간 :
 - 진단기관 :
 - ※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 또는 자체
- 물류시설·장비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항 목	운 용 실 태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 하(입하)○ 상 차○ 운 송○ 하 차○ 입고·적재○ 출 고○ 선별·포장○ 시설운영		

※ 물류표준화 관점에서 진단을 실시하되,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

II. 규격출하

1. 목 적

-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출하규격으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 건본·통명거래,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
- 포장출하로 소비자의 쓰레기발생 억제 및 도매시장 환경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촉진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조직 단위로 평가 및 지원
- 규격출하 활동정도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
- 우수 생산자조직에 집중지원하여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58조 (규격화의 촉진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7	'98	'99	2000예산(안)
사업량(백만매)	499	140	179	187
사업비	187,410	71,820	125,300	138,380
국 고	37,482	14,364	37,590	41,514
지방비	37,482	14,364	12,530	-
자부담	112,446	43,092	75,180	96,866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1) 배경

- 농산물 규격상품화를 통하여 물류이동의 최소화와 규모화로 유통비용 절감
- 농산물의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로 신용·공정거래를 촉진
-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선별·규격 출하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지에서의 쓰레기처리 비용의 절감과 환경보호

(2) 지원대상

-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 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3) 사업내용

- 규격출하를 위한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등 포장자재비 일부 보조(국고보조30%, 자부담 70%)

(4) 대상품목

- 적용품목 :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이 제정된 품목(단, 양곡류제외)
- 우선지원 대상품목 : 9개
 - 무(알타리무, 열무 포함), 배추(얼갈이배추 포함), 파, 마늘,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
- 추가지원가능 품목 : 9개
 - 우선지원 대상품목(9개) 지원후 사업비가 남고, 지역특성상 지원이 불가피한 품목이 있을 경우, 시·군과 농관원출장소장, 농협 시·군 지부장이 합의 선정
 - 단, 지역적 특성상 우선지원 대상품목(9개)이 표준규격출하가 되지 않는 경우, 그 품목수 만큼 추가지원 가능품목에 포함

(5) 지원기준 및 조건

- 우선지원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조직등급 분류와 관계없이 신청량의 100%를 지원
- 추가지원 가능품목은 규격출하품 소비지 품질평가 및 자체품질관리 활동 정도 등에 따라 생산자조직을 평가·분류하여 아래의 조직 등급별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사업량은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규격출하사업 계획서의 재배면적, 10a당 단수 등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되, 과다 신청된 경우는 사업량을 차감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

구 분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평 가 점 수	9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원 사업량	신청량의 90%이상	신청량의 80~60% 이상	신청량의 30% 이하

※ 생산자조직 평가표 : 별첨

나. 2000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포장재비 지원	백만매 187	138,380	41,514	-	96,866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504-941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0343) 446-0126
- 시·도 : 농산물유통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원 품질관리과
- 시·군 : 산업과(유통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농 협 : 농협중앙회(유통개혁추진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가) 사업대상자별 최저 한도액 설정

- 사업시행의 효율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별 최저 지원한도액 설정·운영
 - 사업대상자별 최저지원 한도액 : 100만원(국고)
 - 단, 우선지원 품목(9개 품목) 사업대상자는 예외

(나)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 대상품목을 규격포장·출하하는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 ②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순으로 지원
 -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생산자조직은 차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해당등급별 지원기준을 최대한 적용
- ③ 농산물을 수출하는 생산자조직이 수출계획량을 수출하고, 그 잔량을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최우수조직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 ④ 평가결과 자연재해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 사업이 부진하여 평가등급이 전년도 평가등급보다 낮은 생산자조직은 시장·군수, 농관원 출장소장, 농협 시·군지부장이 합의하여 전년도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지원 가능

(2) 선정절차

- 생산자조직은 규격출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을 거쳐 시·군에 제출
-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규격출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지역별 산지유통인연합회장 확인을 필한 다음, 관할 읍·면을 거쳐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내역을 농관원에 통보
- 농관원과 농협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점검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신규조직)으로 분류하여 시·군에 통보(2000. 1월중)
 - 특히,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부당하게 과다 신청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시·군은 농관원, 농협시·군지부장과 협의하여 사업대상품목·사업량 확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라. 사업 시행

(1) 사업비 집행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에 한하여 자금지원
 - 단, 유통능률향상, 직거래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군수, 농관원 출장소장, 농협 시·군지부장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조직별 지원한도액(보조금) 설정운영 : 100만원 이상
 - 단, 우선지원 대상품목은 예외로 함
- 사업비 지원절차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제작 전에 반드시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농관원 출장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 제작
 - “표준규격품” 문구, 포장재 중량, 포장재 치수, 포장재 제작연도표시 의무화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 자금요청을 할 때에는 농관원 출장소장이 발급한 농산물표준규격포장확인서(별지 제5호서식)와 품목, 단량, 포장재규격(포장치수 포함),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및 농가별 포장재공급 내역을 증빙서류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가 농산물표준규격포장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작포장재 1매와 시·군에 제출할 증빙서류 사본을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시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시한 지원대상 포장재의 표시사항, 포장재치수 등이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
 - 단,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에게는 공영도매시장·물류센터에 농산물을 규격포장 출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포장재비 지원
 - 매매계약서 및 규격포장출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시·군에 추가 제출
 - 시장·군수는 농관원의 농산물표준규격포장확인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집행
 - 사업단가는 포장재의 용적(길이×너비×높이)을 계산하여 아래 포장재 용적별 최고사업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납품단가가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적용

< 포장재 용적별 최고사업단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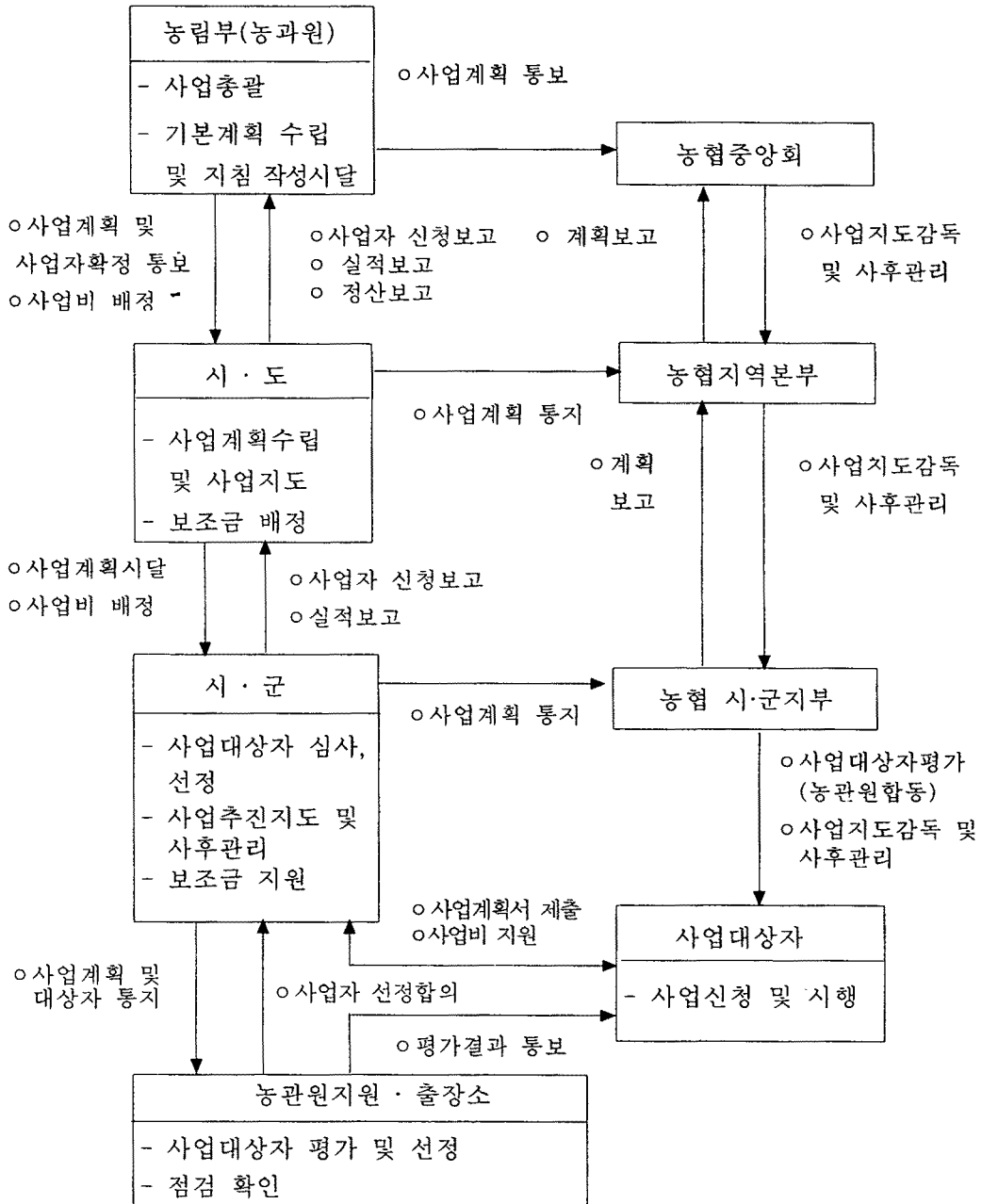
구 분	40,000cm ³ 미만	40,000~50,000cm ³ 미만	50,000~60,000cm ³ 미만	60,000cm ³ 초과
최고사업단가	740원/매	800	900	1,000

※ 그물망, PE포대, PP포대는 매당 400원을 넘을 수 없음

· 보조지원액은 제작매수(사업량범위 이내), 사업단가, 보조비율(30%)을 적용 산출

(2)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는 재해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품목, 사업량,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관원 출장소장, 농협시·군지부장과 합의하여 변경 시행
- 다. 사업시행 체계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규격출하사업 지원대장 비치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별 포장재비 보조금 지원상황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농관원출장소장·농협 시·군지부장에게 통보
 - 기록사항 : 지원대상자명, 품목명, 조직등급, 재배면적, 생산량, 포장재 제작 및 지원수량, 지원금액, 규격출하계획량, 규격출하 실적 등

(2) 사업대상자 교육·홍보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교육 실시
 - 협조 : 농관원, 농협
 - 교육내용 :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격출하의 필요성, 자율검사방법, 사업추진체계 등
- 시장·군수는 규격출하사업 내용을 사업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3) 규격출하 지도·점검 및 평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별 지원상황을 보고 받아 사업지도에 활용
-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시·군지부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규격출하를 지도하고 출하품에 대해 점검 실시
- 농관원 출장소장은 소비자 품질평가 결과를 시·군, 농협, 출하조직에 수시 통보
 - 시·군, 농협 시·군부장은 소비자 품질평가를 읍·면 또는 지역농협에 통보하여 사업지도에 활용토록 조치
-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은 지원대상 조직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관리
- 규격출하실적, 점검·평가결과 및 조직의 활동상황은 차년도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결정시 반영

(4) 제재사항

- 시장·군수가 생산자조직별 사업량 결정시 농관원의 평가분류에 의한 차등지원 반영이 미흡하거나, 반영치 않았을 경우 차년도 지원예산에서 감액 조치하고, 이를 우수 시·도, 시·군에 추가 배정조치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상품목 또는 사업량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농관원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이 합의하여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영농조합법인은 개별농가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나. 보 고

- (1)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확정결과 및 지원계획을 당년 2월 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
- (2) 시·도지사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에 제출

다. 기 타

- (1)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농관원지원장*(출장소장), 농협지역본부장(시·군지부장)과 합의하여 시행
- (2) 시장·군수는 각종 특산품전, 기획전 등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에 표준규격품이 출품되도록 최대한 노력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

나. 신청자격

-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 ※ 농협은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선과장 등 선별포장시설을 보유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신청절차

- 규격출하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관할 시·군이 선정한 지원대상품목(18개) 범위내에서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규격출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에 제출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마. 대상자 선정 : 2000년도와 같음

생산자조직 평가표

등 급	활 동 기 준	지 원 내 용
최 우 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별 품질이 균일 (선과장, 산지유통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 공동계산제 실시 ○ 조직원의 총출하량 중 공동규격출하비율이 7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을 신청량의 90%이상 반영
우 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품질관리 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 차이로 인한 가격차가 발생하여 공동계산 제로 발전하지 못함(선과장, 산지유통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선별)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규격출하 비율이 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조직에 우선지원 후 잔여자금이 있을 경우 사업량을 신청량의 80%~60%내에서 차등 반영
일 반 출하조직 (신규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 관리 활동이 미흡하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한 등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조직 및 우수 조직에 우선 지원후 잔여자금이 있을 경우 30%이하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규격출하사업계획서(생산자조직용)

1. 사업자 (생산자 조직명) :

2. 현 황

조직 현 황	조직명		전화번호			
	대표자주소·성명	(인)				
	조직 결성 일시		조직원수(농가)			
재 배 현 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출하시기		
		ha	톤			
전 년 도 지 원 출 하 실 적	지원실적(포장재비보조)		천원			
	출 하 실 적					
	계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일반출하량		
	톤	톤	톤	톤		
	상 표 명					
	주요출하처					
공동 유통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 시설및장비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

※ 유통시설은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 내서

3.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사업신청)

구 분	품 목	포장재 종 류	단 량	단 가	사업량	포장재비 보조 사업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kg	원	매	원			

○ 출하계획

품 목	생산량	출 하 량				주출하처	출하시기
		계	규격출하	품질인증	일반출하		
	톤						

○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 목	개별 포장	공동작업장에서 선별포장	선과(별)장 이용
	톤	톤	톤

- 수송방법별

품 목	농가별 수송	조직공동 수송	농협계통 수송
	톤	톤	톤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지원년도, 사업비 등

○ 기타 특기사항

확인자 :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규격출하사업계획서(산지유통인연합회회원)

1. 사업자 현황

사업자명	(인)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2. 전년도에 지원받은 실적(포장제비 국고보조) : 천원

3. 전년도 출하실적

계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일반출하량
톤	톤	톤	톤
상 표 명			
주요출하처			

4. 유통시설 보유현황

- 선 과 장 : 동, 평 ()
- 저온저장고 : 동, 평 ()
- 일반창고 : 동, 평 ()
- 선별(과)기 : 동, 평 ()
- 광폭차량 : 톤, 대 ()

※ 유통시설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처리능력)을 ()내서

5.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사업신청)

구 분	품 목	포장재 종 류	단 량	단 가	사업량	포장재비 보조 사업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kg	원	매	원			

○ 출하계획

품 목	생산량	출 하 량				주출하처	출하시기
		계	규격출하	품질인증	일반출하		
	톤						

○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 목	개별 포장	공동작업장에서 선별포장	선과(별)장 이용
	톤	톤	톤

- 수송방법별

품 목	개별 수송	공 동 수 송
	톤	톤

6.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지원년도, 사업비 등

○ 기타 특기사항

확인자 : 지역산지유통인 연합회장 성명 : (인)

확인자 :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성명 : (인)

Ⅲ.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

1. 목 적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 공공이용 촉진을 통하여 물류이동을 규모화 시키고, 복합운송 실현 및 하역기계화를 촉진하여 유통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매시장, 물류센터, 대형유통점을 중심으로 물류기기 공동화체제 구축
-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화 촉진사업을 산지유통개선 정책자금 지원과 연계 추진 함으로써 농산물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조기 정착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뿐만 아니라, 파렛트 적재출하 및 컨테이너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8조(규격화의 촉진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8까지	'99	2000예산(안)
○ 사 업 량	6,950천매	-	-	6,950
○ 사 업 비	7,787	-	-	7,787
- 국 고	5,451	-	-	5,451
- 자 부 담	2,336	-	-	2,336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산물 수송단위가 규모화되어 있지 않으며, 파렛트 공동이용 시스템의 미구축으로 물류효율이 저하
- 신선농산물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범용 포장재(플라스틱상자) 구입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채소류의 대부분이 비포장 출하
 - 유통과정에서 손상·변질되어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 실질소득이 감소되고, 쓰레기발생으로 소비지시장 등의 환경오염이 가중
- 파렛트 적재출하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으로 파렛트 풀 이용료 지원('99)
- 국정개혁 보고회의시('99. 4) “규격포장화 및 기계화 적재, 하역(파렛트화)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를 유통개선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

(2) 지원대상

-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회원조합, 전문조합),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3) 사업내용

- 파렛트/플라스틱 상자를 풀 회사로부터 임대, 농산물(양곡류 제외)을 적재(포장화)하여 공영도매시장, 물류센터, 대형유통점, 생산자단체 및 그 자회사의 집배송장에 출하하는 경우 임대료 일부 보조

(4)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기준

- 파렛트 및 플라스틱상자를 풀 회사로부터 임대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일부 지원
- 사업기준단가(임대료) : (파렛트) 1,500원/매, (플라스틱상자) 490원/매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나. 2000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계	6,950천매	7,787	5,451	-	2,336
○ 파렛트	4,338	6,507	4,555	-	1,952
○ 플라스틱상자	2,612	1,280	896	-	384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 504-9411~3
- 농 협 : 농협중앙회(유통개혁추진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조합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생산자조직은 품목별, 월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출하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역농협에 제출(2000. 1월중)

- 지역농협은 생산자조직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적재출하 계획서를 취합, 농협 시·군지부, 농협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 농협중앙회는 예산액 범위내에서 시·도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풀 이용료 지원 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 작황 및 유통여건 변화에 따라 물류기기 소요량 변동이 있을 경우 지역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분기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분기 익월 10일까지)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총 예산액 범위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후 변경승인 후, 지역별 예산내역 변경 조치

○ 사업비 집행방법

- ① 지역조합은 관내 생산농가로부터 월별로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소요신청을 받아, 차량단위(5, 8,11톤)로 풀 회사에 공급 요청
- ② 풀 회사는 파렛트/플라스틱상자를 기간별 소요계획에 의거 회원조합에 공급
- ③ 회원조합은 생산자조직 등에게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임대료 중 자부담분을 징수하고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불출
- ④ 회원조합은 생산자조직 등의 농산물 출하내역을 풀 회사에 통보
- ⑤ 생산자조직 등은 농산물 출하시 거래명세서에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사용수량을 기입 통보(거래명세서는 회원조합과 도매시장 등이 증빙자료로 각각 보관)
- ⑥ 도매시장 등은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입고내역을 농협중앙회 및 풀회사에 통보
- ⑦ 풀 회사는 회원농협별 임대내역을 농협중앙회에 통보
- ⑧ 농협중앙회는 풀 회사의 임대내역을 근거로 지원자금을 회원농협에 송금
- ⑨ 풀 회사와 회원조합간에 이용료 분기별 정산

○ 운용절차

회원조합

< 풀 회사에서 입고시킨 파렛트로 농산물을 출하할 경우 >

- ① 전화 및 FAX로 풀 회사에 사용 3일전에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입·출고 통보서」(붙임1양식)를 작성하여 입고 요청하고, 풀파렛트/플라스틱상자 관리부(붙임 2양식) 비고란에 요청사실 기입
 - ②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수령(입고)시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납품전표」에 의거 파렛트/플라스틱상자 관리부에 입고수량을 기록
 - ③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입·출고 통보서」를 작성하고, 농산물 취급장별 출고내역을 풀회사에 FAX통보
- ※ 한국파렛트풀(주) : TEL 02-711-5533, FAX 02-711-3144,3145
- ※ 한국컨테이너풀(주) : TEL 02-703-1616, FAX 02-703-1661
- ④ 농산물 출하통지서(검수증) 상단에 “풀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매 인수”로 표시하고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인수자가 검인한 후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인수
 - ⑤ 신규 출하처 발생시 풀회사와 사전 협의하고 파렛트/플라스틱상자 관리약정 체결후 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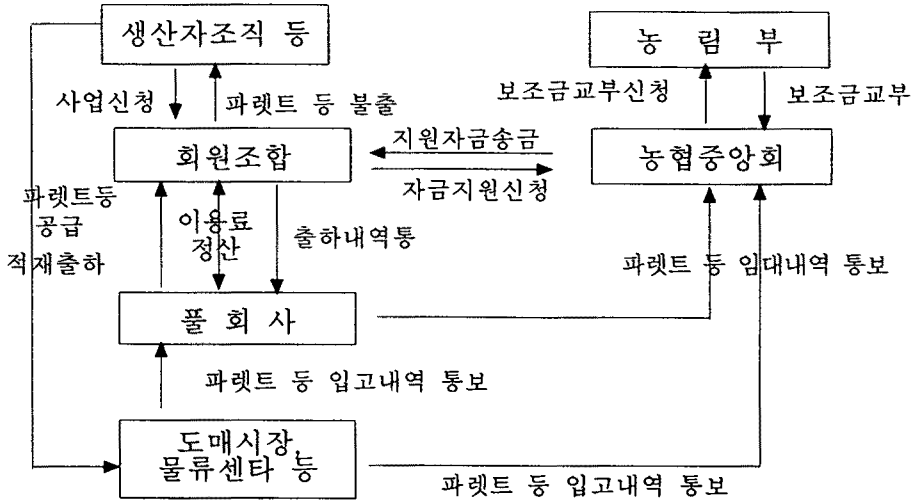
< 비료 공파렛트로 농산물 취급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경우 >

- ① 농산물 출하시 풀파렛트 관리부(붙임2 양식)에 출고수량(농산물 출하)을 기록하고 파렛트 출하
- ② 위 ③④⑤항 절차와 같음

농산물 취급장

- ① 송품장(별지 제3호서식) 상단 “폴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매 인수”란에 인수자가 확인 날인후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인수하고, 폴파렛트 관리부(붙임3 양식)의 입고란에 기록
- ② 공파렛트/플라스틱상자 발생시 「공파렛트/플라스틱상자 회수요청서」(붙임4 양식)를 폴회사 FAX로 회수요청
- ③ 폴회사로부터 「파렛트/플라스틱상자 회수전표」 1부를 받고 공 파렛트/플라스틱 상자를 반납
 - 파렛트/플라스틱상자 회수전표에 의거 파렛트/플라스틱상자 관리기록부에 출고량 기입
- ④ 농산물 외부거래처에 출하할 경우에는 폴회사와 사전 협의후 파렛트/플라스틱상자 관리약정을 체결한 다음 출하하고, 폴파렛트/플라스틱상자 관리부(붙임 3양식)에 출고수량을 기록 및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출하
- ⑤ 농산물 취급량은 일정수량(파렛트 100매, 플라스틱상자 210매) 이상의 재고량이 되면 폴 회사에 회수 요청
- ⑥ 플라스틱상자를 도매시장 법인이 취급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거래 상인에게 출하되는 점을 감안, 보증금제 시행
 - 관리주체를 도매법인으로 하며, 플라스틱상자 분실시 상자가가격의 80% 해당하는 금액을 폴 회사에 변상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후 플라스틱상자를 거래상인에게 인도시 1매당 1,000원의 보증금을 징수하고, 상자회수시 환불

라. 사업시행 체계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교육·홍보 강화
 - 농협중앙회(지역농협)은 사업추진체계, 지원절차 등을 생산자조직, 유통업체에 대해 적극 교육·홍보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 실시
 - 플 이용료 집행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 부당사례에 대하여는 책임을 규명하여 농림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나.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장은 지역본부별 사업계획서를 2000. 1.31까지 농림부(유통정책과)에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은 익년 1.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다. 기 타

- 물류기기 풀 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의 범위 안에서 풀 회사와 농협중앙회장간 또는 유통업체간 약정을 체결 시행

6. 2001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지역농협

나. 대상사업 : 2000년도와 동일

다. 신청자격 : 2000도와 동일

라. 구비서류

-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적재 출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마. 사업추진방법 : 2000년도와 동일

< 별지 제1호서식 >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적재출하 계획서

1. 사업자(생산자조직명 또는 산지유통인명) : (인)
2. 주 소 :
3. 전화번호 : 4. FAX번호 :
5. 농산물 재배현황(매매계약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출하시기	비 고
	ha			

※ 산지유통인은 매매계약 현황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계약상대자 주소, 성명 명시

6.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적재출하 계획

(단위 : 매)

품목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계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 별지 제2호서식 >

시·도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폴 이용료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합 계					파 렛 트					플라스틱 상자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 별지 제3호서식 >

송 품 장

① 1999년 월 일

수 신	② 귀하										
출 하 자	③					등록번호 ¹⁾	④				
⑤적재출하 내역 및 수량	파렛트 출하					플라스틱 상자 출하					
	() 매					() 박스					
⑥주 소	(-)					(FAX No :)					
⑦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긴급연락시		
	⑨출하품 내역				⑩표준규격		⑪등급별 수량				
⑧생산자	품목	품종	단량	포장재 ²⁾	출하여부	⑪-1					소계
	⑨-1	⑨-2	⑨-3	⑨-4		⑪-2					
산지	⑫				합계						
운 송 내역 ⑬	운 송 비	일 금	원정			판매대금 ⑭ 송 금 처	금 용	계좌번호 호 예 금 주			
	차량번호										
	기사명										

※ 1) 등록번호 : 농협, 법인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수집상은 수집상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2)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 마대, 플라스틱상자, 산물출하, 기타 중 에서 해당사항 기재

< 붙임 1 >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입·출고 통보서

2000년 월 일

수신 :

발신 :

1.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입고요청

- 납품희망자
 - 파렛트유형 : ① 유형 T-11형 목재, ② 유형 HS-11형 플라스틱
 - 수 량 : 파렛트 개, 플라스틱상자 개
 - 납품희망일 : 년 월 일
- ※ 입고요청일은 3일전에 위 양식에 의거 FAX요청

2.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출고내역 통보

(단위 : 매)

NO	출고일자	농산물 취급장명	출 고 내 역			비 고
			파 렛 트		플라스틱상자 (수량)	
			유 형	수 량		
1						
2						
3						
4						
5						

※ 파렛트 유형란에는 ① 유형(목재), ② 유형(플라스틱)을 구분 명시

< 붙임 2 >

플 파렛트관리부(조합용)

(단위 : 매)

년 월 일	입고수량				출고수량			재고수량			비고 (회수,입고 요청일등)	
	비료파렛트			직접 입고 (B)	계	플회사 회수	농산물 출하 (C)	계	사용중 파렛트	공 파렛트		계
	비료명	발주 번호	수량 (A)									
월계												
누계												

- 주) 1. 입고수량은 구매검수증(“파렛트 수송”) 및 「플회사납품전표」에 의거 수량을 기재
 2. 출고수량은 공파렛트 반납시 플회사에서 받은 「플회사회수전표」에 의거 수량을 기재

플 플라스틱상자관리부(조합용)

(단위 : 매)

년월일	입고수량	출고수량			재고수량			비고 (회수,입고 요청일등)
		플회사 회수	농산물 출하	계	사용중	공플라스 틱상자	계	

- 주) 1. 입고수량은 구매검수증(“파렛트 수송”) 및 「플회사납품전표」에 의거 수량을 기재
 2. 출고수량은 공플라스틱상자 반납시 플회사에서 받은 「플회사회수전표」에 의거 수량을 기재

< 붙임 3 >

폴 파렛트관리부(농산물취급장용)

(단위 : 매)

년월일	입 고			출고수량	재 고 량			비고 (회수,입 고 요청일등)
	조합명	검수번호	입고수량		사용중	공파렛트	계	
월 계								
누 계								

- 주) 1. 입고수량은 출하통지서("파렛트 수송")에 의거 수량을 기재
 2. 출고수량은 공파렛트 반납시 폴회사에서 받은 「폴회사회수전표」에 의거 수량을 기재
 3. 사용중인 수량은 농산물이 적재되어 보관중인 수량 기재

폴 플라스틱상자관리부(농산물취급장용)

(단위 : 매)

년월일	입 고			출고수량	재 고 량			비고 (회수,입 고 요청일등)
	조합명	검수번호	입고수량		사용중	공플라 스틱상자	계	
월 계								
누 계								

- 주) 1. 입고수량은 출하통지서("플라스틱상자 수송")에 의거 수량을 기재
 2. 출고수량은 공파렛트 반납시 폴회사에서 받은 「폴회사회수전표」에 의거 수량을 기재
 3. 사용중인 수량은 농산물이 적재되어 보관중인 수량 기재

< 붙임 4 >

공 파렛트/플라스틱상자 회수요청서

수신 :

발신 : ○ ○ 물류센터, ○ ○ 조합장

아래와 같이 공파렛트(플라스틱상자)를 회수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재고현황

(단위 : 매)

구 분	사용중인 수량	미사용 수량	총재고 수량	비 고
○ 파렛트 ○ 플라스틱상자				

2. 회수요청량 : 개

3. 회수(반납) 희망일 : 년 월 일

※ 공파렛트(플라스틱상자) 회수통보는 2~3일전에 시행

26 생산자조직육성(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상용, 농업 사무관 박백화)입니다.

I.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

1. 목 적

- 품목별 주산지화, 전문화를 촉진하여 대량의 규격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조직의 계열화를 통해 산지생산·유통의 효율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공동선별·공동수송·공동판매를 통한 유통효율 증진
- 조합당 유통사업 취급품목을 3개 품목 이내로 제한, 주산지화·전문화 촉진
- 지역협의회 운영활성화를 통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 및 시장교섭력 강화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기금의 운용)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8조(규격화의 촉진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8까지	'99	2000예산(안)
○ 사 업 비	1,077,778	673,278	199,675	174,088
- 용 자	862,223	538,623	159,900	139,670
- 자 부 담	215,555	134,655	39,775	34,418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배경

- '98년까지는 농산물 규격출하 촉진자금지원, 생산자 유통지원사업 및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지원 실시를 통해 산지유통개선을 도모
- '99년에는 각종 산지유통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주산지 중심, 전략품목에 대해 집중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제고
- 2000년에는 산지유통 개혁방안에 따라 자금의 공급 및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각종 운영자금을 통합지원
 - 조합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자금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체제 구축

2) 대상품목

- 주산지화·전문화 가능 품목(채소수급안정사업 대상품목 제외)으로서 조합(영농조합법인)당 3개 품목이내

3) 지원대상 :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1개 품목이상 가입한 생산자조직(지역농협·전문조합·영농조합법인) 단, 화훼품목 생산자조직은 예외로 함.

4) 대상사업 : 매취사업, 계약재배사업, 유통설비 및 자재구입비, 육묘·포장재, 공동구입비, 규격출하 선도금

5)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용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1년이내
- 지원금리

	<u>대여금리(중앙회)</u>	<u>대출금리</u>
- 회원조합	4.5%	5.0%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3.0%	5.0%

나. 2000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기금대출 취급기관별	사 업 비			비 고
	계	용자	자부담	
○ 농협중앙회	167,088	133,670	33,418	
○ 농수산물유통공사	5,000	4,000	1,000	
○ 인센티브	2,000	2,0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02-504-9411~3)

나.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02-397-5724)
- 농수산물유통공사 (02-794-5087)

다. 대상자 선정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시·도별 경작면적, 농업생산액, 공동판매실적 등을 감안 지역본부(유통공사지사)에 한도액 배분
- 농협지역본부(유통공사지사)는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용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자 대상자 추천서(심사결과서 첨부)를 농협중앙본부(유통공사)에게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 선정 및 조합별 자금지원 지원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적격 사업자 확정

라. 선정기준

- ① 사업신청 품목에 대한 공동출하실적(40점)
- ② 품목별 전문화 - 원예특작품목 공동출하액에 대한 사업신청 품목의 공동출하액 비율(20)
- ③ 사업신청 품목에 대한 전국협의회 가입비율(20)
- ④ 지역협의회 결성(10)
- ⑤ 우수사례 - 공동계산, 파렛트 출하 등(10)

마. 조합선정 우선순위 및 사업계획(규모) 조정기준

- 각 생산자조직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기준 항목별로 수·우·미·양·가로 평점 후 사업 규모조정
- 평점 결과에 따른 조합별 사업규모 조정기준
 - A그룹 : 90점이상을 획득한 조합은 신청액의 100% 반영
 - B그룹 : 80~89점 평점 조합은 신청액의 90% 수준으로 조정
 - C그룹 : 70~79점 평점 조합은 신청액의 80% 수준으로 조정
 - D그룹 : 60점 미만 평점 조합은 총 용자한도액에서 A, B, C그룹 지원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D그룹 소속 사업 신청자수로 나눈 평균액을 지원
 - ※ 사업계획서가 현저하게 부실 작성되었거나, 유통사업 현황에 비추어 과다 신청된 조직의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의한 평점결과에 관계없이 D그룹에 포함
 - E그룹 : D그룹 평균 산출액이 조합신청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액만 지원하고 초과한 금액만큼을 D그룹 지원액에 추가계상, 규모조정

바.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조합(영농조합법인)은 관내 주요작물생산 및 출하동향, 조직현황, 유통사업 현황, 유통관련 사업별 자금운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2000. 2.20까지 시·군지부에 제출(시·군지부→지역본부→중앙본부)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기금대출 취급 기관이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배부

2) 사업규모 확정

-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조합선정 우선순위 및 사업계획(규모) 조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별 지원계획을 확정
- 사업자별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업지원 기관에 제출

3) 자금 지원절차

- 사업대상자는 월별 용자한도액 배정 요구서를 기금대출 취급기관에 제출 (자금소요월 전월 20일까지)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용자한도액 배정요구 내역을 취합, 사업 지원 기관에 용자한도액 배정 요청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예산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사업지원기관(사업자금과)에 자금 대여 신청
- 기금대출 취급기관이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 및 사업실행
- 사업대상자별 자금배정 이후, 농업인 등의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계획(품목, 사업량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역농협과 농협시·군 지부장이 협의 하여 변경시행 가능

사. 사업계획의 변경

- 중앙본부의 사업규모 조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별 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재수립, 시·군지부를 경유하여 중앙본부에 제출
- 사업계획을 중앙본부에 제출후 수급상황 등 생산·유통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도별 $\pm 20\%$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가능
 - 용도별 사업계획 변경액이 $\pm 2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조합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 (유통정책과)에 제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수행여부 확인 및 지도·점검 실시
 - 분기별·지역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
- 2)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연2회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사업추진방향,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3) 부당운용·미운용에 대한 제재

- 농안사업 실시요령 제16조~제21조 규정 준용

나. 보고·기타

- 품목별, 용도별 사업계획서(총괄) : 2000. 3. 5까지(농림부 유통정책과)
- 월별, 융자한도액 배정계획 : 2000. 3. 5까지(농림부 유통정책과)
- 사업추진 실적보고
 - 사업자(매분기 익월 5일) → 기금대출 취급기관(매분기 익월 25일) → 사업지원기관

다. 평 가

- 품목별협의회 회원조합(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사업실적, 집행성과, 자금운용 등을 평가(상반기)
- 평가결과 반영
 - 품목 부류별로 우수조직을 선정, 인센티브 지원(2억원씩 2년간 무이자 융자지원)
 - 지원조직수 및 규모 : 15개 조직, 총 30억원
 - 인센티브 지원사용 용도 : 홍보, 교육, 판촉활동, 지도사업비 등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기금대출 취급기관

나. 신청자격 : 지역농협,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다. 신청절차

- 사업자 → 기금대출 취급기관 → 사업지원 기관

라. 구비서류 :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사업 계획서

마. 대상자 선정 : 2000년도와 동일

< 별지 제1호서식 >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 사업계획서

1. 조직현황

가. 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정조합원수	

나. 사업현황('98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자본금	예수금평잔	유통사업 실적	조수익	순이익	총직원수	유통사업 종사원수

다. 주요품목 생산현황

○ 농경지

(단위 : ha)

논	밭	과수원	시설하우스	기 타	합 계

○ 생산 및 출하동향

(단위 : 백만원)

품목명	재배면적(ha)	출하단위	생산량	출하금액	조합취급실적	조합점유비

라. 기초 생산자조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명칭	조직 원수	보유 시설	출하 품목	등급	출하형태	포장재 보조금	선도금 지원	비 고
영농 조합 법인								
작목회								
작목반								

※ 등급은 작목반에 한해 선진, 일반, 기초로 분류

※ 출하형태란은 각 조직별 수집, 선별, 포장, 판로확보, 계산 등 홍보가능한 사항을 자세히 기록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이 직접 관리하거나,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법인만을 기재

마. 유통사업 현황('98년 11월 ~ '99년 10월 실적)

(단위 : 천원)

유형별	사업별	주요 품목	'98 취급실적	조수익		작목반 환원		주요출하처
				수수료율	금액	수수료율	금액	
청과물								
		기타						
		소계						
	매취사업							
기타								
	합	계						
기 타	수탁 또는 매취사업	양곡						
		축산						
		잡곡						
		기타						
		합계						
합	계							

- ※ 청과물의 경우 과일, 채소, 특용작물의 주요출하품목을 기입할 것
- ※ 기타란은 양곡, 잡곡, 축산 등 청과물을 제외한 전 품목의 실적을 기입할 것
- ※ 합계란은 대차대조표(B/S), 손익계산서(P/L)와 일치시킬 것
- ※ 주요 출하처는 도매시장, 위탁상, 물류센터, 일반유통업체 등을 표시하되, 일반 유통업체 납품의 경우 업체명과 금액을 기술할 것

바. 시설운영 현황

○ 일반현황

(단위 : 평, 톤, 백만원)

시설명	면적		설치 년도	투자액	주요 취급품목	연간가동 일수	1일처리 능력	'99 취급실적	
	부지	건물						물량	금액
집하장									
유통센터									
선과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산지공파장									
RPC									
가공공장									
운송차량									

사. 유통사업 관련 자금운용 현황

○ 계정과목별 차입액

구분	계정코드	차변누계	대변누계	잔액	비고
판매선수금	61600-61620				농안기금 등
채소수급안정자금	62300-62320				정부,중앙회,자체자금
경제사업운전자금 차입금	64100				유통저리자금차입금
상호 금융자입금	24105				유통유대자금
기타 유통관련자금					
합 계(A)					

○ 사업별 세부운용내역

< 외부자금(정부, 중앙회자금) >

구분	사업별	용도	차입액	상환액	잔액	사용기간
농안 기금	가공공장수매					
	산지유통센터					
	생산자조직육성					
	공동규격출하					
	회원조합공판장					
	직거래매취					
	유망품목시장개척					
	①물류센터					
	②공판장					
	③도매시장 기타					
유통 저리 자금	채소수급안정사업					
	가공공장운전					
	전작물출하					
	산지유통시범조합					
	과실봉지구입					
	한우육직출하					
	산지유통센터운영					
공판장출하						

구분	사 업 별	용도	차입액	상환액	잔액	사용기간
농안 기금	물류세터출하					
	농산물수출					
	골판지생산					
	지역본부목적자금					
	채소수급안정사업					
	기타					
기타 자금						
합 계(B)						
청과부문의 자금(C)						
청과부문의부자금(D=B-C)						

< 자체자금 >

사 업 별	용도(과목)	투입액	회수액	잔액	사용기간
채소수급안정사업					
합 계 (E)					

< 총 운용자금 >

	차변누계	대변누계	잔 액	비 고
총 운용자금(D+E)				

- ※ 1. 외부자금(정부, 중앙회 등) 및 자체투입 자금 중 양곡, 축산 등을 제외한 청과부문 사업자금을 조사하기 위한 것임
2. 계정과목 차대변누계, 잔액은 '99.10.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합계액(A)은 외부자금 + 합계(B)+채소수급안정자금 일치하여야 함
- 청과부문의자금(C)은 양곡, 축산 등 청과부문 이외의 차입액을 표기함
3. 사업별 세부운용내역은 대표적인 사업명을 열거한 것이며, 차입 건별로 구분 기재함

2. 사업계획

가. 출하계획

품 목	생산량	출 하 량				주출하처	출하시기
		계	규격출하	품질인증	일반출하		
	톤						

나.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 목	농가별 포장	공동작업장에서 선별·포장	선과(별)장 이용
	톤	톤	톤

○ 수송방법별

품 목	농가별 수송	조직공동 수송	농협계통 수송
	톤	톤	톤

다. 품목별, 용도별 자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품목별	'99실적(구성비)	2000계획(구성비)	비 고
매취사업				
	소 계			
계약재배 사 업				
	소 계			
규격출하 선도금				
	소 계			
유통시설 개·보수				
육묘·포장재 공동구입비				
합	계			

II. 공동규격출하 촉진

1. 목 적

- 산지에서의 농산물 공동규격 출하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물류이동의 규모화를 도모하여 유통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실시의 내실화로 유통효율 증진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조직 단위로 평가 및 지원
- 규격출하 활동정도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
- 우수 생산자조직에 집중지원하여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기금의 운용)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8조(규격화의 촉진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2-'97	'98	'99	2000예산(안)
○ 사 업 비	623,858	172,710	159,500	137,463
- 용 자	499,086	138,168	127,600	109,970
- 차 부 담	124,772	34,542	31,900	27,493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작목반을 공동출하의 기간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실작목반 정비 및 규모화 유도('97~)
- 작목반 공동계산 시범사업 추진 등 작목반 운영내실화방안 추진을 통해 공동계산제 실시 확대도모('99)

2) 대상품목(16개 품목)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제정품목으로 하되, 우선지원대상 품목과 추가지원 대상품목으로 구분 지원, 단,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사업 대상품목(3개)은 당해 조합의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
 - 우선지원 대상품목(13개)
 - 무, 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참외, 호박, 수박, 딸기, 상추, 풋고추, 감자, 고구마
 - 추가지원 대상품목(3개)
 - 지역특성상 우선지원 대상품목(13개)외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관원·농협이 합의하여 시·군별로 3개 품목이내에서 추가선정 가능

3) 지원대상 : 작목반(회), 영농조합법인

4) 대상사업 : 공동규격출하 선도금

5) 지원기준·지원기간 및 금리

- 지원기준 : 용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12월이내
- 지원금리
 - 조합대여금리 : 3%
 - 조합대출금리 : 5%

나. 2000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사 업 비			비 고
	계	용자	자부담	
○ 공동규격출하 선도금	137,463	109,970	27,493	

< 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02-504-9411~3)

나.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02-397-5724), 지역농협

다. 대상자 선정

- 작목반 동기초 생산조직은 농협(지역농협→시·군지부→지역본부→중앙본부)에 사업신청
- 농협은 작목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신청내역을 검토하고 신청내역 및 평가결과를 농림부(유통정책과)에 보고
- 농림부와 농협이 협의하여 품목별·조직별 자금배정
- 자금배정 결과에 의하여 지역농협이 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

라. 선정기준

- 농협의 작목반육성 및 지도·지원 준칙에 의해 평가하고, 우수조직 위주로 차등지원

< 조직등급별 지원내용 >

- ① 공동계산제를 실시하는 조직에 일정비율 이상 최우선 지원
- ② 최우수조직 : 공동계산 실시조직 우선지원후 사업계획의 80%이상 반영
- ③ 우수조직 : 상위조직 지원후 잔액을 있을 경우 사업계획의 50%이상 반영
- ④ 일반조직(신규조직) : 상위조직 지원후 잔액이 있을 경우 지원

※ 위 순서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며, 해당조직 등급 범위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기준 적용 가능

마.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실시 기관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사업지원 기관에 보고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실시 안내

2) 시행절차

- 농림부는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품목별 사업지원기관 및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에 시달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실시 30일전까지 사업실시 계획과 대상자선정 결과를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고, 사업지원 요청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별 사업자 확정후 세부사업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업지원기관 및 개별품목 담당과에 보고
-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에 예산한도액 배정요청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예산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도액을 배정하고(사업지원기관에 배정결과 보고), 사업자금과에 자금대여 신청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실행 및 사업시행
 - 지원금액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및 물량에 대하여 기금 대출취급기관과 사업자간에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지원
 - ※ 영농조합법인은 개별농가별로 자금지원 불가
 - 조직평가결과 최우수조직은 농가당 300만원이상, 우수조직은 1백만원이상 지원하되, 농가간 배분은 조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자율검사원은 300만원 우선지원 가능
 -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정부 차입일로부터 40일이내에 농가에 지원 완료
 - 단, 자금전·수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기일이 경과될 경우 농협 시·군지부에 지원계획 등 제출후 지원가능

3) 사업계획 변경

- 조직별 자금배정 이후 조직의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대상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역농협별로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변경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변경시에는 변경내역을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통보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수행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
- 규격출하 지도·점검 및 평가
 - 농관원출장소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 검사원을 지정하여 자율검사를 지도하고 출하품에 대해 점검 실시
 - 농관원 출장소장은 소비자 품질평가 결과를 시·군 및 출하조직에 수시 통보
 - 농관원 출장소장은 지원대상 조직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 규격출하실적, 점검·평가결과 및 조직의 활동상황은 차년도 대상자 선정 및 조직별 지원규모 책정시 반영

나. 제 재

- 제재대상
 -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의 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제재내용
 -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농안사업 실시요령에 의하여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한 규격이 아닌 포장규격을 사용한 경우 자금지원 중단
 - 단, 유통능력향상, 직거래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로 농관원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이 합의한 경우와 농산물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약정 불이행시는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하고 그 결과를 계통보고 및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통보
 - ※ 약정 물량과 금액중 한가지가 이행될 경우에는 약정이행으로 간주
 -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자가 재해발생 및 수확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협 시·군 지부장이 농관원출장소장과 협의하여 위약금 면제 가능

다. 보 고

- 사업자(매분기 익월 5일) → 기금대출 취급기관(매분기 익월 25일) → 사업지원 기관
- 자금지원 및 사업완료후 30일이내에 농림부(유통정책과)에 보고

라. 평 가

- 평가주관 : 농협중앙회
- 평가시기 : 10월중
- 평가위원회 구성 : 3-5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장 : 시·군지부 담당차장
 - 평가위원 : 위원장, 시·군지부 담당과장, 농관원관계관(이상 필수위원) 행정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상 위촉위원)
- 평가결과 반영
 -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조직등급별로 차등 지원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실시기관장

나. 신청자격 : 작목반(회), 영농조합법인

다. 신청절차

- 작목반 → 관할 회원조합

라. 구비서류 : '99년 사업실적 및 2001 계획

마. 대상자선정

- 선정권자 : 사업실시 기관장
- 우선순위
 - 작목반 운영평가에 의해 분류한 상위등급부터 우선지원

Ⅲ. 인삼생산 장려사업

1. 목 적

- 생산자 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생산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경작의욕 고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 및 수급조절의 자율적인 추진
- 생산자조직을 통한 규격화 및 공동출하 촉진으로 유통효율 증진
-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강화로 사업성과 확보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기금의 운용)

4. 연도별 지원 계획

(단위: 백만원)

	계	'98까지	'99	2000예산(안)
○ 고년근생산 장려사업	16,724	3,024	7,200	6,50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 경

- '99년까지는 전문생산자조직인 인삼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산지 및 소비자 유통개선과 공동생산·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회원 조합 육성자금으로 통합 지원
- 2000년부터는 자금성격별(자체사업, 대출사업)로 구분지원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자단체 활성화 유도

(2) 대상사업

○ 고년근 생산장려사업

(3) 지원대상 : 인삼경작농가중 4~5년근 삼포에서 수확을 하지않고 5~6년근까지 재배하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

(4) 지원대상자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자	지원조건
인삼경작농가	융자 30%, 자담 70% 연리 5%, 1년이내상환

나. 2000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안기금)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고년근생산 장려사업	542ha	21,667	6,500	-	6,500	15,167

< 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채소특작과 (02-504-9422~4)

나. 기금대출 취급기관

○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생산지원부 (02-2201-3304)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권자 : 기금대출취급기관장(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

(2) 사업대상자 :

- 인삼산업법에의거 · 경작신고한 농가
- 융자금 부실채권이 없고 융자금회수가 가능한자
- 인삼을 포전매취 및 매매하지 않은 자

(3) 선정절차

-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우선 지원순위에 의거 공정한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후 사업계획서 및 사업지침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보고, 물량 및 금액확정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본 요령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개시 60일 전까지 사업지원과에 보고

(2) 시행절차

- 사업지원과는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에 시달
- 사업지원과는 사업자금과에 예산한도액 배정요청
-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예산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자금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사업대상자에게 배정
- 사업지원과는 사업자금과에 예산한도액 배정요청
-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자금배정결과를 사업지원과에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수행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

나. 제 재

- 제재대상
 -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의 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제재내용
 - 대출금회수, 일정기간 자금지원 중단
 - 약정 불이행시는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하고 그 결과를 계통보고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실시기관장

나. 신청자격 : 인삼재배농가

다. 신청절차

- 전국협의회 회원조직, 삼협회원조합 → 기금대출취급기관(삼협중앙회) → 사업지원기관(채소특작과)
- 구비서류 : '99년 사업실적 및 2001년 계획

라. 대상자선정

- 선정권자 : 사업실시 기관장
- 우선순위
 - 민간수출업체와 계약하여 고년근을 재배하는 농가
 - 지원대상자로서의 재배경력,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능력등을 감안 우선순위부여
 - 출입경작으로 인한 타지역 거주자 차별대우 금지

마. 기타사항

- 2001년이후의 융자금 금리와 품목별 사업비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상용, 행정사무관 박명수)입니다.

I.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및 집하장 시설보완

1. 목 적

- 농산물의 규격상품화와 공동규격출하 촉진
-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생산자의 조직화 유도, 유통정보수집·전파
- 계약재배·브랜드개발 등 산지유통의 핵심시설 역할 수행
-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운영지원을 통해 농산물유통의 현대화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사업기반을 갖춘 조직이 산지유통센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진단방식 도입
- 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익년도 정책사업 지원에 반영
- 생산자 조직의 유통사업 능력을 배양하여 이들을 통한 산지 유통 개선 도모
- 산지유통센터 건설방식의 다양화로 활용도 제고
 - 대규모산지유통센터 건설촉진을 위해 생산자조직 연합출자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유도하고 사업비지원 우대
 - “공공소유, 민간운영”의 산지유통센터건설 확대
- 수집상, 수출업체 등 민간전문 유통업체에게도 산지유통센터의 설치를 지원하여 민간 유통업체에 의한 규격 농산물 출하 촉진
- 기설집하장을 소규모 산지유통센터로 육성하여 시설활용도 제고
- 점진적으로 보조를 용자로 전환, 책임경영의식 고취 및 자생력 배양
 - 2003년 이후 보조지원은 전액 용자로 전환 : ('98) 보조50, 용자30 → ('99-2002) 보조40, 용자40 → (2003이후) 용자80, 자부담20%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4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41조의2 제1항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8까지	'99예산	2000	2001이후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269,977	103,477	37,000	21,900	107,600
국 고	157,629	52,329	23,100	14,190	68,010
(용 자)	(71,333)	(15,533)	(14,800)	(4,560)	(36,440)
(보 조)	(86,296)	(36,796)	(8,300)	(9,630)	(31,570)
지방비	58,531	23,431	7,100	5,430	22,570
자 담	53,817	27,717	6,800	2,280	17,020
- 산자유통센터건설 사업량	220	112	39	20	49
사업비	191,211	83,811	34,000	20,900	52,500
국 고	110,369	40,529	21,300	13,590	34,950
(용 자)	(61,589)	(11,100)	(13,600)	(4,160)	(14,400)
(보 조)	(48,780)	(29,429)	(7,700)	(9,430)	(20,550)
지방비	42,778	19,498	6,500	5,230	11,550
자 담	38,064	23,784	6,200	2,080	6,000
· 생산자조직 사업량	190	112	35	13	30
사업비	146,211	83,811	28,000	10,400	24,000
국고보조	77,969	40,529	16,800	6,240	14,400
(용 자)	(54,389)	(11,100)	(11,200)	(4,160)	(9,600)
(보 조)	(23,580)	(29,429)	(5,600)	(2,080)	(4,800)
지방비	31,978	19,498	5,600	2,080	4,800
자 담	36,264	23,784	5,600	2,080	4,800
· 지자체 사업량	24	-	2	7	15
사업비	36,000	-	3,000	10,500	22,500
국고보조	25,200	-	2,100	7,350	15,750
지방비	10,800	-	900	3,150	6,750
· 민간업체 사업량	6	-	2	-	4
사업비	9,000	-	3,000	-	6,000
국고용자	7,200	-	2,400	-	4,800
자부담	1,800	-	600	-	1,200
- 집하장시설보완 사업량	1,000	409	30	10	551
사업비	78,766	19,666	3,000	1,000	55,100
국 고	47,260	11,800	1,800	600	33,060
(용 자)	(28,073)	(4,433)	(1,200)	(400)	(22,040)
(보 조)	(19,187)	(7,367)	(600)	(200)	(11,020)
지방비	15,753	3,933	600	200	11,020
자 담	15,753	3,933	600	200	11,02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1) 추진경위

- '94년 수립한 유통개혁 대책중 산지유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추진
- 기설간이집하장이 계절적요인, 시설미비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함에 따라 '97부터 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 등을 추가지원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 및 유통현대화를 촉진
- 개장운영하고 있는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98년부터 원료매취자금 등 운영자금 융자 지원
- '98년 수립한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산지유통센터 건설방식 다양화
 - '99부터 공공소유민간운영, 도매시장법인 등 민간전문 유통업체에도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2) 지원대상자

(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생산자조직 : 농협지역조합,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 ※ 곡류(미곡, 잡곡), 화훼류 생산자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공공소유, 민간운영) : 시·군·자치구

(나) 집하장시설보완

- 국고보조로 설치된 기설집하장 및 지자체, 농협자체로 설치한 집하장 중 100평규모 이상으로서 소규모산지유통센터로 발전이 가능한 시설운영 생산자 조직
- 조직의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규격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 인근지역에 산지유통센터,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 등이 있어도 물량확보에 애로가 없는 조직
-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조직
 - 미곡생산자조직
 - '97이후 시설보완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조직

(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 '92-'9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된 청과물종합유통시설운영 조직
- '95-'96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건설된 청과물종합처리장 운영조직
- '95년 이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조직

3) 시설별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 설 명	단가	비 고
< 건 물 > 집하·선별(과)시설	백만원 1/평	○수송차량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설계 ○집하·선별시설의 1면은 Deck 시설을 설치하되, 산지유통센터의 규모, 취급품목 등 산지유통센터 여건상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선택적으로 설치
저온저장	2.7/평	○예냉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설계도에 근거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
예냉시설	3.5/평	○예냉시설 설치시 예냉방식과 면적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품목과 지역 여건에 맞게 설치
관리사무소 일반창고등	1/평	
< 기계류 > 선별기, 포장기, 콘베어등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 장비류 > 팔레트,지게차,수송차량, 운반상자 등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주) · 시설별 규모는 실정에 맞게 조정

- 지원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 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 첨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예시되지 않는 시설장비도 가능(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 첨부)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설계도에 근거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협중앙회 또는 전문기관(농촌진흥청기계화연구소, 농업기반공사,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건축사 사무소 등)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역여건에 맞도록 작성

- 사업비한도액(없음) : 사업자가 사업능력 및 입지조건에 따라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 생산자조직의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되 사업비에는 포함하지 않음
 - 지자체는 1,000평까지만 지원,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
- 지원조건
 - 생산자조직 : 국고보조 20%, 국고용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 70%, 지방비(순수지방비) 30%
 - ※ 지방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지역농협 또는 민간유통업체가 적극적 관심이 있을 경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 허용
 - 국비 70%, 농협 또는 민간유통업체가 30%를 지자체에 임차보증금 또는 선납금을 납부하고 일정기간 사용권(무상) 획득
 - 국비 70%,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민간유통업체 등이 콘소시움을 결성하고 일정액을 분담한 후 일정기간 사용권 허용 등
 - ※ 예산상 단가 (총사업비 기준)
 - 생산자조직 : 개소당 800백만원, 지자체 1,500백만원
- 지원시설의 종류
 - 선별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선과기, 세척기, 자동운반기 등 부대시설비 지원
- (나) 집하장시설 보완
 - 시설·기계·장비류 지원기준

구 분	단위	단가(원)	성능수준	비 고
○저온시설	평	2,700,000	-	집하장밖설치(동일부지)
○예냉시설	“	3,500,000	-	“ (”)
○선별기	대	4,000,000	10,000개/시간	중량선별기
○제합기	“	4,500,000	10상자/분	
○봉합기	“	2,000,000	20상자/분	
○결속기	“	1,500,000	18밴딩/분	
○콘베이어	개	2,500,000	600mm×6m	상하차용
○운반상차	“	2,300	48ℓ/용량	
○파렛트	“	27,000	1100×1100×140mm	PE재질

- 주) 1. 농가보급형 국산제품으로 반차동 기기(규모는 중규모)를 기준으로 가격 설정
 2. 예시되지 않은 기계·장비는 예시된 기기를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3. 집하장 건물내에 예냉 및 저온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도별로 단가산출 적용

- 집하장 건물내 예냉, 저온저장시설을 할 경우 집하장 규모가 100평이하는 20평이내, 200평이하는 30평이내로 제한
 - ※ 간이집하장 외부에 별도 건립시는 100평 이하는 30평, 200평이하는 50평까지 가능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설계도에 근거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또는 전문기관(농촌진흥청기계화연구소, 농업기반공사,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건축사 사무소 등)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역여건에 맞도록 설치
- 농산물 생산량, 전년도 규격출하량 등을 감안할 때 제시된 기준표상의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후 사업추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

나. 2000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세)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20	20,900	13,590	9,430	4,160	5,230	2,080
- 생산자조직	13	10,400	6,240	2,080	4,160	2,080	2,080
- 지방자치단체 ¹⁾	7	10,500	7,350	7,350	-	3,150	-
- 민간유통업체	-	-	-	-	-	-	-
○ 집하장시설보완	10	1,000	600	200	400	200	200
○ 산지유통센터운영자금	130	45,000	36,000	-	36,000	-	9,000
- 농 협	64	21,250	17,000	-	17,000	-	4,250
- 영농조합법인	66	23,750	19,000	-	19,000	-	4,750

- ※ 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는 순수 지방비임
- 2, 융자금은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3,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은 연리 5% 1년이내 상환(재원 : 농안기금)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2000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6항” 2001년도 사업안내 참조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협시군지부(지역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본사(영농조합, 기타)

나. 신청자격

-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자금 신청일 현재 건축 준공검사를 득하고 사업당해연도에 운영할 조직

- 단, 회원조합으로써 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받은 조직은 제외

다. 신청절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조직은 농협, 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에 의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농유공 본사 또는 소재지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신청

- 회원조합 → 농협시·군지부, 영농조합법인 등 → 농유공 본사

* 농협, 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은 사업시행전 사업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라. 구비서류

- 사업담당기관(농협, 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에 의함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된 산지유통센터·청과물종합처리장·청과물종합 유통시설로서 운영실적이 있거나 당해연도에 운영될 시설보유 조직

*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운영조직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규운영조직 예외)

- 우선순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

○ 선정절차

산지유통센터 사업자	① →	농유공, 농협 시·군 지부	② →	농유공 농협중앙회	③ →	농림부
○자금신청 및 시행 ○회원농협 - 농협 각 시· 군지부 ○영농조합 등 - 농유공 본사	⑥ ←	○자금신청 접수 ○용자실행 및 실 적점검	⑤ ←	○사업계획공고 ○사업시행 세부 요령작성 보고 ○사업자확정통보 ○용자금 배정 ○용자실행결과 집계보고	④ ←	○사업시행 지침 수립 ○용자금 배정

① 사업자금 신청

- 회원농협 : 농협 각 시·군지부 - 영농조합법인 등 : 농유공 본사

② 자금신청접수

③ 사업시행세부요령 작성보고, 사업공고, 사업자 확정통보, 용자실행결과
집계보고

④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자금배정

⑤ 사업실시계획 시달, 용자금 배정, 사업자확정통보

⑥ 용자실행 및 실적 점검

<자금지원기준>

등급	등급 구분	지원한도
A	평점 90점 이상	20억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	15억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12억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	9억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	6억원
F	평점 50점 미만	3억원

※ 조직의 규모와 취급물량의 다과, 수출여부에 따라 최고한도액 조정지원 가능

※ 신규사업자는 3억원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규모와 취급물량에 따라 조정지원

※ 종합평가표 (별표 4)

< 추진체제 >

가. 사업주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집하장시설보완 : 시·군·구(자치구)
- 사업기간 : 1년간 (1월~12월)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02-500-2671~2)

(시설자금)

- 시·도 : 농산물유통과(광역시는 농정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 (유통특작과, 지역경제과)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 농협중앙회 : 유통개혁추진본부, 원예특작부
 - 도지역본부 : 유통가공과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산지유통팀

다. 사업시행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생산자조직,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로 확정되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즉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한다.
 - *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서 중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세부시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의 계획변경, 사업자 변경 : 시·도지사 승인
- └ 사업장변경,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 시장·군수 승인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재원별 부담비율에 맞춰 집행(정산시에는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선정 및 자금관리 철저)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농협(전문농협 포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경영체가 희망하는 용자 취급기관에 용자금 대여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름

(2) 집하장시설보완

○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의 계획변경, 사업자변경 : 시·도지사 승인
- 대표자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 사업비집행방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한 후 대출 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용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948호)에 따름
 -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액 집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조치

(3) 공통사항(산지유통센터 및 집하장 시설보완)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교부된 보조금은 조직 대표의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한다.
 - 기계 및 장비구입시에는 물품구입 세금계산서 확인으로 정산 가능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자로 확정 통보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 사업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자금지원을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세부지원사업에 제시된 단가는 기준단가이므로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는 실제가격을 적용하되 초과된 경우는 계획사업비내에서 조정하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을 첨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회의비, 유인비, 출장비 등)를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토록 하여야 한다.

(4)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 지원대상품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포장출하하기 위한 원료 농산물(곡물류 제외)
- 사용용도 : 산지유통센터로의 출하촉진을 위한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 * 단, 출하선도금은 총지원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운영하지 못함
- 개소당 융자한도액 : A등급(20억원), B등급(15억원), C등급(12억원), D등급(9억원), E등급(6억원), F등급(3억원)
 - ※ 조직의 규모와 취급물량의 다과, 수출여부에 따라 최고한도액 조정지원 가능
- 지원대상조직 등급구분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99년도 운영실적평가결과와 운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
-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125% 이상 매취 또는 출하선도금실적
- 농협, 농유공은 본 지침 및 농안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보고
- 농협, 농유공은 예산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도액을 배정·통보(사업자확정통보)하고 농림부에 결과 보고(자체보고서식)
- 농협은 농림부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대출 실행
 -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청과물 종합처리장과 농협회원조합이 아닌 기타 조직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도 농협 시·군 지부를 통하여 집행

라. 기타사항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 ※ 지원시설물이 법인의 명의로登記 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나 감리업체(관계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한다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건물은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감리업체가 시행한다.
 - ※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의 정의와 설계·감리업무 수행가능 근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 ※ 예냉시설 중 외국산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만 받도록 한다.
- 감리비 지급 :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의책임하에 사업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지급
- 과잉 시설투자방지를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에,공사 감리감독, 기술적인 문제 등은 농업기반공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지원을 요청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집하장시설보완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
- 사업자가 본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고보조로 설치된 산지유통센터,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 등에 대해서 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 구입일	10년간 7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 단,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용자에 한하여 동 산지유통센터의 담보제공은 가능
- ※ '97년이후 집하장시설보완사업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간이집하장은 추가지원후 5년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도변경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 농산물 간이집하장관리준칙 제9조의2 참조

(2)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 사업자는 일일매취실적을 기록관리하는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건설사업 추진실적(별지 제2-1호, 제2-2호서식)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99년도의 시설운영상황을 산지유통센터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반기종료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하고, 간이집하장은 99년의 운영실적을 익년도 1월 20일까지(연1회)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한다.
- 대상 : '94년 이후 국고보조로 지원한 간이집하장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 간이집하장운영실적보고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기간 내에는 용도변경한 간이집하장도 포함하여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시·도를 경유하여 익년 1월 20일 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승인사항이 있을시 그 처리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사항은 시도지사까지만 보고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다.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설자금
 - 생산자조직, 지방자치단체 : 읍·면·동사무소
 - 2000.1.20까지(신청자→읍면→사군), 2000.2.28(사군→사도)→2000.3.3(사도→농림부)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 농협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나. 신청자격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 농협지역조합,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설하여 조직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하고자 하는 조직

< 신청불가(지원대상에서 제외) >

- 곡류(미곡, 잡곡), 화훼류 생산자조직
- 품목별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공동시설, 산지유통시설, 산지종합처리시설을 지원 받았거나 2001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조직
 - 단 지역농협의 경우 품목의 경합이 없거나 이용조합원의 경제권역이 다르고 원료확보가 충분한 경우는 지원가능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신청자격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영농조합인 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민간유통업체

- 농안법 제17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 2년이상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한 농안법 제27조의2에 의거 등록한 수집상
- 농안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수집상이 설립한 상법 제170조의 회사(합명, 합자, 주식, 유한)
- 산지유통센터 사업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사업발전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영점형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억원이상의 법인
- 물류센터 운영업체, 저온저장업체, 연간 100만불 이상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산물 수출전문업체

- 지방자치단체 : 시·군 및 자치구
- 품목(미·잡곡 등 곡류 및 화훼류는 제외)
토마토, 방울토마토, 복숭아, 과, 오이, 참외, 양배추, 배추, 사과, 배, 단감, 감귤, 감자, 고구마, 당근, 무, 마늘, 양파, 밤, 버섯류 등

(2) 집하장시설보완

- '94~'97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된 100평이상의 간이집하장운영조직
-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자체사업으로 설치된 100평이상의 집하장 운영조직
- 기존의 건물(집하장)이 조직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우수출하조직 이상으로 평가된 생산자 조직.
- 인근지역에 산지유통센터 또는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등이 있어도 물량확보에 애로가 없는 조직

(3)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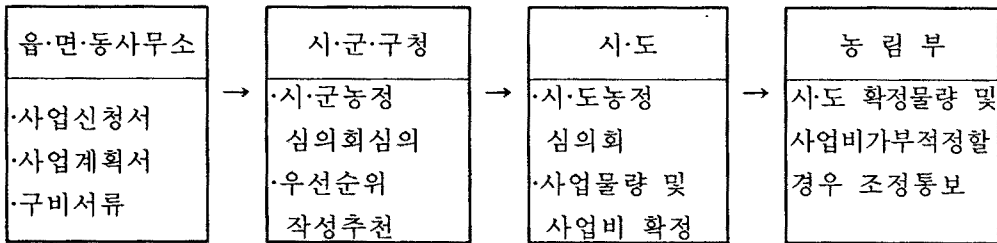
-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자금신청일 현재 건축준공검사를 득하고 사업당해년도에 운영할 조직.
 - 단, 회원조합으로써 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을 조직은 제외

다. 지원기준

- 산지유통센터
 - 생산자조직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
부지는 자부담 총사업비에서 제외
총사업비 기준 개소당 80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 70, 지방비(순수지방비) 30%,
부지구입비 포함(단 1,000평이내에서 지원)
총사업비 기준 개소당 1,500백만원
 - 민간유통업체 : 국고융자 80, 자담 20%
부지구입비 포함(단 1,000평 이내)
총사업비 기준 개소당 1,500백만원
- ※ 개소당 지원한도는 철폐(사업자의 능력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하여 지원)
-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담 20%
 -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라. 신청절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사업자는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을 하기전에 회원농협은 농협중앙회(산지지원팀 02-397-5742)에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는 농유공(산지유통팀 02-793-5006)에 반드시 창업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조직은 농협, 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에 의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농유공본사 또는 소재지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신청
 - 회원조합 → 농협 시·군지부, 영농조합법인 등 → 농유공 본사
 - ※ 농협, 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은 사업시행전 사업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인 “자율 사업신청서”에 의한다.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증빙서류(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정관, 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건설 의제), 사업예정부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1/5,000축적), 자부담조달계획서(조달형태: 출자, 용자등, 제시재력명세: 예적금잔액증명,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등), 대표자 이력서, 지원대상자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일반사업자에 한함)

- 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농유공(회원농협은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창업진단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조합원 출자내역서, 조직구성원의 2/3이상 공동사업실적(영농조합법인에 한함)
-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및 농산물 취급실적 입증자료, 직영점·가맹점 현황(민간유통업체에 한함)
- 관할지방의회의 사업추진 동의서(지방자치단체)

(2) 집하장시설보완

-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 조직공동명의로 건물(집하장) 등기부 등본
- 농협자체사업설치 확인서(농협군지부장 확인)
- 농산물검사소의 생산자조직 평가 확인서
- 사업추진에 대한 총회 또는 이사회(지역농협에 한함) 회의록 사본

(3)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 사업담당기관(농협, 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에 의함

바.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 생산자조직
 - 『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의거 선정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신청자 평가표 (별표1)
 - 간이집하장을 지원받은 생산자조직은 시설운영을 충분히 활용하고도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지원
 - 농협의 경우 산지시범농협을 우선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유통업체 : (별표2)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와 관련 >

- 법인경영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주산지에 위치하고 운영실적이 3년이상 경과된 법인으로서[별표1] 사업자평가서상 평점 70점이상 법인
 - 적격법인의 사업신청량이 정부계획물량에 부족할 시, 법인설립후 운영실적 3년이 안된 법인에 대해서도 시·도 사업성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지원가능
 - * 이 경우 선정일 현재 최소한 법인결성후 1년이상은 운영경력이 있어야 함
 - 구성원의 자질 : 구성원 2/3이상이 집하·공동출하 등의 실적 3년 이상
 - 조합원(농업인)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부적격자 발견시 시·도 추천시 배제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시 시군에서 실시하는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경영 및 정보화교육을 3일이상 가급적 이수토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는 사업자 선정시 우대

(나) 집하장 시설보완

- 국고보조로 설치된 기설 간이집하장 및 지자체, 농협자체로 설치한 집하장 중 100평규모 이상으로서 소규모 산지유통센터로 발전이 가능한 시설운영 생산자조직
- 조직의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규격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 인근지역에 산지유통센터,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등이 있어도 물량확보에 애로가 없는 조직
 - 미곡생산자조직은 제외
 - 수산물 집하장은 농림부지원 수산물 간이집하장으로 제한하여 지원 가능

(다)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된 산지유통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청과물종합유통 시설로서 운영실적이 있거나, 당해연도에 운영할 시설보유 조직
- *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운영조직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규운영조직 예외)

(2) 우선순위

(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생산자조직)

- ① 각 시·도의 사업자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되 평가후에 평가내용의 외 적요인으로 지원이 불가할시는 자체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
 - 지목이 논이 아닌 사업장 부지를 선정할 시 우선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을 사업장부지로 선정할 경우는 밭, 산지 등 보다 후 순위
- ② 대규모 산지유통센터건설 촉진을 위해 생산자조직 연합출자 산지유통센터 우선지원(사업비 제한우대)
- ③ 산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수집상영업을 겸업하는 농업인과 전문수집상이 연대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결성하여 무, 배추, 대파, 양파 등 규격출하가 부진한 품목을 주종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조직
- ④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 (경영일지)를 기록하고 있는 조직
- ⑤ 농협의 경우 산지시범농협을 최우선지원
 - < 논외 잠식을 수반하는 사업장 부지 >
 - 대구획 재경지정리 지역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에 정책자금 지원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조부분을 용자로 전환. 2001년 예산 신청시 반영되도록 사전 조치
 - 2001년 : 보조부분 전액을 용자로 전환

(나) 집하장 시설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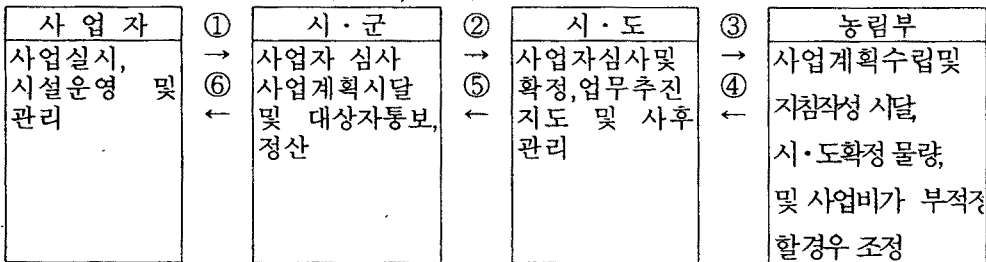
- ① 지원대상 농산물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시범농협
- ② '94~'97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운영조직
- ③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설치된 농산물집하장 운영조직
- ④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자체사업으로 설치된 농산물집하장 운영조직

(다)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99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와 운영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평점이 높은 등급 순
- ※ 재해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약정불이행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선정절차

(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집하장시설보완



- ①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보조금 신청
- ② 사업자 심사 및 추천, 사업추진 실적보고, 정산실행결과보고
- ③ 사업자 심사 및 확정, 사업추진실적 보고, 정산결과보고
- ④ 사업지침 시달, 보조금 배정
- ⑤ 사업자 통보, 보조금 배정, 추진상황 지도점검
- ⑥ 사업자 통보, 보조금 지원, 추진상황 지도점검, 사후관리

○ 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회원 농협은 농협중앙회)에 창업진단을 요청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 중앙회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창업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사업자는 “창업진단결과보고서”를 반드시구비서류에 추가하여 시·군에 사업신청

* 단, 2000년도 사업자 선정은 이미 신청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에서 창업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시·도에 통보

- 시·도에서는 농협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별표 1의 사업신청자평가표에 의거, 사업자를 최종 확정하여 농림부에 보고
 - 사업자 선정시는 특정지역에 대한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지역별(시·군별) 배치계획[유정 51160-647('98.12.26)]의 범위내에서 승인하되, 지역별 배치계획 시달후, 지역여건 변화로 추가시설이 필요할 경우는 근거를 명시하여 사전에 배치계획 변경승인을 받은후 승인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절차(별표 3)

(나)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산지유통센터 사업자	① →	농유공, 농협 시군 지부	② →	농 유 공 농협중앙회	③ →	농 립 부
○자금신청 및 시행 ○회원농협 - 농협 시·군지부 ○영농조합 등 - 농유공 본사	⑥ ←	○자금신청 접수 ○용자실행 및 실적점검	⑤ ←	○사업계획공고 ○사업시행 세부요령작성 보고 ○사업자확정통보 ○용자금 배정 ○용자실행결과집계 보고	④ ←	○사업시행 지침수립 ○용자금배정

- ① 사업자금 신청
 - 회원농협 : 농협 각 시·군지부 - 영농조합법인 등 : 농유공(본사)
- ② 자금신청접수
- ③ 사업시행세부요령 작성보고, 사업공고, 용자실행결과 집계보고
- ④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자금배정
- ⑤ 사업실시계획 시달, 용자금 배정, 사업자확정통보
- ⑥ 용자실행 및 실적 점검

사. 기타사항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 각 시·군에서는 물량 및 금액에 대한 사업신청 총괄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 시·도는 사업신청 총괄표를 작성하여 농림부(유통정책과)에 제출 (농림부 기획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와는 별도)
- 100평이상 간이집하장을 기지원 받았거나 산지유통센터를 지원 받은 법인경영체가 추가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연구기관 또는 지도기관의 추가지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은 후 신청할 것

(2) 공통

- 농산물의 세척, 선별, 포장, 공동출하 등 규격상품화를 위한 시설·기계·장비는 본지침에 제시되지 않았어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 건물부지 밖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 】

생산자조직 분류 기준

등 급	활 동 기 준
최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 (선과장, 산지유통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공동계산제 실시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70%이상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 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산지유통센터 등 공동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이상
일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없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한 등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별표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신청자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평점	등급기준																				
	A	B	C	D																						
I. 규격 상품화 추진여 건 성숙 도 (30 점)	(1)규격상품화 로 발전기 능성(15)	15	10	7	5	A : 조직의 상표가 개발되어 있고, 도매 시장에서 단일 상표로 알아주고 있으며 공통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조직의 상표개발은 되어있으나, 공 통기준에 의한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농가단위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음 C : 현재는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 으나, 규격상품화를 인식하고 조직 상표를 개발중에 있음 D : 조직의 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2)규격상품 화 에의 참여 정도 (5)	5	4	3	2	A: 조직구성원 200명이상 또는 연간규격출 하량 10,000톤이상 B: 조직구성원 100명이상 - 200명미만 또는 연간규격출하 7,000-10,000톤미만 C: 조직구성원 20명이상 - 100명미만 또는 연간규격출하 3,000-7,000톤미만 D: 조직구성원 20명미만 또는 연간 규격 출하 3,000톤미만 ※ 출자조직원 이외의 조직원도 포함																				
	(3) 공동사업 실적(10) (규격상품화 조직평가)	10	8	6	4	○ 공동사업실적 A : 20점이상 B : 16-20점미만 C : 12-16점미만 D : 12점미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농검조직분류</th> <th>평점</th> <th>조직분류점수</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조직</td> <td>10</td> <td>90점이상</td> <td>10</td> </tr> <tr> <td>우수조직</td> <td>8</td> <td>80-90점미만</td> <td>8</td> </tr> <tr> <td>일반조직</td> <td>6</td> <td>70-80점미만</td> <td>6</td> </tr> <tr> <td>미분류조직</td> <td>4</td> <td>70점미만</td> <td>4</td> </tr> </tbody> </table>	농검조직분류	평점	조직분류점수	평점	최우수조직	10	90점이상	10	우수조직	8	80-90점미만	8	일반조직	6	70-80점미만	6	미분류조직	4	70점미만	4
농검조직분류	평점	조직분류점수	평점																							
최우수조직	10	90점이상	10																							
우수조직	8	80-90점미만	8																							
일반조직	6	70-80점미만	6																							
미분류조직	4	70점미만	4																							

평가항목	등급				평점	등급기준			
	A	B	C	D					
2. 사업자 수행능력 (30점)	(1)사업동기, 의지 및 사 업자 경영 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이상 B : 평점 16-20점미만 C : 평점 12-16점미만 D : 평점 12점미만			
		사업동기		평점	경영관리	평점			
		사업동기와 의지가 매우 높음		10	회계 및 내부 관리장부정리 상태 우수	10			
		사업동기와 의지가 높음		8	회계 및 내부 관리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사업동기와 의지가 보통		6	회계 및 내부 관리장부미흡	6			
사업동기와 의지 미약		4	회계 및 내부 관리장부불량	4					
	(2)대표자 및 경영진의 경력	5	4	3	2	○ 대표자및 경영진중 1인의 경력을 합산 A : 관련분야 10년이상 종사 B : 관련분야 5년이상 - 10년미만 종사 C : 관련분야 3년이상 - 5년미만 종사 D : 관련분야 3년미만 종사 ※ 관련분야 : 협동조합 임원 생산자 임의 조직대표, 유통분야 종사자			
	(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 재무구조의 건전성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20점미만 C : 평점 12-16점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이상						10	150%이상	10	
3-4억원미만						8	100-150%미만	8	
2-3억원미만						6	50-100%미만	6	
2억원미만		4	50%미만	4					
	(4)자부담 조달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제한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제한 금액이 자부담금의 50%이상을 초과하고, 향후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제한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향후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 하며 향후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가항목	등급				평점	등급기준			
	A	B	C	D					
3. 사업 계획의 적정성 (40점)	(1) 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이상 B : 투자효율성 10%이상 - 15%미만 C : 투자효율성 5%이상 - 10%미만 D : 투자효율성 5%미만 $\text{※투자의 효율성(\%)} = \frac{\text{매출총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2) 부지확 보계획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 15점미만 C : 평점 9점 이상 - 12점미만 D : 평점 9점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8	약간 제한	4						
타인명의, 사용 승락	6	상당한 제한	3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4	제한이 많음	2						
(3) 입지조건	10	8	6	4	A : 평점 15 이상 B : 평점 13-15점미만 C : 평점 10-13점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상호보완성	10	양 호	8	
경합,보완성 없음	7	보 통	6						
경합성 있음	4	미 흡	4						

평가항목	등급				평점	등급기준				
	A	B	C	D						
(4)예상가 동률	5	4	3	2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이상 - 10점미만 C : 평점 6점이상 - 8점미만 D : 평점 6점미만 선별장, 저온저장고 예상조업도에 의거 평가					
	선과기 가동일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이상		5	300일이상	5					
	200-300		4	250-300	4					
	100-200		3	200-250	3					
100일미만		2	250일미만	2						
(5) 시·도 지사 의견	10	8	6	4	신청수	A	B	C	D	
						1	1	-	-	-
						2	1	1	-	-
						3	1	1	1	-
						4	1	1	1	1
						5	1	1	1	2
						6	1	1	1	3
						7	1	1	2	3
						8	1	1	2	4
						9	1	2	2	4
					10개이상	1	20%	30%	50%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지 원 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원 가 : ○ 평가결과 D항목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 : ○ 평가결과 D항목이 4개이상인 사업자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평가결과 70점이상 득점은 하였으나 평가자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사유명기) 		
평가자	소 속	성 명	서 명	

【별지 제1-1호서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가. 조직현황

조직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균	최고	최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등 납품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조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을 기재 - 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 구입비는 제외, 지자체는 국고보조 70%, 순수지방비 3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 부 지	평	천원	백만원			
○ 건 물	평					
- 집하시설	평					
- 선별시설	평					
- 저온저장및 예냉시설	평			- 저장능력 /일		
- 사무실 및 일반창고	평					
○ 기 계						
- 선별기	조			- 처리능력 /시간		
- 포장기	대					
- 콘베어	대					
.						
.						
○ 장 비						
- 팔레트	개					
- 수송차량	대					
- 운반상자	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업 품목	사업 물량	사업 기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장 출하	직공급 (납품)	기타	기계 선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계		계		
○ 매출액 -매취판매액 -선별, 포장 수입 ○ 기타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 포장제 비 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강화 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4. 기 · 타

- 농림부 정책사업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년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역	규모	처리능력	비고

- 기타 특기사항

【 별지 제1-2호 서식 】

집하장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 집하장 건설년도 : 년, 집하장시설보완사업의 기 지원여부(연도표기) : 년

조직 현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전년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출하시기			
	.	ha			톤					
전년 시설 운영 상황	총출하량	일반출하량	공동출하량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선별(과)량				
	톤	톤	톤	톤	톤	톤	톤			
	(100%)	(%)	(%)							
	상 표 명									
	활 용 일 수									
	주요 출하처									
공·동 유·통 시·설 보·유 현·황	집하장	직판장	선별 (과)장	저 은 저장고	일반 창고	예냉고	선별 (과)기	기타공·동 시·설및장비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조 ()	()	

- ※ ○ 상· 표 명 :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납품 등
- 유통시설은 처리능력 (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 내서

3. 사업계획

- 사업명(년도표기) :
- 집하장 위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m² (평)
-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계획

구분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비고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평							
<시설설치> · · · 계								
<장비구입> · 선별기 · 포장기 · 세척기 · 보냉차 · · · 계								

- ※ ○ 사업비는 시설 및 기종·장비별로 자원비율에 따라 사업비 산정
 ○ 비고란에는 시설·장비의 제원(처리능력, 제작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시설운영계획
 - 원료확보 방안
 - 판매방안

4. 기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
 - 사업명
 - 사업년도
 -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지원액 등)
- 기타 특기사항

심 사 제 외

연도, 분기 산지유통센터건설 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업명	지역(시·군·읍·면)	사업 계획							사업 추진 내역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 량			사업 비				부지확보	건축허가	착공일	공정	준공예정일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담
		부지	건물	시설 및 장비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m ²	m ²	중	천원				월 일	월 일	월 일	%	월 일	천원				

※ 부지, 건물면적은 ()내에 평으로 환산 기입.

※ 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월별추진내용과 함께 첨부

【 별지 제2-2호 서식 】

심사제외

연도, 분기 집하장 시설보완 사업 추진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자명	지역 (시 군읍 면)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내역							
		시설 및 장비				사업비 집행계획				시설 및 장비			사업비 집행내역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지방 비	자부 담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지방 비

- ※ 시설명 및 규모, 장비명 및 수량 기입.
- ※ 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 기설 간이집하장
 - 사업년도 :
 - 사업규모 (평형별, 유형별) :
 - 사업비(정산결과)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별지 제3-1호서식】

심사제외

‘99년도 반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운영상황 보고

조직명	시설현황							운영상황									
	사업년도	부지(평)	사업비 (국고보조금)	건물(동,평)				기계 기구 (기종, 수량)	취급물량			선별기 가동		저온저장 실적		..	
				계	집하시설	선별시설	저온시설		..	계	매취	수탁	일수	처리물량 톤	일수		반기 저장 실적 톤
									톤			일	톤	일	톤	kg	

※ 특기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보고

【 별지 제3-2호 서식 】

심 사 제 외

‘99년도 간이집하장 시설운영 상황 보고

○ 시설설치 및 성수기 활용 상황

사 업 자			시 설 설 치 내 역				사 업 비 (백만원)				운 영 상 황 (성수기)					활용 일수			
											품목	생산 량	집하 량	선과 량 (선별 랙)	공동 출하		주거 래(처)		
단체 명	주소	대표 자	사업 년도	부지 평	건물 평	(유형)	시설 장비	계	국 고 보 조	지방 비	자부 담	품목	생산 량	집하 량	선과 량 (선별 랙)	공동 출하	주거 래(처)	활용 일수	

○ 비수기 활용상황

○ 기타

【별지 제4호서식】

매취실적 관리대장

월일	품목	구입처	물량(톤)	kg당	금액	비고
일계						
누계						

* 개인별 매취에 따른 관련 증빙을 비치(예:입고확인증, 대금지불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사업 정산실적 보고

□ 구분 : 산지유통센터, 집하장시설보완

시·군·구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비율 (B/A) %
				사업계획			사업실적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비율 (B/A) %	착공일	준공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계	국고 보조 (A)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내 역																	
건물설치내역(평)						기계·장비류 설치내역(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 시설	저온 저장 시설	예냉 시설	기타	계	선별 기	포장 기	콘베 이어	테핑 기·밴 딩기	제함 기	지게 차	냉장 차	파렛 트	운반 상차	

주) 사업세부내역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사업에 한함

【별표 2】

민간유통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선정 사항

구 분	민간유통업체(2000년 제외)	지방자치단체
1.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지침에 게재된 사업계획서 준용 작성)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⑤ 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⑥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⑦ 농산물취급실적 입증자료(2개년) ⑧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 ⑨ 창업진단결과 보고서	① 사업계획서(지침에 게재된 사업계획서 준용 작성) ② 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창업진단결과 보고서
2. 사업계획 접수	○ 읍·면·동사무소 ○ 시·도에 제출	○ 시·도에 제출
3. 사업성 평가 (현지평가)	○ 시·도에서는 농협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현지평가를 실시	○ 좌동
4. 사업자 선정	○ 시·도에서 심의 선정	○ 시·도에서 사업승인
5. 보조(융자) 금 지원	○ 현행체제와 같음	○ 현행체제와 같음

【별표 3】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절차

구 분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지방자치단체	민간유통업체(2000년 제외)
○ 사업신청 및 실행계획 제출	○ 읍·면·동→시·군→ 시·도→농림부	○ 시·군→시·도→농림부	○ 읍·면·동→시·군→ 시·도→농림부
○ 국고노조금 집행	○ 농림부→시·도→ 시·군→사업자	○ 농림부→시·도→시·군	
○ 국고융자금 집행	○ 농림부→시·도/농협 중앙회→시·군/농협 중앙회 시·군지부 →사업자		○ 농림부→시·도/농협 중앙회→시·군/농협 중앙회 시·군지부→ 사업자
○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 보고	○ 사업자→시·군→ 시·도→농림부	○ 시·군→시·도→농림부	○ 사업자→시·군→ 시·도→농림부
○ 사업실적보고	○ 사업자→시·군→ 시·도→농림부	○ 시·군→시·도→농림부	○ 사업자→시·군→ 시·도→농림부

【별표 4】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지원 평가표

1. 자금지원 평가표

평가항목	평점지표					등급기준																								
	A	B	C	D	E																									
1. 전년도 사업실적 종합평가	50	40	30	20	10	A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우수 B : " 양호 C : " 보통 D : " 미흡 E : " 부진																								
2. 출자조합원 및 출자액	20	16	12	8	4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20점 미만 C : 평점 12~16점 미만 D : 평점 10~12점 미만 E : 평점 10점 미만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5px;"> <thead> <tr> <th>출자조합원수</th> <th>평점</th> <th>출자액</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100명 이상</td> <td>10</td> <td>10억원 이상</td> <td>10</td> </tr> <tr> <td>50~100명 미만</td> <td>8</td> <td>5~10억 미만</td> <td>8</td> </tr> <tr> <td>30~50명 미만</td> <td>6</td> <td>3~5억 미만</td> <td>6</td> </tr> <tr> <td>5~30명 미만</td> <td>4</td> <td>1~3억 미만</td> <td>4</td> </tr> <tr> <td>5명 미만</td> <td>0</td> <td>1억원 미만</td> <td>0</td> </tr> </tbody> </table>	출자조합원수	평점	출자액	평점	100명 이상	10	10억원 이상	10	50~100명 미만	8	5~10억 미만	8	30~50명 미만	6	3~5억 미만	6	5~30명 미만	4	1~3억 미만	4	5명 미만	0	1억원 미만	0
출자조합원수	평점	출자액	평점																											
100명 이상	10	10억원 이상	10																											
50~100명 미만	8	5~10억 미만	8																											
30~50명 미만	6	3~5억 미만	6																											
5~30명 미만	4	1~3억 미만	4																											
5명 미만	0	1억원 미만	0																											
3. 전년도 사업실적 (매출액)	10	8	6	4	2	A : 70억원 이상 B :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C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D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E : 10억원 미만																								
4. 저온저장고 규모	10	8	6	4	2	A : 1,000평 이상 B : 500이상 1,000평 미만 C : 300평이상 500평 미만 D : 100평이상 300평 미만 E : 100평 미만																								
5. 매취자금 운영실적	10	8	6	4	2	A : 지원자금의 170% 이상 B : 지원자금의 150% 이상 170% 미만 C : 지원자금의 125% 이상 150% 미만 D : 지원자금의 100% 이상 125% 미만 E : 지원자금의 100% 미만																								

2. 지원기준

등급	등급 구분	지원한도
A	평점 90점 이상	20억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	15억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12억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	9억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	6억원
F	평점 50점 미만	3억원

※ 신규사업자는 3억원,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으로 구분 평가하여 지원

II.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확충

1. 목 적

- 선진화된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System)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증대효과를 거양하는 동시에 고급화 되어 가는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농산물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 및 출하단계부터 소비자 구매단계까지에 종사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 유통인 및 유통관련법인을 대상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지원(단, 사업초기인 2000년까지는 농협위주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 지원시설이나 장비는 농산물의 생산·출하·판매실적과 향후 계획물량을 감안하여 활용도가 극대화 되도록 지원규모를 결정
- 지원시설이나 장비의 운영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익년도 정책사업에 반영
- 저온유통에 부적합한 품목(예 양곡 등)취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되 사업비에는 포함하지 않음
-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가액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3. 근 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 '98 농산물 유통개혁대책(과제 4항 라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9	2000	2001	2002이후
사업량	70	20	10	10	30
계	50,425	13,125	7,300	7,500	22,500
보 조	10,085	2,625	1,460	1,500	4,500
융 자	30,255	7,875	4,380	4,500	13,500
지방비	-	-	-	-	-
자부담	10,085	2,625	1,460	1,500	4,50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1) 추진배경

- 농산물의 유통선진화를 위해서는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System)의 구축이 필수과제이며, 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됨
- 저온유통체계는 농산물의 생산·출하에서 소비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유통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및 유통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순환체계를 이루어야 효과적임
- 따라서 '98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99년부터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생산·출하단계에서 소매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과 유통인 및 유통법인을 대상으로 지원

2) 지원대상자

- 주산지 생산자조직 : 농협지역조합,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 ※ 미곡생산자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전업농, 후계자)
- 민간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제17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 2년이상 농산물산지유통업에 종사한 농안법에 의거 등록된 수집상
 - 농안법 27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수집상이 설립한 상법 제170조의 회사(합명, 합자, 주식, 유한)
 - 산지유통센터 사업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영점형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억원이상의 법인(대도시 중·대형수퍼마켓)
 - 물류센터 운영업체
 - 농산물 수출전문업체 : 년 100만불이상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 ※ 단, 사업초기인 2000년까지는 농협위주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농협의 수요가 부진할 경우 타 지원대상자에게도 지원

3) 시설별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 시설별 규모는 사업능력 및 입지여건, 취급품목 등에 따라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가능[단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공조냉동기계설비·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또는 기계설비기술사사무소)의 검토를 받아 조정]

※ 지원 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 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 첨부

※ 개별시설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예냉시설-저온저장고-냉장탑차 등으로 저온유통체계가 구축될 경우는 개별시설 지원도 가능함)

(가) 농어가 저온저장시설(이동식 컨테이너식 저온저장고)

- 5평형 (12백만원/대)
- 10평형 (22백만원/대)

(나) 냉장탑차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다) 저온저장고 (2.7백만원/평)

(라) 예냉시설

- 수냉식 (100백만원/기)
- 진공식 (500백만원/기)
- 차압통풍식 (3.5백만원/평)

4) 지원조건 및 기준

※ 상기 시설·장비 이외에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설도 지원가능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고는 특별한경우(물류센터 등) 외에는 반드시 산지에 설치
- 보조율 : 국고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나. 2000년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합계	사업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10	7,300	5,840	1,460	4,380	-	1,46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확충 사업

○ 2000 사업신청기간(추가신청)

- '99.12.31까지(읍·면·동→시·군), 2000.1.20까지(시·군→시·도),
2000.2.10까지(시·도→농림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설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지원대상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02-500-2671~2)
- 시·도 : 농산유통과(농산지원과, 유통특작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유통특작과, 지역경제과)

다. 지원대상 선정

○ 선정기준

- 공동출하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단체·조직, 예냉시설이 특히 필요한 품목을 취급하는 조직, 물류센터·백화점·대형거래처 등 전속거래처, 기존 유통시설을 보완하거나 개축하는 사업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시설이나 장비를 지원받은 개인이나 조직 및 법인은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배제
-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는 기존의 저온저장고 또는 방열창고를 개축하는 사업자를 우선 고려
-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중도포기함으로써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자를 엄선

○ 선정절차

- 정부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시·군·자치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사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계획을 확정

○ 사업시행

- 사업추진 세부실행계획 승인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지 1의 건설추진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에게 사업계획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에 의거 처리
 -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계획변경, 사업자 변경 : 장관승인
 - ├ 지원금액내에서의 계획변경, 사업장 변경, 사업장 변경 : 시·도지사의 승인
 - └ 대표자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승인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 설계도를 참고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협중앙회 또는 전문기관(농촌진흥청기계화연구소, 농어촌진흥공사,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건축사 사무소 등)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역여건에 맞도록 설계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건물은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감리업체가 시행한다.

- ※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의 정의와 설계·감리업무 수행가능 근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 ※ 예냉시설 중 외국산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만 받도록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은 활용일지 등을 작성토록 지도·감독
- 사업자는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 사업자가 본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은 본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 공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주요기계, 장비	구입일	7년간	

나. 보고 및 기타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서식 : 별표 I)은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설물 활용실적을 사업실시 익년도부터 3년차까지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서식 : 별표 II)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시·도를 경유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른다.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설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 2001. 1. 20까지(신청자→읍·면→시·군), 2000. 2. 28까지(시·군→시·도), 2000. 3. 31까지(시도→농림부)

나. 신청대상자(미곡생산자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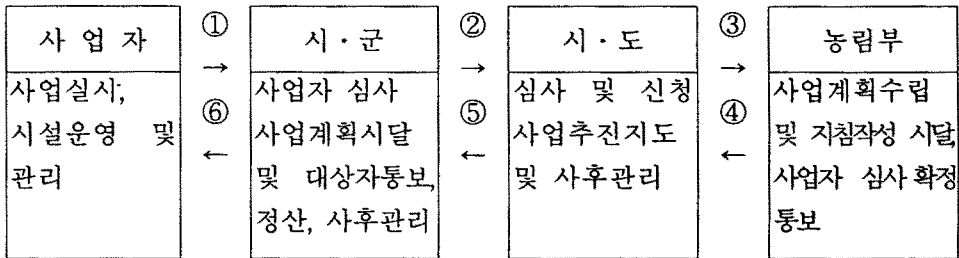
- 주산지 생산자조직 : 농협지역조합,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 농업인(전업농, 후계자)
- 민간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제17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 2년이상 농산물산지유통업에 종사한 농안법에 의거 등록된 수집상
 - 농안법 27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수집상이 설립한 상법 제170조의 회사(합명, 합자, 주식, 유한)
 - 산지유통센터 사업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영점형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억원이상의 법인(대도시 중·대형수퍼마켓)
 - 물류센터 운영업체
 - 농산물 수출전문업체 : 연 100만불이상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다. 지원기준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고는 특별한 경우(물류센터 등) 외에는 반드시 산지에 설치
- 보조율 : 국고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라. 신청절차

- 정부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시·군·자치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①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보조금 신청
- ② 사업자 심사 및 추천, 사업추진 실적보고, 정산실행결과보고
- ③ 사업자 심사 및 추천, 사업추진실적 보고, 정산결과보고
- ④ 사업지침 시달, 사업자 확정통보, 보조금 배정
- ⑤ 사업자 통보, 보조금 배정, 추진상황 지도점검
- ⑥ 사업자 통보, 보조금 지원, 추진상황 지도점검, 사후관리

마.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증빙서류(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정관, 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의제), 사업예정부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1/5,000축적), 자부담조달계획서(조달형태: 출자, 융자등, 제시재력 명세:예적금잔액증명, 보증기관동의서, 부동산등), 대표자 이력서, 지원대상자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일반사업자에 한함)
-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및 농산물 취급실적 입증자료, 직영점·가맹점 현황(민간유통업체에 한함)

【별지 제1-1호서식】

농산물저온유통 기반확충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가. 조직현황

조직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균	최고	최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1. 상표명 : ○○ 딸기, ○○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2.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등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설	저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조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을 기재 - 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60%)	자부담 (20%)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부지 구입비는 제외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 저온저장고						
- 컨테이너식 저온저장고 (평형)	동			- 저장능력 /일		
- 저온저장고 (평형)	동			- “		
○ 예냉시설						
- 차압통풍식 (평형)	동			- “		
- 수냉식 (평형)	기			- “		
- 진공식	기			- “		
○ 냉장탑차 (톤)	대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발 주 :
- 착 공 :
- 준 공 :

4. 시설 활용계획

가. 시설건립후 출하경로

(예시) 수확 → 집하장 → 예냉(식) → 저온저장고 → 냉장탑차운송
→ 출하(양재, 창동, 청주물류센터/법정도매시장 등)

나. 시설별 활용계획

구 분	방식, 규모	처리품목	주출하시기	1일취급대상 물량 (톤)	1일평균처리 계획 (톤)	총처리계획 물량 (톤)
예냉시설	(식)					
	(평)					
저온저장고	평					

다. 월별 처리계획

시설	품목	처리물량(톤)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냉시설														
저온창고														

라. 시설설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별표 I 】

연도/분기 저온유통 기반확충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업자명	지역 (시·군·읍·면)	사업비 추진계획						사업추진실적						비고	
		지원내역		사업비 집행계획				지원내역		사업비 집행실적					
		시설명	규모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자부 담	시설명	규모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자부 담		

- 주) 1. 시설명과 규모는 지원시설과 수량을 기재
 2. 추진실적 부진 및 문제점 발생사업자는 사유와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첨부

【 별표 II 】

연도, 반기 저온유통 기반확충시설·장비 활용실적 보고

사업지 현황			지원내역			사업비(백만원)				활용실적				비고
사업자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년도	지원시설	지원규모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품목	처리량 (톤)	활용기간	활용일수	

주) 활용기간은 연도 월 ~ 월로 기재하고, 활용일수는 기간동안 실제 활용일수를 기재

28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 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장과(과장 하영효, 행정사무관 이학주, 이희태, 정현출)입니다.

I.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1. 목 적

- 농수산물의 대량·신속한 유통체계 구축
- 농수산물 유통비용절감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하여 운영의 공익성 제고
- 도심지 재래시장 이전으로 교통·환경문제 해소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전국 주요도시에 2001년까지 32개소의 도매시장 건설
- 현재 건설중인 도매시장의 추가건설을 지양
-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5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98까지	'99	2000예산(안)	2001~2002	합 계
사업량		18	(12)	(8)	(4)	32
사업비	계	1,179,981	133,594	42,966	79,894	1,436,435
	국고보조	380,646	96,035	30,078	17,059	523,818
	지방비	799,335	37,559	12,888	62,835	912,617

주) ()는 계속사업지구수임

5. 2000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시)
- (2) 지원기준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3) 지원내용 :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건물건축비

<부지매입비>

- ①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
- ②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비(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등)
- ③ ①~②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물건축비>

- ①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보일러실 등)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 ② 토지정리공사비
 - ③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 경비
 - ④ 전신전화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⑤ 감리비
 - ⑥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내용은 『정부예산편성기준』의 세출과목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참조

(4) 2000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8	42,966	30,078	-	12,888	-
서울서남	1	4,928	3,450	-	1,478	-
인천삼산	1	8,921	6,245	-	2,676	-
광주제2	1	7,143	5,000	-	2,143	-
대전노은	1	1,208	846	-	362	-
원 주	1	4,405	3,084	-	1,321	-
순 천	1	3,284	2,299	-	985	-
구 미	1	10,220	7,154	-	3,066	-
마 산	1	2,857	2,000	-	857	-

- 주) 1. '99년도 이월예산은 제외
2. 지방비는 농림부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금액임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02) 500-2675]
- 특별시·광역시·도 : 농수산물유통담당부서
- 시 : 농수산물유통담당부서

(3) 대상자 선정

- 특별시·광역시·일반시의 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 농림부는 주변의 농수산물유통시설배치 실태와 농수산물 유통량 등을 감안 국고보조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 정부가 건설목표로 하는 32개소의 도매시장이 개장 운영중이거나 건설공사중에 있어 2000년도중 추가건설계획은 없음

(4)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도매시장건설 및 개장업무편람 참조)

① 사전 조사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 기존 유통체계 조사·분석
 - 반출입 현황, 기존도매시장 현황, 소매시장 현황 등
-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조사 연구
 - 사업조사연구 : 인구, 교통계획, 주요 도로망, 입지, 자연환경 등
 - 규모, 위치 및 투자비 추정
- 사업계획에 대한 정책결정
- 관계기관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보조사업 결정 등)
 - 국고예산 편성으로 사업계획 확정

② 기본계획 수립

- 실무작성반 편성 : 시청 담당과
 - 건설에 따른 적정 상근인원 확보 (도시계획, 건설기술직 포함)
- 추진위원회 구성
 -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지역 관련 단체장, 기타 농수산물 유통 분야 전문가, 시장관계자 등으로 구성

- 전문기관 용역의뢰 :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확정
 -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 및 용지확보
- ③ 도매시장 건설 추진 전담기구 발족
- 시장 건설추진반과 관리운영추진반으로 구분
 - 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
 - 시설물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
 - 공사 발주 및 추진
 - 시장건설 및 개장
- ④ 도매시장 개장준비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추진)
- 도매시장 관리운영계획서 및 업무규정 작성
 - 도매시장 관리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포함하되, 특히 도매시장법인(또는 도매인)이 하역료를 부담토록 조치(보조금교부 조건 참조)
 - 도매시장 개설 허가권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승인을 득한 후 확정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및 모집
 - 도매시장개설구역내 유사시장 흡수방안 등 정비계획 병행 추진
 - 투명한 공개모집 절차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마련
 - 입주대상 도매시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 도매시장 홍보 추진
- ⑤ 도매시장 개장 운영
- 공사준공
 - 관리부서에 시설인계 및 시장개설 허가
 - 도매시장 관리조직 입주
 - 도매시장 관련조직 입주 및 업무수행 준비
 - 개장운영 초기 지도
 - 공정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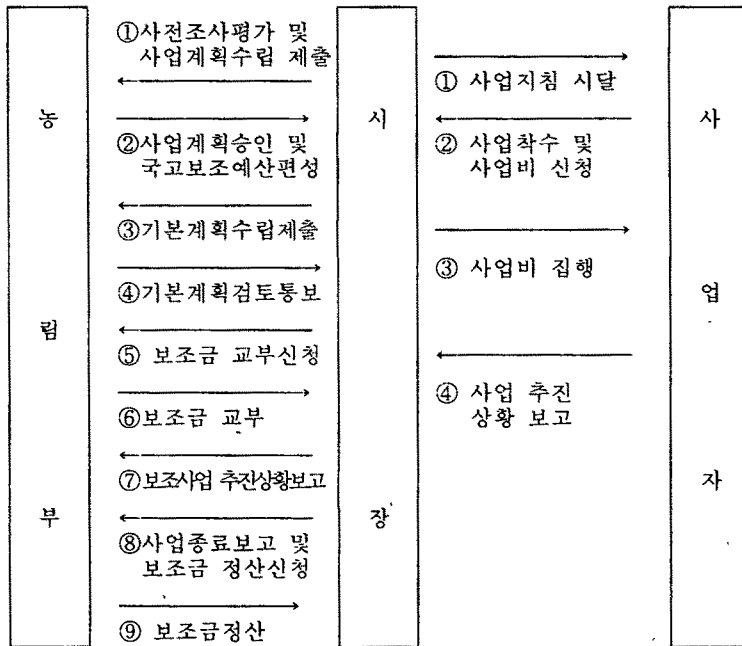
(나) 사업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도매시장 건설 위치, 사업비, 주요시설물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도매시장의 주요기능이 도매거래이므로 도매기능 수행에 저해되는 관련 상품동이나 직판시설 등은 최대한 억제될수 있도록 계획변경 등 조치
 - 관련상품동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경매동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 (청과부류만 취급하는 도매시장의 경우 수산, 축산, 양곡, 화훼 등) 을 소매상인이 구색을 갖추어 도매로 구입(판매) 할 수 있도록 설치 하되, 규모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함
 - 직판시설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도매시장과 구역을 완전히 분리 하여 순수지방비로 추진
 - 각종 사무실이나 회의실 면적을 최소화하여 개장후 유휴시설 방지

(다) 사업비(보조금)신청 및 배정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하므로 보조금의 소요가 있을 시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

(라) 사업시행 체계도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시장)는 법령의 규정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건물 및 주요설비	개설	폐쇄		

(2) 보고·기타

- 보고체계 : 시 → 시·도 → 농림부
-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건설 추진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5일
까지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당해년도 정산보고 : 당해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지역은 익년도 2월말
까지 보고
 - 최종 정산보고 : 시설물이 완공되어 개장하는 지역은 사업완료 즉시
연도별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
- * 최종정산보고는 최종 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가 공사를 하므로써 추가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국고보조
금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6. 2001년도 사업(비)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사업신청기관 : 시(특별시, 광역시, 시)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정부가 건설목표로 하는 32개소의 도매시장이 개장운영
중이거나 건설공사중에 있어 2001년도중 추가건설계획은 없음

다. 사업비 신청 : 2000년 현재 국고예산을 지원받아 도매시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중에서 2000말까지 국고예산배정이 종료되지 않은 시(市)

○ 신청절차 : 시→시·도→농림부

○ 신청서류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 국고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II. 농산물공판장 건설

1. 목 적

- 산지농산물의 처리능력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
- 공정거래로 상거래 질서 도모 및 출하농업인 편의 도모
- 산지농산물 기준가격 형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주요 농산물산지에 2002년까지 38개소의 농산물공판장 건설
-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지경매식집하장중 공판장 전환 희망지역 우선 선정
- 2002년이후 공판장 신규건설은 지양하고 운영중인 공판장 역할 재정립 및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3. 근거법령

-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8까지	'99	2000	2001~2002	합 계
사 업 량		33	2	1(1)	2(1)	38
사 업 비	계	101,520	4,477	2,800	7,650	116,447
	국고보조	31,502	1,780	1,120	3,060	37,462
	지방비	15,458	445	280	765	16,948
	국고용자	16,058	1,362	840	2,295	20,555
	자부담	38,502	890	560	1,530	41,482

주) 사업량중 ()외서는 계속사업 개소수임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공판장건설을 추진하는 농협회원조합
- (2) 지원기준 :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국고융자 30%, 자담 20%
- * 융자조건 : 연 5.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 채권보전 : 농협 여신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함
- (3) 지원내용 : 공판장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물건축비

<부지매입비>

- ①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
- ②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비(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등)
- ③ ①~②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물건축비>

- ①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보일러실 등)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 ② 토지정리공사비
 - ③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 경비
 - ④ 전신전화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⑤ 감리비
 - ⑥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내용은 『정부예산편성기준』의 세출과목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참조

(4) 2000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광주원협	1	2,400	960	240	720	480
여수원협	1	400	160	40	120	80
합계	2	2,800	1,120	280	840	560

- 주) 1. '99 이월예산은 제외
2. 광주원협은 화해공판장임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02) 500-2675]
* 화훼공판장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02) 500-2685]
- 특별시·광역시·도 : 농수산물유통담당부서
- 시·군 : 농수산물유통담당부서

(3) 대상자 선정

- 기존 농산물유통시설이 없고 농협회원조합장이 농산물공판장 건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장·군수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 농림부는 주변의 유통시설배치 실태와 농산물유통량 감안하고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고보조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 투자효율성을 위해 산지경매식 집하장중 공판장 전환희망지역 우선 지원
- 화훼공판장은 과수화훼과에서 별도 선정 추진

(4)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① 공판장건설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② 관계기관 사업계획 제출
- ③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사업 결정
- ④ 건설공사 착수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마무리
- ⑤ 건설공사 착공 및 개장준비
- ⑥ 공판장 개장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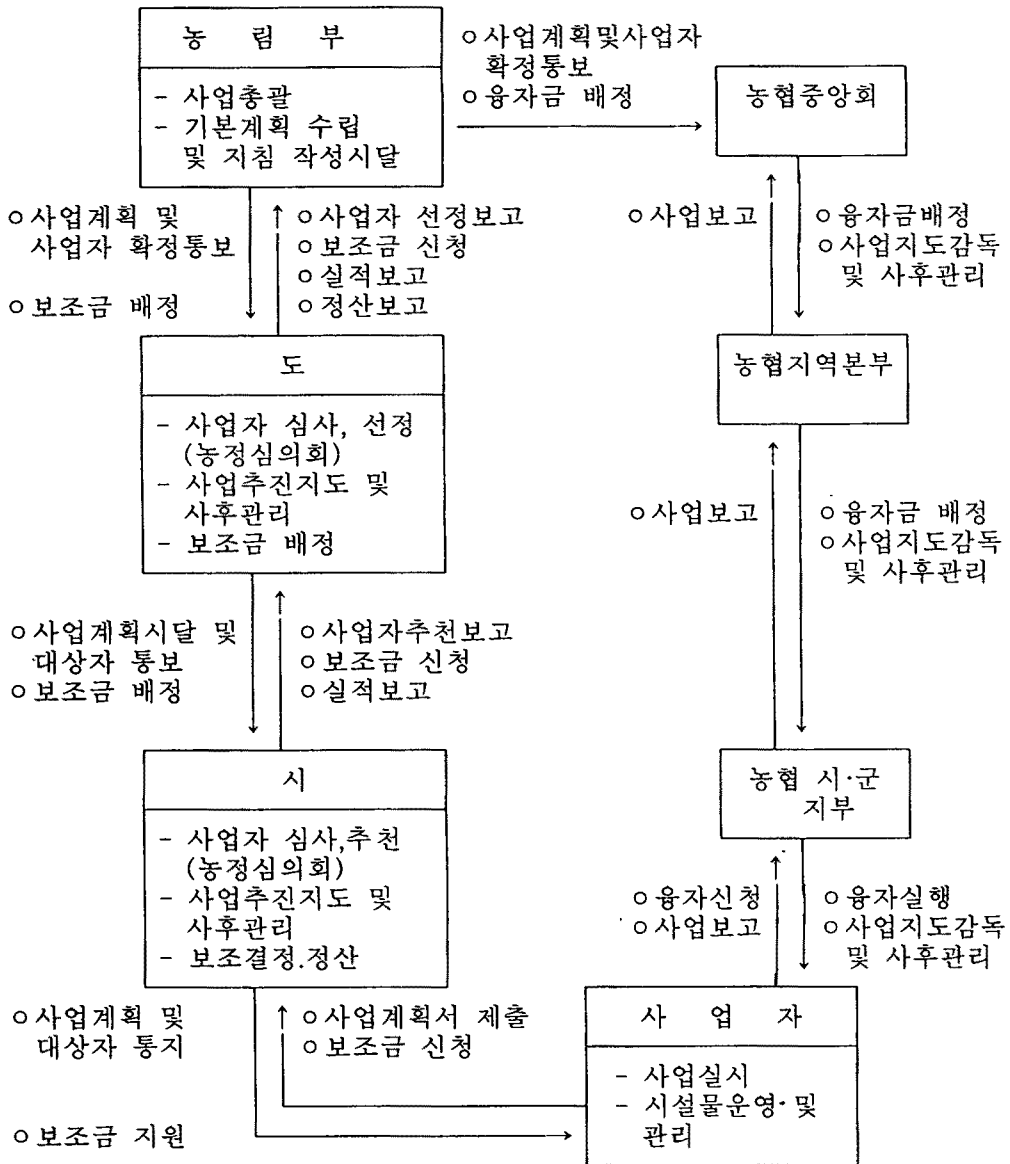
(나) 사업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공판장 건설 위치, 사업비, 주요시설물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사업비(보조금)신청 및 배정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하므로 보조금의 소요가 있을 시 관련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절차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농림부
- 보조금 교부결정 : 도지사(시장·군수)
- 보조금 배정 : 농림부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 * 보조금은 당해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배정권자는 이미 지출한 증빙서류나 기성고 등의 사업실적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배정하므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해야 한다.

(라) 사업시행 체계도(공판장)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시장, 군수 또는 농협조합장)는 법령의 규정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농산물공판장 부지, 건물 및 주요설비	개 설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해당조합이 하고, 도지사 및 농협 지역본부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 도지사와 농협중앙회장은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도지사의 승인없이 공판장을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보고·기타

- 보고체계 : 보조사업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부
-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건설 추진실적 : 분기별 건설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5일 까지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당해년도 정산보고 : 당해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지역은 익년도 2월말 까지 기일엄수하여 정산보고
 - 최종 정산보고 : 시설물이 완공되어 개장하는 지역은 사업완료 즉시 연도별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
 - * 최종정산보고는 최종 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가 공사를 하므로써 추가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국고 보조금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화훼공판장 건설사업은 사업담당부서인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에서 본 지침에 따라 추진

6. 2001년도 사업(비)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규 농산물공판장건설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신청서류 : 농산물공판장건설 세부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거 주변 농산물유통시설 배치실태와 유통량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선정

다. 사업비 신청 : 2000년도에 신규공판장 건설지역중에서 2000년말까지 국고예산 배정이 종료되지 않은 지역과 2001년도 신규사업 선정 지역

- 신청절차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신청서류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 국고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은 2개년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되 1차년도에는 부지 매입비+건축공사비30% 해당액을, 2차년도에는 건축공사비 잔액을 계상

Ⅲ. 농산물유통시설보완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시설을 보완하여 시장기능 저하 방지
-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가격정보의 실시간 분산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전국 18개도매시장과 96개 농산물공판장의 시설을 '99년부터 2004년까지
년차적으로 보완
- 전국 공영도매시장 입주 법인에 대한 전자경매시스템(무선응찰·이동식)을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운영에 적극적인 도매시장법인 우선 지원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9조 및 제30조 제3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8까지	'99	2000예산(안)	2001~2004	합 계
합 계 (국고보조+국고용자)	-	14,226	6,469	77,750	98,445
○도매시장 시설보완	-	19,672	670	80,000	100,342
- 국고보조	-	13,768	469	56,000	70,237
- 지방비 (사업량)	-	5,904 (9)	201 (2)	24,000 (24)	30,105 (35)
○공판장시설보완	-	654	-	22,280	22,934
- 국고보조	-	261	-	8,920	9,181
- 지방비	-	65	-	2,228	2,293
- 국고용자	-	197	-	6,680	6,877
- 자담 (사업량)	-	131 (3)	- (-)	4,452 (40)	4,583 (43)
○전자경매시스템도입	-	-	12,000	12,300	24,300
- 국고보조	-	-	2,400	2,460	4,860
- 지방비	-	-	2,400	2,460	4,860
- 국고용자	-	-	3,600	3,690	7,290
- 자담 (사업량)	-	- (-)	3,600 (40)	3,690 (41)	7,290 (81)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도매시장 시설보완 :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을 확충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시(市)
- 공판장 시설보완 : 공판장을 개설한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청과부류 공판장에 한함)
- 전자경매시스템도입 :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에 입주한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청과부류에 한함)

(2) 지원내용

- 도매시장 및 공판장 : 부족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쓰레기처리시설설치, 기타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
 - 단, 건물방수공사, 문짝 및 환기창 보수, 지붕보수, 건물도색, 기자재구입 및 수리 등 경미한 사항은 농안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추진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전자경매시스템 구입비
 - 1개 도매시장법인당 총사업비 3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
 - 구성내역 : 주컴퓨터, 무정전시스템(UPS), 출력모니터(법인사무실용 제외) 이동식경매대, 응찰기, 무선LAN장비, 수신기 구입·설치비 등

(3) 지원기준 및 조건

<도매시장시설보완>

- 지원기준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공판장시설보완>

- 지원기준 : 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10%, 국고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상환
 - * 채권보전 : 농협의 여신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함

<전자경매시스템>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국고융자 3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상환

(4) 2000년도 지역별 사업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 담
합 계	42	12,670	2,869	2,601	3,600	3,600
<도매시장 시설보완>	2	670	469	201	-	-
○ 대전오정동도매시장	1	300	210	90	-	-
- 후숙장 및 과일보관창고 증축		300	210	90	-	-
○ 춘천도매시장	1	370	259	111	-	-
- 쓰레기중간처리시설 설치		120	84	36	-	-
- 저온저장고 신축		250	175	75	-	-
<공판장 시설보완>			대상지역	없음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40	12,000	2,400	2,400	3,600	3,600

주)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은 사업지역 미선정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사업시행기관

- 도매시장 시설보완 : 시(특별시, 광역시, 시)
- 공판장 시설보완 : 시·군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시(특별시, 광역시, 시)

(3)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02) 500-2675]
- 특별시·광역시·도 : 농수산물유통담당부서
- 시·군 : 농수산물유통담당부서

(4) 대상자선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지역별로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안 통지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도매시장·공판장 시설보완

- 시설부족 및 노후화로 시장기능상 장애가 현저한 경우 우선 지원
- 냉동·냉장시설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은 물류효율화 증진차원에서 지원
-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의한 쓰레기 중간처리시설
-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필요시설
- 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한 개설자의 관리노력 반영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취급규모 등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경매시스템 운영 여건
- 도매시장법인의 사전준비 실태
 - 직원교육 및 훈련, 주변기자재 확보실태 등
- 도매시장법인대표의 전자경매 실천의지

(5)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절차

- 도매시장 시설보완[별지 제4호 서식] : 시 → 시·도 → 농림부
- 공판장 시설보완[별지 제4호 서식]
 - 농협중앙회 : 시·도 → 농림부
 - 농협회원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별지 제6호 서식] : 시 → 시·도 → 농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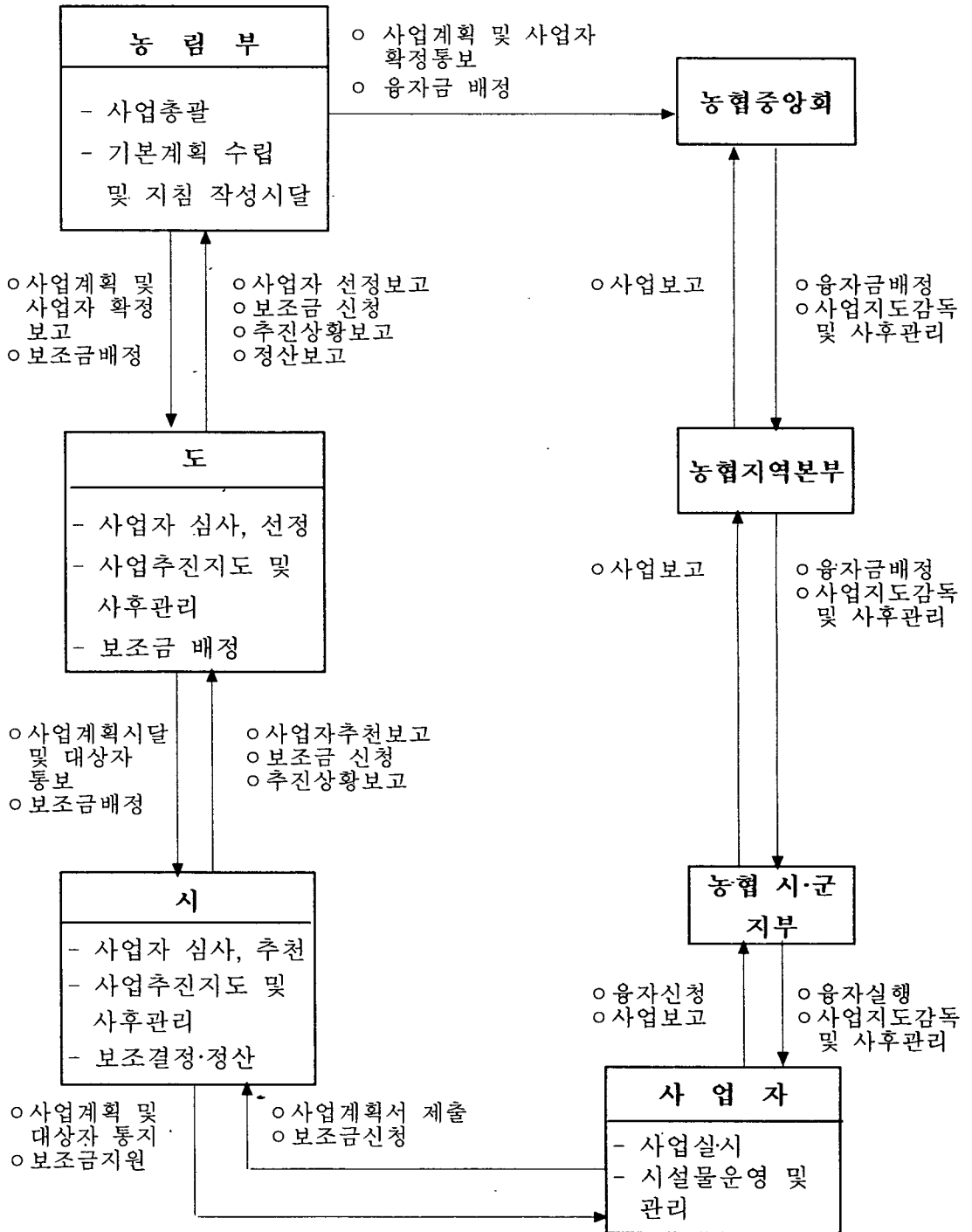
(나) 사업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시설보완 대상사업 위치, 사업비, 시설보완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사업시행체계도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시설보완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I),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II)과 동일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라) 사업비(보조금·용자금) 신청 및 지원방법

- 보조금(용자금) 신청 : 보조금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하므로 보조금의 소요가 있을시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도매시장 시설보완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
 - 공판장 시설보완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보조금 교부결정 : 시·도지사(시장·군수)
 - 보조금배정 : 농림부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 농협회원조합장 → 시·도지사 → 농협중앙회장
 - 전자경매시스템도입 : 농림부 → 시·도지사 → 시장 → 사업자(도매시장법인)
- ※ 보조금은 당해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므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배정권자는 이미 지출한 증빙서류나 기성고 등의 사업 실적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배정하므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해야 한다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시장, 군수, 농협조합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사장)는 법령의 규정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구 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도매시장 시설보완	부지, 건물 및 주요설비	개설	폐쇄		
공판장 시설보완	“	“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전자경매 시스템도입	전자경매시스템 설비	구입	정부물품 내용연수 준용	“	○ 성능개선 등을 위한 장비교체는 가능 ○ 법인교체는 시설 장비를 승계함

- 도매시장, 공판장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시장(도매시장법인) 또는 해당조합이 하고, 시·도지사 및 농협 지역본부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 시·도지사와 농협중앙회장은 공판장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등을 할 수 있다
- 공판장, 도매시장법인은 시·도지사 또는 개설자의 승인없이 처분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나. 보고·기타

○ 보고체계

- 도매시장 시설보완 : 시 → 시·도 → 농림부
- 공판장 시설보완
 - 회원조합 공판장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중앙회 공판장 → 시·도 → 농림부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시 → 시·도 → 농림부

○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추진실적 :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고
 - 도매시장·공판장 시설보완 【별지 제5호 서식】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별지 제5호 서식】
- 최종 정산보고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보고. 단, 이전·확장사업등으로 2개년 이상 계속사업지역은 매년도 마다 익년도 2월말까지 보고하고 최종정산보고는 사업완료 즉시 사업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
- * 최종정산보고는 최종 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가 공사를 하므로써 추가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국고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6. 2001년도 사업(비)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 【별지 제4호 서식】 : 시(특별시, 광역시, 시)
-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 【별지 제4호 서식】 : 시·군(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사업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 시(특별시·광역시·시)

나. 신청자격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 :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을 확충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시
-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 : 공판장을 개설한 시·군(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에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시

다. 신청절차

-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비 : 시 → 시·도 → 농림부
- 공판장 시설보완사업
 - 농협회원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부
 - 농협중앙회 : 시·도 → 농림부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시 → 시·도 → 농림부

IV. 농산물 출하촉진자금 지원

1. 목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장 거래제를 정착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산지집하와 대금결제가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 등에 출하선도 자금과 대금결제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출하 유도
- 농산물 수집상의 안정적인 출하조절 및 규격출하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27조의 2, 제4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지원대상	'92-'95	'96	'97	'98	'99	2000계획
계	263,172	126,302	124,848	124,134	95,554	83,117
도매시장법인	139,184	49,400	52,875	47,744	35,638	23,910
농협 공판장	119,703	71,100	68,500	74,516	54,516	54,000
수 집 상	4,285	5,802	3,465	1,874	6,400	5,207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배 경 : 도매시장과 공판장에 농산물 출하를 촉진시키고 상장거래 정착지원

(2) 사업내용 : 소비지 유통개선

○ 재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자금의 종류

- 출하선도금 :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이 생산자(생산자단체포함) 및 등록된 수집상과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대금결제 자금
- 수집상 출하선도자금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농수산물 수집상의 안정적인 출하를 위한 출하조절 및 선도용 자금

(3) 사업규모 : 사업실적에 따라 읍자실행기관에서 결정

(4) 지원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제외)의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포함)

- 차등지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와 포장화사업추진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법인,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효과가 없는 법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지원중단기간에 해당 되는 법인

○ 농협중앙회 공판장 및 회원조합 공판장

- 차등지원 : 농림부가 정한 「농산물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운영지침」에 의거 차등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공판장,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 효과가 없는 공판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등록된 수집상

(5) 지원조건

구 분	융자기간	지원금리
○ 농협공판장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5.0%
○ 도매시장법인 - 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	5.0% 8.0%
○ 농수산물 수집상 - 출하선도자금	1년 이내	8.0%

(6) 2000년도 사업비 내역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안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83,117	83,117	-	83,117	-	-
도매시장법인	-	23,910	23,910	-	23,910	-	-
농협공판장	-	54,000	54,000	-	54,000	-	-
수 집 상	-	5,207	5,207	-	5,207	-	-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융자실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3)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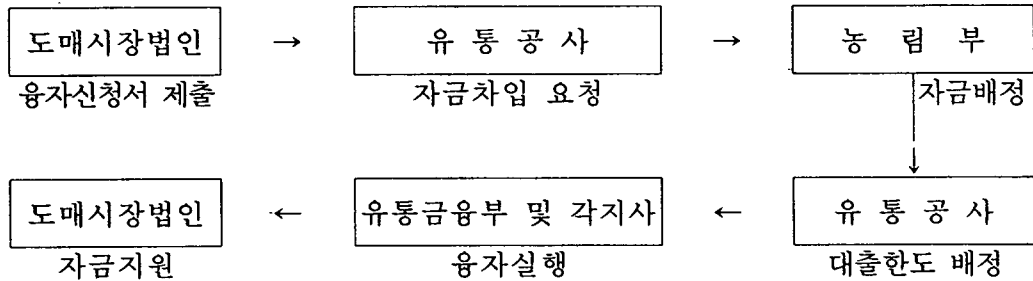
-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출하촉진자금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02)504-9415]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컨설팅처[(02)790-8012]
- 농 협 : 사업장 지원부[(02)397-5764]
- 수집상 출하선도금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02)504-9411]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컨설팅처[(02)790-8012]

(4) 융자신청 및 실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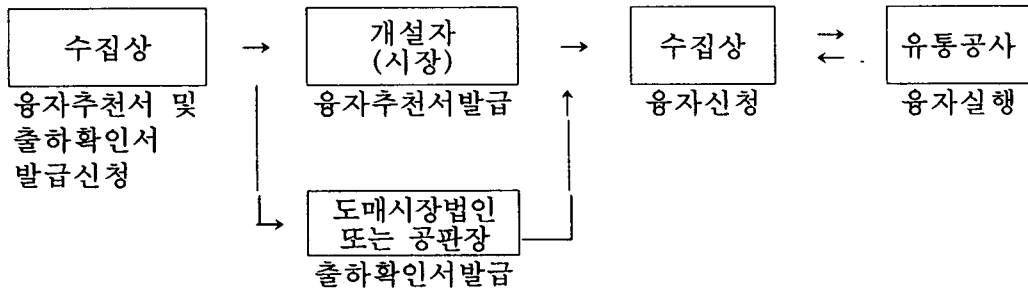
- 자 격 : 융자실행기관이 별도기준에 의함
- 절 차 : 지원대상자가 융자실행기관에 신청
- 구비서류 : 융자실행기관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함

(5) 사업시행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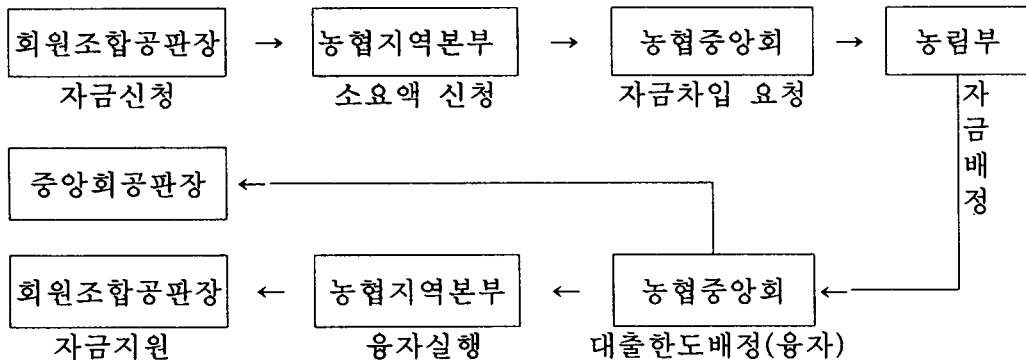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수집상 출하선도자금>



<농협공판장 출하촉진자금>



(6) 융자액 산정

(가) 도매시장법인

- 선도금 : 법인별 전년도 산지 선도금 운용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비율 산정
- 대금결제자금 : 상장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연 소요액의 1/24)을 기준으로 배정

(나) 농협공판장

- 농림부가 정한 「농산물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운영지침」 과
- 융자대상공판장의 실제 산지선도금 및 대금결제자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하여
- 생산농가에 대한 산지선도금 100%와 상장경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 (연 소요액의 1/24)의 100%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가 배정비율 산정
 - 농산물유통정책 목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부와 협의 배정비율 조정 가능

(다) 수집상

- 법정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출하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 배정
- 단, 개인은 150백만원, 법인은 3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 행정사항

(1) 융자신청 및 사후관리

- 도매시장법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공판장 : 농협중앙회
- 수집상 : 농수산물유통공사

(2) 보고·기타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한다.
- 융자실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은 융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타 용도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림부에 보고한다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포함)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컨설팅처
 -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원사인 경우에는 동 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장이 일괄 신청하며, 비회원사일 경우는 직접 신청
- 농협공판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장지원부
 - 농협중앙회 산하 공판장은 직접, 회원농협공판장은 농협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신청
- 수집상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컨설팅처

나. 신청자격 : 사업개요의 지원대상자에 한함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체계도 참조

라. 구비서류 : 읍자실행기관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건설 국고보조금 신청서

1. 사업개요

- 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m'(평), 건물 m'(평)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국고융자 , 자부담)
- ○○년도 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국고융자 , 자부담)
- 사업기간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지방비에 대한 차입계획이 있을 경우 기재

3. 지역별 장기유통시설 확보 및 배치계획

- 장기 유통시설 확보계획
 - 도매시장, 공판장 확보계획
- 장기유통시설 배치 및 물량처리계획

4. 지역 농수산물유통시설 현황

부류별	시 장 별	시 설		거래실적(〇〇년)	
		대 지	건 물	물 량	금 액
		m ² (평)	m ² (평)	톤/년	백만원/년
계					

※ 시장 :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식집하장, 유사도매시장별로 작성

5.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예산확보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
계															

나. 당해년도 사업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사업비집행액	비 고
계			

다. 예산요구년도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소요액	비 고
계			

6. 기타

- 도매시장 건설 연구용역 추진상황
 -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곳은 연구보고서 및 내용 (용역기관, 용역비 등)
- 총사업비 증가사유 작성
 - 건설중인 지역의 총사업비 증가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작성할 것

7.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공판장 건설 세부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위 치 : (위치약도 첨부)
- 사업규모 : 부지 m'(평), 건물 m'(평)
-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보조 , 지방비 , 국고융자 , 자담)
 - ○ ○년도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 사업추진 조합명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내 용	투자(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계							

3. 지역별 유통시설 및 농산물 생산현황

가. 지역유통시설 현황

부류별	시 장 별	시 설		거래실적(년)	
		부 지	건 물	물 량	금 액
		m ² (평)	m ² (평)	톤/년	백만원/년
계					

※ 시장별 :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식집하장, 유사시장 별로 작성

나. 주요품목별 생산 현황 (5개년)

(단위: 톤)

품 목					
계					

※ 품목은 청과물(과일, 채소)을 10개품목 이상으로 함

4.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 시행계획

가. 공판장 건설사업의 필요성

※ 신청당시의 인구수등 지역 유통여건을 포함한다

나. 총사업비 산출

	규 모	단 가	소요액	비 고
부 지 건 물	평			
계				

※ 건물에 따라 구체적인 시설명과 규모를 별지로 작성

다. 취급물량 추정

	1 일 평 균		연 평 균		비 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과일 채소					
계					

라. 연차별 수지전망 (개장후 5년간 손익 추정)

수 익 비 용 순손익					

마. 일정별 추진 계획(구체적으로)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소요예산 등)

바. 사업예정지의 타당성 검토

(1) 입지선정 사유

(2) 입지 형태별 면적 현황

(3) 부지구입여건 및 관련 법령상 설치 가능성 검토

(4) 대체입지 선정 가능성 검토

※ 사업예정지의 지적도면 첨부

5. 기타 참고자료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 추진상황 보고

(○○년도 ○○분기)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규모 : 부지 m'(평), 건물 m'(평)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국고융자 , 차담)

2. 연차별 사업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 산 상					시 자 체 계 획			
	계	국 고	지 방 비			계	국 고	시 비	농안기금
			계	도 비	시 비				
계									

* 과거년도는 실적, 당년도와 이후년도는 계획을 기입

3. 주요시설물 배치 및 관리·운영방안

- 주요시설 배치계획
 - * 모든 시설물을 기록하고 시설물전체합계는 건물면적 전체와 일치되도록 작성
- 관리·운영방안
 - 관리운영체계 :
 - 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 : 부류별 법안수와 법인명
 - 하역비 부담주체 :
 - 거래관계자 현황 : 중도매인(명), 매매참가인(명), 경매사(명), 수집상(명)

4. ○○분기 일자별 추진상황

* 분기중 일자별 추진상황을 자세히 정리

5.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

재원별 사업비 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확 보					집 행				
	계	국 고	지 방 비			계	국 고	지 방 비		
			계	도 비	시 비			계	도 비	시 비
누 계										
전분기말										
금분기										

<사업비 미확보사유 및 대책>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적 요	예 산 액	전분기말 집행액	금분기 집행액	집행누계액
계				

주) 적요는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기타 등으로 세부하여 기재

6. 향후계획

- 다음분기 추진계획
- 사업종료시까지 계획

7.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농수산물유통시설보완사업 신청서

1. 기존 도매시장(공판장) 개요

- 위 치 :
- 규 모 : 부지 m'(평), 건물 m'(평)
-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국고융자 , 자담)
- 사업기간(개장일) :

2. 시설보완 사업개요(자세히 기재)

- 시설보완내용
- 필요성
- 소요사업비 및 산출근거
- 시설보완후 효과

3. 사업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소 요 액

4. 기타(문제점 등)

【별지 제5호 서식】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시설보완사업 추진상황

1. 사업개요

2. ○○분기 일자별 추진상황

3. 보조금 집행실적

가. 연도별(분기 보고시는 분기별로 작성), 재원별

(단위:천원)

연도별 (분기별)	예 산 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담

나. 세부내역별 집행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다. 향후추진계획 : 시기별, 비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4. 향후계획

- 다음분기 추진계획
- 사업종료시까지 추진계획

5. 기 타

- 최종 정산 보고시에는 세부내역별 집행조서와 증빙자료, 착공전·후 시설물별 사진 제출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사업계획서

1. 시장명 :

2. 현 황

○ 일반현황

법 인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FAX)	주 소

○ 기 타

법인명	지정기간	자본금	임 직 원			거래실적('99)	
			직 원 (임원)	전 산 담 당	경매사	물 량	금 액

○ 전산담당자 현황

법 인 명	일 반 현 황			대표 담당자 관련경력	주컴퓨터 사양
	인 원	성 명	연 령		

3. 사업계획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법 인 명	계(100%)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세부내역(별첨가능)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계					
H/W부문					
부대시설부문					

* 구성내역은 기본계획의 별첨 참조

○ 전자경매 확대 실시 계획

법인명	구 분		2001			
			1/4분기	2/4	3/4	4/4
	품목	총취급품목수(A)				
		전자경매 품목수(B) 및 품목명				
	전자경매비중(B/A)		%	%	%	%

○ 전자경매 정착방안

법 인 명	대 상	교 육 · 홍 보 계 획	
		도입전	도입후
	경 매 사 중도매인 출 하 주 기 타		

4. 추진 일정

○ 법인별로 사업착수에서 완공시까지의 구체적 일정 등

5. 기타사항

○ 지방비 확보 사항 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장과(과장 하영효, 행정사무관 남동익)입니다.

I.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 안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물류활동 및 상류활동을 종합수행하는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소비지 유통권 중심으로 설치
 - '99년도 신규 4개소는 공공유형으로 추진(지방자치단체소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운영)
 -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2개소 추진
- 도·소매가 가능하면서도 부지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입지에 우선 설치
 - 도심에서 10~20km 이내의 도시외곽 고속도로 I·C 인접지역
 - 토목공사비 절약이 가능하고, 필요시설의 단층배치가 가능한 지역
-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비절감형 구조로 설치 권장
 - 집배송장, 소매매장, 포장·가공실 및 저온창고 등 현대적 경향에 적합하게 설치
 - 사무실, 편의시설 등 영업활동에 직접 공하지 않는 시설은 최소 설치
- 운영주체에 의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일원화(임대 및 전대금지)하고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
 - 청과, 축산(정육); 수산(생선)등 주요 농수산물의 산지직거래 형태 운영
 - 가공식품, 특산식품 및 생필품 등도 일정비율 취급하여 농산물 수요창출 및 쇼핑편의 제공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 4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4-'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2003년
사업량		8	10	12	12	9	7
사업비	계	백만원 282,650	139,296	46,423	123,110	151,927	166,807
	보조	92,500	40,004	16,858	71,018	104,447	117,023
	융자	109,900	31,500	11,170	10,690	-	-
	지방비	-	-	-	17,757	40,964	49,784
	자부담	80,250	67,792	18,395	23,645	6,516	-

* 사업량은 계속지역 포함임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배경

- '94. 5 농안법파동에 따라 마련된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의 핵심과제로서 대도시외곽에 물류센터 건설결정
 - '99.10현재 4개소 개장, 11개소 추진중
 - * 종합유통센터 2개소(서울 상암동, 수원시) 포함
- '98 수립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하여 지원기준 조정
 - 2000년도 신규사업 2개소 추진예정

나) 자금지원 대상자

- 단독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 * 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지방공사, 공단이외에 출자출연법인(상법상회사)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컨소시엄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공동출자하여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다) 지원기준

- 단독추진

유 형	기 준		'99부터 적용
	'95~'96 신정지역	'97~'98 신정지역	
<공공유형> ·지방자치단체 단독 소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운영(분할운영금지)	부지구입비 : 70% 용자 건설공사비 : 70% 보조	50% 용자	총사업비 : 70% 국고보조 지방비 : 30%
		50% 보조	부지제공 : 지방자치단체 (부지평가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 추가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 국고보조
<생산자단체유형> ·생산자단체가 소유 및 운영	“	“	부지매입비 : 50% 용자 시설비 : 50% 보조
<전문유통업체유형> ·전문유통업체가 소유 및 운영	건설공사비 60% 용자		총사업비 : 80% 용자 (기존사업의 잔여사업비에도 적용)

* 용자조건 : 연리 4.0%(민간 5.0%), 5년거치 10년상환

- 컨소시엄추진

-- 각주체의 출자액을 그 주체의 총사업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단독 추진시의 지원조건을 각각 적용

라) 지원조건

- 농수산물 물류센터 시설기준 및 운영지침 준수
- 농수산물 물류센터 평가협조 및 평가결과 수용
- 기타 농림부장관의 운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시준수

마) 지원범위

□ 부지매입비

- 집배송장, 소매매장, 지원시설 등 설치용 부지매입비

□ 시설비

- 집배송장
 - 농산물(청과, 축수산물, 양곡) 취급용도로만 인정
 - 비농산물(가공식품, 일반식품, 특산식품, 생필품 등) 취급금지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의 합계가 연면적의 60% 이상일 것
 - * 연면적계산 : 옥내주차장, 별도도로된 쓰레기처리시설·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 제외
- 소매매장
 - 설치기준
 - 소매매장 면적이 전체매장(집배송장+소매매장) 면적의 50% 이하일 것
 - 비농산물 부류에 제공되는 면적이 소매매장 면적의 40% 이하일 것
 - 비식품(생필품) 매장면적이 소매매장 면적의 15% 이하일 것
 - 계산방법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 면적은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소포장·가공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제 매장으로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 필수지원시설
 - 규모 : 연면적의 15% 이하(기타 지원시설을 필수지원시설로 전용하여 초과하는 것은 가능)
 - 종류 : 소포장·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및 일반창고

○ 기타 지원시설

- 규모 : 연면적의 25% 이하
- 종류 : 물류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사무실, 편의시설 및 기타공간
 - 직원용 : 사무실, 전산실, 출하주 및 거래처상담실, 식당, 강당, 회의실, 강의실, 샤워실,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
 - 고객용 : 간이휴게실, 간이식당, 간이금융점포, 주차장 등
 - 기 타 : 품질관리실,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용역업체사무실, 공용면적 등
- ※ 옥내주차장, 별도로된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은 기타 지원시설 면적속에 포함되지 않음

□ 물류설비

○ 지원대상 : 물류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기계 및 장비

구 분	종 류	기 능
물류기계	지게차, 대차, 카고테이너, 파렛트	집배송장의 기계화.자동화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채소류 신선도유지 및 상품차별화
소포장·가공실	자동소분기, 삼면포장기, 수축포장기, 랩포장기, 파렛트랩핑기	부가가치창출 및 위생처리
축수산장비	자동라벨포장기, 현수시설, 절단기, 육절기, 고압세척기, 자외선소독기, 작업배	“
전산장비	주컴퓨터(서버), 팀 POS	전자수발주 시스템 구축

* 다만 업무용PC, 업무용 집기류, 주방기구 등 업무지원 장비는 제외

바) 사업계획 승인전에 이루어진 사전기성고

- 사전기성고 인정의 필요성
 - 사업승인 이후에는 대규모 부지구입이 어렵고
 - 인·허가, 설계 등 복잡한 사전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이므로
 - 사업기간 축소와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부담 우선 투입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정 필요
- 사전기성고 인정요건
 - 시점 :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부에 접수한 이후에 계약·착공 등이 이루어진것
 - 내용 : 지원대상시설 및 장비로서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것
 - 사전보고 : 공사의 필요성 및 공사내역 등을 사전에 신고
- 사후관리 및 목적외 사용방지
 - 미선정시에는 잔여공사를 전액 자부담으로 건설하고 사전기성고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지원금액이 물류센터 사업비 상환에 소요되는 증명서 제출(대출관계 서류 등)

마) 지원범위 초과시 대책과 예외

- 설치기준을 초과한 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산편성 및 사업비 정산의 대상이 아님)
예) ① 비농산물용 집배송장 설치
② 소매매장 설치기준 초과면적
③ 필수지원시설 허용기준 초과면적
④ 기타 지원시설 허용기준 초과면적
⑤ 공공유형의 분할임대면적
- 설치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이 가능한 것
 - 농림부장관이 입지, 상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
예) 취급부류, 매장면적변경, 지자체의 정책적 추진시설, 특수한 물류설비 등

2)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1	151,927	104,447	104,447	-	40,964	6,516
<계속지역>							
군 위	1	5,871	4,110	4,110	-	-	1,761
대 전	1	9,510	4,755	4,755	-	-	4,755
금 산	1	4,286	3,000	3,000	-	1,286	-
성 남	1	26,091	18,264	18,264	-	7,827	-
고 양	1	21,741	15,219	15,219	-	6,522	-
대 구	1	11,164	7,815	7,815	-	3,349	-
목 포	1	9,559	6,691	6,691	-	2,868	-
★수 원	1	13,769	9,638	9,638	-	4,131	-
★서울(상암)	1	28,507	19,955	19,955	-	8,552	-
2000년 신규 (2개소)	2	21,429	15,000	15,000	-	6,429	-

* 용자조건 : 연리 4.0%, (민간 5.0%) 5년거치 10년상환

★는 종합유통센터임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02-504-9415~6)
- 시 도 : 농산물유통과 또는 농정과
- 시군, 자치구 : 유통과 또는 산업과

3) 사업시행

가) 신규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장관은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물류센터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내역, 부지매입계획 및 건설비 산출내역을 포함한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공공유형은 시·도지사 경유), 단 건축설계가 늦어질 경우 늦어지는 사유와 건설비의 추정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건축설계 완료후 건설비를 포함한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을 검토하여 확정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이때 당해연도 지원계획도 함께 통보.
-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연도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월별·공종별사업추진계획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개산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85%이내 범위에서 개산금교부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계속지구 사업시행

- '99년 이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대상자는 2000년 1월 15일까지 2000년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개산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85%이내 범위내에서 개산급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사업비 연도말정산

-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의 연도말 정산은 시·도지사가 당해연도 12월 31기준으로 연도말 정산을 한후 그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생산자단체 등 기타 사업대상자는 연도말 정산은 사업시행자가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연도말 정산신청을 하여야한다
- '99이전 집행분의 사업비 정산
 - 지방자치단체의 '99년 이전 집행분의 '99년말까지 사업비 정산은 2000년 상반기중 시·도지사가 정산한 후 2000년 6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
 - 생산자단체 등 기타 사업대상자는 '99년말까지의 사업비 연도말 정산은 2000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정산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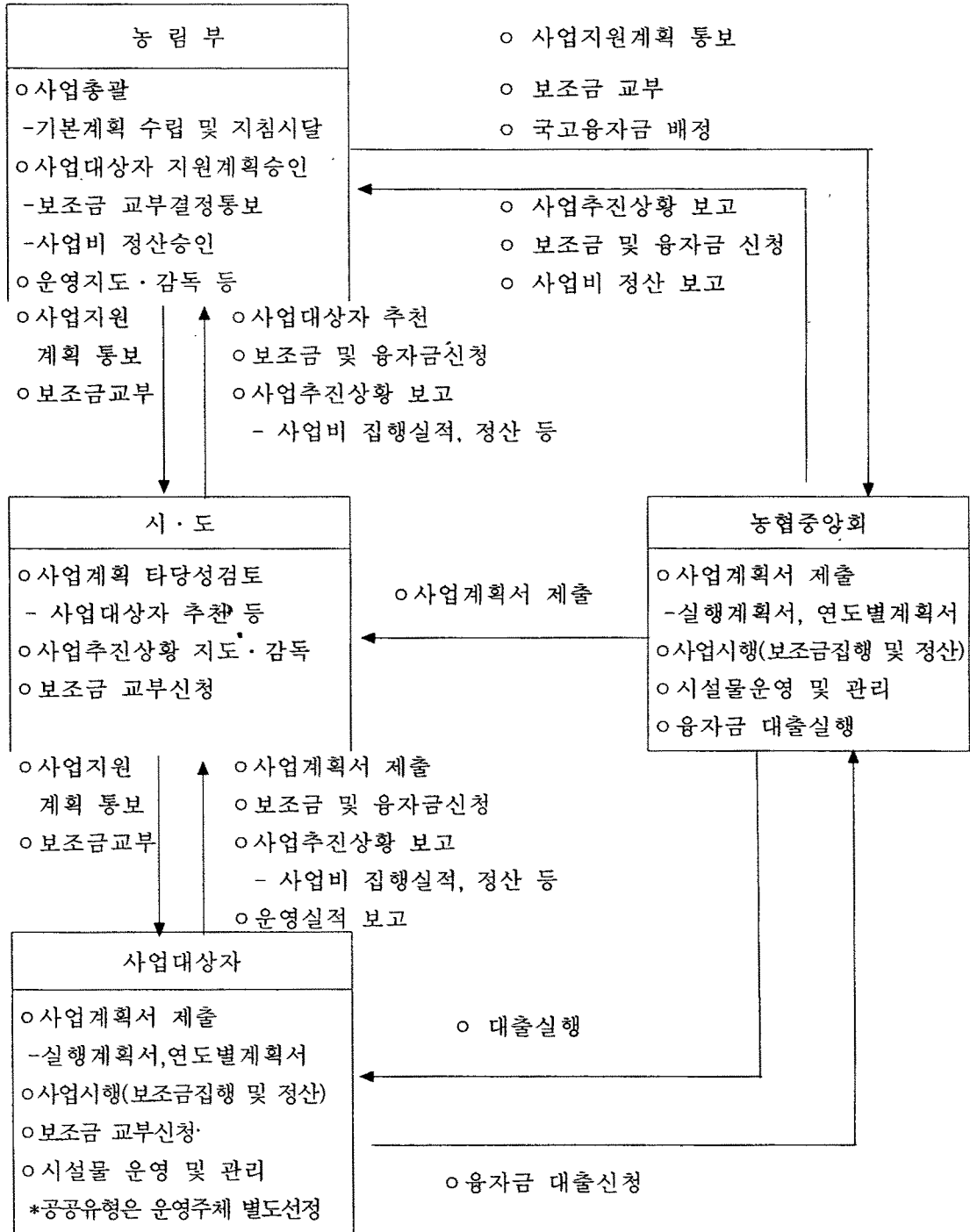
라)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대상자는 물류센터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

마) 사업비 지원방법

-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 계약체결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가 농림부에 용자신청
- 건설비는 기성고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농림부에 보조신청(당해연도 예산의 85%범위내에서 공정실적 및 계획에 따라 개산급 가능)
- 시·도지사 및 사업대상자의 장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책임을 지며 사업의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 보조금(용자금 포함)의 집행상황(교부결정, 검정, 정산 등)을 분기별로 보고

4) 사업시행체계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시·도지사, 생산자단체장 및 사업대상자의 장은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지도·감독의 책임을 짐.
 - 농수산물 물류센터 관리책임자는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농림부장관은 시설물의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조사·평가감독 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시정명령 등을 할수 있음
 -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관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 건물 - 물류설비	개 장 정부물품 내용연수 준용	폐 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수 없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사정 변경으로 상기행위를 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관련 조항 준용

2) 보고·기타

- 시·도지사, 생산자단체장 및 사업대상자의 장은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이상유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건설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수산물 물류센터 운영주체는 본사업의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유통자회사 포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민간 유통업자
-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시로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년도 3. 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예정지역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라. 구비서류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운영계획서(공공유형)
- 편익비용(B/C)분석 (별지 제2호 서식)

마. 사업자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소비지 유통권역을 중심으로 건설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자
 - * 산지로부터의 집하 및 소비지로의 분산을 위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서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
- 유통분야에 사업경험이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로서 경영능력과 사업의지가 확고한 자.
 - * 시설비(자부담과 담보능력)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자
- 산지의 출하조직과 연계계획 및 출하조직의 반응이 좋은 사업자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규모있는 소비지의 판매조직을 확보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확실한 자

2) 심사 및 평가요소

- 사업자 및 조직의 사업수행능력
 - 사업동기의 투명성 및 신뢰성, 사업자의 의지와 능력
 - 농수산물 유통 및 연관분야 사업경력, 사업실적
 - 조직화 정도, 자기자본 부담능력 등
- 사업예정지의 입지여건
 - 유통권역의 상품공급 및 소비규모, 소비인구
 - 유통권과의 수송거리, 도로교통여건
 - 사업장 부지확보, 토지이용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계획물량의 적합성, 물량대비 시설규모의 합리성
 - 상품수집계획의 합리성과 산지출하조직의 확보가능성
 - 상품 분배계획의 합리성과 소비지 판매망의 확보가능성 등

3) 선정절차

- 농림부장관은 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한 심사 및 평가요소 (사업자 및 조직, 사업장의 입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물량확보 가능성 등)를 설정하여 사업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된 후 시·도지사 또는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전화 504-9415, 9416)로 문의

[별지 제1호 서식]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사업 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대상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입지

○ 위 치 : 도 시 동 번지[위치약도(1/5,000축적지형도) 첨부]
 ○ 부지면적 : (소유자명 :)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 * 입지선정 사유(주변현황 등)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나. 사업규모 및 투자내역

(단위 : 평, 백만원)

구분	규모	사업비		주요기능
		단가	금액	
○ 부지(6,000평 이상) ○ 건물(3,000평 이상) <기본시설> - 집배송장 - 소매매장(농산물·가공품·생필품 구분) <필수지원 시설> - 소포장·가공실 - 저온저장고 - 냉동·냉장창고 - 하역장·일반창고 <기타 지원시설> - 사무실·전산실 - 품질관리실 - 출하주 및 거래처 상담실 - 직원용 편의시설(식당, 강당, 회의실, 강의실, 샤워실, 경비실, 용역업체사무실) - 고객용 편의시설(휴게실·간이금융점포) - 기계실·전기실 - 공용면적(용도별로 구분) - 옥내주차장 ○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 옥외배송장				

다. 물류설비

(단위:백만원)

구 분	품 명	단 가	갯 수	구입비	비고(기능)
물류기계					
포장기기					
축수산장비					
전산장비					
기 타					
계					

라. 사업추진 일정 :

마.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 : 수집방법, 판매방법, 콘소시움의 경우 투자 및 운영방안 등 포함

5. 기대효과

- 물류센터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유통개선과제와 개선방안

6. 연차별 수지전망 : 편익비용 분석

- ※ 첨부서류 : 1.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
- 2.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 3. 운영계획서(공공유형)

편익비용 (B/C) 분석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1차년도	2차년도	----- 9차년도	합 계
비용(C)	고정비용	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각종기계구입비 화재보험료 전속인건비 기 타 소 계				
		직접노무비 원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 타 소 계				
	합계(가)	현재가치 (가)	$가 \times 1+r$	$가 \times (1+r)^2$	$(가) \times (1+r)^1$	TC(총비용)
편익(B)	수탁사업	선별, 포장 등 각종수수료 저장 기 타 소 계				
	매취사업	가공 및 판매 금액				
	합계(나)	현재가치 (나)	$나 \times 1+r$	$나 \times (1+r)^2$	$(가) \times (1+r)^1$	TB(총편익)
B/C	나 / 가					TB/TC

<작성시 유의사항>

○ 고정비용

- 토지구입비는 전액을 사업년도에 일괄계상하고 1차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으로 하되 토지 임차시에는 임차료를 매년 기재
 - 건물구입비(건축비)는 국고 및 지방비 보조를 제외한 자부담금(융자포함) 금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기재하되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
 - 각종 기계구입비는 건물구입비 기재요령과 같음
 - 전속 인건비는 가동율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직원 인건비를 매년 기재
 - 화재보험료와 기타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매년 기재하되 지불이자(자기 자본금 이자포함)와 감가상각비는 제외
- ※ 기존유통시설(토지, 건물, 각종기계등)을 활용할 경우 구입당시가격을 사업년도에 기재

○ 가변비용

- 직접노무비, 원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타는 모두 매년 발생예정액을 매년 기재

○ 판매사업

- 가공 및 판매사업 인한 조수입액을 매년기재

○ 현재가치

- 미래 비용과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임
- r은 0.06으로 계산

○ 기타

- TC :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계
- TB : 편익의
- B/C : TB
TC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합계만 기재

사업실행계획서

1. 사업의 목적

-
-

2.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운영주체 :
- 기대효과 :

3. 주요시설규모

- 부 지 :
- 건 물
 - 집배송장 :
 - 소매매장 :
 - 소포장·가공실 :
 - 저온저장고 :
 - 냉동·냉장창고 :
 - 하역장·일반창고 :
 - 품질관리실·전산실 등 :
 - 주차장 :
 - 사무실, 출하주 대기실, 회의실 등 기타 지원시설

4.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국고보조	시·도비	시·군·구비	용 자	기 타
합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 항목별 사업비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물 량	사업단가	사업비	비 고
○부지매입비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 자재대금				
○물류장비				
○기 타				
합 계				

6. 세부사업내역

가. 부지매입비

(단위:백만원)

지 목	지 번	면 적	매 입 비	소 유 자
전				
·				
답				
·				
대지				
·				
임야				
·				
합 계				

나. 건설비

(단위:백만원)

사업내역	물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 세부내역				
-세부내역				
-세부내역				
○전기공사				
-세부내역				
○통신공사				
-세부내역				
○기계설비공사				
-세부내역				
○소방공사				
-세부내역				
○자재대금				
-세부내역				
-세부내역				
○기 타				
-세부내역				
합 계				

다. 물류장비

(단위:백만원)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라. 기타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마. 개설준비반 운영계획

구 분	합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 운영주체 선정					
○ 조직 및 인원					
○ 운영준비사항					
- 출하처 개발					
- 거래처 개발					
- 전산시스템개발					
- 운영시스템개발					
- 기타 운영계획 등					

○○년도 사업계획서

1. 사업의 목적

○

2. 사업개요

○

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99까지	2000	2001이후
○총사업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용 자 -자 부 담				
합 계				

4. 항목별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99까지	2000	2001이후
○부지매입비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 자재대금 ○물류장비 ○기 타				
합 계				

5. 세부사업내역

가. 부지매입비

○ 총괄

지목	계			'99까지			2000년			2001이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계 · · ·												

○ 당해연도 부지매입대상 필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	매입비	토지소유자

나. 건설비(당해연도)

사업내역	물량	단가	사업비	비고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자재대금				
○기타 사업비				
합계				

다. 물류장비(당해연도)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라. 기타 사업비(당해연도)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마. 개설준비반 운영계획(당해연도)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운영주체 선정					
○ 조직 및 인원					
○ 운영준비사항					
- 출하처 개발					
- 거래처 개발					
- 전산시스템 개발					
- 운영시스템 개발					
- 기타 운영계획 등					

바. 월별·공종별 사업추진계획서

- 사업명 :
- 사업기간 :

확인자 : 인
감리자 : 인
시공회사대표: 인
작성자: 인

- 사업추진계획

(단위:백만원)

공 종 별	최 종 승 인 액	'9 9 까 지 정 산 액	01 이 후 잔 사 업 비	00 년 예 산 액	공 정 %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II. 소비자단체 물류시설 지원

1. 목 적

- 소비자단체에 물류시설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정례화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 도모
- 포장센터 등 산지 유통시설 확충에 따른 소비자와의 연계체제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 직거래제도의 조기 정착과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농산물 물류시설 건설비 또는 임차료 지원으로 2002년까지 소비지 유통권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류시설 20개소 건설비 지원
 - '99년도 시범적으로 신규 5개소 추진
- 소비자단체의 규모와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소규모로 다수 설치
 - 대도시 외곽의 부지에 창고형으로 설치하여 사업비 절약

3. 근거법령

-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 3
-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98예산	'99예산	2000 (예산안)	2001	계
소비자단체물류시설지원					
○ 사업량	-	5	10	5	20
○ 사업비(용자)	-	1,498	2,000	1,498	4,996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배경

- '98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에 대비하여 소비자단체의 농산물 물류시설 건설비 또는 임차료 지원
- 2001년까지 전국의 주요도시에 20개소의 농산물 물류시설 건설지원으로 농산물 직거래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

나) 자금지원 대상자

- 소비자단체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단체
-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다) 지원기준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4.0%)

라) 지원시설의 종류

-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지원범위와 동일
- 다만 임차시에는 임차료 지원

2)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개소,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합계	예산액(재원명)	자부담
			국고융자	
소비자단체 물류시설지원	10	2,857	2,000	857

나. 추진체계

※ 농산물 물류센터 추진체계를 준용함(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외)

다. 행정사항

※ 농산물 물류센터 참조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 소비자단체(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단체)
- 농림부장관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시로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년도 3.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예정 지역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라. 구비서류

-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계획서와 동일

마. 사업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소비자 유통권을 중심으로 건설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
 - 산지로부터의 집하 및 소비지로의 분산을 위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서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

- 유통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고 경역능력과 사업의지가 확고한 단체
 - 시설비 (자부담 능력)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단체
- 산지의 출하조직과 연계계획 및 출하조직의 반응이 좋은 단체로서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소비지의 판매조직을 확보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확실한 단체

2) 심사 및 평가요소

- 사업자 및 조직의 사업수행 능력
 - 사업동기의 투명성 및 신뢰성, 사업자의 의지와 능력
 - 조직화 정도, 자기자본 부담능력 등
- 사업예정지의 입지여건
 - 유통권역의 상품공급 및 소비규모, 소비인구
 - 유통권과의 수송거리, 도로교통 여건
 - 사업장 부지확보, 토지이용 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계획물량의 적합성, 물량대비 시설규모의 합리성
 - 상품 수집계획의 합리성과 산지 출하조직의 확보 가능성
 - 상품 분배계획의 합리성과 소비지 판매망의 확보 가능성 등

3) 선정절차

- 농림부장관은 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된 심사 및 평가요소(사업자 및 조직, 사업장의 입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물량확보 가능성 등)를 설정하여 사업 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된 후 시·도지사 또는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바. 기타사항

- 농산물 물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전화 504-99415,9416)로 문의

Ⅲ. 물류센터 출하촉진자금지원

1. 목적

- 농수산물 물류센터로 농수산물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농어민과 소비자 보호 및 물류센터 활성화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수산물 물류센터 기능 활성화와 새로운 거래방식인 예약수의거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출하선도금 및 결제자금의 융자지원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27조의 2, 제47조, 제57조의 4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지원대상	'98	'99	2000	2001
물류센터 운영주체	15,900	19,900	22,000	22,000

* 2000년도 지원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 소비자 유통개선

- 재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자금의 종류
 - 출하선도금 : 농수산물 물류센터 사업자가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결제자금 :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자금

나) 사업규모 : 운영중인 9개 물류센터(개장예정 4개 물류센터 포함)

다) 지원대상

- 농안법 제57조의4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수산물 물류센터 운영주체
 - 제외대상 :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운영지침 등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물류센터 운영주체

라) 지원조건

구 분	용자기간	지원금리
○ 농수산물 물류센터 - 출하선도금 - 결제자금	1년 이내 “	5% “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운영계획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2000년도 사업비(예산)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안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물류센터	-	22,000	22,000	-	22,000	-	-

나.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2)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대출취급기관)
- 3)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02-504-9415-6), 유통정책과(02-504-9411)

4). 신 청

- 자 격 : 지원대상 물류센터
- 절 차 :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기관에 신청
 - 지원절차도[별표1] 참조
- 구비서류 : 사업시행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함
 - 용자 신청서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기타 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

5) 지원방식

- 선도금 : 물류센터 운영주체별로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산지선도금의 80% 이내
- 결제자금 : 예약수의조달 물량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의 80%이내

6) 지원규모

- 물류센터별 거래실적, 도·소매비율, 거래형태, 운영계획, 물류센터유형, 개장년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입지, 상권, 도매물량 취급비율,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자금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관리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기관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농안기금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보고·기타

-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 등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담당 부서에 보고(통보)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2001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통개혁추진본부 (02-397-5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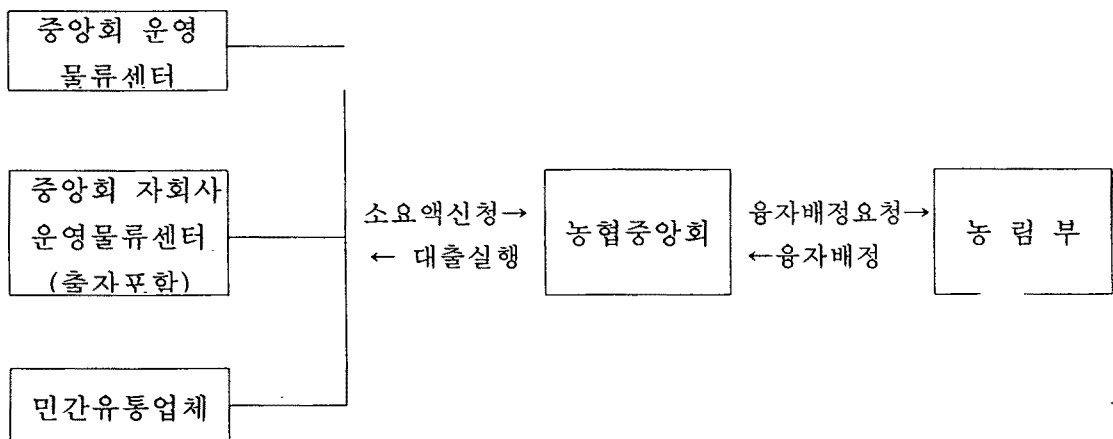
나. 신청자격 : 5.<사업개요> 가, (4) 지원대상자에 한함

다. 신청절차 : 지원절차도(별표1) 참조

라. 구비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에서 요구서류

[별표 1]

지 원 절 차 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장과(과장 하영효, 담당사무관 김승환)입니다.

I. 직거래장터 지원

1. 목 적

- 농산물 직판시설의 확대로 직거래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도모하고, 유통 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하여 「고효율·저비용」의 유통구조를 실현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비를 지원·건설하여 생산자(조직·단체)가 공동으로 참여·운영
- 전국 주요도시지역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30개소 설치 지원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7	'98	'99	2000 (예산안)	2001	2002	
직거래 장터	사업량	-	-	9	10	11	-	
	사업비.	계	-	-	2,000	2,000	2,200	-
		보조	-	-	1,400	1,400	1,540	-
		융자	-	-	-	-	-	-
		지방비	-	-	600	600	660	-
자부담	-	-	-	-	-	-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추진경위

- '98.2월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방문시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지시
- '98.7월 대통령께 농산물유통개혁대책 보고시 농산물 직거래 시설비 지원 계획을 보고하여 '9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2) 지원대상자 : 시·도(시·군·구)

(3)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 지원시설 : 장터기반정비 및 고정식 비가림시설
 - 판매장비·통신·전기·수도·화장실 등 기본시설과 홍보시설물 등을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협의 결정
- 시설규모 : 입지여건에 따라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되 200평을 기준으로 함(부지는 가능한 500평이상 확보)
- 사업비한도 : 사업수행자가 입지조건에 따라 장터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를 결정하여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부지비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지방비는 30%이상 부담 가능)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세,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0	2,000	1,400	1,400	-	600	-
○ 직거래 시설	10	2,000	1,400	1,400	-	600	-
- 직거래장터	10	2,000	1,400	1,400	-	600	-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부
- 신청자격 : 특·광역시, 도청소재지, 인구 20만이상 중·대도시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9.1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부지확보 방안 포함)
-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부장관이 선정
 - 신청지역이 많을 경우 특·광역시, 도청소재지 순으로 우선 선정

< 추진체계 >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02-504-9415~6, 02-500-2675~6)
 - 시·도 : 농정과(농산유통과, 농업특작과, 근교농업과 등)
-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도지사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이 2000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지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조직)임직원 및 농업인, 관계공무원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자금집행 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집행에 관한 법률,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원.
- 기 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후 시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및 보고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이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협회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지사는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직거래장터	준공	3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도지사는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상유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건설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자금요구 :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매월 25일까지 자금배정요구

나. 기 타

- 시·도지사는 직거래시설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책임하에 사업비 정산 및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부(농산물유통국 시장과)

나. 신청자격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다.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00.1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특·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인구 20만이상 중·대도시
- 신청지역이 많을 경우 특·광역시, 도청소재지 순으로 우선 지원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부지확보방안 포함)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부장관이 선정

※ 이 사업은 추후 예산이 조정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후 그 내용을 별도 통보할 계획임.

II. 파머스마켓 지원

1. 목 적

- 농산물 직판시설의 확대로 직거래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도모하고, 유통 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하여 「고효율·저비용」의 유통구조를 실현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농협이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여 지역농협이 건설·운영
- 전국 중·소도시 위주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150개소 설치 지원
- 광역시의 군지역은 사업대상지에 포함
- 농산물직판장과 원예자재점·생필품점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농업 구심체로 육성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7	'98	'99	2000 (예산안)	2001	2002	
파머스 마켓	사업량	-	-	10	20	50	70	
	사업비	계	-	-	6,400	12,800	30,000	40,800
		보조	-	-	3,200	6,400	15,000	20,400
		읍자	-	-	1,280	2,560	6,000	8,160
		지방비	-	-	-	-	-	-
		자부담	-	-	1,920	3,840	9,000	12,240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부지제공 포함)의 가액, 기본시설이외의 시설물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추진경위

- '98.2월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방문시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지시
- '98.7월 대통령께 농산물유통개혁대책 보고시 농산물 직거래 시설비 및 직거래자금 지원계획을 보고하여 '9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2) 지원대상자 : 지역농협(전문단위농협 포함)

(3)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 지원시설 : 농산물판매장(저온저장고, 보관창고, 소포장실, 직원 편의시설 등 포함) 및 부대시설(생필품점, 원예자재점 등)
- 시설규모 : 200~500평 범위내에서 입지여건에 맞도록 설치

구 분		세부시설명	
농산물 판매장	농산물 직판장	농업인 직판코너 : 직판장 면적 1/2 이상	
	부속시설	필수시설	소포장실, 창고, 저온저장고 등
		기타시설	상주직원 편의시설, 기계실, 공용 면적 등
부 대 시 설		생필품점, 원예자재점, 특산품코너, 화훼코너 등	

* 내부시설 등 세부시설기준은 농협중앙회의 세부사업시행요령에 의함

- 부지는 지자체 또는 지역농협이 제공하되 사업비에는 포함하지 않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융자 20%, 자부담 30%(자부담은 30%이상 가능)

* 2001년이후 지원조건은 예산지원방식 변경시 조정 가능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세,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파머스마켓	20	12,800	8,960	6,400	2,560	-	3,840

- ① 재원 : 직거래시설(농특세)
- ② 용자조건 : 연리 4%,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신청서 제출기관 : 농협중앙회
- 신청자격 : 지역농협(전문단위농협 포함)
- 신청절차 : 사업희망조합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제출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조합을 선정하여 '99.1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구비서류 : 농협중앙회의 세부사업시행지침에 의함.
- 지원대상자 선정 : 농협중앙회장이 사업타당성 평가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 농협중앙회의 사업대상조합 선정결과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사업승인

< 추진체계 >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02-504-9415~6, 02-500-2675~6)
 - 농협중앙회 : 직거래사업추진단(02-397-7165), 각지역본부 및 해당지역농협
-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 지침에 의거 사업기본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는 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계획 변경

- 사업비 지원방법

- 자금집행 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 기 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후 시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및 보고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이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파머스마켓	준공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협중앙회장은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상유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실적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건설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자금요구 :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매월 25일까지 자금배정요구

나.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은 직거래시설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장 책임하에 사업비 정산 및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협중앙회

나. 신청자격 : 지역농협(전문단위농협 포함)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조합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2000년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 농협중앙회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함.

마. 지원대상자 선정 : 농협중앙회장이 사업타당성 평가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 이 사업은 추후 예산이 조정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후 그 내용을 별도 통보할 계획임.

Ⅲ. 직거래자금 지원

1. 목 적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형소매유통업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와 의 직거래 활성화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농·축·인삼협), 소비자단체 등에 직거래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직거래 확대 유도
- 대형점, 할인점 등 대형소매유통업체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 취급확대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매유통개선 촉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7	'98	'99	2000 (예산안)	2001	2002	
생산자 단체 지원	사업량	-	-	-	-	-	-	
	사업비	계	-	11,000	27,000	29,040	30,600	32,400
		보조	-	-	-	-	-	-
		융자	-	11,000	27,000	29,040	30,600	32,400
		지방비 자부담	-	-	-	-	-	-
소비자 단체 지원	사업량	-	-	-	-	-	-	
	사업비	계	-	-	8,000	5,000	6,000	8,000
		보조	-	-	-	-	-	-
		융자	-	-	8,000	5,000	6,000	8,000
		지방비 자부담	-	-	-	-	-	-
대형소매 유통업체 지원	사업량	-	-	-	-	-	-	
	사업비	계	-	-	10,000	10,000	20,000	20,000
		보조	-	-	-	-	-	-
		융자	-	-	10,000	10,000	20,000	20,000
		지방비 자부담	-	-	-	-	-	-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추진경위

- '98.2월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방문시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지시
- '98.7월 대통령께 농산물유통개혁대책 보고시 농산물 직거래 시설비 및 직거래자금 지원계획을 보고하여 '9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2)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직거래장터에 참여(운영)하는 농·축·인삼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직거래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역농협
- 소비자단체 :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무점포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 대형소매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3)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 생산자단체 지원
 - 직거래장터 운영 : 장터운영실적·규모 등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50% 이상 사업의무
 - 직거래 우수농협 :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50% 이상 사업의무
- 소비자단체 지원 : 농협중앙회와 생협중앙회가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125% 이상 사업의무
- 대형소매유통업체 지원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50% 이상 사업의무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세,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 직거래 자금		44,040	44,040		44,040		
- 생산자단체		29,040	29,040		29,040		
- 소비자단체		5,000	5,000		5,000		
- 대형유통업체		10,000	10,000		10,000		

① 재원 : 농안기금

② 용자조건 : 농안기금 사업별 용자금리 적용, 1년이내 상환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생산자단체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축·인삼협중앙회
- 신청자격
 -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 직거래장터 운영(참여)조합(중앙회 사업소 포함)
 - 직거래 우수농협 지원 :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는 지역농협
- 신청절차 : 각 중앙회의 세부사업시행요령에 의거 신청
- 구비서류 : 각 중앙회의 세부사업시행요령에 의함
- 지원대상자 선정
 -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 지원후 1년간 직거래장터 참여가 확실시 되는 조합
 - 직거래 우수농협 : 직거래 추진성과가 우수한 지역농협
 - *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운영조합 우선 선정 지원

나. 소비자단체·대형소매유통업체

- 신청서 제출기관
 - 소비자단체 : 농협중앙회
 - 대형소매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자격
 - 소비자단체 :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무점포 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 대형소매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체인사업자

-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실시기관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시행세부요령을 사업시행전에 일간신문 또는 전문지 등의 광고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
- 구비서류 :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함.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소비자단체 :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유통에 부합되는 영농조합법인
 - 대형소매유통업체 : 산지유통센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물류센터, 산지조합 등과의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 선정절차

소비자 단체, 대형소매업체	① →	농협중앙회 농유통	② →	농협중앙회 농유통	③ →	농림부
○자금신청 및 시행	⑥ ←	○자금신청 접수 ○용자실행 및 실적점검	⑤ ←	○사업계획공고 ○사업시행세부요령작성보고 ○사업자 확정통보 ○용자금 배정 ○용자실행결과보고	④ ←	○사업시행지침 수립 ○용자금 배정

- ① 사업자금 신청
- ② 자금신청 접수
- ③ 사업시행 세부요령 작성보고, 사업공고, 용자실행 결과보고
- ④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자금배정
- ⑤ 사업실시계획 시달, 용자금 배정, 사업자 확정 통보
- ⑥ 용자실행 및 실적 점검

< 추진체계 >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 직거래사업추진단(397-7163), 축협중앙회 직거래본부(2224-8912), 인삼협중앙회 국내영업부(2201-3304)
 - 소비자단체 : 농협중앙회
 - 대형소매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시장지원부(790-8012)
- 사업시행
 - 사업실시기관은 농림부지침에 의거 세부사업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등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추진
 - 사업실시기관은 지원기준에 따른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별로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및 보고

- 사업자는 사업실적을 기록관리하는 관리대장(별지 4호 서식)을 비치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용자금 상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실적을 사업실시기관에 제출
 - 사업실시기관은 지원자별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의무를 미달한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제재

나. 기 타

- 축협중앙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분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등 세부사업추진사항을 축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생협·농협중앙회 사전 협의하여 시행
- 이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자금용자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생산자단체 : 농·축·인삼협중앙회 직거래사업추진단
- 소비자단체 : 농협중앙회
- 대형 소비자 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지사

나.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
 -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 직거래장터 운영(참여)조합(중앙회 사업소 포함)
 - 직거래 우수농협 지원 :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는 지역농협
- 소비자단체 :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무점포 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 대형소매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태인사업자

다. 신청절차

- 생산자단체 지원 : 농·축·인삼협중앙회장이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00. 6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소비자단체·대형소매유통업체 지원 : 농협중앙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00.6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시행세부요령을 사업시행전에 일간신문 또는 전문지 등의 공고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
 - 사업희망자는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함.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생산자단체

-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 지원후 1년간 직거래장터 참여가 확실시 되는 조합
- 직거래 우수농협 지원 : 직거래 추진성과가 우수한 지역농협
- *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운영조합 우선 선정 지원

○ 소비자단체·대형소매유통업체 지원

- 선정기준

- 소비자단체 :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유통에 부합되고 무점포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 대형소매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 선정절차

소비자 단체, 대형소매업체	① →	농협중앙회 농유통	② →	농협중앙회 농유통	③ →	농림부
○자금신청 및 시행	⑥ ←	○자금신청 접수 ○용자실행 및 실적점검	⑤ ←	○사업계획공고 ○사업시행세부 요령작성보고 ○사업자 확정 통보 ○용자금 배정 ○용자실행결과 보고	④ ←	○사업시행지침 수립 ○용자금 배정

- ① 사업자금 신청
- ② 자금신청 접수
- ③ 사업시행 세부요령 작성보고, 사업공고, 용자실행 결과보고
- ④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자금배정
- ⑤ 사업실시계획 시달, 용자금 배정, 사업자 확정 통보
- ⑥ 용자실행 및 실적 점검

※ 이 사업은 추후 예산이 조정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후 그 내용을 별도 통보할 계획임.

< 별지 1호 >

직거래장터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직거래장터 설치 사업

2. 사업목적

3. 사업대상자

4. 사업계획

가. 사업입지

○ 위 치 : 시(도) 시(구) 동 번지(1/5000 위치약도 첨부)
○ 부지면적 : (소유자명)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① 입지선정사유(주변현황 등)

② 토지관련법령 등 저촉여부

나. 사업규모 및 투자내역

구 분	규 모	사업비(천원)		조달방법		비 고
		단가	금액	국고보조	지방비	
○기반정비						
○매장시설						
○판매대, 장비 등						
○기 타						

다. 사업추진일정(세부적으로 작성)

라.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매장운영 및 관리방안, 판매방법 등 포함)

5. 기 타

< 별지 2호 >

심사제외

농산물 직거래시설 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계획

구 분	규모	사업비 (천원)	조 달 방 법			비 고
			국고보조	용자	지방비(자담)	

2. 사업추진상황

사업자	사업착수	입찰(계약)	착 공	공 정	준공예정	비 고
	월 일	월 일	월 일	%	월 일	

- ① 사업장별 분기중 추진실적 및 다음분기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별지 작성
- ② 사업자란에는 시·도명, 지역농협명을 기재

3. 사업비 집행상황

사업자	계(천원)		국고보조		용 자		지방비(자담)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4. 문제점 및 부진사유

*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별지 3호 >

총 공통-9

농산물 직거래시설 지원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부지		매장		계획				집행(정산)실적				대비		차년도이월액	불용또는집행잔액	착공일	준공일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국고보조(A)	융자(B)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보조(C)	융자(D)	지방비	자부담					보조(A-C)

- ① 사업자란에는 시·도명, Farmer' Market사업 추진조합명 기재
- ② 차년도 이월액 및 불용 또는 집행잔액도 국고보조와 융자로 구분 작성

< 별지 4호 >

사업실적 기록관리 대장

월 일	품 목	구입처	물량(톤)	kg당 금액	금 액	비 고

* 개별사업에 따른 관련증빙서 비치(입고확인증, 대금지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약서, 출하약정서 등)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권은오, 농업서기관 김남수)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조직)가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시장교섭능력 배양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로 산지유통개선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조직)가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주산단지 재배농가(작목반, 산지법인등)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채소류 생산 및 출하조절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손익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부담 함으로서 사업추진의 합리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47조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5	'96	'97	'98	'99	2000
계	350,000	62,500	47,500	137,500	33,500	19,000	50,000
정부융자	280,000	50,000	38,000	110,000	26,800	15,200	40,000
농협자금	70,000	12,500	9,500	27,500	6,700	3,800	10,000

* 지원금액은 변동될수 있음

- 정부융자 재원 : '95년 → 농특세 전입금, '96년이후 → 농안기금
 - 융자조건 : 10년거치, 무이자
- 자부담 : 농협중앙회 및 사업참여농협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참여법인이 부담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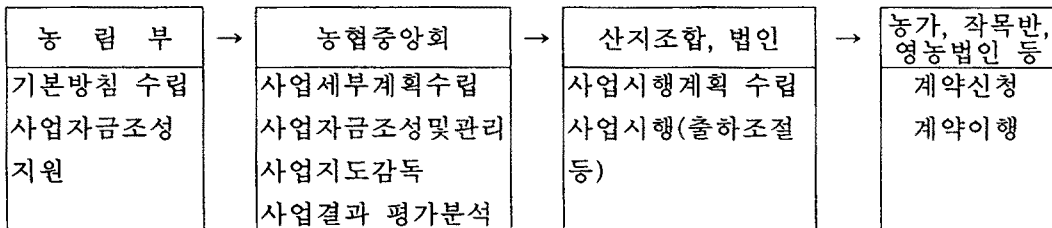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설명

- 농협중앙회장이 정부지원융자금과 자체자금으로 채소수급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고, 동 자금을 산지농협·산지법인등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여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농가와 계약재배등을 통해 채소의 생산과 출하등을 조절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음

4)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품목의 주산단지농협(특수조합 포함)
- 사업대상품목의 수출업체, 당해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수집상등 법인체로서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

< 사업적격자 검토기준 >

- ① 사업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취급물량
- ② 법인의 구성원수
- ③ 자부담 및 자금관리능력
- ④ 사업관리 주체로서의 사업수행능력

5) 사업추진방법 : 계약재배중심 자율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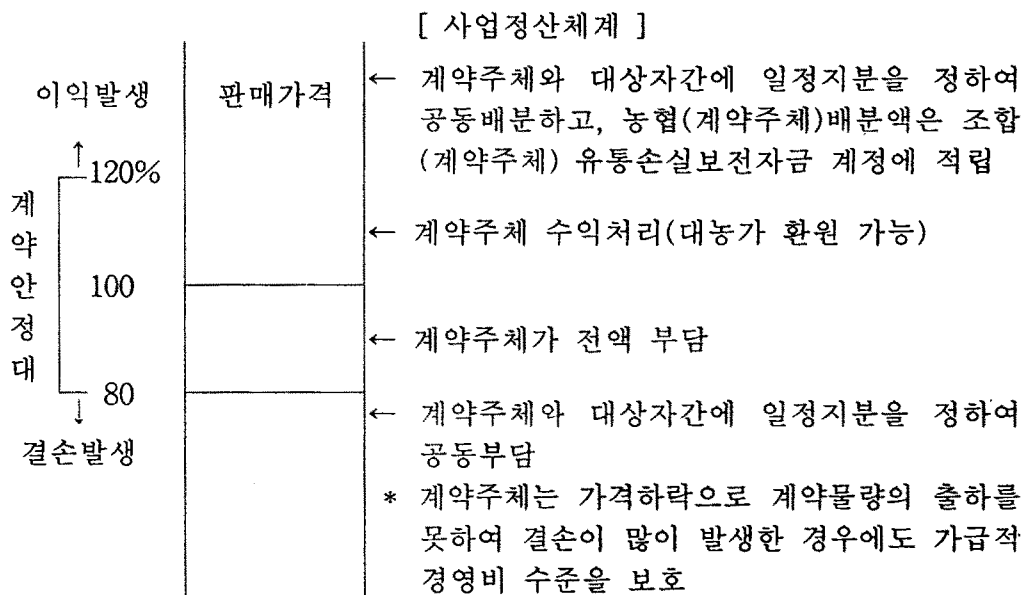
가) 계약재배

(1) 계약재배방식

- 계약주체 : 산지농협(법인)
- 계약대상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 계약물량관리 : 계약대상자가 출하시까지 관리
- 대금지급 :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 지급
- 출하 및 판매
 -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정
 - 농협중앙회장은 저장성이 있는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출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2) 사업정산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안정대(계약가격 $\pm 20\%$) 범위내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계약주체가 처리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가격 $\pm 20\%$ 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에 일정지분의 손·익을 공동부담
- 대농가 정산시기 : 판매후 정산원칙
 - 단,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수매시점의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대농가 정산을 실시하고, 이후 가격상승시 판매이익을 계약농가에 추가배분할 수 있음
 - 무·배추는 판매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포전거래 등에 의한 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물량의 20%이내에서 출하전에 대농가 정산가능



주1) 정산단위는 품목특성을 감안하여 농가단위 또는 공동정산방식 채택

2) 계약안정대는 계약가격 $\pm 20\%$ 를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pm 10\% \sim \pm 20\%$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가격폭락시 수급안정사업

(1) 기본방향

구 분	무·배추등	마늘, 양파, 고추
가격폭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저장 ○ 산지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전 산지폐기 ○ 수매비축
가격폭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저장물량 방출 ○ 예비묘 공급 ○ 직거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물량 방출 ○ 직거래 물량 염가판매

(2) 시행방법

- 무·배추 저온저장을 통한 출하조절
 - 저온저장시기 : 소비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시
 - 고랭지배추 출하기(7~9월), 김장배추(11월)
 - 저장물량규모 : 시기별 저온저장 보관능력을 감안하여 추진
 - * 소요비용은 중앙회 및 회원농협 적립금 활용

- 가격폭락시 자체폐기
 - 요건 : 가격이 최저보장가격(또는 경영비) 이하로 3일연속 하락시
 - 물량 : 회원농협 및 중앙회 자체적립금의 20% 해당물량
 - 재원 : 회원농협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중앙회 채소수급조정자금

- 예비묘 공급
 - 시기 : 재해등으로 절대면적 감소 예상시 사전에 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고랭지, 가을무·배추 위주)
 - 재원 :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자금

6) 사업우수 및 부진자에 대한 제재

< 사업우수자 >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추가지원
- 계약재배에 3년이상 참여농가는 조합손실보전자금 범위내에서 최저보장 가격 우선 지원

< 사업부진자(조합·법인) >

- 자금배정액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일정 위약금리를 부과
- 다음 익년도 사업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 계약금 및 위약금 징수
- 다음년도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등 불이익 조치

7) 사업자금 및 운용 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과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별도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다음의 용도에 한해 사용할수 있음
 - ①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비
 - ② 사업조합의 손실보전
 - ③ 농림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정산결과 가격안정대 이상 발생한 이익배분액과 농가로 부터 징수한 위약금 및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품목별 자금운용 수익을 별도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사업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수급안정사업자금 및 운용수익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금운용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2000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계	재 원 별	
		정부융자금	농협자금
총 사업비	350,000	280,000	70,000
○ 2000년 추가조성	50,000	40,000	10,000
○ 기조성('95~'99)	300,000	240,000	60,000

※ 농협자금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물량 : 수급전망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장이 별도시달
-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 금리 : 무이자
 - 지원기간 :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별도 시달
- 사업자금의 운용
 - 총자금중 사업자금 70~80%, 손실대비운용자금 30~20%로 농협중앙회장이 품목별 자금운용수익등을 감안하여 정함
 - 사업조합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손실대비운용 자금을 5% 추가지원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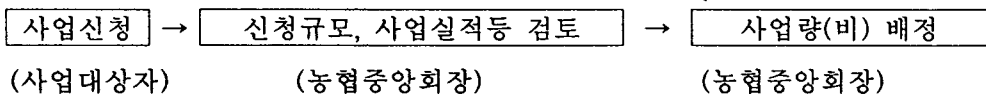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 : (02-504-9422/4)
- 농협중앙회 : 채소수급안정사업단(02-397-5734)

다. 사업시행

- 사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달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 계획 변경시달
- 사업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당해품목의 생산규모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절차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무이자 융자지원
- 사업품목의 특성상 전액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품목은 분할 지원할 수 있음

라. 기 타

-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시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법인)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평가, 기타

- 사업조합에 대한 평가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수급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품목별 사업정산 완료시 조합별 평가를 실시
 - 평가요령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손실대비 운영자금 확대지원등 인센티브 부여
- 보고사항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상황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 품목별 사업추진사항은 추진진도를 감안, 수시 보고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사업자금 운용지침의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목별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박병원, 농업사무관 조장용,염상열), 채소특작과(과장 권은오, 농업사무관 이재욱),식품산업과(과장 양태선, 행정사무관 박영호), 축산물유통과(과장 조규담, 축산사무관 신대식)입니다.

1. 목 적

- 경쟁 가능성이 있는 과실, 화훼, 김치, 채소, 축산물(생축포함)에 대하여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현재 수출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수출확대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
- 품목별, 국가별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을 차등 지원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지원 확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수산물의 수출 촉진)
 WTO/농업협정 제9조(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0~'98	'99	2000	2001~2004
사업량	과실(톤)	29,317	11,640	10,500	82,700
	화훼(천상자)	775	687	687	3,731
	김치(톤)	35,750	24,000	18,000	116,260
	채소(톤)	42,056	26,000	40,000	271,540
	축산물(천상자)	-	3,006	3,580	29,960
계		23,917	19,539	17,753	123,103
사업비	○ 보조	23,917	16,032	14,866	100,633
	- 과 실	13,689	3,492	3,150	24,800
	- 화 훼	3,268	3,573	3,565	19,400
	- 김 치	2,738	3,563	2,466	15,928
	- 채 소	4,222	3,902	3,760	25,525
	- 축산물	-	1,503	1,925	14,980
	○ 용 자	-	-	-	-
	○ 지 방 비	-	-	-	-
	○ 자 부 담	-	3,507	2,887	22,470

5. 2000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목 적

- 경쟁가능성이 있는 과실, 화훼, 김치, 채소, 축산물류에 대해 수출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물류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촉진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과실류(사과, 배, 단감등), 화훼류(백합, 선인장 등), 김치·채소류, 축산물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생축등)수출에 필요한 포장, 선별, 운송비 등 수출물류비용 지원(축산물류는 포장 상자만 지원)
- 추진경위 : 과실류 '90년부터, 화훼류 '94, 김치·채소 '96, 축산물 '99
- 사업시행 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대상 : 과실·화훼·김치·채소류 수출업체, 수출육가공업체, 생축수출농가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단, 축산물은 40%)

나. 2000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백만원 17,753	14,866	14,866	-	-	2,887
○ 과 실	10,500톤	3,150	3,150	3,150	-	-	-
○ 화 훼	687천상자	3,565	3,565	3,565	-	-	-
○ 김 치	18,000톤	2,466	2,466	2,466	-	-	-
○ 채 소	40,000톤	3,760	3,760	3,760	-	-	-
○ 축산물	3,580천상자	4,812	1,925	1,925	-	-	2,887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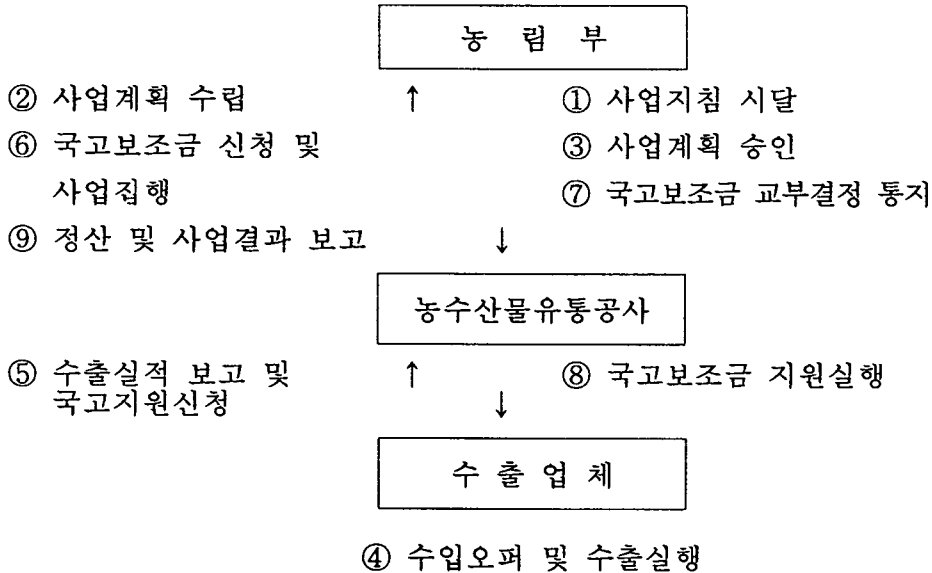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과수화훼과 (02-500-2685~6), 채소특작과(500-2683-4), 식품산업과 (500-2677-8), 축산물유통과(500-2691-2)
-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개발처 수출지원팀, 상품개발팀

다. 사업현황

- (1) 지원방법 : 수출 대상국별 , 품목별 사정을 감안,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차등지원
- (2) 지원대상 : 과실·화훼·김치·채소·생축 및 축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자(생축의 경우 수출과정에서 물류비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
- (3) 사업시행체계



라.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2000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0. 1월까지 농림부에 보고하고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실시

마. 사업시행(추진일정)

- (1) 사업계획 수립(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승인 : '99. 12~'2000. 1월
- (2) 사업추진 : 2000. 1. 1~2000. 12. 31
- (3) 사업정산실적 보고[연 2회, 별지 1호 서식]
 - 상반기 정산실적 보고 : 7. 15까지
 - 최종 정산실적 보고 : 익년 1. 30까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 추진상황 현지확인 및 평가분석

나. 보 고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및 평가분석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상반기 보고 : 7. 15까지
 - 최종 보고 : 익년 1. 30까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기에 보고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 과실, 화훼, 김치, 채소, 축산물 및 생축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자(생축의 경우 수출과정에서 물류비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

()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품목 별 또는 단지 명	대표 자 ()외 농가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세부 사업 명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 A)	계 획				집행(정산)실적				대 비		차 년 도 이 월 액	불 용 또 는 집 행 잔	착 공 일	준 공 일
						국 고 보 조 (C)	읍 자 (D)	지 방 비 보 조	자 부 담	국 고 보 조 (E)	읍 자 (F)	지 방 비 보 조	자 부 담	국 고 (C - E)	읍 자 (D - F)				
합 계				9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구입 또는 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kg, 톤, 상자 등으로 기재
-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구입 또는 지원하는 품목 등을 기재.
-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라. 차년도이월액 및 불용 또는 집행잔액도 국고와 읍자로 구분작성
- 마.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 작목반등)로 위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작성.첨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최희종, 행정
사무관 윤명중)입니다.

1. 목 적

-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구매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수출농업 기반구축
- 신규 수출시장개척 및 다변화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진흥 여건 조성
 - 농산물 수출업체의 대외 수출경쟁력 제고 및 독자적인 해외시장개척 기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우리 농산제품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 농산물 박람회의 참가비용 및 주요시장 특별관측 행사비 지원
- 수출상품의 포장디자인을 국제 감각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
- 수출국의 기호·식관습에 맞는 맛·품질·포장 등을 현지화시킨 수출상품 개발지원
- 수출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 수출확대 기반구축을 위한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체제 구축
-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주 수출국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옥외광고, 라디오, 일간지 등 홍보 지원
-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및 수출상대국의 시장상황에 대한 심층조사 및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지원

3. 근거 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6 조 (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년	2002- 2004년
국제 농업 박람회	박람회 참가 및 특판전 개최	76회	19	25	24	30	90
	계	9,548	3,711	3,680	3,725	4,700	14,100
	보 조 자 담	5,900 3,648	3,711 -	3,680 -	3,725 -	4,700 -	4,700 -
수출 활성 화 사 업	포장디자인 개발	175품목	59	68	68	90	270
	현지화적응상품개발	12품목	17	20	20	25	95
	채소류, 김치판촉지원	32,060톤	45,200	-	-	-	-
화훼판촉지원	-톤	2,317	-	-	-	-	-
농산물 수출컨설팅	-회	-	-	57	60	180	
계	6,042	11,374	1,187	1,273	1,822	6,715	
보 조 자 부 담	3,164 2,878	6,697 4,677	900 287	986 287	1,412 402	5,260 1,455	
대형 유통 업체 직거 래체 제구 축	우수 바이어초청	-회	1	3	3	4	13
	해외상설매장설치	-개소	-	2	3	4	22
	시장개척단 파견	-회	-	4	2	-	-
계	-	33	1,000	1,150	1,400	6,800	
보 조 자 부 담	- -	33 -	1,000 -	1,150 -	1,400 -	6,800 -	
수출 홍보 사 업	한국농산물 해외홍보	8종	2	5	5	5	15
	한국식문화 홍보	3종	8	7	4	4	12
	계	2,354	1,067	1,849	1,825	3,150	10,150
보 조 자 부 담	1,778 576	1,067 -	1,829 20	1,780 45	3,150 -	10,150 -	
해외 시장 정보 조사	심층조사	100품목	100	100	100	100	100
	DB 구축	23개	8	9	10	유지관리	유지관리
	EDI 구축	식	-	-	-	1	운용
계	2,305	788	817	802	1,620	5,566	
보 조 자 부 담	1,688 617	788 -	817 -	802 -	1,620 -	5,566 -	
합 계	계	20,249	16,973	8,533	8,775	12,692	43,331
	보 조 자 부 담	12,530 7,719	12,296 4,677	8,226 307	8,443 332	12,290 402	41,876 1,455

5. 2000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국제 농업박람회 참가

< 사업 개요 >

(1) 사업내용

가) 지원 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 농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로서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나) 지원기준 : 박람회 참가비용 및 수출지원(단, 참가업체 전시물품 통관, 운송비용 등은 참가업체 부담)

(2) 2000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4회	백만원 3,725	3,725	3,725	-	-	-
가. 박람회	14	2,905	2,905	2,905	-	-	-
베를린박람회	1	168	168	168	-	-	-
동경식품박람회	1	840	840	840	-	-	-
싱가폴식품박람회	1	150	150	150	-	-	-
시카고식품박람회	1	194	194	194	-	-	-
상파울로식품박람회	1	156	156	156	-	-	-
타이베이식품박람회	1	104	104	104	-	-	-
홍콩식품박람회	1	371	371	371	-	-	-
호주식품박람회	1	119	119	119	-	-	-
중국식품박람회	1	151	151	151	-	-	-
기타큐슈식품박람회	1	180	180	180	-	-	-
파리식품박람회	1	196	196	196	-	-	-
아틀란타식품박람회	1	76	76	76	-	-	-
캘리포니아농업장비전시회	1	100	100	100	-	-	-
중국농기계박람회	1	100	100	100	-	-	-
나. 특별판촉행사	10	820	820	820	-	-	-
일본특판행사	2	166	166	166	-	-	-
중국특판행사	1	54	54	54	-	-	-
대만특판행사	1	80	80	80	-	-	-
싱가폴특판행사	1	89	89	89	-	-	-
러시아특판행사	1	65	65	65	-	-	-
미국특판행사	2	174	174	174	-	-	-
캐나다특판행사	1	98	98	98	-	-	-
태국특판행사	1	94	94	94	-	-	-

* 박람회 참가계획 및 사업비는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 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7 - 4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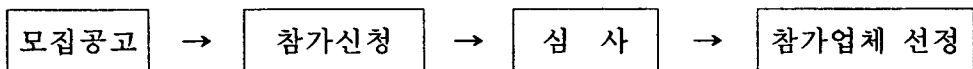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78)

(3)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유망 품목으로 판단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로서 국제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수출 농산물 및 농기자재를 생산, 수출하는 농업인, 업체 및 관련 협회, 조합, 단체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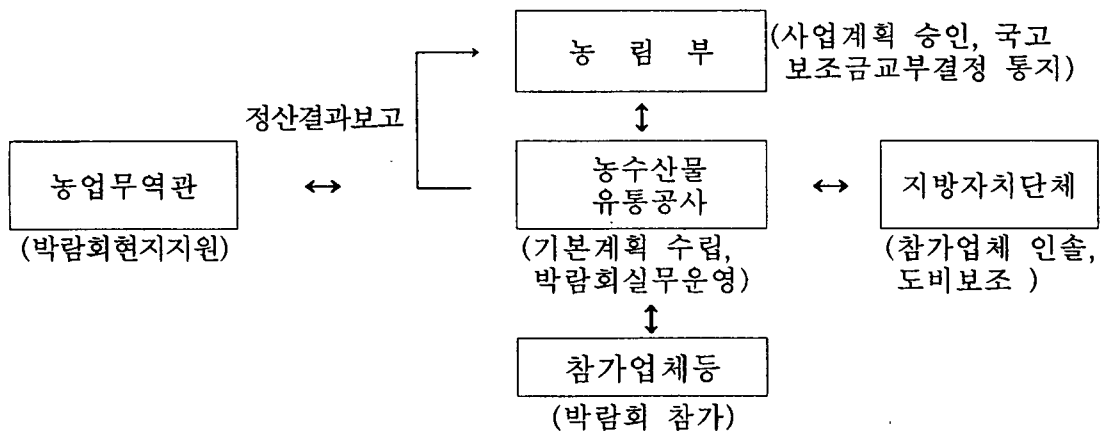


○ 선정방법 및 기준

- 기일내 참가신청서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참가업체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과거 수출실적, 기존 박람회 참가 여부, 해당 전시품의 박람회 개최 지역 진출 가능성여부 등을 종합평가
- 해당지역에의 수출가능성, 전시품의 현지어 표기, 포장디자인의 적정성 여부, 유통기한 등 검토

(4) 사업 시행

○ 사업체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국제박람회 참가 및 특별관촉행사 사업계획을 수립
 - 당해년도 참가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 및 지역을 고려하여 조정
 -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시에는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 내용
 - 사업시행자가 전시장 임차 및 한국관 기본 장치 후 업체별로 전시부스 제공
 - 종합 홍보 팜프렛 제작, 통역, 관촉물 제작, 해외광고, 수출상담, 박람회장 총괄 관리 등 실시
 - 전시품 운송업무 지원 (선적, 통관 등)
 - 현지 유관기관간 업무 협조
 - 지역별 우수 바이어 포상

(5)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
 - 사업비 집행내역이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보조금 교부 조건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정, 확인

< 행정 사항 >

(1) 사후관리

- 국제 박람회 종합 평가 실시 (4/4분기)
 -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박람회에 반영하고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시 참고
- 참가업체별 전담제 운영으로 TOTAL 서비스 실시
 - 수출정보, 자금, 수출절차 등 애로사항에 대하여 공동 대처
 - 수출계약 체결업체에 대하여 수출이행 지원

(2) 기타 사항

- 매 박람회 개최 후 결과 분석 및 보고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나. 수출 활성화 사업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가)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포장디자인 개발 >

- 수출농산물의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 농산제품에 대한 포장 및 용기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 지원규모 : 68품목(포장디자인 60품목, 용기디자인 8품목)
- 지원기준 : 국고보조 70%, 업체 자부담 30%
 - 지원한도 : 포장디자인 3,500천원/품목, 용기디자인 21,000천원/품목

< 포장디자인 개발 사례집 발간 >

- 수록내용
 - 해외 우수 포장·용기디자인 사진 및 경향
 - 2000 신규 개발 포장·용기디자인 사진 및 사례
- 제작부수 : 1,500부
- 배포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나) 현지화 적응 상품 개발

- 수출상품의 현지화에 필요한 개발사업비 지원
 - 상품개발비, 마켓테스트비, 시장조사비, 광고·홍보비, 신선농산물의 육종·육묘기술 지도 및 시험수출에 필요한 비용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내 농산식품 수출업계,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한식연,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5품목, 가공식품 15품목
- 지원규모 : 20품목
- 지원기준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다) 농산물 수출컨설팅

- 수출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품 생산, 운송, 포장, 검역, 통관, 홍보, 시장개척 등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컨설팅과 전문가 초빙 지도교육 실시

- 지원내용 : 사업시행기관의 컨설팅 요원 출장비, 분야별 외부전문가 초청비, 교재 및 사례집 발간·배포 비용 등 지원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2) 2000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1,273	986	986	-	-	287
○ 포장디자인 개발		559	397	397	-	-	162
- 디자인 개발지원	68품목	544	382	382	-	-	162
· 포장디자인	60품목	300	210	210	-	-	90
· 용기디자인	8품목	240	168	168	-	-	72
· 업체모집공고	2회	4	4	4	-	-	-
- 사례집 발간·배포	1,500부	15	15	15	-	-	-
○ 현지화적응 상품개발	20품목	625	500	500	-	-	125
- 신선농산물	5품목	250	200	200	-	-	50
- 가공식품	15품목	375	300	300	-	-	75
○ 농산물 수출컨설팅	57회	89	89	89	-	-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6 - 4044)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98)

(3)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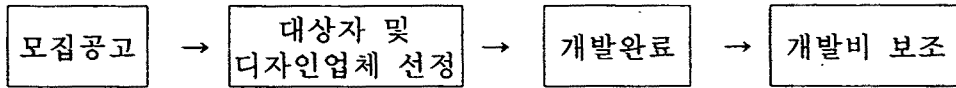
가) 포장디자인 개발

○ 지원대상

-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생산, 수출업체로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획(신용장 또는 계약서 근거)이 있는 업체

* 디자인 업체 : 포장디자인 기획업체로서 산업디자인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선정절차



○ 선정기준

- 농림부 지정 20개 수출유망품목 및 관련 제품을 우선 선정하되 수출 실적이나 해외시장개척노력이 전무한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일반 수출품목은 수출실적(70%)과 해외시장 개척도(30%)를 기준으로 산정한 득점순에 따라 선정
- 포장디자인 개발 신청 품목중 포장형태가 유사한 품목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 품목수 조정

나) 현지화 적응 상품 개발

- 지원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거나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수출업체
- 지원품목 신청접수 : 중앙일간지 및 공사 정기간행물을 통한 공고에 의해 사업신청 접수
- 지원품목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품목 및 해당업체의 수출실적(계획), 수출확대가능성, 해외시장 개척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및 위원 11인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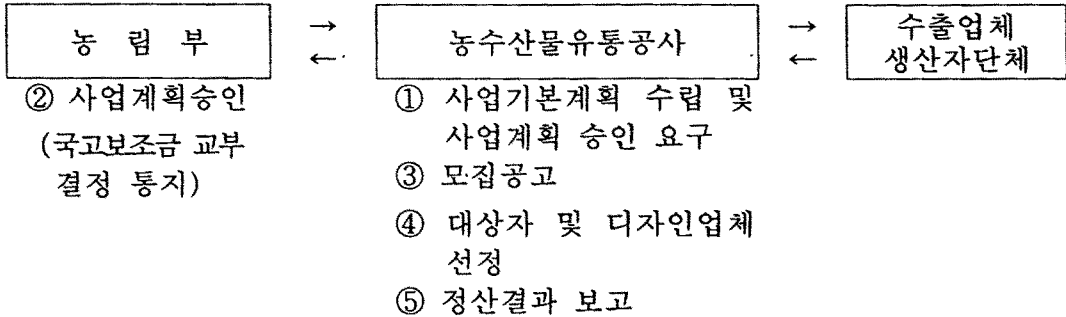
다) 농산물 수출컨설팅

- 수출컨설팅 희망자의 신청에 의거 선정 (팩스, 전화 또는 방문)
- 관내 수출업체 또는 품목별 전문단지와 협의후 선정
- 관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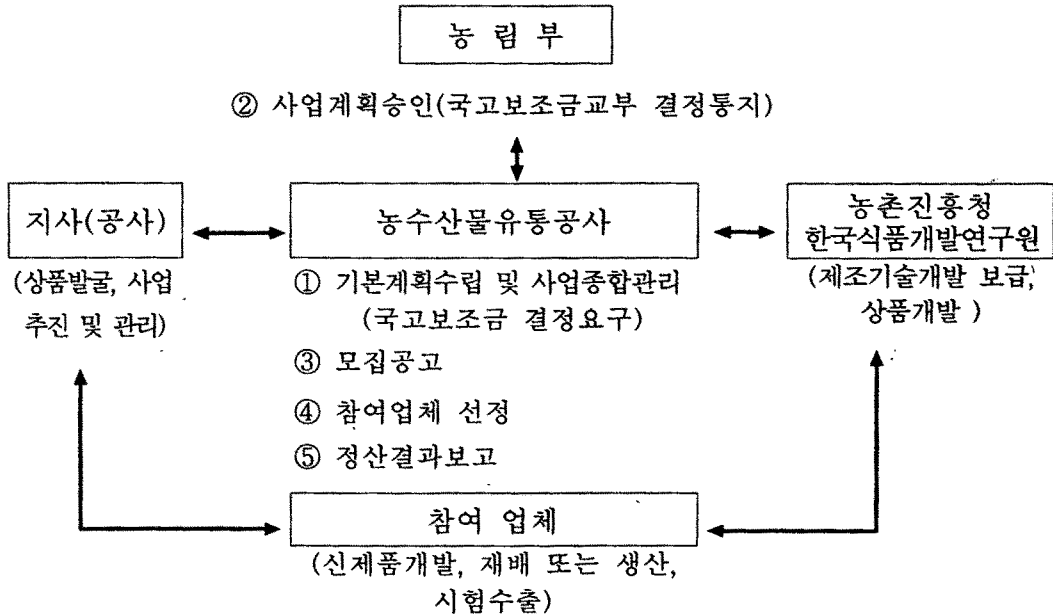
(4) 사업시행

○ 사업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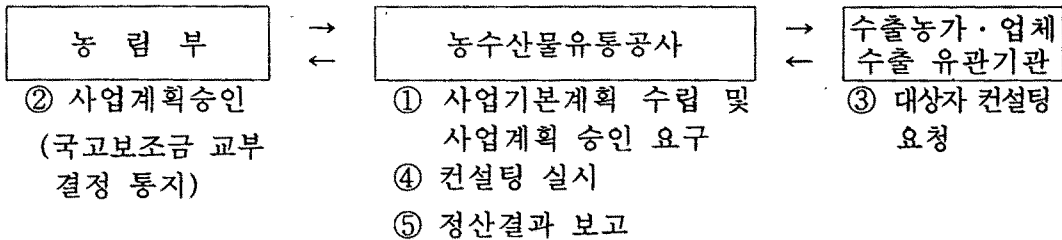
<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



< 현지화적용 상품개발 >



< 농산물 수출컨설팅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시행자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담당부서는 사업비의 집행이 사업목적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여부를 검정
- 검정 및 정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마다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현지점검 및 서면조사 병행)
 - 포장디자인 개발품 활용실태 조사 및 사업평가
 - 현지화 적용 개발상품에 대한 홍보 및 수출실적 점검
 - 농산물 수출컨설팅 추진상황 등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다.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체제 구축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가) 우수바이어 초청

- 사업내용 : 해외 대형유통업체, 유명 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우리 상품의 구매상담 알선 지원
- 초청대상 : 우리농산물의 주수출국 및 수출가능지역의 우수바이어 및 대형유통업체 구매자 또는 책임자
- 초청규모 : 3회 (예산집행상황 및 여건에 따라 규모변경 가능)
- 지원내용 : 국내체류비, 왕복항공료, 구매상담회 개최비용 등 지원
- 지원기준 : 국고 100%

나)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 사업내용 :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목표 시장에 우수한 한국 농산물의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지원
- 설치지역 : 일본 2개소, 미국 1개소 (설치지역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매장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국고 100%

다) 시장개척단 파견

- 사업내용 : 우리 농산물 주요 수출시장에 우수 수출업체를 파견하여 상품 홍보, 신규 바이어 및 유력 수입상 발굴 지원
- 파견지역 : 일본, 미주
- 파견기간 : 지역별 10일 내외
- 파견횟수 : 2회
- 지원내용 : 참가업체 항공료, 상담장 임차비, 상품홍보 팸플릿 등
- 지원기준 : 국고 100%

(2) 2000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1,150	1,150	1,150	-	-	-
○ 우수바이어초청	3회	300	300	300	-	-	-
○ 상설매장 설치	3개소	750	750	750	-	-	-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회	100	100	100	-	-	-

< 추진체제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8 - 5031)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98)

(3) 대상자 선정

가) 우수바이어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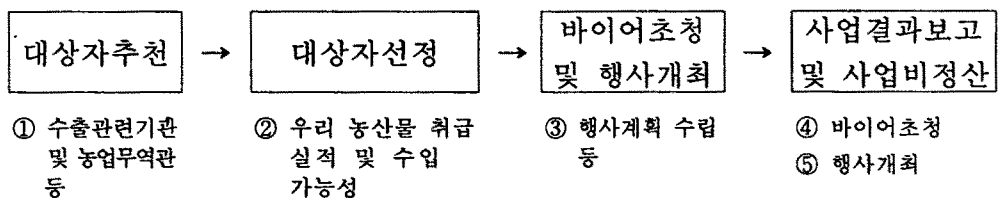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등 우리 농산물 주수출국 및 수출가능지역의 우수바이어, 대형유통업체 구매자 또는 책임자

○ 선정기준

- 한국과의 거래실적 및 향후 거래 전망과 한국의 농산식품의 수입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자 결정

○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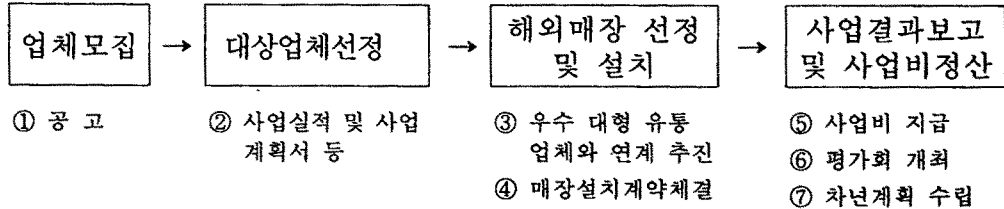


나) 해외상설매장 설치

○ 지원대상

- 우리 농산물을 일본 및 미주지역에 수출 또는 수입하는 업체중 적격업체

○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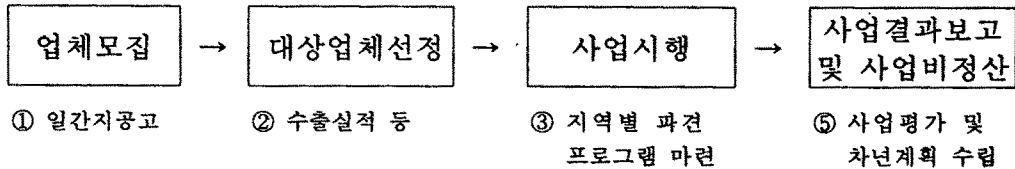


다) 시장개척단 파견

○ 지원대상

- 우수 농산물 수출업체, 단체 등 수출농업인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시행자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담당부서(무역진흥과)는 사업비 집행이 사업목적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여부를 검정
- 검정 및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매분기마다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현장점검 및 서면 조사 병행)
 - 사업결과 종합평가 실시 및 효과분석
 - 대형유통업체 및 현지판매 실적 및 운영실태조사
 - 시장개척단에 대한 홍보 및 수출실적 점검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라. 수출홍보사업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가) 농산물 수출확대여건 조성을 위한 한국농산물 홍보

- 옥외광고판 설치
 - 대상국가 : 2개국(일본, 홍콩)
 - 광고매체 : 멀티비전, 빌보드판
 - 주요내용 : 김치, 인삼, 돈육, 신선농산물 등 주요 수출품목 위주로 우리 농산물의 주 수출국에 광고 실시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전파매체 홍보
 - 광고기간 : 10개월
 - 일본의 주요 라디오 채널을 이용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전문지광고 등
 - 국내외 유통매체를 활용한 전문지 광고, 인터넷 홍보 및 주요 수출 유망 품목 광고사진 제작 등 수출홍보 지원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상표개발 및 판촉물 제작
 -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에 대해 상표를 개발하고 국내외 상표등록 및 판촉물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우리고유의 상표 알리기 전개
 - 상표개발 품목 : 3품목
 - 판촉물 제작 : 4종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우수품목 홍보지원
 - 해외시장 홍보효과 거양 및 수출확대를 위해 광범위한 이미지 홍보와 병행하여 해외시장에 직접 광고하는 개별브랜드 홍보 지원과 채널을 이용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 대상품목 : 3품목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업체자부담 50%

나) 한국식문화 홍보

- 김치요리교실 및 순회전시홍보
 - 김치 주 수입국인 일본 현지에서 김치담그기 등 김치요리교실 개최하고 백화점 및 슈퍼 등지를 순회하면서 전시판매행사 개최
- 김치인터넷 광고
 - 김치의 효능, 역사 등을 수록한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유명 외국사이트와 연결하는 배너광고 실시
 - 광고기간 : 12개월
- 이벤트 홍보 : 김치홍보센터 운영, 김치담그기 경연대회, 순회시식 판매전 개최, 멀티비전 홍보지원
- 연중홍보 : 홍보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배포, 마스크 홍보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2) 2000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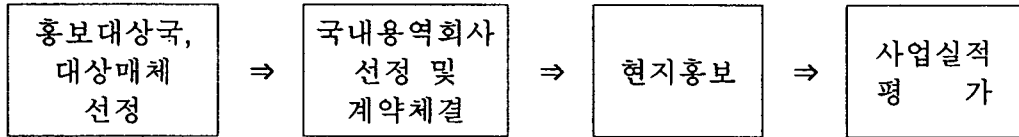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백만원)	-	1,825	1,780	1,780	-	-	45
○ 한국농산물홍보	5종	1,565	1,520	1,520	-	-	45
○ 한국식문화홍보	4종	260	260	260	-	-	-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8 - 5031)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78)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시행자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담당부서(무역진흥과)는 사업비의 집행이 사업목적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여부를 검정
 - 검정 및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현장점검 및 서면 조사)
 - 홍보효과 분석 및 사업평가
 - 사업중간 점검실시(홍보활동 현장을 방문해 점검 실시)
 - 사업종료시 결과 보고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전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마. 해외시장정보조사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농산물 수출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품목 및 수출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는 품목 등을 포함한 100대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필수정보를 수집하는등 심층조사
- 기 조사된 100개 품목에 대한 정보의 보완·갱신 및 수출 전략품목에 대한 국내외 심층조사
- 국내외 심층조사를 통해 수집된 품목별 국내 및 주요 수출대상국의 생산·유통·시장상황 등 정보를 분석가공·DB화하여 전파
- 정보이용자 편의 위주의 다양한 정보지원 S/W 및 신규 DB개발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2) 2000년 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	백만원 802	802	802	-	-	-
○ 농수산물무역 정보심층조사	○ 100개품목 갱신및보완	287	287	287	-	-	-
○ 농수산물무역 정보DB구축	○ 10종 S/W 개발	515	515	51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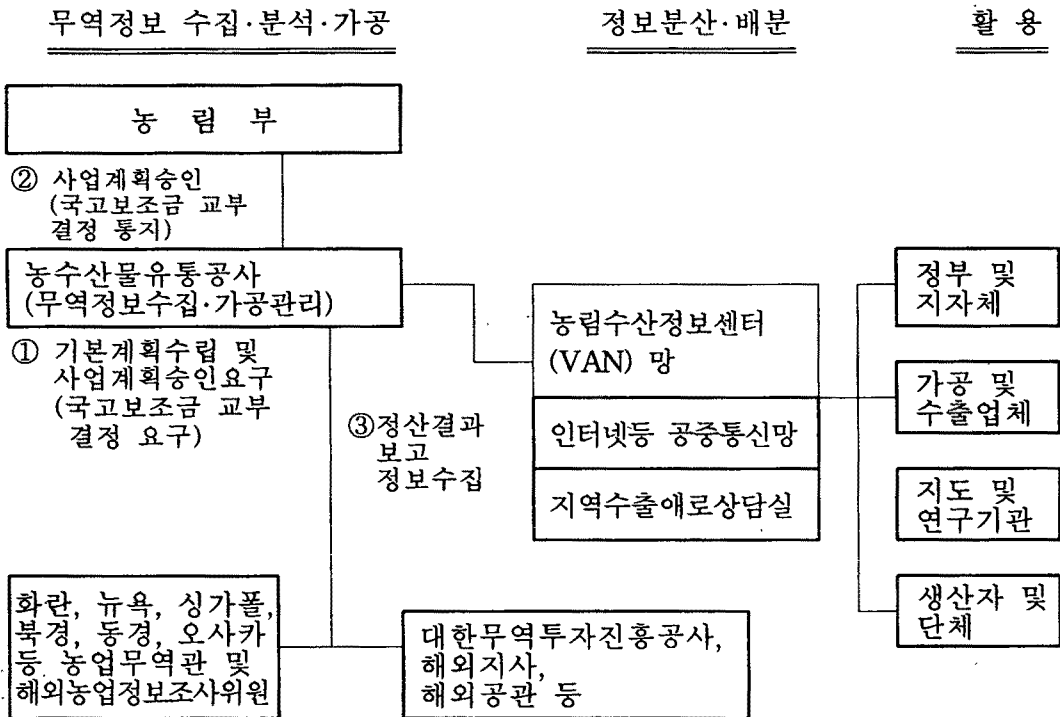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02-794-0594)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02-503-7278)

(3) 사업시행

○ 사업체제도



○ 사업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자는 농업인, 수출업체, 관련협회 등을 대상으로 무역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0.1월말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
 - 심층조사 :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 대상품목, 조사인원, 사전조사계획 및 현지조사 내용 등
 - D/B구축 : S/W개발의 내용, 추진시기 등

○ 사업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조정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사업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농수산물무역정보 심층조사
 -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조사결과의 자료집 발간배포 및 DB화 전파
- 농수산물무역정보 DB구축
 -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평가내용 : DB의 내용 및 범위 등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에 대한 활용도 조사·분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완 및 개선방안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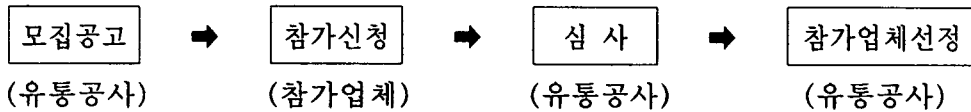
(2) 기타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의 정산결과 보고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가. 국제 농산물 박람회 참가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박람회사업팀(02-797-4022)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필요서류
- 대상자 선정



나. 수출활성화 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상품개발팀(02-794-4044)
수출홍보팀(02-798-5031)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 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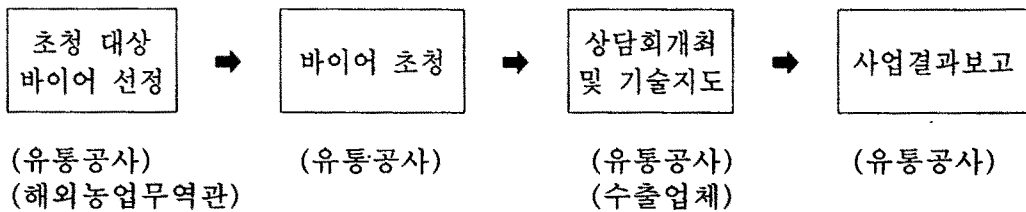
< 현지화적응 수출상품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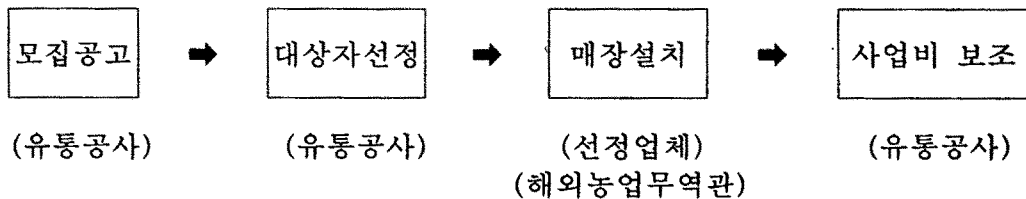
다.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체제 구축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시장개척팀(02-798-8591)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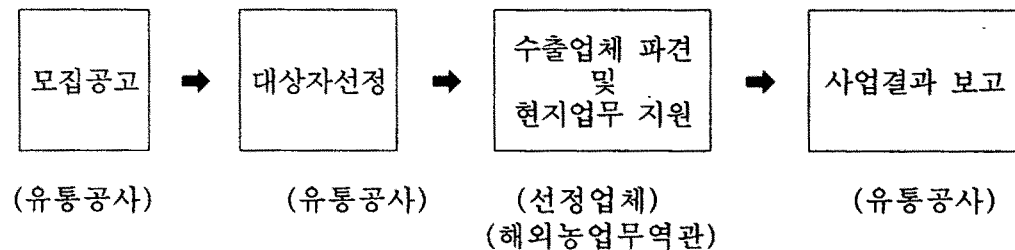
< 우수바이어 초청 및 기술지도 >



< 상설매장 설치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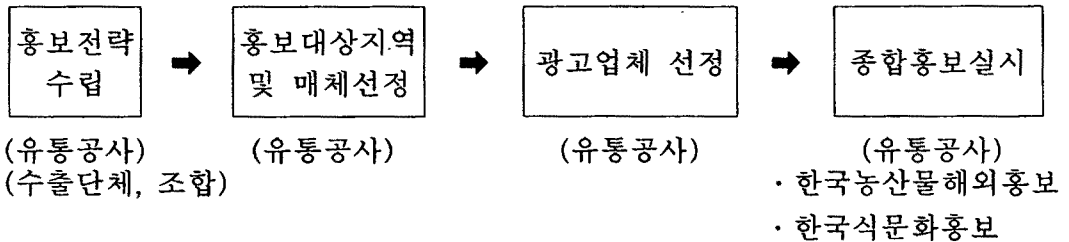
< 시장개척단 파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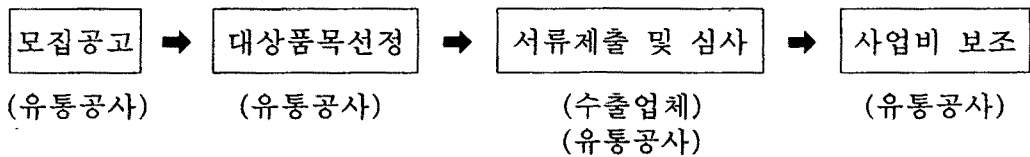
라. 수출홍보사업

○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홍보팀(02-798-5031)

< 농산물 및 식문화홍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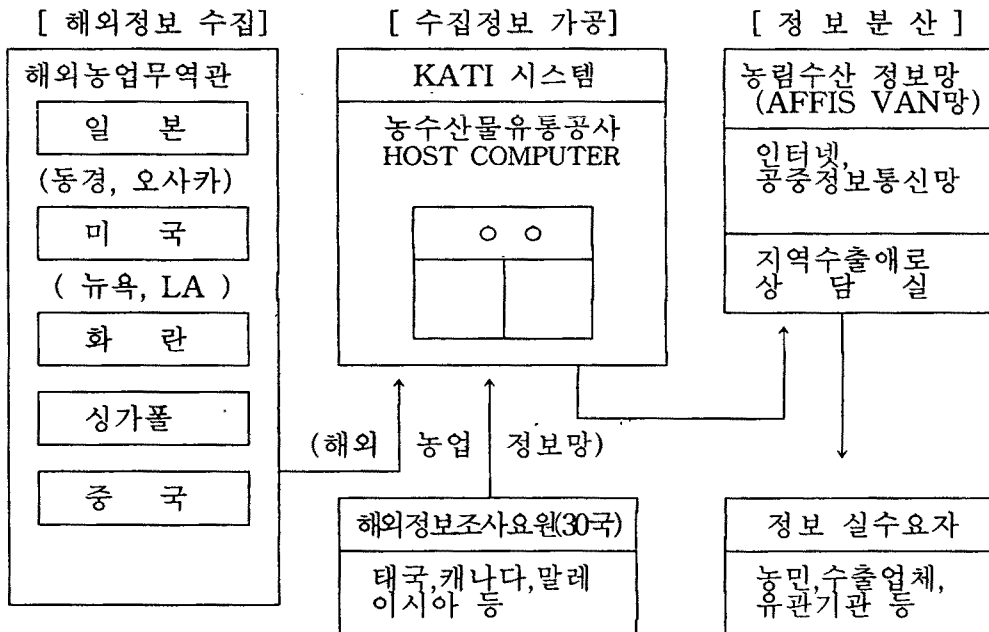


< 우수품목 홍보지원 >



마. 해외시장 정보사업

○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정보지원처) : 02-794-0594



34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최희중, 행정 사무관 윤명중)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 수출지원 시설과 기능을 갖춘 종합 수출지원기지를 확보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 지원
 - 국제농산물 박람회, 국내농산물 품평회, 회의 등 우리 농산물 판촉 및 교역의 장으로 활용
 - 해외 바이어, 농어민,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농수산식품의 생산, 유통, 무역정보 등에 대한 종합지원
 - 해외시장 개척, 첨단기술농업 습득, 바이어 유치, 수출상담, 알선 등 생산자 조직 및 수출업체에 종합마케팅 지원

2. 추진방향

- 전시홍보, 무역정보, 수출상담, 알선 등 “종합마케팅” 지원체제 구축
 - 국제전시장, 무역정보관, 회의실 등의 수출지원시설과 복합기능을 갖추어 우리 농수산식품의 종합수출거점 역할 수행
 - 국내외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무역정보센터 역할
- 수출지원시설의 일원화, 종합화로 생산에서, 수출단계까지 전과정을 일괄 서비스 제공
 - 생산자 조직 및 수출업체에 자금, 경영, 기술 등의 종합수출 지원
 - 국제교류 협력, 선진기술 및 마케팅기법 도입으로 수출활로 개척
- 2002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
 - 농수산물 수출종합지원기지로서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시설 및 기능 확보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7	'98	'99	2000 (예산안)	2001	2002- 2004	
사 업 량	1개소	계획, 실시 설계	건설공사 추진 (1차년도)	건설공사 추진 (2차년도)	건설공사 추진 (3차년도)	건설공사 추진 (4차년도)	건설공사 마무리 및 준공	
사	계	73,451	3,297	4,929	26,038	4,996	24,422	9,769
	보조 (설계·감리비)	25,715 (5,256)	3,201 (3,201)	2,266 (490)	9,677 (406)	1,657 (359)	6,531 (567)	2,383 (233)
업	(건설공사비등)	(20,459)	(-)	(1,776)	(9,271)	(1,298)	(5,964)	(2,150)
	용자 (설계·감리비)	27,278 (-)	- (-)	1,776 (-)	10,252 (-)	1,855 (-)	9,542 (-)	3,853 (-)
비	(건설공사비등)	(27,278)	(-)	(1,776)	(10,252)	(1,855)	(9,542)	(3,853)
	자부담 (설계·감리비)	20,458 (-)	96 (-)	887 (-)	6,109 (-)	1,484 (-)	8,349 (-)	3,533 (-)
	(건설공사비등)	(20,458)	(96)	(887)	(6,109)	(1,484)	(8,349)	(3,533)

※ 국고보조 지원 금액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비 지원
- 지원기관(사업수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조건
 - 설계·감리비 : 국고보조 100%
 - 건설공사비 : 국고보조 30%, 농안기금융자 40%, 자체조달 30%
- 건설내용
 - 사업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화훼공판장 부지 내)
 - 건축규모 : 부지 5,690평, 건물 15,815평
 - 주요시설 : 전시·박람회장, 무역정보관, 회의장, 전시·홍보관, 수출상사관 등
 - 사업기간 : 1996~2002년
- 주요시설별 기능
 - 전시·박람회장 : 국제박람회, 국내농산물 품평회, 이벤트 행사 등 개최
 - 회의장 :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 무역정보관 : 국내외 무역정보 수집 및 분산
 - 전시홍보관 : 농수산 정책홍보관 및 우수농산물 전시관 운영
 - 수출상사관 : 농수산 관련기관 및 수출업체 입주, 수출상담 및 거래알선 등 지원
 - 편의 시설 : 은행, 여행사, 우체국 등
 - 부대 시설 : 주차장, 기계실, 로비 등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농특회계)	용 자 (농안기금)		
계	1	4,996	3,512	1,657	1,855	-	1,484
설계·감리비		359	359	359	-	-	-
건설비 등		4,637	3,153	1,298	1,855	-	1,484

* 용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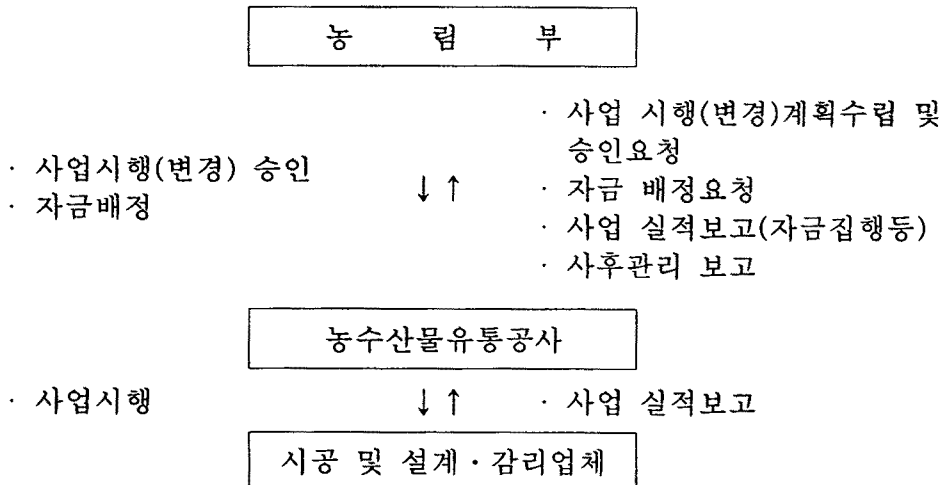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02-503-7278)

다.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 절차도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자금집행절차는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융자금의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담당부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사업담당부서는 연도말에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이 관계 법령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 등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를 심사

○ 내용별 보조금은 당해사업 지원조건에 소정 보조율을 초과하지 못함

○ 보조금은 교부액과 사업시행자의 실제 수입액을 확인

○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예치 이자는 정부 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 등에 관한 기준(회계예규 2200.01-1151, '93.5.20) 제1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과 함께 국고에 반납 조치

○ 공사실형은 승인된 설계도서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감리조서등에 따라 검정하며 실형상태가 불합리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조치

○ 공사실형을 검정함에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시에 부여한 지시조건 이행 여부를 대조하여 검정

○ 공사실형 검정에 있어서 증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 건립 이전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지침 수립과 전시 등 운영기법 습득으로 센터 준공이후 성공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사전에 준비
 - 센터 특성에 적합한 장·단기 운영·관리 계획 수립으로 경영 효율성 향상
- 센터 건립 후 운영·관리방안 강구
 - 특화된 농업전문 무역전시장이 되도록 각국 박람회 조직과 협력하여 바이어 유치 등 사업효과 극대화
 - 국내외 시장 및 물류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종합 『무역 데이터뱅크』로 운영(인터넷 등을 활용한 농수산물 수출업체 정보망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정보화 지원)
 - 농수산물 관련 국제회의, 세미나 등 개최로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과 농업발전 촉진
 -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정보 및 경영컨설팅 제공(농수산물 유통 및 무역에 관한 정책홍보 및 전문교육실시)
-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농수산물무역 진흥센터	2002	2042	농림부 장관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 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준용

나. 보고·기타

- 매 분기마다 건설 추진상황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 분기 익월 15일 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최희종, 행정 사무관 윤동진)입니다.

1. 목 적

- 민간업체 및 생산자단체가 우수농산물을 구매, 가공 및 수출 등 우수농산물 유통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기능을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민간업체의 우수농산물 구매·수출을 지원하고 계약생산 체제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원 확보
- 우수농산물의 포장개선, 규격화와 물류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
- 저장·가공 및 부대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우수농산물 규격품 생산 확대와 고품질화를 적극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47조(농안기금의 운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분	'92~'97	'98	'99	2000
합 계		635,468	276,784	300,500	302,265
우수농산물 구매·유통지원	용 자	526,140	202,748	218,500	224,265
우수농수산물시설 현대화지원	"	27,328	21,036	27,000	22,000
유망품목시장개척지원	"	82,000	53,000	55,000	56,00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우수농산물 구매·유통지원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규모 : 2,243억원

- 구매지원(지정품목) : 1,393억원
- 유통지원 : 850억원
 - 일반업체 : 800억원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 : 50억원

(2) 지원조건

- 대출 금리 : 연 5%
- 대출 기간 : 12개월
- 자부담비율 : 자금지원액의 10%이상
- 용 도
 - 구매지원 : 각 품목별 국내농산물 구매비
 - 유통지원
 - 우수농수산물의 가공, 저장, 포장, 운송경비 등 부대 비 및 부자재 구입비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 공급비(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 업체에 한함)
- 대출한도
 - 구매지원

[최고한도 : 품목별 지원규모의 30%이내
	최저한도 : 품목특성에 따라 최소 적재물량(1콘테이너) 해당액으로 하되 50백만원 이상
 - 유통지원 최고한도 : 업체당 30억원이내
- ※ 지원한도별로 배정하되 여유자금이 발생하거나 연간 예산 규모가 증액되어 추가 지원할 경우 수출업체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 구매지원

(단위 : 백만원)

분 류	세부대상품목	지원액 (P)	지원시기	대출기간	비고
채 소 류	소 계	30,250			
	(오이, 토마토등 일반채소)	(18,150)	4월	12개월	
	(김치원료)	(12,100)	4월	"	
과 실 류	사과, 배 등 과실류 전품목	16,900	6~10월	"	
약 용 류	시호, 길경, 산수유 등 생약 전품목	1,900	자금요청시 (품목특성감안 조정가능)	"	
버 섯 류	송이, 표고버섯을 제외한 버섯류 전품목	970	5월	"	
화 훼 류	절화, 분화, 선인장 등 화훼류 전품목	1,700	자금요청시 (품목특성감안 조정가능)	"	
인 삼 류	백삼, 홍삼, 뿌리삼 또는 그 가공제품 (분말, 엑기스 등)	13,500	8월	"	
임 산 물	소 계	42,845			
	(밤)	(27,075)	7월	"	
	(표고)	(5,800)	3월	"	
	(송이)	(8,600)	7월	"	
	(기타임산물)	(1,370)	7월	"	
채소종자		1,200	9월	"	
축 산 물	돼지고기, 닭고기 등	30,000	10월	"	
합 계		139,265			

※ 품목별 지원액은 '99년도 품목별 수출액이 최종 집계된 후에 '98년도 실적 대비 증감여부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하여 별도 확정 (수출증가품목 : 10% 범위내에서 증액, 수출감소품목 : 10%범위내에서 감액)

○ 유통지원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85,000	85,000	-	85,000	-	-
○ 일반업체 유통지원	80,000	80,000	-	80,000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지원	5,000	5,000	-	5,000		

○ 용도별 자금지원 시기

- 수매자금 또는 수매 및 유통자금 동시 배정업체 : 품목별 지원 시기
(2품목 이상 사용업체의 유통자금은 각 품목별 지원시기 또는 최초 품목
지원시기에 일괄 지원 가능)
- 유통자금만 배정된 업체 : 2000. 8월

< 추진체제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02-503-7298)

다.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02-793-6597)

라.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1) 지원대상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자로서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수매지원은 해당품목)이 있거나 당해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단, 과거 수출실적이 없고 당해년도 수출
계획만 있는 업체는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우수농수산물을 저장, 가공하는 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부자재(공관)를 제조하여 통조림 수출업체에게 공급
하는 업체(해당자금에 한함)

(2) 선정기준

- 업체의 사업지원신청을 받아 구비서류 확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무 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는 제외한다.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사업은 석판, 제관, 골판지 등 부자재 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수출업체에 공급실적이 있고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선정 및 배정절차

- 지원계획 공고 : '99. 12월 중순(일간신문에 공고)
- 지원대상업체 사업지원신청서 접수(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
 - '99. 12월 중순 ~ 2000. 1월 중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구매지원 : 2000. 3월말한
 - 유통지원 : 2000. 3월말한

(단,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용은 2000. 5월말한)

* 업체별 구매지원 및 유통지원 용도로 일괄선정·배정

(4) 업체별 자금배정기준

구매지원

- 업체별 평점에 의하되 평점구성은 수출실적 70%, 수출추진노력 30%를 적용하고 수출업체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실적 평점 산출시 우대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전항의 기준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된 금액은 '99년도 업체별 해당품목의 수출실적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하여 조정 배정할 수 있다.
 - '99년도 수출실적이 '98년 대비 100%이상인 업체 : 10% 해당액 이내 증액
 - '99년도 수출실적이 '98년 대비 90%미만인 업체 : 10% 해당액 이내 감액

□ 유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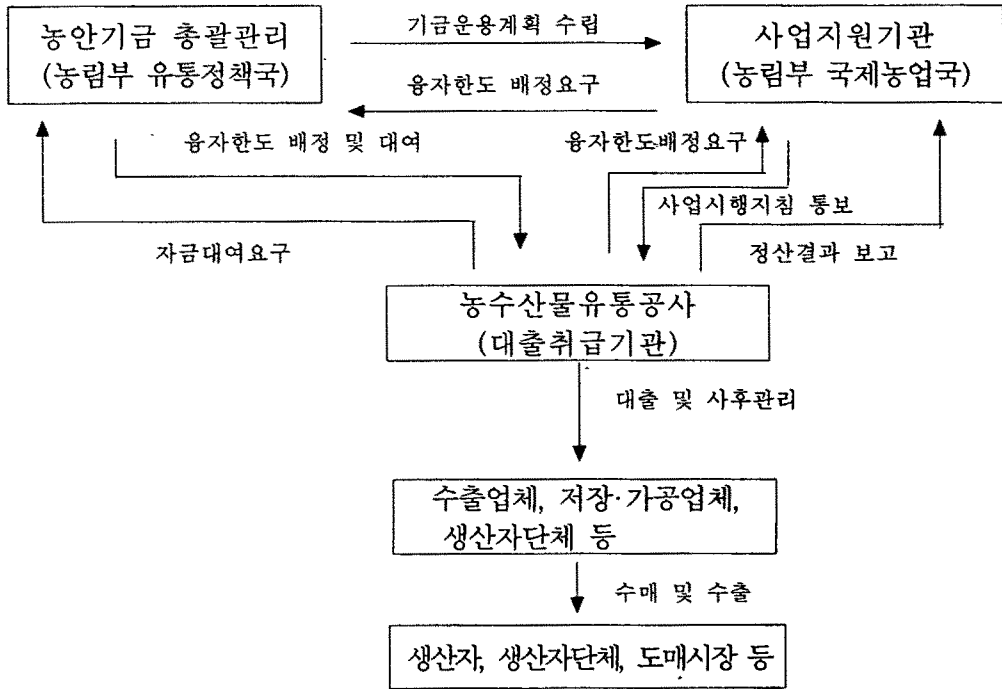
- 일반업체
 - 업체별 평점에 의하되 평점구성은 수출실적 70%, 수출추진노력 30%를 적용하고 수출업체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평점 산출시 우대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
 - 한국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입조합 이사장이 추천한 업체에 사업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 배정하되 업체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지원한도별로 배정하고 여유자금 발생시 지원 한도 초과 가능

(5) 사업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사업시행

○ 사업시행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본 지침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사후관리 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 (2) 사후관리방법 : 용도별 업체별 사후관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 수매지원

- 수매의무액 : 대출액의 110% 이상
- 수출의무액 : [대출금 + (대출금 × 자부담비율)] × 50%
 - 수출실적 : 품목별 수출실적은 월평균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
- 수매대상
 -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수매한 경우
 - 현지 생산대표 농가로부터 수매한 경우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의 도매·중개에 의하거나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한 후 직접 매수한 경우
 - 우수농산물을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에 등록된 수집상(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에 한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수집상 포함)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 사업정산
 - 사업시행자는 품목별 자금상환 만기일 후 14일 이내에 수매 및 수출 실적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사업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재사항
 - 자금의 부당사용 : 부당사용자금 회수, 위약금 징구 및 정도에 따라 대출정지 1~5년
 - *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50% 범위내에서 단축가능
 - 법령위반 : 대출금전액 또는 일부 회수 및 대출정지 2년(사업지원 기관과 협의 감경 가능)
 - 사업의무미달
 - 자부담비율 미만 수매 : 당해 대출금 전액 회수, 위약금 징구 및 대출정지 2년
 - ※ 다만, 수출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정지기간을 1년으로 단축 가능
 - 자부담비율 이상 수매하였으나 의무액 미만 수매 : 미이행 상당액의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 수출의무 미달 : 위약금 징구

□ 유통지원

- 수출 의무액 또는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공급의무액(일반업체)
 - 수출의무액 : 대출액의 55%이상
 - 수출실적 : 농수산물 수출실적 전체로 월평균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
 - 사후관리 방법 : 비축공급실적으로 같음
 - 공급의무액 : 공급계약액의 50% 이상 공급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 사후관리 기준은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이사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이사장은 매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다.
 - 공급실적 확인방법은 공판(제판, 골판지) 공급실적 보고서, Local 신용장사본 또는 영세율 매출계산서 사본 등에 의한다.
- 사업정산
 - 사업시행자는 대출기간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원업체로부터 수출실적 자료 등을 징구하여 사업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재사항
 - 자금의 부당사용 : 부당사용자금 회수, 위약금 징구 및 정도에 따라 대출정지 1~5년
 - *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50% 범위내에서 단축가능
 - 법령위반 :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및 대출정지 2년(사업지원 기관과 협의 감경 가능)
 - 사업의무미달
 - 자부담비율 미만 수출 : 당해 대출금 전액 회수, 위약금 징구 및 대출정지 2년
 - ※ 다만, 수출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정지기간을 1년으로 단축 가능
 - 자부담비율 이상 수출하였으나 의무액 미만 수출 : 위약금 징구
 - 공급의무액 미이행 : 위약금 징구

나. 보고·기타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매·유통지원 세부시행계획 수립 제출(2000.1.20까지)
 - 월별 수매지원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익월 10일까지)

(나) 우수농수산물 시설현대화 지원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규모 : 220억원
- 용 도
 - 우수농수산물 유통에 필요한 저장·처리 및 가공시설의 증설 및 개보수
 - 우수농수산물 수출업체 및 수출지원업체의 부대시설(건물 등) 증축(설) 및 개보수
 - 우수농수산물 수출업체의 부대장비(운반차량, 물류장비 등) 구입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자부담 비율 : 자금 지원액의 25% 이상

나. 2000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합 계		22,000	22,000	-	22,000	-	-
○ 일 반 업 체		22,000	22,000	-	22,000	-	-

< 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02-503-7298)

다.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02-793-6597)

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1) 지원대상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자로서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최근 2개년간 200천불이상)이 있거나 당해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단, 과거 수출실적이 없고 당해년도 수출계획만 있는 업체는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의해 100천불 이상인 자에 한한다.

(2) 선정기준

- 업체의 신청을 받아 최근 2개년간 농림수산물 수출실적이 200천불 이상인 업체중에서 다음사항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수출입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무 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는 제외한다.
 -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최근 2개년간 농림수산물 수출실적
 - 사업추진 가능성
 - 사업추진 시기
 -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

- 지원대상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적격심사 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3) 선정 및 배정절차

- 지원계획 공고 : '99. 12월 중순(일간신문에 공고)
- 지원대상업체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
- '99. 12월 중순 ~ 2000. 4.15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2000. 5월말한

(4) 업체별 자금 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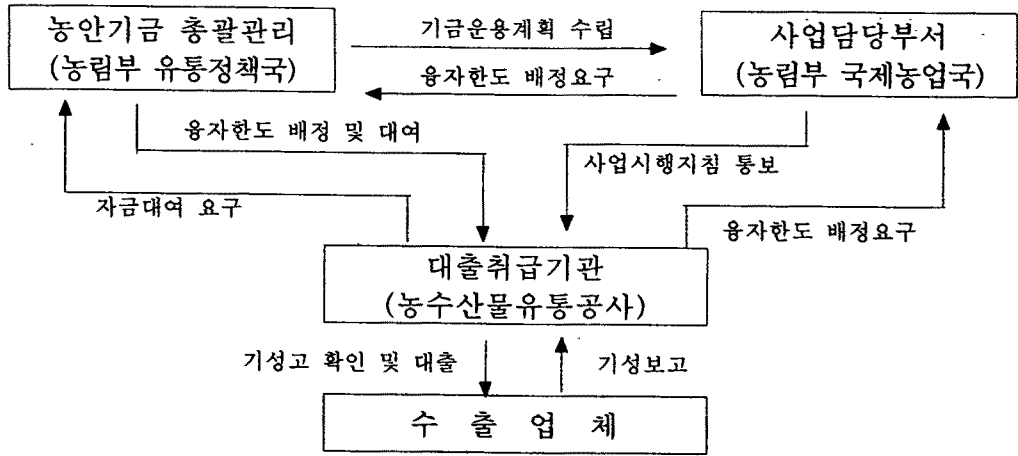
- 업체별 평점에 의하되 평점구성은 적격심사 평점 40%, 수출추진 노력 30%, 수출실적 30%로 한다.
- 항목별 평점산출 세부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대출금 지급은 대출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사업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사업시행

○ 사업시행체계(일반업체)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본 지침에 의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후관리방법
 - 시설자금 대출금의 사업실적 확인은 기성고 보고 확인으로 같음한다.
- 제재사항
 - 자금의 부당사용 : 부당사용자금 회수, 위약금징구 및 정도에 따라 대출정지 1~5년
 - *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50% 범위내에서 단축가능
 - 법령위반 :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및 대출정지 2년(사업지원기관과 협의 감경 가능)

나. 보고·기타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0.1.20까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망품목 시장개척지원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규모 : 560억원
- 지원조건
 - 금리 : 연 5%
 - 기간 : 12개월 이내
- 자금운용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농협중앙회장, 인삼협중앙회장
- 자금용도
 - 생산자 조직 또는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 우수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구매하는 자금
 - 우수농수산물의 포장자재비, 운송비, 부자재구입비 등 유통사업비

나. 2000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합 계		56,000	56,000	-	56,000	-	-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00	20,000	-	20,000	-	-
○ 농협중앙회 (수출관련자회사) (회원조합)		30,000 (18,000) (12,000)	30,000 (18,000) (12,000)	- - -	30,000 (18,000) (12,000)	- - -	- - -
○ 인삼협중앙회		6,000	6,000	-	6,000	-	-

< 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02-503-7298)

다. 사업시행자 또는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장, 인삼협중앙회장
(사업시행자), 농수산물유통공사(기금대출 취급기관)

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농협중앙회 및 인삼협중앙회

- 사업시행자(농협중앙회장, 인삼협중앙회장)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농협중앙회는 수출관련 자회사 및 회원조합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은 다음에 의한다.
 - 지원대상조합 : 우수농산물(가공식품 포함) 수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을 선정하여 지원하되 전문생산단지를 운영하는 전문조합을 우선 지원한다.
 - 지원기준 : 조합당 10억원 이내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금대출취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원칙적으로 신규 유망품목 창업업체, 신규품목 개발업체, 우수 경영체 및 생산자조직 등에 지원하되 우수농산물 구매·유통지원대상 업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단, 자부담 비율 및 수출의무액은 우수농산물 구매·유통지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본 지침에 의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수출실적,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금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사업추진실적(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수출 실적 등)을 익월 10일까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보고·기타사항

- 사업시행자 또는 기금 대출취급기관은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시행 계획을 2000.1.20까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대상사업 :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 우수농수산물 시설현대화 지원, 유망 품목시장개척지원사업

나.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 또는 사업소

다. 신청자격 : 우수농수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라. 구비서류

- 지원대상업체 사업지원 신청서(사업시행자 소정양식)
- 사업계획서(사업시행자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간 농수산물 수출실적 증명원(외국환은행장 발행)
-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증명원(관할 세무서 확인)
- 농안기금 대출 신청서(사업시행자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기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서류

마. 대상자 선정

- 지원계획 공고 : 2000년 12월 중순(일간신문, 경제신문)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2000년 12월 중순 ~ 2001년 1월 중순(시설자금은 4월 15일까지)
 - ※ 단, 유망품목시장개척자금(농수산물유통공사)은 연중 접수 및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2001년 3월(시설자금은 5월말)

※ 사업별 자금지원 시기를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개 정 의 건

현행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나. 신청자격

(4) 기업경영성

수정

위 조항 삭제

변경사유

민간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사업계획 타당성과 신청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기술심의회 등의 충분한 심사·평가 후 결정되므로 별도의 신청자격 기준을 설정해서 신청 자체를 막는 규제라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금번 시행지침 개정시 삭제하고자 함.

IV. 생산 및 유통개선(축산)

여 백

※ 이 사업시행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조규담, 사무관 최이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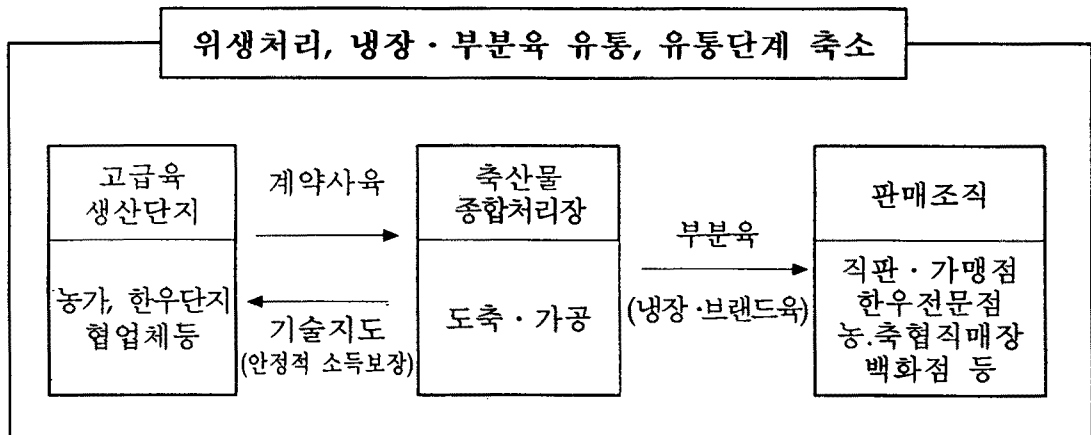
I.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1. 목 적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의 계열화 유통체계 확립으로 국내 축산물유통구조의 선진화
 - 육류유통을 지육·냉동육 유통에서 냉장육·부분육·브랜드육 유통체제로 전환 및 등급별, 부위별 차등가격제도 정착
- 선진국 시설기준의 도축·가공시설 운용으로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국내산 육류의 위생도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선진국 수준의 위생적인 육류 생산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LPC는 2000. 7월부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장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생산·유통모델



나.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기본계획

(2)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개념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Livestock Packing Center)이란 선진국 위생수준 (미 USDA시설기준)의 도축·가공시설(계류, 도축, 및 부분육가공 등), 보관시설 (냉장·냉동)을 동일 장소에 갖추고 양축농가(전업농·협업체·단지 등)와 계약 또는 자체 생산된 소, 돼지를 부분육, 냉장육으로 도축·가공하여, 등록된 상표(브랜드)를 부착, 자체판매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및 수출하는 일련의 축산물 종합 유통시설

(2) 건설 및 가동계획

- 2000년까지 10개소(대규모 6, 중규모 4)를 건설·운영하므로써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품질향상 및 유통단계 축소에 의한 경쟁력 제고
 - 운영중 LPC : 5개소(축협 김제, 한냉 중부, 안성축산, (주) 부천, 명신산업)
 - 추진중 LPC : 5개소(동아축산, 박달제한우, 푸른육원, 삼언물산, 하이미트)
- 가동계획 : '99까지 5개소, 2000년 5개소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자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8까지	'99	2000 예산안	2001	합계	
축산물종합 처리장 건설	사업량(개소)	8	(5)	(3)	(-)	8	
	사업비	보 조	-	975	827	-	1,802
		용 자	41,709	15,614	16,350	-	73,673
		지방비	-	-	-	-	-
		자 담	12,334	4,147	5,301	-	21,782
계	54,043	20,736	22,478	-	97,257		

※ 사업량 ()는 계속사업이며, 기존 2개소(축협김제, 한냉중부)는 미포함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표준사업비 및 도축·가공능력(개소당)
 - 대규모 : 17,984백만원, 소 100두/일, 돼지 1,500~2,000두/일
 - 중규모 : 10,503백만원, 소 50두/일, 돼지 750~1,000두/일
- 자금용도 : 도축·가공, 오·폐수시설 관련 건축, 기계 등 (부지매입비 제외)

(2) 세부 사업별 지원기준

- 도축시설 : 융자 80%, 자담 20%
- 오·폐수시설 : 융자 100%
- 육가공시설 : 융자 70%, 자담 30%
-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생산자단체(축협 등)가 참여하는 LPC는 참여지분에 대한 20%를 세부 사업별 지원기준에 의한 융자지원 비율중 보조로 지원
 - 생산자단체가 건설중에 있는 LPC를 인수할 경우에도 동일 조건을 적용
 - 지원액은 인수가격이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표준사업비를 적용하고, 미달하는 경우는 인수가격을 기준으로 함

(3) 대상자·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제3자 매각 등

- 사업규모조정, 사업자변경 등 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로 승인요청
 - 기본계획하의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경미한 세부내역 변경은 도지사가 검토 승인
- 제3자 매각시에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대상자 선정시의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사업자 평가기관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등 정책자금지원 제한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평가에 적합하고 양자간 인수·인도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상자 변경승인(농림부)
- ※ 사업자 변경시 주요 검토사항 : 원료 및 판매망 확보계획, 자부담 조달 방안, 도축장·가공장의 위생관리계획 및 고급육 생산계획 등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00 예 산 안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 조	용 자		
하이미트	11,084	8,061	-	8,061	-	3,023
푸른육원	7,252	5,802	827	4,975	-	1,450
삼연물산	4,142	3,314	-	3,314	-	828
합 계	22,478	17,177	827	16,350	-	5,301

다.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500-2691~2)
- 도 : 축산과 또는 담당과
- 시·군 자치구 : 축산과 (산업과, 산림·축산과등)

(3) 대상자선정

- 신규사업 추가 선정계획 없음

(4) 사업시행

- 도지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 위원장 : 시·도 담당국장
 - 위 원 : 축산과장, 공업과장, 농어촌개발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 개발과장, 식육유통전문가, 관련학계전문가, 회계사등 경영분석전문가와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자 등

- 위원회의 기능 : 도축·가공시설 설계안 및 사업계획서 심의, 사업계획 변경·조정안 심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 위원회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개최
- 사업비는 도지사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 집행
 -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농림부 훈령제999호, '99.9.8)에 의거, 지원자금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류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도, 시·군)은 매년 말(회계년도 말)에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라. 행정사항

(1) LPC 건설 및 자금집행 세부요령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 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하게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경우 사유를 첨부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5454호),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99.9.8)에 따름

(2) 사후관리

- 분기별 1회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내용점검 : 도지사 주관으로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실시
 - 건설중인 LPC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운영중인 LPC : 원료확보, 가맹점·직판장 설치등 정상운업을 위한 제반사항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처분제한기준 : 융자금 회수시 까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내에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법률제5454호)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 '99.9.8)에 의함

(4) 추진상황보고

- 추진실적
 - 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완료 보고 :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 (사진 첨부 등)

6. 2001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추가사업 계획 없음

<붙임>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 및 운영지침

1. 사업자 준수사항

- 안정적인 원료육 확보 및 가동을 제고를 위하여 전업농·협업체 등 양축농가 및 계열화사업체와 계약생산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자체 브랜드를 개발·등록하여 공급·판매할 수 있는 조직을 확보할것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도축·가공 과정에서의 세균오염을 최소화시켜 품질향상과 냉장육 유통에 필요한 위생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 도축된 지육은 가공시설 운영주체에게 인도하여 냉장·부분육으로 가공하고, 고유상표를 부착, 자체 판매망(가맹점·직판장 등)에 공급 및 수출
 - 다만, 판매용 지육반출은 '99년도 요령(축통51557-176 : '99.4.23)에 의거 도축 물량의 일정비율(20~50%) 이내에서 허용

2. 시설설치 및 운영

- 소 및 돼지의 전용 계류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류장 바닥은 불침투성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하고 내수성의 지붕을 설치하여야 함.
 - 생축 하차시 가축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용 하차대를 설치하여야 함.
- 돼지 전용 계류장에는 자동물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도축방법은 소는 에어건에 의한 타격법, 돼지는 전살법이나 CO₂ 개스법을 사용하여야 함.
- 도축 및 가공장 실내 천장에는 반드시 자외선 살균등을 설치하여야 함.
- 육가공실은 세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와 완전차단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고 가공작업중의 실내온도는 15℃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3. 위생수준 향상

- 도축 및 가공시설 운영주체는 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위생관리인의 책임 하에 작업장 등의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관리일지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도축 및 가공실의 위생유지를 위하여 월 2회이상 지육의 표면 및 육가공장의 작업대에서 세균수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은 3년이상 보관해야 함.
- 도축후 지육 표면의 세균수는 1cm²당 10³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00.7.1일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 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위에서 언급한 기준외의 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5. 준수사항 불이행시 조치기준

위 반 행 위	위 반 회 수 별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LPC 시설 및 운영지침 위반	주의통고 (시정조치)	경 고 (시정조치)	지원자금 20%회수	지원자금 50%회수
2.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조치			

※ 1) 본 기준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5년동안 적용한다.

2)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언급하여 조치에 필요한 기한 (1년이내)을 정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다음 차순으로 조치.

II. 축산물공판장 건설

1. 목 적

- 부천 축산물공판장 건설(계속사업추진)로 수도권 육류 수급안정
- 제주 축산물공판장 시설증축으로 축산물 수출촉진과 제주지역 육류수급 안정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원활한 육류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 강화
 - 서울공판장의 도축기능을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 기존 공판장의 증축 및 개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부분육 유통의 활성화 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 조	용 자	소 계			
부천공판장	13,096 (50%)	5,239 (20)	18,335 (70)	5,239 (20)	2,619 (10)	26,193 (100)
'98까지	4,751	1,900	6,651	1,900	1,125	9,676
'99	4,790	1,912	6,702	1,912	957	9,571
2000 예산액	3,555	1,427	4,982	1,427	537	6,946
제주공판장	4,762	3,559	8,321	2,388	2,397	13,106
'98까지	3,168	2,921	6,089	1,700	2,078	9,867
'99	750	300	1,050	300	150	1,500
2000 예산액	844	338	1,182	338	169	1,689

5. 2000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부천 축산물공판장 : 계속사업
- 제주 축산물공판장 : 제주도 유일의 도축시설인 공판장의 처리능력 한계에 따른 시설 확충

(2) 사업기간

- 부천 축산물공판장 건설 제4년차 사업('96~2000)
- 제주 축산물공판장 시설확충(2000.1~12)

(3) 사업내용

- 부천 축산물공판장 : 기 계획된 연차별 계속사업(4년차, 최종연도)
- 제주 축산물공판장 : 도축시설 증축, 계류장, 배차장, 전기배선 등
 - 기존 노후된 시설물교체 및 기존 건축물 개·보수는 자담으로 실시

(4) 2000년도 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 담	합 계
	보 조	용 자	소 계			
○ 부천공판장	3,555	1,427	4,982	1,427	537	6,946
○ 제주공판장	844	338	1,182	338	169	1,689
합 계	4,399	1,765	6,164	1,765	706	8,635

- 용자조건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3%

나. 사업 추진체계

(1) 주관기관 : 도지사

(2) 사업시행자

- 부천 축산물공판장 : 축협중앙회
- 제주 축산물공판장 : 제주 축협

(3) 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 도 : 축산과

(4) 사업시행

- 부천 축산물공판장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 제주 축산물공판장은 세부사업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2000.2월말까지)
 - 재원별 부담비율에 의거 지방비 20%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행하되 지방비 미확보시 자부담으로 추진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설계에 의거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공개 경쟁입찰등의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
- 10억원이상의 건축공사는 시·도(시·군)입회하에 지도·감독 강화
- 계약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시·군)관계관에 입회하고 계약 청약자 및 낙찰자 공개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구분될 경우)에는 시·도(시·군)관계관 입회 및 선정 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사업비 정산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등을 확인 자부담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첨부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함

사업계획 변경승인

- 사업규모 조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로 승인요청
 - 기본계획하에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경미한 세부내역 변경은 도지사가 검토 승인

다. 행정사항

- 주관기관은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1회이상 수시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다음분기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정산하고 결과로 10일이내에 보고

6. 2001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축산물공판장 신규 건설사업 계획 없음

37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조규담 사무관 최이규, 신대식)입니다

I.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부분육가공시설>

1. 목 적

- 도축 및 도소매단계의 냉장·부분육 생산·유통 활성화로 육류수급 및 가격안정
- 육류의 유통비용 절감 및 위생적인 육류유통을 통한 안전성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의 도축 및 도소매 유통단계 축소 등 활성화 도모
 - 도축기능에 가공기능을 보완하므로서 유통비용 절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8까지	'99	2000예산안	2001이후	계
사업량		10개소	15	35	60
사업비	-	7,000	10,500	24,500	42,000
- 축발	-	4,900	7,350	17,150	29,400
보조	-	-	-	-	-
융자	-	4,900	7,350	17,150	29,400
- 지방비	-	-	-	-	-
- 자부담	-	2,100	3,150	7,350	12,600

5. 2000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 대상자 및 조건

- 농안법규정에 의한 축산물공판장 경영자, 축산물가공처리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도축업(소·돼지) 경영자, 식육판매업자단체 및 브랜드육 생산자로서 지육을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
- 가공능력이 1일 소 30두 또는 돼지 150두 정도 일 것

(2)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순위 : 축산물 공판장에서 기존 도축장 건물을 이용하여 부분육 가공공장 시설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시설을 확장 하고자 하는자
- ② 순위 : 생산자단체가 직영하는 도축장에서 가공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자
- ③ 순위 : 일반도축장 경영자, 식육판매업자단체 및 브랜드육 생산자로서 자동화등 위생적인 도축시설을 갖춘 도축장과 연계하여 부분육가공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3) 사업량 및 사업비 : 15개소, 7,35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700 백만원 (읍자 490, 자담 210)
- 지원(읍자) 조건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8%(생산자단체5%, 일반도축장8%)

(4) 사업내용

- 부분육 가공을 위한 절단기, 진공포장기등의 가공시설, 냉장·냉동 보관시설, 경매시설비, 전기시설·설비공사와 기존건물(창고,가공장등) 개·보수비등
 - 기존 도축장시설과 연결하여 부분육가공장을 설치하고, 도축된 지육은 세균 오염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부분육가공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지육표면 세균수는 1cm²당 10³ 이하로 유지).
- ※ 가공장건물 신축자금 및 임차료 등의 운영자금 사용 금지

나. 사업추진체계

(1) 주관 : 시·도지사

○ 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 시·도 : 축산물유통담당과(축산과, 농정과 등)

(2) 시행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00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계류장, 도축장 전경 및 내부시설 사진 첨부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
 -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
 - 본 사업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임을 유의하여 신청
- 농림부에서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3) 사업계획서 내용

- 사업개요, 부분육 가공시설 계획(시설을 확장하는 경우는 당초와 개선계획 비교), 시설내용과 자금조달 계획, 원료육 확보방안 및 부분육가공·판매계획, 사업시행 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등

(4) 사업 시행 요령

- 사업시행자는 대상자 선정통보에 의거 사업을 추진
- 사업시행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입찰 등의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99.9.8)에 의거 자금집행 및 증빙서류 확보
- 자금집행은 시·도지사의 기성고 확인에 의거 집행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여부를 확인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분기별 추진실적을 다음분기 15일까지 보고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
 - 사진등 증빙자료를 첨부

6. 2001년 사업시행요령 : 2000년 사업시행요령에 의함

<계란가공장·집하장>

1. 목 적

- 계란가공 및 집하장 건설로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수급조절에 대한 가격안정도모
- 신선란 유통 및 소비형태 다양화로 계란소비 확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계란 소비확대 및 신선란 유통체계 구축
 - 계란 비수요기(하절기) 및 가격폭락으로 인한 체화시 저온창고 비축보관으로 계란의 수급조절 기능강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7까지	'98	'99	2000	2001	합계
○사 업 량	6	2	(2)	4	(2)	10
○사 업 비	19,648	2,355	2,256	2,611	839	27,709
- 축발기금(용자)	12,639	1,649	1,579	1,827	588	18,282
- 자부담	7,009	706	677	784	251	9,427

5. 2000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계란가공장 : 경기 (주)참나무촌, 충북 (주)풍림산업
- 계란집하장 : 충남 홍성축협, 전남 광주전남양계축협조합

(2) 사업기간 : 2000.1~2001.12(1~2년)

(3) 사업내용

- 자금용도 : 건축, 가공시설, 냉장(동)시설, 폐수, 발전시설, 차량, 장비구입 등(부지매입비 제외)

(4) 2000년도 사업비 및 지원조건

구 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 담
			소계	보조	융자		
합 계	4개소	2,610	1,827	-	1,827	-	783
경기 (주)참나무촌	1	1,400	980	-	980	-	420
충북 (주)풍림산업	1	300	210	-	210	-	90
충남 홍 성 축 협	1	500	350	-	350	-	150
전남 전남양계조합	1	410	287	-	287	-	123

○ 지원조건 : 융자 70%, 자부담 30%(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8%)

나. 사업 추진체계

(1) 주 관 : 시·도지사

○ 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 시·도 : 축산물유통담당과(축산과, 농정과 등)

(2) 사업시행절차

- 세부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2000.2월말까지)
- 사업계획서상에는 사업개요, 추진계획, 원료확보방안, 판매망확보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여부를 확인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분기별 추진실적을 다음분기 15일까지 보고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 (사진 첨부 등)

II. 소매유통시설

1. 목 적

-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산지가격과 연동적인 소비자가격 형성으로 축산물 소비활성화 도모
 -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로 건전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기반 확대
 - 고품질 냉장육·브랜드육 유통 확대로 국내산 육류의 우수성 인식 제고
 - 냉장·부분육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가맹점·직판점 등 설치
 - 위생적이고 규모화된 식육판매업소 육성으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맹점·직판장 등 설치로 유통단계축소 및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 한우고기 시장 차별화 및 건전 유통질서 확립
- 식육판매 모범업소 지정을 통한 건전한 식육유통구조 정착
- 수입쇠고기전문점 설치로 수입쇠고기 차별화 및 둔갑판매방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98까지		'99		2000		2001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브랜드육 가맹점	168	13,798	288	40,320	300	42,000	-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509	117,449	93	15,897	100	14,000	-	-
○축산물종합직판장	-	-	-	-	1	2,000	-	-
○축산물공판장직거래판매점	-	-	175	3,500	100	2,000	-	-
○음식점겸식육업소	-	-	-	-	1	1,200	-	-
○식육판매모범업소지원	-	-	-	-	500	17,500	-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	-	-	-	150	4,500	-	-

5. 2000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소비자가격과 산지가격이 연동될 수 있도록 생산·유통이 계열화된 LPC,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의 브랜드육(냉장육) 가맹점 설치
- 한우고기 시장차별화 및 건전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선도 추구를 위해 축산물종합직판장 및 음식점정육점 복합업소 시범 설치
- 축산물공판장활성화를 위한 공판장직거래판매점 설치
- 모범업소 지정을 통한 식육판매업소의 규모화·현대화 유도
- 국내산과 수입쇠고기차별화 및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수입쇠고기전문점 설치

(2) 세부 사업종류

-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사업(계속)
-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설치사업(계속)
- 축산물종합직판장 설치사업(신규, 시범)
- 축산물공판장 직거래판매점 설치사업(계속)
- 음식점겸식육업소 설치사업(신규, 시범)
- 식육판매모범업소 지정사업(신규)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신규)

(3) 세부사업별 내용

가)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

- 설치 기본계획 : 업종별로 총 사업량 범위내에서 연차별 설치
 - 대규모 LPC : 350-400개소, 중규모 LPC : 175-200개소, 생산자단체·브랜드 업체 : 10~40개소까지

- 지원대상 : LPC · 생산자단체 · 브랜드업체(가맹업체)의 브랜드육(냉장육)
직관점 또는 이와 연계된 가맹점(식육판매업소)
 - LPC · 생산자단체 · 브랜드업체의 자체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 가맹점을 모집 선정
 - 자격요건
 - 가맹업체 : 쇠고기 · 돼지고기 냉장육 생산라인이 있는 가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자기브랜드(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보유한 업체
 - 가맹점 : 판매장 면적 10평이상
 - 사업량 및 사업비 : 300개소, 42,00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15평 이상 : 200백만원 (용자 140, 자담 60),
10평이상~15평미만 : 171백만원 (용자 120, 자담51)
 - 지원조건 : 용자율 70%, 연리 5~8%, 3년거치 5년 상환
 - 단, 운전자금은 1년거치 일시상환
 - 자금용도 : 매장 건축 · 매입 · 임차료, 냉장육 판매 · 보관 · 가공 · 진열시설 및 인테리어, 운전자금.
 - 건축 · 매입 · 임차료는 용자금의 50%범위내에서 집행
 -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의 건축 · 매입 · 임차료는 지원 제외
 - 운전자금은 지원한도액의 10% 이내로하며, 브랜드육 구입자금에 한함
 - 가맹업체 및 가맹점 준수사항
 - 가맹업체 (LPC,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
 - 냉장육 · 브랜드육을 진공 포장하여 가맹점에 부분육으로 공급
 - 가맹점 공급가격 및 소비자 판매가격은 산지가격과 연동적으로 조정
 - 가맹점에 대한 자체 표준인테리어 기준설정 제시 (연동제 시행업소 표시 등)
 - 가맹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 실시
 - 가맹점
 - 육류의 경우 가맹업체의 냉장육 · 브랜드육만을 판매
 - 가맹업체에서 제시한 판매가격 준수 (연동제가격 시행업소 표시)
 - 가맹업체의 표준 인테리어 설치
 - 가맹업체의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 실시에 적극 협조
- ※ 가맹업체별 가맹점 지원 개소수 및 사업비 : 추후 별도 시달

나)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 설치 기본계획 : 2004년까지 1,000개소 설치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축협조합, 농협중앙회,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한냉, 식육유통업체, 양축농가, 식육판매업소(신규 포함) 등
 - ※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식육학교 교육이수자 우선 선정
 - 사업량 및 사업비 : 100개소, 14,000백만원
 - 15평 이상 : 200백만원 (용자 140, 자담 60)
 - 10평이상 ~ 15평 미만 : 171백만원 (용자 120, 자담 51)
 - 지원조건 : 용자율 70%, 연리 5~8%, 5년거치 10년상환
 - 단, 운전자금은 1년거치 일시상환
 - 자금용도 : 매장 건축·매입·임차료, 냉장육 판매·보관·가공·진열시설비 및 인테리어비, 운전 자금.
 - 건축·매입·임차료는 용자금의 50%범위내에서 집행
 -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이전의 건축·매입·임차료는 지원 제외
 - 운전자금은 지원한도액의 10% 이내로하며, 한우고기 구입자금에 한함
 - 시설기준

┌	판매장 면적 10평이상
└	진열장 4m·숙성실 2평·냉동실 1평이상, 냉장 육절기
 - 사업자 준수사항
 - 시설기준 준수 (축산물 매장면적은 총 판매장 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 쇠고기는 한우고기만 판매하여야 하고, 기타 농·수·축산물은 국내산만 판매
- ※시·도별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 추후 별도 시달**

다) 축산물종합직판장 설치

- 설치 기본계획 : 2000년 축협중앙회에 1개소 시범 설치후 사업성과를 평가 사업 계속여부 결정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 사업량 및 사업비 : 1개소, 2,00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2,860백만원(용자 2,000, 자담 860)
- 지원조건 : 용자율 70%,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단, 운전자금은 1년거치 일시상환

- 자금용도 : 매장 건축·매입·임차료, 냉장육 판매, 보관, 가공, 진열장 설비 및 인테리어비, 운전자금
 - 건축·매입·임차료는 융자금의 50%범위내에서 집행
 -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이전의 건축·매입·임차료는 지원 제외
 - 운전자금은 지원한도액의 5% 이내로하되, 원료육 구입자금에 한함
 - 시설기준 : 판매장 면적은 150평 이상
- 사업자 준수사항
 - 시설기준 준수(축산물 매장면적은 총 판매장 면적의 50%이상 이어야함)
 - 쇠고기는 한우고기만 판매하여야 하고, 기타 농·수·축산물은 국내산 판매

라) 축산물공판장 직거래판매장

- 설치 기본계획 : 2004년까지 675개소 설치
- 지원대상 : 식육판매영업자(판매장 면적 8평 이상)
 - ※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식육학교 교육이수자 우선 선정
- 사업량 및 사업비 : 100개소, 2,00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29백만원(융자 20, 자담9)
- 지원조건 : 융자율70%, 연리8%, 3년거치 5년 상환
 - 단, 운전자금은 1년거치 일시상환
- 자금용도 : 식육보관, 가공, 판매, 진열시설·장비, 인테리어 시설 및 원료육 구매를 위한 운전자금(점포임차료 제외)
 - 원료육 구매를 위한 운전자금은 융자금의 50%범위내에서 집행
- 사업자 준수사항
 -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지정 축협공판장에서 구입한 것만 판매가능
 - 육류구분판매제 (부위별, 등급별, 쇠고기 종류별) 이행
 - 공판장에서 권장하는 판매가격 준수 및 지정간판 부착

마) 음식점겸 식육업소

- 설치 기본계획 : 2000년 축협중앙회에 1개소 시범 설치후 사업성과를 평가, 사업 계속여부 결정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 사업량 및 사업비 : 1개소, 1,700백만원(용자 1,200, 자담 500)
- 지원조건 : 용자율 70%,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단, 운전자금은 1년거치 일시상환
- 자금용도 : 매장 건축·매입·임차료, 식육 보관, 가공, 판매, 진열, 조리(주방) 시설·장비 및 인테리어, 식자재 운반차량, 운전자금
 - 건축·매입·임차료는 용자금의 50%범위내에서 집행
 - 운전자금은 용자금의 5% 이내로하되, 원료육 구입자금에 한함
- 시설기준 : 음식점 50평이상
 - 판매장 : 진열장 2.4m이상·냉장실 1.5평·냉동실 1.5평 이상
- 사업자 준수사항
 - 식육판매장과 음식점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쇠고기는 한우고기, 기타 농·수·축산물은 국내산 만 취급(조리 및 판매 가능)

바) 식육판매모범업소 지원

- 설치 기본계획 : 2004년 까지 3,000개소 설치
- 지원대상 : 시·도지사가 추천한 식육판매업소(정부자금을 지원 받아 설치·운영중인 업소 포함)
 - 시설기준 : 판매장 면적 10평이상, 진열장, 숙성실, 냉장(동)실, 냉장육철기, 진공포장기 구비

< 시·도지사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시 고려할 사항 >

- 최근 1년내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
- 식육구분판매제도(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를 잘 이행하는 업소
- 산지가격에 연동하여 판매가격을 정하는 업소
-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식육학교 교육이수자가 운영하는 업소
- 비인기 부위를 2차 가공하여 햄, 소세지등을 제조, 부가가치를 높이는 업소

※ 시·도지사가 지원대상자를 추천할시는 생산자단체 또는 축산기업조합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천

- 사업량 및 사업비 : 500개소, 17,500백만원(개소당 용자금 : 35백만원)
- 지원조건 : 용자율 100%, 연리 5%, 3년거치 7년 상환
 - 단, 운전자금은 1년거치 일시상환
- 자금용도 : 냉장육 판매·보관·가공·진열시설·장비 및 인테리어 개·보수비, 운전자금
 - 운전자금은 용자금의 40% 이내로 하되, 냉장육 구입자금에 한함
- 사업자 준수사항
 - 산지가격과 연동하여 판매가격 조정
 - 식육구분판매제도(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이행
 -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 지정간판 부착

※시·도별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 추후 별도 시달

사)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 목적 :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의 현대화 및 규모화 지원
- 설치기본계획 : 2004년까지 1,500개소 설치
- 지원대상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또는 전환 희망자 중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
- 사업량 및 사업비 : 150개소, 4,50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43백만원(용자 30백만원, 자담 13)
- 지원조건 : 용자 70%,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자금용도 : 수입쇠고기 보관·가공·진열·판매에 필요한 시설설치비 및 매장 인테리어비 등
- 시설기준 : 판매장 면적 10평이상, 진열장 4m, 냉동실 1평이상
- 사업자 준수사항
 - 시설기준 준수 (축산물 매장면적은 총 판매장 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 축산물판매업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축산물가공처리법)
 -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축산법)

나. 2000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세 부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백만원						
○ 브랜드육 가맹점	300	60,000	42,000	-	42,000	-	18,000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100	20,000	14,000	-	14,000	-	6,000	
○ 축협축산물종합판매점	1	2,860	2,000	-	2,000	-	860	
○ 공판장직거래판매점	100	2,900	2,000	-	2,000	-	900	
○ 음식점정육점복합업소	1	1,700	1,200	-	1,200	-	500	
○ 식육판매모범업소	500	17,500	17,500	-	17,500	-	-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150	6,450	4,500	-	4,500	-	1,950	

다.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사업주관기관	담 당 부 서
○ 브랜드육 가맹점	○ 축협·한냉 시·도지사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02/504-9436) ○ 축협 육가공사업부(02-224-8821) 한냉 영업처(02-815-9331~8)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 시·도지사	○ 시·도 축산(농정)과
○ 축산물종합판매점	○ 축협중앙회	○ 축협 직거래판매분사(02-2224-8917)
○ 축산물공판장직거래판매점	○ 축협중앙회	○ 축협 유통부 (02-2224-8510)
○ 음식점정육점복합업소	○ 축협중앙회	○ 축협 직거래판매분사(02-2224-8942)
○ 식육판매모범업소지원	○ 시·도지사	○ 시·도(군구) 축산(농정)과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 시·도지사	○ 시·도(군구) 축산(농정)과

(2)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세 부 사 업 명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 브랜드육 가맹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사업대상자를 정하여 농림부에 신청 (한냉, 축협은 농림부로 직접 신청) - 가맹업체 : 농림부에서 선정 - 가맹점 : 가맹업체가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사업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예산범위내에서 시·도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통보
○ 축산물종합판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에서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포함)를 작성 농림부에 신청
○ 공판장직거래판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대상자 모집은 신문, 잡지광고등을 통하여 선정
○ 음식점겸정육점복합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에서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포함)를 작성 농림부에 신청
○ 식육판매모범업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사업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신청 (우선순위 선정시 축산기업조합중앙회 등 관련 단체·협회와 사전 협의) ○ 농림부는 예산범위내에서 시·도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대상자 및 세부내역통보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사업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업체별 지원대상자 및 세부내역 통보

(3) 사업시행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제반사업추진 일정계획을 제출 받아 지도 관리
- 한우고기전문점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첨의 사업별 지정 신청서를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자에 대하여 현지점검후 별첨의 지정서 발급
 - 시·도지사는 위반업소 적발시 별첨의 위반조치기준에 의거 조치
 - 시·도지사는 판매점으로 지정후 간판부착 지시(간판기준 : 붙임)
- ※ 시·도지사는 식육판매모범업소 및 수입육전문점사업에 대해서도 한우고기 전문점사업절차에 준하여 지정·관리할것
- 당초 사업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당초 사업 목적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주관기관에서 이를 승인하고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농림부 및 축협 중앙회에 통보
 - 단, 투융자 사업비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
- 기타 사업별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시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를 확인하고 사업비 지원
 - ※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농림부 훈령제999호, '99.9.8)에 의거, 지원자금 집행 요건, 절차 및 증빙서류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라.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기 간 :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 사후관리 책임자(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자금용도 준수여부,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감독
 - 자금집행 부적정, 사업목적 위배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조치

○ 사업별 사후관리 내용

사 업 별	사 후 관 리 내 용
브랜드육 가맹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가맹점 : 축협, 한냉 가맹점 : 한냉 - LPC 등 가맹점 : 시장·군수(1차), 시·도지사(2차) ○ 사후관리 내용 :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 수시 점검, 가맹점 준수 사항 및 시설기준등 준수여부 지도·감독
한우전문판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1차), 시·도지사(2차) ○ 사후관리 내용 :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 수시 점검, 사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등 준수여부 지도·감독
축협 축산물 종합판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축협중앙회 ○ 사후관리 내용 :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 수시 점검 사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등 준수여부 지도·감독
공판장직거래 판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축협중앙회 ○ 사후관리 내용 :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 수시 점검, 사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등 준수여부 지도·감독
음식점겸식육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축협중앙회 ○ 사후관리 내용 :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 수시 점검 사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지도·감독
식육판매모범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1차), 시·도지사(2차) ○ 사후관리 내용 :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 수시 점검 사업자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지도·감독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1차), 시·도지사(2차) ○ 사후관리 내용 :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 수시 점검 사업자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지도·감독

※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점검사항 및 조치기준 : 붙임

(2) 보고 등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분기별 익월 15일 까지 농림부에 보고
 - 사업완료 실적은 완료후 20일이내 농림부에 보고
- 보고서식 : 수시보고 가 26-60

6. 2001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제출서류

세부사업명	신청서제출기관	구 비 서 류
○ 브랜드육 가맹점	○ 농림부 ○ 시·도(시·군)	○ 농림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가맹점 설치방향, 지역 및 모집기준, 연차별 설치 및 투융자계획, 연차별 운영수지 계획) ○ 냉장 진공포장육 생산설비 사진 및 상표등록증 사본첨부 ※가맹점업체가 설치계획 일괄작성 제출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 시·도(시·군)	○ 농림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업소개요, 시설 및 투자계획, 운영수지 계획) ○ 식육처리기능사 또는 식육기술교육수료증
○ 축협 축산물종합 판매점	○ 농 릫 부	○ 농림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축협중앙회에서 농림부로 제출)
○ 공판장직거래판매점	“	“
○ 음식점겸식육업소	“	“
○ 식육판매모범업소	○ 시·도(시·군)	○ 농림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	“

나. 신청자격

세 부 사 업 명	신 청 자 격
○ 브랜드육 가맹점	○ 가맹업체 : LPC,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
○ 한우고기전문점	○ 가 맹 점 : 가맹업체 자체기준에 의함 ○ 축협, 축협조합, 농협중앙회,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한냉, 식육유통업체, 양축농가, 식육판매업영업자
○ 축산물종합판매점	○ 축협중앙회
○ 공판장직거래판매점	○ 식육판매업영업자
○ 음식점겸식육업소	○ 축협중앙회
○ 식육판매모범업소	○ 식육판매업영업자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 식육판매업영업자

다.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세 부 사 업 명	신청 및 선정 절차
○ 브랜드육 가맹점	○ 신청 : 축협, 한냉은 농림부, LPC,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는 시·도(시·군·구)에 신청 ○ 선정 : 농림부에서 선정
○ 한우고기전문점	○ 시·도(시·군·구)신청 → 농림부 선정
○ 축협 축산물종합판매점	○ 축협에서 농림부에 신청
○ 공판장직거래판매점	○ 축협에 신청, 축협에서 선정
○ 음식점점식육업소	○ 축협에서 농림부에 신청
○ 식육판매모범업소지원	○ 시·도(군)신청 → 농림부 선정
○ 수입육전문점	○ 시·도(군)신청 → 농림부 선정

라. 우선순위

세 부 사 업 명	우 선 순 위
○ 브랜드육 가맹점	○ LPC를 우선으로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 순
○ 한우고기전문판매점	○ 시·도별 자체 기준에 의함
○ 공판장직거래판매점	①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및 축협 식육센터 교육 이수자 ② 축협중앙회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을 준수 할 수 있는자 ③ 식육점포면적이 8평이상인자
○ 식육판매모범업소지원	○ 시·도별 자체 기준에 의함
○ 수입육전문점	○ 시·도별 자체 기준에 의함

[별첨1] 한우전문판매점

[별첨1-1] 한우전문 판매점 지정 신청서

한우전문판매점 지정 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반규정 및 서약서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행치 못하였을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한우 전문판매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 ○ ○ 시 장(도지사) 귀 하

< 구비서류 >

1. 식육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한우전문판매점을 지정받아 영위함에 있어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성실히 운영함으로써 소 및 쇠고기 가격안정과 축산물유통체계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만일 아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우전문판매점 간판을 부착하겠습니다.
2. 지정된 판매점에서는 한우고기를 제외한 어떤 쇠고기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3.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위별로 구분하여 항상 진열하겠습니다.
4. 한우고기는 지정된 구입처에서 성실히 구매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겠습니다.
5. 양질의 한우고기를 취급하여 소비자 보호와 쇠고기 소비촉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국내산 축산물 및 가공품(식료품과 농산물 포함)만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 행정기관의 요청사항을 적극 따르겠습니다.

상호명 :

주 소 :

성 명 :

○ ○ ○ 시 장(도지사) 귀 하

[별첨 1-2]

한우전문판매점 지정서 발급 지침서

- ① 시·도지사는 대상자가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일자, 지정번호, 인적사항, 주소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 ③ 지정번호는 공문서수신기호표 상의 각 시·도의 고유번호를 먼저쓰고 발급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예) 서울시 : 지정번호 서울시 제 01-1호
- ④ 한우전문판매점 영업을 포기하거나 기타 전문판매점 영업을 하지 못할 사유발생시는 지정서를 회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축산물유통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한우전문판매점 대상자가 판매부진등에 따른 판매장을 이전 및 신체건강상의 문제등으로 일정기간 판매점 운영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판매장 휴업사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휴업기간을 정하여 지정서를 회수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판매점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토록 축협중앙회에 통보
 - 한우전문판매점 경영자는 판매장을 휴업사유 발생시 즉시 시장, 군수에게 통보(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판매점 지정서의 명의변경은 개인(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포함)일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에게만 가능하고, 법인·주식회사등 개인이외의 경우에는 판매점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명의변경은 불가함
 - 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의 지정서 명의변경은 정관상 임원과 회원간의 직계비속은 가능함

[별첨 1-3]

한우전문판매점 점검사항 및 조치기준

점 검 사 항	조 치 기 준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 판매점에서 취급품목이외의 쇠고기 판매행위	지정취소 (지정간판철거 및 지정서회수) 음자금 회수 세무조사 의뢰		
○ 판매점을 명의변경없이 타인에게 임대 및 전매할 경우 (직계존·비속은 신고하여 명의변경 가능)	지정취소 (지정간판철거 및 지정서회수) 음자금 회수		
○ 판매점내에서, 취급품목이외의 쇠고기 보관행위	경 고	지정취소 음자금 회수	
○ 승인된 구입처 및 도축장이외에서 구입 및 도축할 경우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음자금회수
○ 판매점을 휴업신고를 않거나 신고않고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경 고	지정취소 음자금회수	
○ 판매점 개설후 음자금 및 지정서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경 고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 육질둔갑판매 행위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음자금 회수
○ 기타 행정기관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 고	경 고	“

※ 조치기준에서 위반횟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계횟수임

한우고기 구입처 및 구입방법

< 구입처 >

- 한우전문판매점 경영자는 원료육 구입방법과 구입처, 지정도축장등 구입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곳에서 구입하여 도축을 하여야 함
 - ※ 판매점 관할구역(광역)이외에서 한우를 구입 및 도축할 경우 판매장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
- 동 판매점경영자는 도매시장, 임의로 정한 구매예정 지역축협(2개시·군이내), 지정된 한우고기 집배센타등 구입처를 정하여 구매해야 함(구입처는 2개소내에서 선정)
 - ※ 동 집배센타는 도매시장, 지역축협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자기책임하에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동 판매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
 - ※ 농가협업체 및 지역축협은 자기회원 및 조합원의 한우판매가능, 자기가 사육한 한우는 직접 판매가능

< 구입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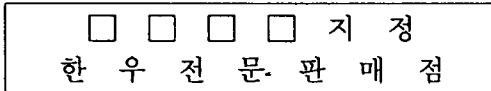
- 도매시장에서 원료육을 구매할 경우 중매인 또는 매참인을 통하여 구매
 - 도매시장에서 발부한 '축산물공급명세서'에는 중매인(매참인) 약호, 구입처의 상호, 소의 품종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전문판매점은 동 명세서를 1년간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신고한 시·군의 '지역축협과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하거나 당해 지역축협의 가축 시장(농가에서 직구매시도 포함)에서 구매하는 경우
 - 축협은 계약물량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회원농가와 계약등으로 한우전문판매점에 한우육의 원활한 공급에 책임
 - 당해 지역축협 가축시장(농가직구매시 포함)에서 한우를 구입할 경우 해당 축협조합장은 가축매매 수수료 영수증상의 축종과 매수인과의 사실여부를 확인]
- 시·도지사(도축장 검사원)는 도축검사 증명서의 [종류]란에 도축우의 품종을 명시하여야 함
- 전문판매점은 가축매매수수료 영수증과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고 지도감독 공무원이 제출요구시는 언제든지 제시해야 한다.
 - 판매점 관할 행정기관과 한우구입 및 도축장 관할 행정기관이 다른 경우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2조등 고려)

[별첨 1-5]

간판의 내용 및 규격

< 내부간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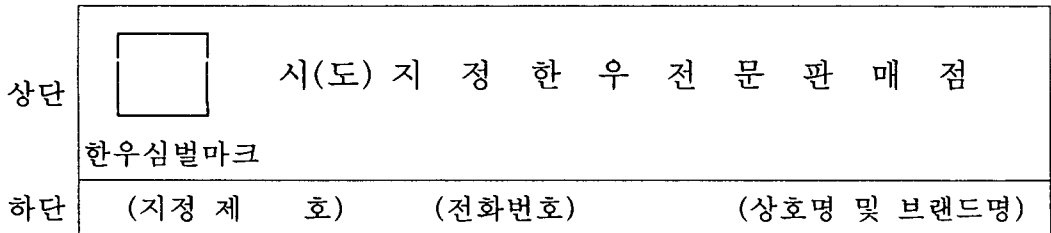
- 내용 : 서울시 지정 한우전문판매점(예 : 서울시)
- 규격 : 30cm × 70cm(가로 또는 세로)



- □□□□는 광역행정기관명(예 :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등)
- ※ 상단글씨는 하단글씨의 1/2크기로 하여 중앙에 위치토록 할 것
 - 색상 : 흰색바탕에 녹색글씨(고딕체), 단 한우는 적색

< 외부간판 >

- 일반식육점의 유사전문판매점과의 구별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간판 통일
- 간판 기본규격



※ 간판을 세워서 설치할 경우도 마찬가지임

○ 크기

- 간판크기는 판매점의 건물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함
- 색 갈
 - 전체바탕색은 주위환경을 어울리는 색깔 활용
 - 상단글씨는 청색(단, 한우는 적색), 하단글씨 자율적으로 선택
- 상·하단 면적비율
 - 상단의 면적은 4/6이상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 한우심벌마크
 - 한우심벌마크는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브랜드화된 한우고기 판매시 브랜드마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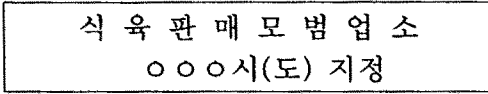
※ 기본규격 간판은 반드시 주간판으로 하고 판매점당 의무적으로 1개이상 부착

[별첨 2]

식육판매모범업소 간판 내용 및 규격

< 내부간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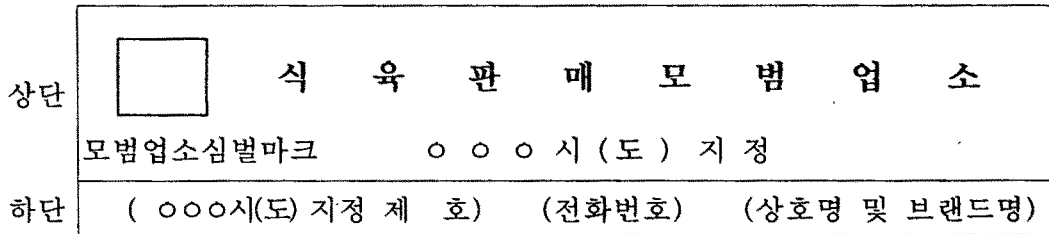
- 내용 : 서울시 지정 식육판매모범업소(예 : 서울시)
- 규격 : 30cm × 70cm(가로 또는 세로)



- ○○○는 광역행정기관명임
- ※ 상단글씨는 하단글씨의 2배 크기로 하여 중앙에 위치토록 할 것
- 색상 : 흰색바탕에 녹색글씨(고딕체)

< 외부간판 >

- 일반식육점의 유사전문판매점과의 구별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간판 통일
- 간판 기본규격



※ 간판을 세워서 설치할 경우도 마찬가지임

○ 크기

- 간판크기는 판매점의 건물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함
- 색 깔
 - 전체바탕색은 주위환경을 어울리는 색깔 활용
 - 상단글씨는 청색(단, 모범은 적색), 하단글씨는 자율적으로 선택
- 상·하단 면적비율
 - 상단의 면적은 4/6이상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 모범업소 심벌마크
 - 심벌마크는 규격화된 마크 부착(심벌마크는 관련기관 단체등과 협의후 추후 확정예정)
- ※ 기본규격 간판은 반드시 주간판으로 하고 판매점당 의무적으로 1개이상 부착(단, 기존에 정부에서 지정한 한우고기전문점, 브랜드가맹점등 규격화 된 간판을 부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기존 간판에 심벌마크 및 시도 지정번호등 추가 가능)

[별첨 3]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간판 내용 및 규격

< 내부간판 >

- 내용 : 시·도 지정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 규격 : 30cm × 70cm(가로 또는 세로)

수 입 쇠 고 기 전 문 판 매 점 ○○시·도 지정

- ※ 상단글씨는 하단글씨의 2배 크기로 하여 중앙에 위치토록 할 것
- 색상 : 흰색바탕에 녹색글씨(고딕체)

< 외부간판 >

- 일반식육점의 유사 전문판매점과의 구별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간판 통일
- 간판 기본규격

	수 입 쇠 고 기 전 문 판 매 점
상단	심벌마크 ○○시·도 지 정
하단	(○○○시(도) 제 호) (전화번호) (상호명)

- ※ 간판을 세워서 설치할 경우도 마찬가지임

○ 크기

- 간판크기는 판매점의 건물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함
- 색 갈
 - 전체바탕색은 주위환경을 어울리는 색깔 활용
 - 상단글씨는 청색(단, 수입은 적색), 하단글씨는 자율적으로 선택
- 상·하단 면적비율
 - 상단의 면적은 4/6이상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심벌마크
 - 심벌마크는 규격화된 마크 부착(심벌마크는 관련기관 단체등과 협의후 추후 확정예정)

- ※ 기본규격 간판은 반드시 주간판으로 하고 판매점당 의무적으로 1개이상 부착

Ⅲ. 축산물종합처리장·공판장 및 도매시장 운영활성화자금

1. 목 적

-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계약 등으로 조기 활성화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도모
- IMF영향 및 환율상승 등으로 건설에 소요된 자부담이 과중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LPC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의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2. 시책 및 추진방향

- LPC의 안정적인 원료육 확보를 위한 계약농가 확보 등으로 운영활성화 도모
- 사업 당해연도에 가동중 또는 가동예정인 LPC에 대하여 지원
- 축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출하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의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 위 : 백만원)

구 분		'99까지	2000예산안	2001이후	합 계
합 계	사 업 량				
	사 업 비	22,533	21,546	34,000	78,079
	- 축발(융자)	22,533	21,546	34,000	78,079
	- 자부담	-	-	-	-
축산물종합 처리장원료 구매자금	사 업 량	2개소	3개소	10개소	10개소
	사 업 비	11,463	9,188	20,000	40,651
	- 축발(융자)	11,463	9,188	20,000	40,651
	- 자부담	-	-	-	-
축산물종합 처리장경영 안정자금	사 업 량	2개소	3개소	-	5개소
	사 업 비	4,070	3,791	-	7,861
	- 축발(융자)	4,070	3,791	-	7,861
	- 자부담	-	-	-	-
축산물도매 시장·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사 업 량	7개소	14개소	14개소	14개소
	사 업 비	7,000	8,576	14,000	29,567
	- 축발(융자)	7,000	8,576	14,000	29,567
	- 자부담	-	-	-	-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추진체계

- 주관 : 시·도지사
- 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 시·도 : 축산물유통 담당과(축산과, 농정과 등)

나. 사업내용

[축산물종합처리장 원료구매자금]

- (1) 2000년 지원계획 : 9,188백만원(연리 5%, 1년거치 일시상환)
- (2) 지원대상
 - 정부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LPC
 - 축산발전기금융자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제외
- (3) 지원자금 용도 및 운용
 - 연간 자금회전을(소 12회전, 돼지 8회전 이상)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서 소, 돼지 구매자금으로 사용
 - 농산물수매·유통자금(농안기금, 돼지부문)을 지원받는 업체는 소 구매자금에 한하여 지원
- (4) 사업시행
 - 신청희망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에 신청 [별표 1]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에서는 계획서 검토후 지원여부 결정·통보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

- (1) 2000년 지원계획 : 3,791백만원(년리 5%, 1년거치 일시상환)
- (2) 지원대상
 - 정부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운영중인 LPC
 - 원료구매자금 이외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부채상환 등으로 지원
 - 축산발전기금융자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제외

(3) 사업시행

- 사업계획서(자금사용계획 등)를 첨부하여 도에 신청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후 경영안정자금 지원

※ 기 지원받은 업체 및 총사업비에 대한 표준사업비 인상을 적용업체는 지원 대상 제외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출하촉진자금]

(1) 2000년 지원계획 : 8,576백만원

- 연리 5~8%(생산자단체 5%, 일반8%), 1년거치 일시상환

(2)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으로서 1년이상 경영실적이 있어야함
- 계통출하를 통한 생축(소, 돼지)을 도축하여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하여야함
 - 도축을 하지 아니하고 지육을 반입하여 경매하거나, 경매실적이 없는곳 제외
 - 경매와 이용도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용도축 부분은 제외
- 수탁품에 대하여 출하자에게 지불하는 대금을 경락일 기준으로 다음날 까지 정산하여 송금 할 수 있는곳
- 축산법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사례가 없어야 함
- 축산발전기금 용자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제외

(3) 지원자금 용도 및 운용

- 수탁판매품의 거래인(중·도매인 및 매참인)을 통한 판매로 자금회수지연 (통상적인 외상판매)에 따른 출하농가 지급자금으로 운용
- 출하가축을 도축·경매하여 경락 익일까지 정산하여 출하자에게 송금하여야 함
- 사업시행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별표 3]

-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 가축출하계획, 축산물 판매(경매) 계획, 도축 및 등급 판정현황, 경락대금 정산방법, 경영수지분석 현황
-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에서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업체별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는 자금 집행기관에 용자 신청을 하고 의거 자금집행

다. 행정사항

(1) 대출심사 및 대출실시

- 대출취급기관 : 축협중앙회(지역축협 포함)
- 사업자는 지원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관할 축협)에 대출신청
 - 지역축협에 신청시에는 도지회와 사전협의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대출관련규정 및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대출실시

(2)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도) 책임하에 사후 관리
 -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사후관리중 실시요령을 위배한 경우에는 즉시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조치하고 농림부에 보고

(3) 기타사항

- 보고(시·도 → 농림부)
 - 사업 신청 보고 : '99. 2월말
 - 사업추진현황(실적)보고 : 분기별 실적을 다음분기 15일이내에 보고[별표2]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 즉시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
- 도지사는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일로부터 10일이내에 농림부에 보고

6. 2001년 사업시행요령 : 2000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별표 1]

축산물종합처리장 원료구매자금 신청서

1. 사업개요

- 업체명(대표자) :
- 사업개요 :
- 기타 :

2. 원료 확보계획

(단위 : 두)

업체별	소				돼지				비고
	농가수	사육두수	계약두수	출하계획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계약두수	출하계획두수	
2000.1월 ┆ 12월									

3. 축산물 판매계획

축종	단위	2000 계획					'99실적(B)	(A-B)	
		1/4	2/4	3/4	4/4	연간(A)		두수	%
소	두수								
	거래금액								
돼지	두수								
	거래금액								
거래금액									

4. 자금운영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100%)	융자(70%)	자담(30%)	기타	비고
소					
돼지					
합계					

[별표 2]

도매시장(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추진실적 보고

1. 자금 집행 실적

(단 위 : 백만원)

구 분	계획(융자금) (A)	실 적		(B/A)
		()분기	누 계(B)	
금 액				

2. 계통출하 실적

(단 위 : 두)

축 종	계 획(A)		실 적(B)		(B/A)
	()분기	누 계	()분기	누 계	
소					
돼 지					

주) 계통출하에 의한 도축·경매 실적을 기입

3. 도축 및 등급판정 실적

○ 소, 돼 지

(단 위 : 두)

구 분	도축두수			등급판정두수(D)	(C-D)
	수 탁	이 용	계(C)		
계 획(A)					
누계실적(B)					
(A-B)					

※ 총 도축 및 등급판정 실적으로 작성하되, 소·돼지를 각각 별도 작성

4. 출하대금 정산 및 대금지급 소요기간(분기중 총 출하두수 대상)

(단 위 : 두)

축 종	()분기중 대금정산			누 계		
	2일이내	3일이상	계	2일이내	3일이상	계
소						
돼 지						
계						

※ 경락일로부터 대금 지급일 까지 소요일수

[별표 3]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사업운영 계획서

작성자 : ○○ 대표

(인)

1. 가축출하(원료확보) 계획

(단 위 : 두)

축 종	2000 계 획			'99 실 적			(A-B)	
	계통출하	기타	계(A)	계통출하	기타	계(B)	두 수	%
소								
돼 지								
계								

※ 계통출하 : 생산농가가 농·축협을 통하여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에 생축을 출하·도축·경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함

2. 축산물 판매(경매) 계획

축 종	단 위	2000 계 획					'99실적	(A-B)	
		1/4	2/4	3/4	4/4	연간(A)	(B)	두수	%
소	두수								
	거래금액								
돼 지	두수								
	거래금액								
거래금액									

주) 두수 및 거래금액은 국내산이며, 수입육 경매는 제외한다

3. 도축 및 등급판정

가. 소

(단 위 : 두)

년 도	도 축			등급판정(D)	(C-D)
	수 탁 경 매	이용도축 및 기타	계(C)		
'99실적(A)					
2000계획(B)					
(A-B)					

나. 돼 지

(단 위 : 두)

년 도	도 축			등급판정(D)	(C-D)
	수 탁 경 매	이용도축 및 기타	계(C)		
'99실적(A)					
2000계획(B)					
(A-B)					

4. 국내산 대금정산 및 판매

(단 위 : 백만원)

축 종	200 거래대금 지급 기간 (예정)	2000 판매 계획			'99 실적		증 감 (C-D)
		1일평균 거래금액 (A)	거래인 외상일수 (B)	외상거래 운영금액 (C=A×B)	거래대금 지급평균 소요기간	연도말 거래인 마수금 잔액 (D)	
소							
돼 지							
계							

주) 거래대금 지급기간 : 경락일로부터 출하조합(농가)에 정산하여 대금 송금일
까지 소요되는 일수(대금정산 및 판매는 국내산에 한함)

5. 판매 및 거래

년 도	거래인수			1일 평균거래금액			외상거래 기간(C) (평균)	운영자금 총소요액 (A×C)+ B
	중·도매인	매참인	계	외상거래 (A)	현금거래 (B)	계		
'99 실적 '00 전망	명	명	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일	억원

6. 경영·손익

(단 위 : 백만원)

년 도	수 입				지 출 (B)	손 익 (A-B)
	상장수수료	도살·처리수수료	기 타	계(A)		
'99 실적 2000 전망						

주) '99 실적은 결산서등을 기준으로 작성

IV. 규격돈 생산촉진자금

1. 목 적

- 규격돈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양돈산업발전 도모
- 고품질 돈육생산을 통한 축산물 유통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 부분육시장 활성화로 유통구조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육가공업체에 규격돼지를 생산 출하는 농가에 농가경영자금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8까지	'99	2000예산안	2001이후	계
사 업 량		1,053천두	835		
사 업 비	-	31,600	33,410	-	65,010
- 축 발	-	31,600	33,410	-	65,010
보조	-	-	-	-	
융자	-	31,600	33,410	-	65,010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5. 2000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99.7~12월 기간중 동일 육가공업체에 400두이상 출하한 실적이 있는 개별 농가(단지, 법인포함) 및 계열화업체

※ '99.1~6월까지의 출하실적분에 대해서는 축산경영 자금으로 지원

(2) 지원조건

- 지원단가 : 규격돈합격두수에 한하여 두당 40천원 상한지원
 ※ 지원단가 40천원은 총예산의 범위내에서 하향조정가능
- 농가는 지원자금에 해당하는 비육돈사료(출하사료포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급여
 - 1년후 자금상환시 거래증명서 제출(세금계산서)
 - 비육돈사료 구입량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없을 경우 실세금리(대출취급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로 상환하고 차년도 축산경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돈콜레라 예방주사 미접종 농가는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기간 및 금리 : 1년 거치후 상환, 연리5% (상환연장 없음)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00 예 산 안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 조	용 자		
규격돈생산 촉진	33,410	33,410		33,410		

다.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축협중앙회

- 협조기관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2) 시행절차

- 자금지원신청(대상농가 → 조합)
 - 농가는 육가공업체의 규격돈 출하실적 확인서[서식2]를 받아 관내 축협(조합)에 자금 신청
 - 신청기간 : 2000년 3월 15일까지
 - 신청서류 : 붙임[서식1] 참조

- 신청서 검토 및 제출(조합 → 시·도지회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신청금액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농가신청서를 시·도지회에 제출(제출기한 : 2000년 4월 20일까지)
 - 시·도지회는 축협(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지원신청서 원부를 육류수출입협회로 통보
- 농가별 출하실적 및 규격돈 합격두수 확인(육류수출입협회→축협중앙회)
 - 육류수출입협회는 시·도지회에서 통보한 농가신청서, 육가공업체의 농가별 합격실적, 등급판정소의 업체별 합격실적을 대조 확인하여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축협중앙회에 통보
- 시·도별 대출한도 배정(축협중앙회 → 시·도지회 → 조합)
 - 농가별 지원금액을 도지회, 조합에 배정(2000년 7월)
- 대출실행(조합)
 - 지원대상자에게 상환기한등을 명시한 용자 안내서 통보

라.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농가는 2001년 자금상환시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비육돈사료 구입증명서(세금계산서)를 대출축협에 제출할 것(2000.7~12월기간중의 구입증명서)
 - 축협에서는 농가별 비육돈사료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축협중앙회 및 육류수출입협회로 제출할 것[서식2]
- 축협, 사료협회는 축협, 회원사에서 2000.7~12월 기간중 농가별 비육돈사료 판매실적을 2001년 2월말까지 농림부로 제출[서식3]
 - 비육돈사료로 제조·판매되는 제품은 시·도에 비육돈 출하사료로 등록된 제품에 한함
- ※ 2000년 상기자금을 지원받고 비육돈사료 구입량이 부족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농가는 2001년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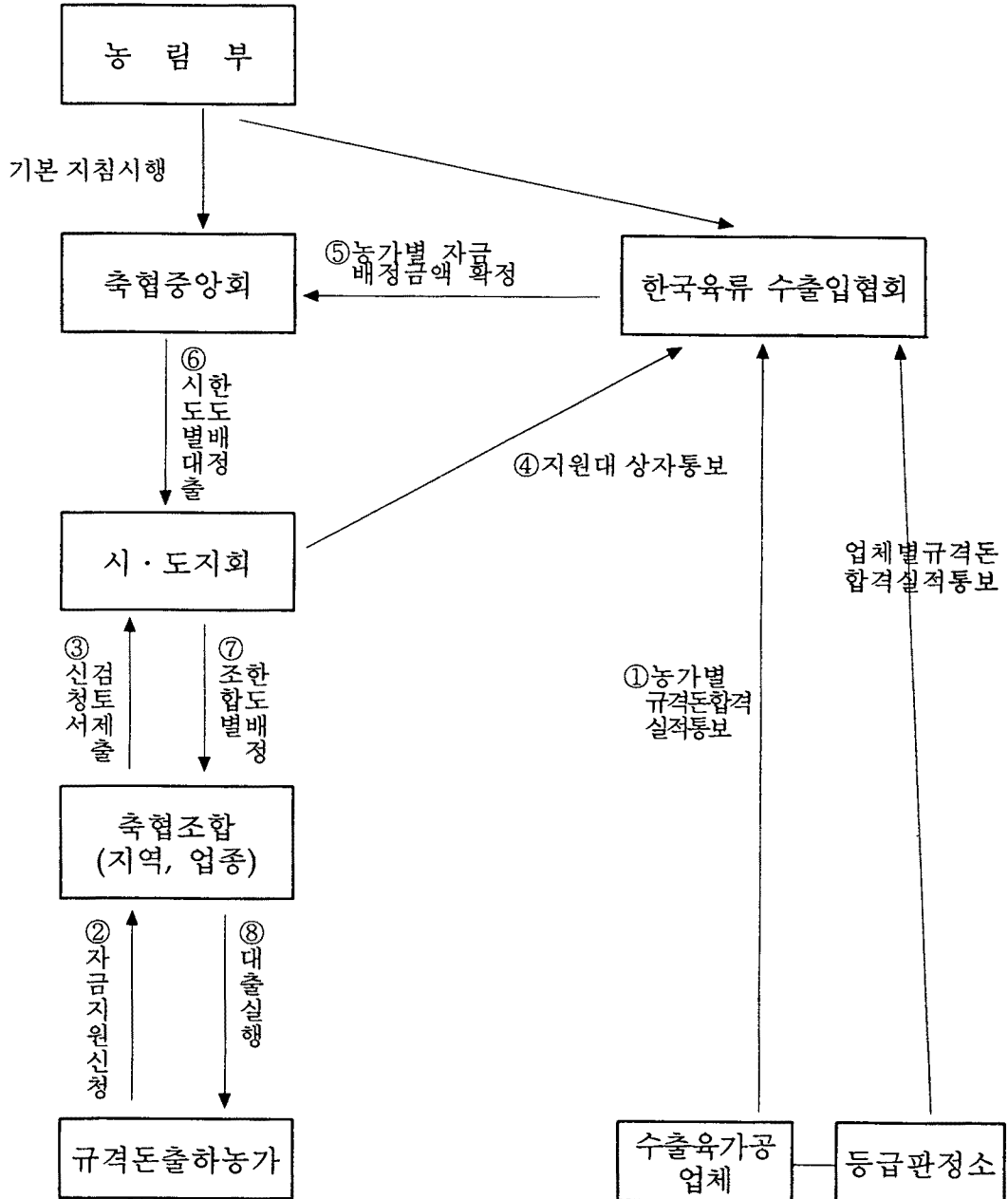
(2) 기타사항

- 축협 및 사료협회는 연간 대리점(특약점) 등을 통한 농가별 비육돈사료 공급 실적이 파악될 수 있도록 협조
- 등급판정소, 육가공업체는 농가별 규격돈 합격실적이 계속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시·도는 관내 육가공업체, 사료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농가별 규격돈 합격두수, 사료공급실적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지도
- 2000년부터 양돈전업농가 경영자금은 규격돈 합격실적에 따라 지원할 예정임

6. 2001년 사업시행요령

- 2001년부터는 축산전업경영자금으로 지원전환

규격돈생산촉진자금지원 체계도



[서식 1]

규격돈생산촉진자금농가 신청서

농 가 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사 업 장			전 화		
	자 택			전 화		
사육두수	자 돈					
	모 돈					
	계					
규 격 돈 출하현황	출하육가공 업 체 명	'99 출하실적(두)				
		'99.1~6월출하실적		'99.7~12월출하실적		합 계
	총 출하두수	규격돈 합격두수	총 출하두수	규격돈 합격두수	출하두수	합격두수
	계					
		'99.7~12월 출하실적에 따른 경영자금 대출신청액				
비육후기사료 구매계획	○○사료회사 ○○대리점 ○○사료 ○○kg					
조합검토	지원대상적격여부		부적합 경우 사유			
	여	부				

첨 부 1. 육가공업체 규격돈 출하실적확인서 1부.

※ 경영자금 대출신청액은 합격두수×40천원 범위내에서 농가의 지원 희망금액을 기록할 것

※ 비육후기사료 구매계획은 사료 kg당 단가를 감안하여 경영자금 신청액에 해당하는 물량을 기록할 것

2000. . .

신 청 인 인

[서식 2]

비육후기사료 사용확인결과

○○지역축협

(단위 : 백만원,kg)

지원농가명	지원금액 (백만원)	비육후기사료 사용실적			비 고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료구입액	이 행 량	업 체 제 품 명	

상기와 같이 비육후기사료 사용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업협동조합장 인

[서식 3]

비육후기사료 공급실적확인서

○ 비육후기사료 연간 생산량(2000.1월~12) :

공 급 처 (대리점, 특약점 등)	판 매 농 가		비육후기 사료제품명	비육후기 사료연간 판매량(kg)	판매금액
	성 명	주 소			
○○대리점	○○○	○○시(군) ○○면			
	소 계				
○○특약점	○○○	○○시(군) ○○면			
	소 계				
	○○○	○○시(군) ○○면			
	소 계				
	○○○	○○시(군) ○○면			
	소 계				
합 계					

상기와 같이 비육후기사료 공급실적을 확인합니다.

2001년 월 일

사 료 업 체 명 : (직인)

V. 축산물등급판정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조규담, 서기관 정동홍)입니다

1. 목 적

-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산 축산물을 품질고급화 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 육류의 등급별 구분판매와 냉장육 유통 촉진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등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등급거래지역(고시지역)의 확대
 - 쇠 고 기 :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 확대
 - 돼지고기 : 돼지고기 생산 및 소비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 의무지역 확대
- 등급판정 교육 및 홍보 실시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29조 제6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94~'98	'99	'00(예산안)	2001~2004
축산물등급판정사업				
- 사업량	1건	1	1	
- 사업비(보조)	29,734	7,497	9,189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등급판정소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축단계에서의 소·돼지 등급판정 실시
- 소매단계에서 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실시
- 등급판정 결과를 출하자에 통보
- 등급판정 기술 개선
- 생산농가, 유통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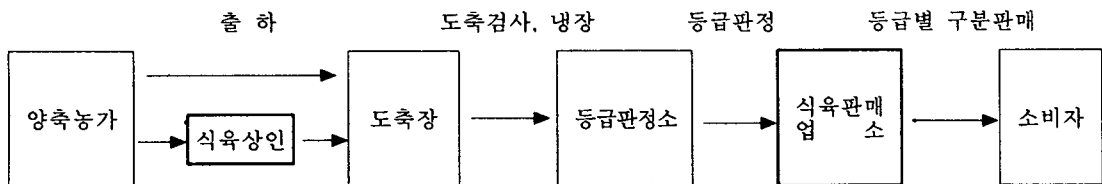
○ 2000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9,189	9,189	-	-	-
등급판정소운영	1개소	9,189	9,189	-	-	-

< 추진체계 >

- 사업 주관기관 :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 사업 담당기관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Tel. 02-504-9436~7)
- 사업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Tel. 02-574-2541~3)
- 등급판정 절차(소)



< 행정사항 >

-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축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축장 경영자에 대한 검사 및 축산법 제29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 제3호, 4호, 6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등급판정소(출장소) 검사

6. 2001년도 사업신청안내

-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2001년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VI. 우수축출하포상금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조규담, 서기관 정동홍)입니다

1. 목적

- 국내산 쇠고기 품질고급화로 국제경쟁력 제고
- 축산물등급제 정착을 유도하여 고급육생산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축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로 고급육생산 확대
- 우수축출하포상금과 연계한 축산물등급제 조기 정착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94~'98	'99	'00(예산안)	2001~2004
- 사업량	50,450두	27,984	34,200	
- 사업비(축발기금보조)	4,368	2,747	4,104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지급대상
 - 국내산 소(수소 및 거세우)의 등급판정결과 A1⁺, A1, B1⁺, B1으로 판정된 소를 출하한 자
 - 포상금지급장소 : 지역축협 및 농협
 - 지급기간 : 우수축포상금지급통보서 발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금액(두당/천원) : A1⁺, A1등급 : 150, B1⁺, B1등급 : 100

○ 2000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34,200두	4,104	4,104	-	-	-
A1 ⁺ , A1등급	13,680	2,052	2,052	-	-	-
B1 ⁺ , B1등급	20,520	2,052	2,052	-	-	-

< 추진체계 >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사업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Tel 02-574-2541~3)

○ 시행체계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소도체의 등급판정결과 우수축(A1⁺, A1, B1⁺, B1등급)으로 출현된 경우에는 별표1의 우수축포상금지급통보서를 출하자와 출하자 주소지의 지역축협 또는 농협에 통보
-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표1의 통보서 발급일자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해당 지역축협 및 농협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축·농협에서는 우선 자체자금으로 신청당일 지급
- ※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지역축협에서는 10일 간격으로 1개월이내에 별표2에 의한 우수축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지급 요청
- 지역농협에서는 포상금을 가지급후 즉시 지역축협에 자금지급을 신청하고, 지역축협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배정을 요구하여 포상금 수령 즉시 지역농협에 지급
- 지역축협으로부터 포상금지급요청을 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1개월이내에 송금

< 행정사항 >

- 포상금 지급결과보고 :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월간 지급내역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농림부에 보고
-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출하포상금이 생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부에 보고
- ※ 우수축 출하포상금 지급대상자(현행 : 출하자) 및 지급절차 등은 추후 변경될수 있음

6. 2001년도 사업신청안내

-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2001년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별표1]

우수축포상금 지급 통보서

등급판정 도축장명	판정 일자	출하자 성 명	주소또는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 호	등급판정 결 과	도체 번호	품종 (성별)	지급 금액	포상금지 금조합명

[별표2]

우수축포상금 신청 요청서

받음 : 축산물등급판정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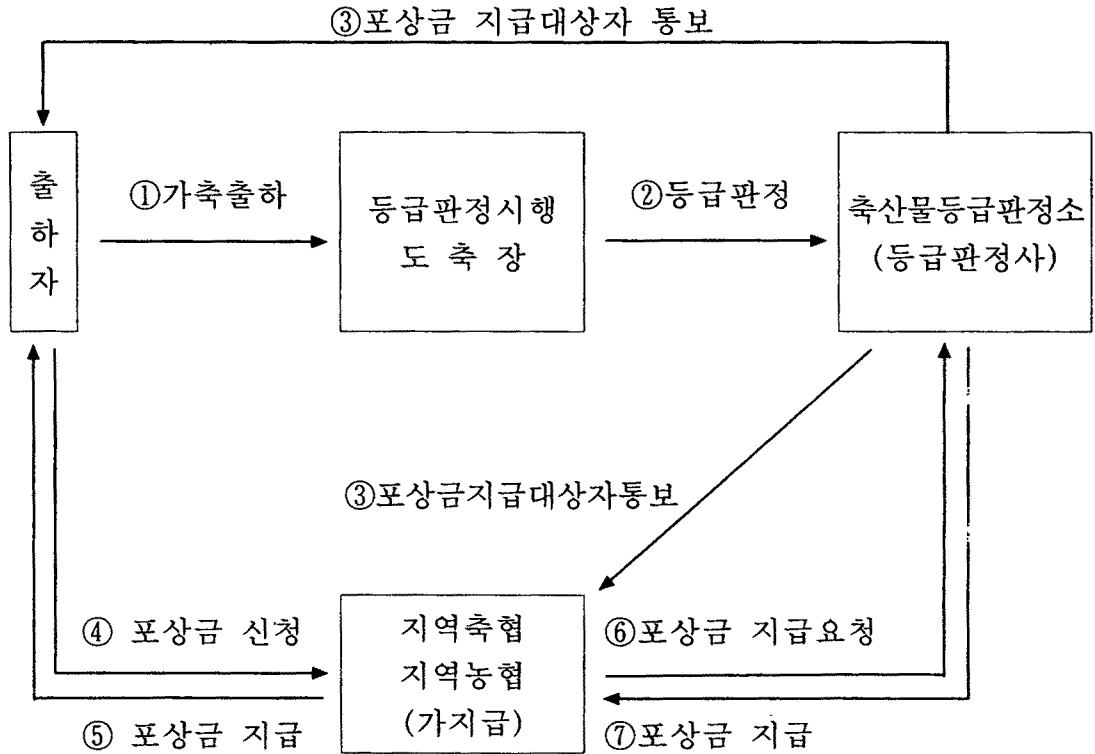
보냄 : ○○축산업협동조합장 (인)

일련 번호	등급판정 도축장명	판정 일자	출하자 성 명	주소또는 전화번호	주민등 록번호	등급판 정결과	도체 번호	품 종 (성별)	지급 일자	지급액
A1 ⁺ , A1,					두					원
B1 ⁺ , B1					두					원
합 계					두					원

※ 축산물등급판정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7-7 동산빌딩5층(Tel : 02-574~2541)
우편번호 : 137-130

[별표3]

우수축포상금 지급체제도



※ 지역농협에서는 포상금을 자체자금으로 우선 지급후 즉시 지역축협에 신청하고, 지역축협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배정을 요구하여 포상금 수령 즉시 지역 농협에 지급한다.

I. 가축공제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조규담, 서기관 정동홍)입니다

1. 목적

-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 폐사 가축의 불법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질병 조기발견 및 축사시설등에 대한 안전진단으로 화재등 재해예방

2. 추진방향

- 가축공제(한우, 육우, 젖소) 시범사업과 연계한 본사업 실시
- 공제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축종 확대
- 공제사업 정착시까지 납입공제료의 일부 지원
- 공제사업에 대한 농가홍보와 교육 강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 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분		계	'94 ~ '97	'98	'99	2000 (예산안)	'2001~'2004
사업량	소	98천두	35	25	38	124	
	돼지					750	
	말					2	
	계					876	
사업비	계	3,182 백만원	1,100	942	1,140	8,284	
	보조 응자	1,641	600	471	570	4,344	
	지방비 자부담	1,541	500	471	570	3,941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대상가축 : 소(생후 6개월령 이상), 말(경주용 종빈말), 돼지
- ※ 공제대상 가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공제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 결정
- 공제가입기간 : 1년단위(월단위도 가능)
- 공제금 지급 범위

공 통	소	말	돼 지
-각종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폐사(전염병 제외) -재해(수해, 풍해, 설해, 낙뢰등)로 인한 폐사 ※ 정부의 재해대책 보상을 받은 경우 손실액의 차액 지급 -화재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 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는 경우 -정액생산능력이 저하된 종모우 경우	-불임으로 판정된 경우 -사지골절, 경추 골절, 탈구에 의한 부상	-중돈, 모돈, 육성돈으로 구분하여 보상하는 최저 폐사두수 이상 폐사된 경우 (자돈은 제외)

- 공제요율 :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지원내용 및 조건
 -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 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 관리비(소) : 축발기금 보조 3,000원/두
 - 홍보 및 교육 : 축발기금 보조 30백만원
- 2000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합 계		8,284	4,344			3,941
○ 납입공제료	876천두	7,882	3,941			3,941
- 소	124	4,506	2,253			2,253
- 말	2	1,126	563			563
- 돼지	750	2,250	1,125			1,125
○ 관리비(소)	124천두분	372	372			-
○ 홍보 및 교육	1대	30	30			-

※ 사업비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 사업주관 기관 : 축협중앙회(상호금융공제부)
-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사업시행절차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실시 요령에 의한 세부시행 계획과 약관등을 정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지역조합(업종조합)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지역조합(업종조합)에서는 공제가입 대상자로부터 공제가입 신청을 받아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증권을 발급한다.
 - 축협중앙회는 지역축협의 공제계약 체결 결과에 따라 농림부에 자금 배정을 신청한다.
- 교육 및 홍보
 - 사업주관 기관은 공제사업 대상 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입 대상농가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한다.

< 행정사항 >

- 축협중앙회는 선진국의 가축공제 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가축공제 사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한다.
- 시·도(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가축공제 사업 교육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 축협중앙회는 가축공제사업 매월 추진실적을 농림부에 보고한다.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축협중앙회에서 2001년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II. 식육처리 전문인력양성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조규담, 서기관 정동홍)입니다

1. 목적

- 식육의 처리, 가공,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육류유통 구조 개선의 핵심인력으로 활용
- 육류의 표준규격 및 진공포장 냉장육의 생산, 판매기술 개발로 육류의 소비촉진
- 국가기술자격법 규정에 의한 식육처리기능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기 시험 실시

2. 추진방향

- 식육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 식육유통 전문가 양성
- 식육유통종사자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한 새로운 식육유통인상 정립
- 산·학과 연계한 기술교육
- 축협판매장 및 등급판정사의 보수교육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3~'98	'99	'2000 (예산안)	2001~ 2004
사 업 량		1,455	8.5	180	480	180
사 업 비	계	백만원 3,314	2,155	542	595	571
	보 조	2,498	1,818	308	350	369
	용 자	-	-	-	-	-
	지 방 비	-	-	-	-	-
	자 부 담	816	337	234	245	202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 교육주관 : 축협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
- 교육대상 : 식육유통업체, 식육판매업소, 도축장, 육가공업체 및 관련단체, 생산자단체 종사자, 축산물등급판정사, 축산관련학생등
- 교육인원 : 480명
- 교육과정 : 종합과정(3개월), 전문과정(1개월), 단기과정(1~2주)
- 교육장소 : 축협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 식육교육센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신두리 336-1)
- 지원내용
 - 운영비(인건비, 강사료, 사무용품등) : 축발기금에서 보조
 - 실습비와 숙식비는 교육생 자부담
- 수강료(1인당) : 종합과정 1,270천원, 전문과정 820, 단기과정 230~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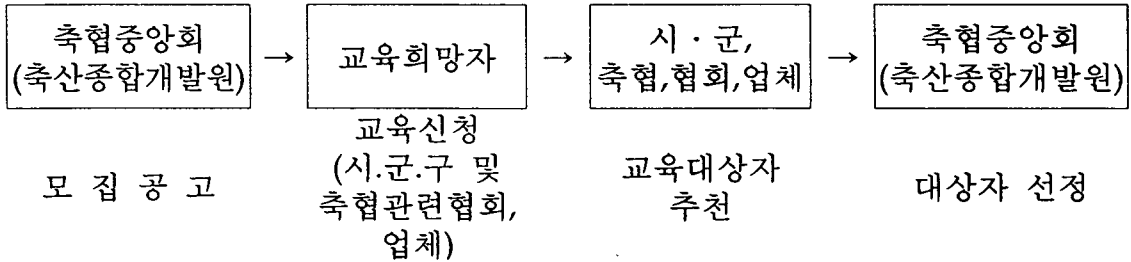
나. 2000 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식육처리전문 인력양성	480명	백만원 595	350	350	-	-	24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축협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

○ 사업시행체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계

다. 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 우선순위

구 분	종합과정	전 문 과 정		단기과정
	종 합 반	식육가공반	식육판매반	단기교육반
1	한우전문판매점종사자 수출육가공업체종사자	수출육가공업체 종사자 도축장 종사자	한우전문판매점 종사자	종합반과 동일
2	도축장 종사자 생산자단체 종사자 육가공업체 종사자	생산자단체종사자 육가공업체종사자	식육유통판매업체 종사자	
3	기타 종사자	기타 종사자	기타 종사자	

라. 사업시행

- 선정된 교육대상자는 축협중앙회의 교육등록안내서에 의거, 교육생 수강료 및 교육 등록을 필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주관기관에서는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교육계획의 변경등록시에는 농림부장관에 보고 후 시행한다.

나. 보고 기타

- 분기별 교육 및 자금집행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 이내
- 식육처리기능사 실기시험계획 및 결과보고 : 10일전후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축협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에서 2001년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39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사업 (공공)
-----------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사무관 김홍식)입니다.

1. 목 적

- 축산시설의 자동화 촉진 및 국내여건에 적합한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공급
- 양질의 저렴한 기자재 공급을 통한 양축농가의 경쟁력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품목중심의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축산기자재의 표준화, 규격화 추진
- 축산시설 종합시스템 보급을 위한 기자재업체의 콘소시엄 구축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97까지	'98	'99	2000예산안	2000-04
사 업 량		36개소	15	7	7	
사 업 비	계	백만원 7,657	3,021	1,250	1,600	
	용 자	5,161	2,115	875	1,120	
	자 담	2,496	906	375	48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1) 사업내용

- 축산기자재(자동급이·급수, 착유기, 파이프라인, 자동환기시설, 케이지, 축분처리기등)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공장시설 자금지원

(2) 지원대상 : 축산기자재 생산업체

(3) 사업기간 : 2000년

나. 2000 사업비 내용(예산안)

(단위 : 백만원)

년 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축발기금융자	자 부 담
2000	7개소	1,600	1,120	480

- 업체당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조건 : 연리 8%,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추진체제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기자재 생산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문화된 특정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자
- 연구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술축적이 가능하고 제품의 규격화 및 A/S가 양호한 자

(2)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를 2000. 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사업희망자)→검토후 축협중앙회에 신용조사 의뢰및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2월15일까지 심사요청(시·도)→ 2월말까지 심사(축산기술연구소)→3월 20일까지 사업예산신청(시·도)→예산배정(농림부)
- 사업희망자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한다.
- 시·도지사는 축협중앙회에 사업희망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사업계획의 심사를 의뢰한다.
- 사업계획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축산기술연구소는 사업계획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 축산기술연구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로서의 지원적합여부를 해당 시·도와 농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축산기술연구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사업예산을 농림부에 신청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추진일지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 점검(별표2)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전·유용될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전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임에 유의하여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규모를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의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 비치여부 확인

나. 자금집행 및 정산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정산에 포함 불가

다. 보고(시·도→농림부) : 별표 2서식

- 사업추진 실적보고(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추진 결과보고(사업완료 익년 1월말까지)

6. 2001사업신청 안내

- 사업희망자는 사업시행전년 8월말까지 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별표 1]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 업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전화) :
- 사업자 등록증 번호 :
- 주생산품목 :
- 시설규모 : 부지면적_____평, 공장면적_____평
 - 설치한 기계·기구명 :

2. 사업 계획

구 분	사업비(천원)		
	합 계	용 자	자 담
합 계			
○ 시설내역별 - 기계·기구별 - 건축공사등			

[별표 2]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정산

1. 일반현황

- 업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전화) :
- 사업자 등록증 번호 :
- 주생산품목 :
- 시설규모 : 부지면적_____평, 공장면적_____평

2. 사업 추진실적

구 분	계 획			실 적		
	합 계	응 자	자 담	합 계	응 자	자 담
합 계						
○ 시설내역별						
- 기계·기구별						
- 건축공사등						

※ 정책사업 추진결과 사진첨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축산경영과장 김남철, 사무관 김홍식, 이재용) 입니다.

1. 목적

- 사료제조시설(남은음식물 사료화 시설 포함)을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사료원료 수입자금을 지원하여 국제 사료원료 가격불안에 따른 수급안정과 사료제조업체의 경영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반추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
- 사료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원료 수입자금 지원
- 자가배합사료(남은음식물사료 포함)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

3.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의 확보와 사료자원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4. 연도별 지원계획

		'92-'96	'97	'98	'99	2000 (예산안)	2000-2004
사업량		38	11	7(2)	102	58	
사업비	계	58,230	65,913	73,232	58,294	49,032	
	보조 비용	-	-	-	-	-	
	지방비	54,115	62,658	67,651	53,407	49,032	
	자부담	-	220	-	-	-	
		4,115	3,035	5,581	4,887	-	

- ① 섬유질사료제조시설 + 사료원료 수입자금 + 자가배합사료 제조
 ② 사업량 ()내서는 계속사업임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 지원배경

- 반추가축의 정상발육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조사료 급여가 필수적임에도 부존자원 부족이나 노동력 부족등의 사유로 배합사료위주의 사육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섬유질사료는 부피가 큰 조사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분함량이 높아 제조기술 특성상 배합사료제조업체에서는 제조공급이 어려움

○ 지원대상자

- 축협·영농조합법인·협업체 등 생산자단체, 섬유질사료제조업체, 양축농가

- 지원단가
 - 315백만원(지원단가는 150~450백만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지원단가는 지원하는 융자금액 기준임
 - 생산자단체가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친환경 섬유질사료를 제조할 경우에는 1,000백만원까지 지원가능
- 지원기준
 -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에 요청하는 금액을 타당성 검토하여 융자지원(자부담은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부담이 많은자를 우선 선정)
-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 장비 및 시설비 지원

(2) 사료원료 수입자금

- 지원배경
 - 환율 및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불안정에 대응, 배합사료 가격의 안정을 도모
 - 배합사료 산업과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자 : 배합사료제조업체
 - 농림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를 제한할수 있음
- 지원조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동 자금을 수입사료 원료구매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함

(3) 자가 배합사료제조

○ 지원배경

- 대부분 농가에서는 배합사료공장에서 제조한 고가사료를 급여하고 있어 축산물의 경쟁력 저하
 -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료비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 가축의 생산비중에서 50%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자가배합사료 생산·이용이 필요
 - ※ 배합사료제조업체에게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옥수수등 수입사료 원료를 '98. 4월부터 농가의 자가배합사료 원료로도 공급가능토록 조정함
-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사업도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료제조시설이므로 2000년부터 자가배합사료 제조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함

○ 지원대상자

-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양축농가

○ 지원단가

- 제조시설 : 315백만원(지원단가는 150~450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신청자가 결정)
- 제조장비 : 23백만원(지원단가는 장비의 능력에 따라 40백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자가 결정)

○ 지원조건

-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에 요청하는 금액을 타당성 검토하여 용자 지원(자부담은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부담이 많은자를 우선 선정)

○ 지원시설의 종류

- 제조시설 : 건물(창고포함), 기계 및 부대 시설비 지원(부지구입비 제외)
- 제조장비 : 분쇄기, 배합기, 발효기, 교반기, 급이배관, 원료탱크, 콘베어 원료계량 및 투입장치등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건축비는 제외)

나. 2000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개소 58	백만원 49,032	49,032	-	49,032		
○ 자가배합사료제조 (남은음식물사료포함)	52	4,457	4,457		4,457		
- 제조시설	12	3,500	3,500	-	3,500	-	
- 제조장비	40	957	957		957		
○ 섬유질사료 제조 시설	6	2,575	2,575	-	2,575	-	
○ 사료원료 수입자금	-	42,000	42,000	-	42,000	-	-

①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자가배합사료제조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② 사료원료 수입자금 : 연리 8%, 1년 거치 일시상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사료제조시설(섬유질사료제조시설, 자가배합사료제조) : 시·도지사
- 사료원료 수입자금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섬유질사료제조시설사업, 자가배합사료 제조사업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축산(농정)과
 - 시·군·자치구 : 축산(산업)과
- 사료원료 수입자금
 - 농 립 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
 - 축협중앙회 : 사료분사
 - 한국사료협회 : 업무부

다. 사업시행

(1) 섬유질사료제조시설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우선순위>

- ① 생산자단체, 협업체중 제조기술확보 및 참여농가가 많은 경우
- ② 섬유질사료의 원료 확보여부 및 용이성
- ③ 사업장 부지 확보유무
- ④ 자부담을 많이 투자하는 자

○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 사업의 효율성 여부 등을 실제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를 추천

○ 대상자선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대상추천자의 사업계획서 및 시·도지사의 사업타당성 검토내용,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추진 공정은 월별로 작성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변경, 신축에서 개축등 주요한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 시행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비 지원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성고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월별로 소요자금을 요구받아 월별로 자금 배정

(2) 사료원료 수입자금

○ 사업비 지원방법(사업비 배정)

① 농 립 부

- 사료협회와 축협의 최근 2년간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율로 배정

② 축협중앙회

- 축협 및 계열화 업체의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율에 따라 배정

③ 한국사료협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배정비율은 50:50으로 하고,
-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에서의 업체별 배정은 각각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율에 따라 배정

○ 추진일정

- 농림부장관은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에게 지원금액 배정(2000.1.31)
-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 월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축협중앙회장(축산발전기금부서)에게 통보(2000.2.15)하고, 1부를 농림부에 제출
- ※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로 지원희망시기 및 금액을 사전 파악·조정

(3) 자가배합사료제조사업

○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 자가배합사료 이용능력, 사업의 효율성 여부등을 실제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 남은음식물사료제조를 할 경우에는 남은음식물 공급자와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시·군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 1일3톤이상 남은 음식물 확보가 가능한 자

※ 사업계획서 내용

-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조합원 수, 가축사육두수)
- 사업계획(사업비 조달 및 투자계획, 자가배합사료 생산능력, 원료 확보방법, 자가배합사료제조방법, 사업수지 분석, 담보능력 등)
- 시·도지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 대상자 추천
 - 남은음식물사료제조 대상은 동일 기초자치단체내에 기 선정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료확보차원에서 신규 추천을 지양할 것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시·도지사는 사업타당성 검토내용을 종합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별 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우선순위 >

- ① 원료의 자체확보 및 계약등으로 원료확보가 가능한 자
- ② 사업자 부지확보 및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자
- ③ 사업대상자중 영농조합법인·협업체를 우선 지원

○ 대상자 확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사업신청상황과 사업추진여건, 시·도별 가축사육 두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비 확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로 확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부여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추진 공정은 월별로 작성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점검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조정, 신축에서 개축, 제조장비 및 시설의 변경등 주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조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에서 기성고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월별로 소요자금을 요구받아 월별로 자금 배정

○ 기술지도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대상자 선정 명단을 축산기술연구소에 통보하고 기술지도 협조요청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대상자를 통보
- 축산기술연구소는 남은음식물사료의 제조공정, 사양관리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시·도 및 시·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고, 시·도에서 기술지도 요청시에 현지기술지도 협조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기별 기술점검 및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축산기술연구소에 통보
 - 기술점검 및 지도결과 기술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축산기술연구소에 통보하고 공동 해결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도결과를 취합하여 농림부에 통보

< 행정사항 >

(1) 사료제조시설(섬유질사료제조시설, 자가배합사료제조)

가. 사업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장비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자가시공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추진
- 사업계약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군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등으로 구분입찰할 경우에는 시·군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함

나.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태를 분기별 1회이상 점검
- 농가자가배합사료제조사업중에서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시설은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하여 합동 실시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 집행 여부 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 비치
-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것

다. 보고(가26-60)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서식 1>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시·도)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2>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시·도)
 - 사업대상자는 정산보고시 축발기금운영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사료원료 수입자금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타용도로 사용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나. 보고(가26-60)

-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 자금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에게 이 규정과 관련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도록 함
- 자금의 대출 및 상환절차 등은 축발기금 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999호, '99.9.8)에 따르되,
 - 이 규정에 의한 대출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실적 확인없이 대출 가능함.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사업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농정)과

나. 신청자격

- 축협,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양축농가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우선순위>

- ① 영농조합법인(협업체 포함), 생산자단체, 농가
- ② 섬유질사료의 원료 확보여부 및 용이성
- ③ 사업장 부지 확보유무
- ④ 자부담을 많이 투자하는 자

○ 선정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수행능력·사업비 조달능력·기대효과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 추천
- 농림부장관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와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라.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2) 사료원료 수입자금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 립 부

나. 신청자격

- 축협중앙회(지역조합, 계열화 업체 포함)
- 한국사료협회 회원사

다. 신청절차

- 축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은 사료원료 수입자금의 계속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2000.3.31까지 목적 및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2001년 예산 요구액 및 산출내역, 기타 국제곡물가격 및 수급전망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축산경영과)에 제출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료관리법에 의한 양축용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자
 - 용자후 1년이상 사료제조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한 자
- 선정절차
 - 농림부장관이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에게 지원금액 배정
 - 축협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로 지원규모를 확정·통보

마. 기타사항

- 정부시책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자 신청을 할 수 있음

(3) 자가배합사료제조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농정)과(시·군 경유)

나. 신청자격

-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협업체, 양축농가

다. 신청절차

- 2000.3.31까지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희망자사업 신청(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시·군)
 - 사업대상자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상자 신청(시·도지사)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절차
 - 시·도지사는 가축의 사육규모, 자가배합사료의 이용능력, 자가배합용 사료 원료 구입 가능성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사업신청 상황과 사업추진 여건, 시·도별 가축사육 두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부여한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 확정

<서식 1>

○○○○ 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사업추진실적(분기)

분 기	사업추진 계획	사업추진 실적	공 정 도(%)
1/4			
2/4			
3/4			
4/4			

※ 사업추진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업추진 실적란에 기재

<서식 2>

○ ○ ○ ○ 사업완료 및 정산서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응 자 (추발기금)	자 담	계	응 자 (추발기금)	자 담	
백만원 (100%)	()	()	()	()	()	

○ 세부명세

세 부 시 설 명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위생과(과장 이주호, 사무관 임경중·김창섭·장기윤·양홍구)입니다.

I.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1. 목 적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국민보건 향상
-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을 통한 수출촉진
- 축산물(육류 및 우유등)의 위생검사 및 안전성확보로 국민 위생수준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 예방주사·검진·구제약품 공급 및 혈청검사업 확대 지원
 -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및 혈청검사 강화
 - 전염병 발생시 조기 증식을 위한 긴급방역비 및 살처분 보상금 지원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지역방역센터로 육성·지원
- 생산자단체 등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방역사업단 설치 및 운영 지원
- WTO/SPS 협정에 따라 국내·외산축산물의 차별없는 검사를 위한 국내산 축산물의 검사장비 조속 확보
- 축산물의 위생적 생산 및 처리를 위한 위생검사 관리강화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보상금) 및 제35조(비용의 부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검사),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등) 및 제19조(출입·검사·수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구 분	'90~'96	'97	'98	'99	2000	2001~2004
가축	사업량	36,006	16,639	286,784	326,789	347,924	1,650,000
방역	예산	64,141	11,716	14,347	13,850	16,385	112,322
축산물	예산	5,013	5,802	5,792	3,788	3,788	28,000
검사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가축방역사업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진단액 생산 및 전염병 발생시 긴급방역재료비 등 지원
 - 조기 검색 및 진단체계 확립을 위한 진단액 생산 배급
 - 발생 및 오염지역(10km) 농가의 소독약품 공급 및 발생 표시판 등 부착
 - 검역원의 돼지콜레라 근절추진 점검 및 독려를 위한 지역담당관 여비지원
 -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살처분 및 감염의심축의 도태 보상금 지급
 - 수의사 연수교육비 지원
 - 예방주사, 검진, 기생충구제, 혈청검사, 오제스키병 근절, 유방염방제사업 지원
 -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방역 검사보조원 배치 운영
- ※ 기 지원하였던 국비 공수의 수당은 폐지하고 지방비 사업비로 운영

(2)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사업대상 : 시도(군),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등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수준 (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 국비 70%, 지방비 30%
 - 살처분 및 도태 보상금, 수의사교육, 혈청검사 사업 등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접종 시술비 : 국비 25%, 지방비 25%, 자담 50%

(3) 2000년 가축방역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축발기금
○ 가축방역 (1731)	천두 348,017	24,580	16,385	5,985	2,410
- 긴급방역재료비등(201~2)	-	2,496	2,496		
- 살처분 보상금(301)	235	3,552	3,552		
- 민간경상보조(304) (수의사 연수교육)	2,500명	40	40		
- 자치단체경상보조(305)	347,775	16,282	10,297	5,985	
· 예방주사	330,273	9,121	5,791	3,330	
· 검진	761	833	565	268	
· 구제	2,442	2,382	1,637	745	
· 가축혈청검사	587	263	242	21	
· 오제스키병 근절	294	559	500	59	
· 돼지콜레라등 접종기술	13,418	2,684	1,342	1,342	
· 시험소 방역보조	88명	440	220	220	
- 공동방역사업단 설치지원	30개소	1,050			1,050
- 공동방역사업단 운영 지원	106개소	1,060			1,060
- 가축방역교육·홍보비	5,000명	300			300
○ 가축위생시험소 가동방역 차량 지원(1737-305)	11대	165	82.5	82.5	

※ 사업별 세부내역 : 추후 별도 송부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축협중앙회

나. 사업시행기관 : 시도(시군자치구), 가축위생시험소, 축협중앙회

-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등 : 시장·군수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
- 검진·혈청검사 등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
- 공동방역사업단 설치 운영 : 농림부, 축협

다. 사업시행절차

(1) 예방약 지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에 의거 예방약품을 구입한 후 관내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대상농가의 가축에 예방주사 실시
 -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된 시군의 경우 축종별 해당 예방약품을 사업단에 우선 지원하여 사업단에서 예방접종 실시
 -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경우
 - 1,000두이상 양돈농가는 예방약 공급
 - 100~1,000두미만 양돈농가는 예방약을 직접 공급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수의사 등이 예방약을 공급받아 예방접종 실시
- 정부지원 예방약의 종류 : 11종
 - 소 : 탄저·기증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 돼지 :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오제스키병
 - 개(소) : 광견병, 진도견 디스토퍼 등(DHPPL)
 - 닭 : 뉴캐슬병

※ 시도별 예방약 지원물량 세부내역 : 별첨 1

(2) 검진

-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농가를 방문, 검진 실시
 - 채혈후 실험실 검사 또는 진단액 접종, 결과에 대하여는 농가 통보 등
- 검진 내역 : 5개종
 - 우결핵, 부루세라(MRT), 부루세라(Plate), 부루세라(Rose-Bengal), 추백리

(3) 기생충 구제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에 의거 구제 약품을 대상 농가에 지원
 - 구제약품의 구입은 시도 형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일괄 구입하여 시군에 배정할 수 있음
- 구제사업 내역 : 4종
 - 소진드기, 소간질충, 꿀벌응애류, 꿀벌노제마병
 - 꿀벌 구제약품은 시·도지사가 한국양봉협회 시도지회와 협의하여 약품 선정 및 배정방법 결정하고 꿀벌 구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동시 일제 구제 실시

※ 시도별 검진·기생충구제·기타사업 지원물량 세부내역 : 별첨 2

(4) 살처분 및 도태 보상금 지급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99-15, '99.4.12)”에 의거 보상금 지급
- 세부 사업시행요령 : 추후 별도 송부

(5)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

- 예방접종 시술대상 : 100~1,000두미만 사육 양돈농가 (제주도 제외)
 - 시술비 : 두당 400원(국비 100, 지방비 100, 농가 자담 200)
 - 시도지사는 시군별 1,000두미만 사육농가 및 규모(두수)를 감안하여 시군별 예방접종요원을 지정 운영
 - 동 접종요원은 정부 지원 예방약으로 농가별 예방접종 실시
 - 제주도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시범사업
 - 시군별 예방접종요원을 지정하여 정부지원 예방약(10개종) 접종실시
- ※ 세부 사업실시요령 : 추후 별도 송부

(6)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지원

- 시도지사는 가축위생시험소(본·지소)별 2인씩 운영 지원
 - 시험소별 사업규모 및 여건 등을 감안,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동 방역보조원은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 업무만 담당
 - 담당업무 :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농가 채혈검사, 농가 감시 지도 등
- ※ 시도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 및 방역보조원 지원 내역 : 별첨 3

(7) 수의사 연수교육 실시

- 교육 주관 : 대한수의사회
- 교육 인원 : 2,500명
- 교육 대상 : 공·개업 및 임상 수의사 등
- 교육 내용 : 최신 대·소동물 질병 진단 및 치료기술 보급 등

(8) 가축위생시험소 기동방역차량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11대, 165백만원 (국비 82.5, 지방비 82.5)
 - 시도별 지원물량 : 인천 1, 광주 1, 대전 1, 경기 1,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1, 경남 1
- 지원단가 : 대당 15백만원 (국비 7.5, 지방비 7.5)

(9) 공수의운영

- 돼지콜레라등 예방접종기술비 도입으로 국비 공수의 수당은 폐지
 - 시도에서는 기존 지방비 공수의 확보 운영 지원
-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 지방비 공수의 운영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용

(10) 공동방역사업단 설치 및 운영 지원

-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에 의거 설치한 사업단
 - 사업비 : 개소당 50백만원(보조 35, 자담 15)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담 30%
 - 지원장비 : 예방약 냉장고, 방역차량, 연막분무기 등 방역장비 10종
- 운영 지원
 - 기 설치된 공동방역사업단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공동방역사업단에 방역 추진관련 운영비 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10~30백만원까지 보조 지원 (사업단별 차등지원)
 - 자금용도 : 공방단 방역요원 동원비용, 약품비, 소득비, 기타 장비구입 등
- 2000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대출	보조		
계	136개소	2,560	2,110	0	2,110	0	450
공방단 설치지원	30	1,500	1,050	0	1,050	0	450
공방단 운영지원	106	1,060	1,060	0	1,060	0	0

※ 세부 사업시행요령 : 추후 별도 송부

<행정 사항>

가. 사후관리

- 1차 책임 : 시장·군수, 가축위생시험소, 2차 책임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반기별 1회이상 사업시행기관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

나. 사업실적 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보고서식 별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
 - 수의과학검역원장은 동 실적을 집계하여 분기별 익월 25일까지 농림부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시도지사는 2000. 1. 15까지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
 - 수의과학검역원장은 2000.1.30까지 농림부에 보고

다. 축산물검사 사업

< 사업개요 >

(1) 축산물검사 장비 지원

- 축산물검사 장비 지원
 - 농장에서 가축내 항생제, 합성항균제 잔류여부 예비검사 실시위한 장비지원
 - 검사대상 : 돼지 500두이상 사육농가 2100여 농장을 대상으로 년2회 실시
 - 검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검사세부사항 : 식육중 유해잔류물질검사요령 참조
- 일반 도축검사 · 생체·해체검사 및 합격검인후 출고까지 전과정에 대한 일반검사
 - 검사대상 : 소 1백만두, 돼지 12백만두
 - 검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검사세부사항 : 식육중 유해잔류물질검사요령 참조
- 식육중 미생물검사
 - 검사대상 : 일반세균, 대장균군, Salmonella enteritidis, 대장균 O-157:H7 등
 - 검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전체 시·도별 사업량 : 약 20,000건
 - 검사세부사항 : 식육중 미생물검사요령 참조
-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 도축시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검사실시
 - 검사대상 : 소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 대하여 약 80,000 시료 검사

- 세부실시요령 : 식육중 유해성잔류물질검사요령 참조
- 검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축산물가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에 대한 미생물검사 실시위한 장비지원
 - 대상미생물 : 살모넬라균,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균 등 병원성미생물
 - 검사품목 : 햄류, 소시지류, 우유류, 치즈류 등
 - 세부실시기준 :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규정에 따른다.
 - 검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국내 유통중인 식육(수입식육 포함)에 대한 미생물검사 실시위한 장비지원
 - 대상미생물 : 살모넬라균,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균 등
 - 세부실시요령 : 식육중 미생물검사요령 참조
 - 검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2) 검사재료비 지원

- 농장단체에서 가축중 유해잔류물질 예비검사위한 지원
- 도축검사 수행을 위한 재료구입 및 장비검증비 지원
 - 도축검사용 재료비 지원
 - 일반도축검사용 도축검인 및 검인용 색소 구입비
 - 미생물검사 및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위한 시험기구, 시약등 구입비
 - 원유검사장비 검증
 - 사업추진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사업기간 : 2000년 1월 ~ 2000년 12월
 - 자동검사장비 검증대상 : 집유장의 원유중 세균수 및 체세포수 자동검사 측정기기
 - 검증회수 : 정기검증 - 년 3회, 수시검증 - 필요시
 - 기타 참고사항 : 기타의 세균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유대지급을 위한 원유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집유장에서 보정계수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를 통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사용가능
- 축산물가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위생검사 수행을 위한 재료구입 지원
- 국내 유통중인 식육(수입식육 포함)에 대한 미생물검사 위한 재료 구입 지원

(3) 2000년 축산물검사 및 재료비 예산

< 축산물검사장비 >

구 분	장 비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계	국 비	지 방 비
가공품검사	가공품성분검사기	3	75	37.5	37.5
	미량성분분석기	4	500	250	250
	항온항습기	7	140	70	70
	저온보관고	8	240	120	120
	유해가스배출장치	3	30	15	15
	시료전처리기	18	540	270	270
	초순수제조기	10	200	100	100
	자동초자세척기	7	245	122.5	122.5
소 계	8종	60	1,970	985	985
잔류물질 검사	GC	5	300	150	150
	GC/MS	1	125	62.5	62.5
	잔류물질검사기	11	660	330	330
	가스발생기	12	240	120	120
	무정전장치	10	100	50	50
소 계	5종	39	1,425	712.5	712.5
원유검사	가스검사기	5	75	37.5	37.5
	체세포수검사기	4	400	200	200
	세균수검사기	3	540	270	270
	유성분분석기	4	600	300	300
소 계	4종	16	1,615	807.5	807.5
미생물 검사	자동미생물동정기	1	80	40	40
	현미경검사기	6	180	90	90
	유전자분석기	7	490	245	245
	초고속원심분리기	7	280	140	140
	미생물검사기	2	80	40	40
소 계	5종	23	1,110	555	555
기 타	냉동조직절편기	9	225	112.5	112.5
	자동조직처리기	6	138	69	69
	혈액분석기	4	140	70	70
	엘라이자	2	52	26	26
	LCD프로젝터	5	75	37.5	37.5
소 계	3종	26	630	315	315
합 계	25종	164	6,750	3,375	3,375

※ 시도별 장비 지원내역 : 별첨 4

< 축산물검사재료비 >

구 분	사업량	사업비(국비)	비 고
농장단계 잔류물질검사	10,000건	330백만원	시도별 사업물량 확정후 배정
도축검사	13,000천두		
미생물검사	20,000건		
원유검사장비검증	2종		
유해잔류물질검사	80,000건		
계		330 백만원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나. 사업시행 절차

- 기타 세부사업내용 : 식육중 유해잔류물질검사요령, 식육중 미생물검사요령

다.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가축위생과 02-500-2693/4
- 시·도 : 농정과 또는 축산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검사기획과 0343-467-1721~35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에서 반기별 1회이상 현지 점검

나. 사업실적 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시도는 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

7. 2001년도 사업시행 안내

< 가축방역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시행기관 : 농림부, 시도, 시군자치구

다. 사업시행절차

- 예방주사 : 시도지사(시군) 예방약구입 → 공수의사 동원 예방주사 실시
- 검진 :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대상농가 검진
- 기생충구제 : 시장·군수가 구제약품을 대상농가에 지원

< 축산물검사 >

가. 사업 주관 및 시행 기관 : 시·도지사(가축위생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

나. 사업내용 : 축산물검사장비 및 재료비 지원

<별첨 1>

○ 시도별 예방주사 물량

(단위: 천두·수)

구분	총계	예 방 주 사												
		소계	탄저 기종지 (혼합)	소 전염성 비기 관염	소 유 행 열	소 아 까 바 네 병	돼 지 콜 레 라	돼 지 일 본 뇌 염	돼 지 전 염 성 위 장 염	돼 지 오 제 스 키 병	광 견 병	진 도 디 스 템 퍼	뉴 캐 트 슬 병	야 생 동 물 광 견 병
서울	138.4	86.3	0.3	-	-	-	5	1	-	-	80	-	-	-
부산	635.9	496.4	0.4	-	1	-	108	40	7	-	40	-	300	-
대구	282.1	155.0	2	1	2	1	112	10	7	-	20	-	-	-
인천	616.1	372.5	7	1.5	3	1	282	20	8	-	50	-	-	-
광주	910.8	850.4	0.4	1.5	1	0.5	33	8	2	-	4	-	800	-
대전	872.3	833.9	0.4	1	1	0.5	20	6	2	-	3	-	800	-
울산	304.4	158	0.5	1.5	1	1	129	13	4	-	8	-	-	-
경기	110,678.8	106,820	200	30	40	28	6,315	227	420	350	600	-	98,600	10
강원	6,910.8	6,128	60	15	20	5	1,048	30	75	-	365	-	4,500	10
충북	22,381.6	21,495.5	40	22.5	35	15	1,175	54	84	-	70	-	20,000	-
충남	88,179.0	85,607	150	28	50	10	4,393	276	290	350	60	-	80,000	-
전북	64,415	62,683	50	15	36	5	2,282	80	165	-	50	-	60,000	-
전남	12,454.1	10,854	70	25	50	10	2,289	160	170	-	60	20	8,000	-
경북	18,473.1	16,371	150	30	60	10	2,766	120	200	-	35	-	13,000	-
경남	17,882.5	16,208	80	25	70	30	2,543	215	200	-	45	-	13,000	-
제주	2,410.1	1,154	-	3	30	5	-	40	66	-	10	-	1,000	-
지역원	230													
계	347,750.6	330,273	811	200	400	122	23,500	1,300	1,700	700	1,500	20	300,000	20

<별첨 2>

○ 시도별 검진·구제 및 기타 사업물량

(단위: 천두·수)

구분	검진						구제				가축 혈청 검사 사업	유방 제 사업	오제 스키 병 근 절 사 업
	소계	우 결 핵	부 루 세 라 (MRT)	부 루 세 라 (Plate)	부 루 세 라 (Rose- Bengal)	추 백 리	소 계	진 드 기	꿀 벌 용 애	꿀 벌 노 제 마 병			
서울	2.3	0.2	2	0.1	-	-	22.2	-	11.1	11.1	14.6	-	8
부산	4.2	2	2	0.2	-	-	15.6	-	7.8	7.8	7.7	-	3
대구	6.7	4.5	2	0.2	-	-	14.2	-	7.1	7.1	7.7	0.5	3
인천	10.6	7	3	0.3	-	0.3	8.4	-	4.2	4.2	8.1	0.5	4
광주	3.6	1.5	2	0.1	-	-	19.6	-	9.8	9.8	6.7	0.5	3
대전	3.9	0.6	2	0.1	-	1.2	8.8	-	4.4	4.4	6.7	-	4
울산	2.64	1.8	0.72	0.12	-	-	19.2	-	9.6	9.6	6.6	0.96	4
경기	233.9	162	23	6.4	-	42.5	89	-	44.5	44.5	57.9	16	80
강원	32.5	20	8	3	-	1.5	128	-	64.0	64.0	23.3	6	15
충북	32.8	20	6	3	-	3.8	126	-	63.0	63.0	39.3	5	20
충남	126.96	62.56	15	4.2	-	45.2	122.2	-	61.1	61.1	33.9	8	65
전북	52.7	25.5	4	4.5	-	18.7	80	-	40.0	40.0	31.3	5	20
전남	32.7	23	2	2	-	5.7	147.8	-	73.9	73.9	22.6	5	20
경북	61.2	40	12	4.5	-	4.7	356.6	-	178.3	178.3	31.3	9	20
경남	48.2	36	5.2	3	-	4	241	-	120.5	120.5	40.3	5	20
제주	44	3	-	-	40	1	1043.4	1,000	21.7	21.7	18.7	1	5
검역원											230.0		
계	698.9	406.6	88.92	31.72	40	128.6	2,442	1,000	721	721	586.7	62.46	294

<별첨 3>

○ 시도별 예방접종시술비 및 방역보조원 지원

(단위: 천두·수)

구분	예방접종시술비						가축위생시험소 방역 보조원
	돼지콜레라	소 전염성 비기관염	소 유행열	아까바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서울	5	-	-	-	-	-	2
부산	109	-	-	-	-	-	2
대구	95	-	-	-	-	-	2
인천	212	-	-	-	-	-	2
광주	27	-	-	-	-	-	2
대전	15	-	-	-	-	-	2
울산	113	-	-	-	-	-	-
경기	3,382	-	-	-	-	-	12
강원	578	-	-	-	-	-	10
충북	663	-	-	-	-	-	8
충남	2,216	-	-	-	-	-	10
전북	1,543	-	-	-	-	-	10
전남	1,372	-	-	-	-	-	6
경북	1,624	-	-	-	-	-	8
경남	1,320	-	-	-	-	-	10
제주	-	3	30	5	40	66	2
검역원	-	-	-	-	-	-	-
계	13,274	3	30	5	40	66	88

< 별첨 4 >

2000년 시·도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장비명	필요 대수	단 가	총 액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가공품 검사	가공품성분검사기	3	25	75	1			1				1									
	미량성분분석기	4	125	500		1					1				1			1			
	항온항습기	7	20	140			1		1	1			1						2	1	
	저온보관고	8	30	240	1		1				1					1	2	1	1		
	유해가스배출장치	3	10	30				1										1	1		
	시료 전처리기	18	30	540	1	1	2	1	2	1	1	1	1	1	1	1	1	1	1	1	2
	초순수제조기	10	20	200		1					1		1	2	1	2			1	1	
	자동초자세척기	7	35	245							1	2		1	2					1	
잔류 물질	GC	5	60	300		1		1		1								1	1		
	GC/MS	1	125	125				1													
	잔류물질검사기	11	60	660					2		1	2	1		1	1	1	1	1	1	1
	가스발생기	12	20	240			1			3	2	2		2	1	1					
	무정전장치	10	10	100			1				2			1	2	2				2	
원유 검사	가수검사기	5	15	75						2	1		1						1		
	체세포수검사기	4	100	400				1					1	1	1						
	세균수검사기	3	180	540						1		1	1								
	유성분분석기	4	150	600						1		1	1	1							
미생 물 검사	자동미생물동정기	1	80	80							1										
	현미경	6	30	180	1						2		1					1	1		
	유전자 분석기	7	70	490	1	1	1				1				1			1	1		
	초고속원심분리기	7	40	280					1			2	1					1	2		
	미생물검사기	2	40	80		1															1
기타	냉동조직절편기	9	25	225			1			2	2	1	1					1	1		
	자동조직처리기	6	23	138						1	2				1			1		1	
	혈액분석기	4	35	140							1	1						1		1	
	엘라이자	2	26	52	1						1										
	LCD 프로젝터	5	15	75							1	1		1	1					1	
총 계	164		6,750	6	6	8	6	6	6	22	18	10	13	14	9	12	19	9			
				211	345	235	350	240	170	964	606	590	640	703	300	443	665	288			

※-축산물검사장비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국보50%, 지방비 50%)

-재료비 : 축산물가공품 및 원유 검사실시등 업무량증가를 고려하여 '99년도 대비 200%이상 확보

< 서 식 >

심사제외

‘99. ()분기 가축방역 실적보고

1. 예방약·검진·구제약품 공급 실적

○ 예방약품

축종	종류별	연간 계획 (A)	당분기 공급		누 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천두				
계	종					

○ 검진 진단약

축종	종류별	연간 계획 (A)	당분기 공급		누 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천두				
계	종					

○ 구제약품

축종	종류별	연간 계획 (A)	당분기 공급		누 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천두				
계	종					

2. 가축 혈청검사

(시)
(도)

축종	병류별	년간 계획 두수	검사실적		검사결과			검사방법	양성판정 항체가
			검사 건수	검사 두수	양성	음성	계		
○○	○○ (농장)	○○ ()	()	()	()	()	()		
	(도축장)	()	()	()	()	()	()		
계									

3. 도축장 출하돈 일제 검사결과

(시)
(도)

검사기관 (시험소별)	출하지역 (시·군별)	검사두수	검사결과			비고
			양성	음성	계	

※ 양성축에 대하여 농장명, 사육명, 소재지, 사육두수, 양성두수를 별도 명기할 것

4. 종돈장·양돈장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시)
(도)

종돈장 (양돈장)	성명	주소	사육 두수	검사 두수	검사일자	검사결과	
						양성	음성

5. 유방염 방제사업

(도)

(단위 : 두)

시험소별	연간계획 두수	검사결과				감염율(%)		비 고
		검사목장수 (등외판정)	검사 두수	양성 두수	양성분방수	임상 (두수)	준임상 (두수)	

6. 살처분 및 도태 보상금 지급

지급자	주 소	전염병명	살처분 및 도태 보상			비 고
			축종	두 수	금 액	
				두	천원	살처분· 도태 기재
계						

7.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시군	연간 계획		접종 두수			시술비(국비) 지급		
	두수 (A)	국비 (B)	당분기	누계 (C)	접종율 (C/A)	당분기	누 계 (D)	지급율 (D/B)
	두	천원			%			
계								

8. 지방비 공수의 배치 운영

공수의 배치실적

군별	해 측			위 측						비 고	
	성명	동물병원명칭	배치지(읍면)	면허번호	성명	동물병원명칭	배치지(읍면)	지역·수당			위촉일자
								지역	수당		
계	지방비 : 일반지역 명 특별지역 명 <hr style="width: 50%; margin: 0 auto;"/> 계 명										

공수의 업무수행 상황

동물병원명칭	공수의성명	면허번호	배치지역	예찰 실사회수	사업실적 (예방주사) 두수	업무보고 적정여부	업무평정 실시결과	비 고

< 작성요령 >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제외

II 축산위생시설자금지원

1. 목 적

- 도축위생시설의 현대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HACCP 제도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도축위생시설의 신규도입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도축장의 위생수준향상을 통한 국민보건증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축장의 위생수준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2000. 7 부터 2003. 7까지 작업장 규모별로 연차별 의무적용 확대
- HACCP 의무적용시기 이전에 동제도의 적용을 희망하는 도축장부터 우선 하여 자금지원
- 식육수출작업장등 HACCP 적용필요성이 높은 도축장부터 우선 자금지원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위생시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강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적용대상)
 -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
 - HACCP제도 적용대상 작업장 :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 고시 제1998-49호 : '98.8.10)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9	2000	2001	2002
사업량	50 개소	10	15	15	10
사업비	25,000	5,000	7,500	7,500	5,000
- 용 자	17,500	3,500	5,250	5,250	3,500
- 자 담	7,500	1,500	2,250	2,250	1,500

※ 개소당 500백만원(용자 350, 자담 150)

5. 위생시설지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지 원 사 유	지 원 내 역	
		금 액	산출근거
돼지이송체인컨베어	도체자동이송으로 도체오염 사전예방	100	100×1대
소이송체인컨베어		100	100×1대
손칼세척기	작업자 위치마다 온수 세척·소독설비 설치하여 도체간 오염방지	30	2×15대
장화세척기	작업장 출입시 장화소독	10	5×2대
앞치마세척기	작업장 앞치마세척	20	2.5×8대
트로리 및 훅세척기	도체이송라인 세척으로 위생도축	20	10×2개
공조시설	작업장내 먼지, 수증기 등에 의한 도체 오염방지	100	100×1대
냉동차량내 현수시설	도체현수로 도체의 바닥접촉 오염방지	20	20×1대
지육상차시설	위생적인 지육상차작업 실시	20	20×1대
항문결찰기	항문과열로 인한 대장균등 병원성미생물 오염방지	80	40×2대
계		500	10종, 33대

6.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HACCP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도축장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적용대상등) 및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의 규정에 부합되기 위하여는 일부 시설자금 지원이 필요
-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는 HACCP 제도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생도축시설설비가 필수
- 도축장에 병원성미생물(E. coli O-157:H7등) 등의 오염방지시설 설치
- 위생적인 도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축위생시설·기구 설치

나. 지원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 1년
- 지원대상 : 수출작업장 및 전년도 1일 평균도축실적 소30두, 돼지 300두 이상 또는 닭 30천수이상 도축장
- 총사업비 : 개소당 500백만원(융자 70%, 자담 30%), 5년거치 10년상환 (5% 이자율 적용)
- 지원대상 시설 : 돼지이송체인컨베어등 10종
 - 단, 지원대상작업장에 지원대상시설중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사업비를 여타 위생시설 설치등의 비용으로 사용가능하며 이경우는 본 사업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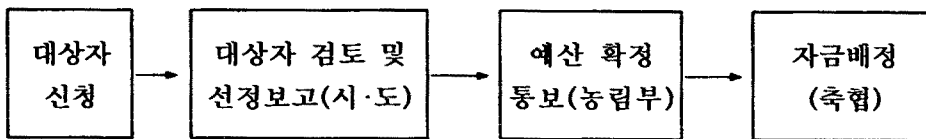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가축위생과(02-504-9438~9)
- 시·도 : 축산(축정·농산)과
- 축협중앙회 : 기금관리부

다. 사업시행절차

- 도축장 영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
- 시·도는 사업계획서(별첨참조)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사업시행 대상 도축장 1개소 신청
 - 사업신청도축장이 총 15개를 넘는 경우는 농림부에서 대상작업장 결정
 - 1개 시·도 1개작업장 지원원칙이나 지원신청 시·도가 적은 경우는 1개 시·도에 1개이상 지원가능
- 사업비는 시·도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 집행



< 행정사항 >

- 사후관리 : 시·도에서 반기별 1회이상 현지점검
- 사업추진실적 보고
 - 사업대상자는 전분기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해당도에 보고, 시·도는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완료보고 : 사업완료후 1개월 이내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사진 첨부등)

7.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 나. 신청자격 : 도축장
- 다. 신청절차 : 사업대상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
- 라. 대상자 선정기준 : 2000년 사업요령과 동일

사 업 계 획 서

1. 도축장 개요

- 도축장명 및 허가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종업원수 :
- 도축능력(두/일)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위생시설 구입 및 설치계획

시설명	소요금액	용 도	구입예정 시 기	설치예정 시 기	비 고

- 작업장 평면도(첨부)
 - 사업대상 위생시설 설치이전과 이후 작업장 평면도
- 작업공정흐름도
- 도축장 자체위생관리기준서(SSOP)
- HACCP 적용을 위한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 별첨 2 >

사 업 비 정 산 보 고

(단위 : 백만원)

작업장명	시설명	사업비 지원 대 정산			비 고 (설치일자등 기입)
		계	축발용자	자부담	
	합 계				

※ 상단, 하단 구분하여 상단: 정산액, 하단: 예산액을 지원

42	학교우유급식사업 (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축산경영과장 김남철, 사무관 송인곤) 입니다.

1. 목적

- 우유 소비기반을 저변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국민·불우 초등학생에 대한 우유급식비 전액 보조
-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국민 식생활개선 및 체위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국민·불우 초등학생에 대해 우유급식비 전액 보조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 학교우유급식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	2002-2004
사업량		천명/일 176	154	185	185	185	185
사업비	사 계	백만원 36,852	7,215	7,043	8,695	8,695	26,085
	보 조	36,852	7,215	7,043	8,695	8,695	26,085
	용 자	-	-	-	-	-	-
	지 방 비 자 부 담	-	-	-	-	-	-

* 2000년 지원일수 200일('99.11~2000.10 기간중) 적용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 경

- 성장기의 어린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우유소비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식생활개선, 체위향상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급식신청 자격

- 보조급식 : 초등학교중 극빈학생 또는 불우학생
- 일반급식 : 보조급식을 제외한 일반학생(초·중·고등학교생 등)

○ 급식대상자 선정

- 보조급식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의 초등학교생을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인원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불우초등 학생을 추가 선정 가능
- 일반급식
 - 자담으로 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생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학교우유 급식	천명/일 185	백만원 8,695	8,695	8,695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 도 : 농정국 축산과(시는 농정과)
- 시 군 : 축산과(산업과)

다. 급식기간 : '99.11~2000.10월(200일) 기준(개학기간중에 급식)

라. 보조급식계획(일평균) : 185천명(일반급식 3,315천명)

마. 사업실시방법

- 보조급식 : 대상학생에 지정품목의 우유를 급식하고, 급식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 일반급식 : 대상학생에 지정품목의 우유를 자부담으로 급식
 - 초등학교 : 보조급식과 같은 용량 및 가격으로 급식
 - 중·고등학교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용량 및 가격결정 가능

바. 2000 지원계획 : 8,695백만원(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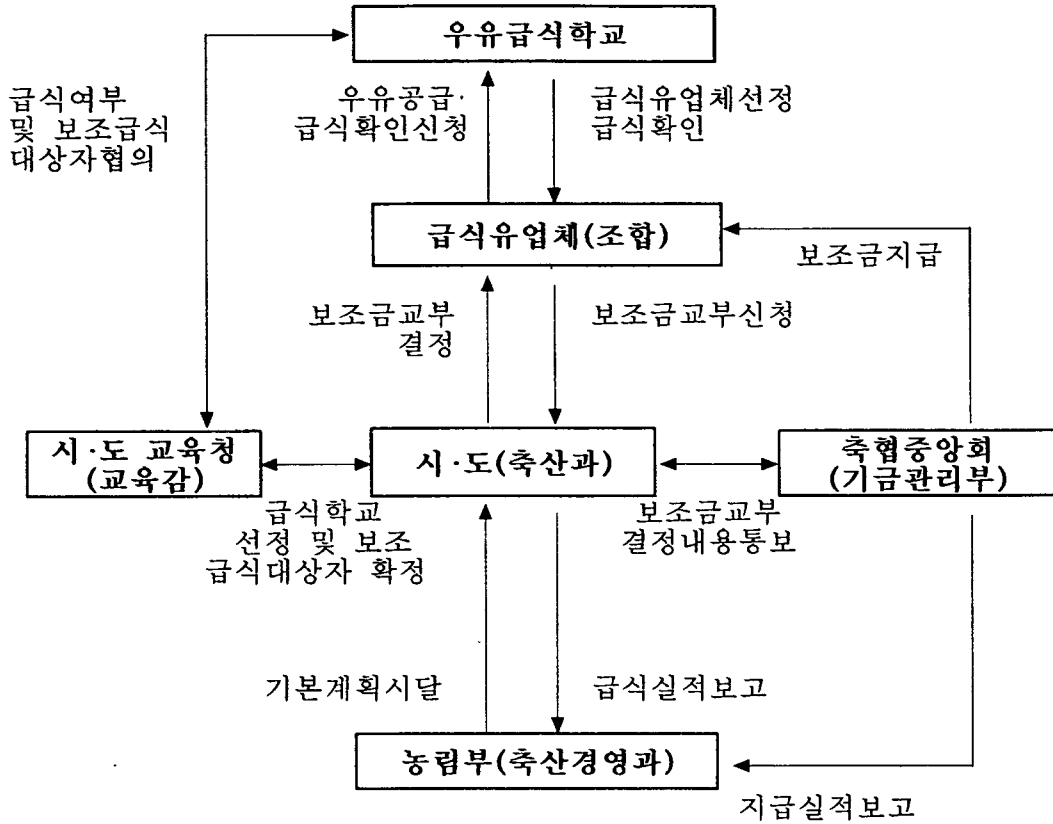
- 시·도별 급식계획 및 보조금 배정내역 : <별표1> 참조

사. 보조급식 우유용량 및 가격기준 : 235원이하/200ml

단, 도서벽지는 분유급식가능 : 22g 120원

※ 급식우유의 용량(200ml)은 변동 할 수 없음. 다만, 공급가격은 235원 이하로 조정 가능

아. 사업추진체계도



자. 급식학교 및 급식유업체 선정

- 급식학교 : 시·도지사가 관할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선정
- 급식유업체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시·도에서는 급식유업체등 안내)

차. 보조금 교부등 절차

- 보조신청(보조사업자) : 급식유업체(대표)
- 보조금 교부결정자 : 시·도지사
- 보조금 지급기관 : 축협중앙회장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급식우유가 백색시유만 공급되도록 하고 급식유업체가 급식 중단 및 급식품목 변경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확인 실시
 - 급식유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가공유·발효유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급식학교장과 협의하여 필요시 급식유업체 변경등 시정조치
- 시·도지사는 급식유업체가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류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그 내용을 축협중앙회장에 통보
- 축협중앙회장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보조금교부결정내역에 의하여 급식유업체의 제출서류에 대한 허위·오류·착오 등 확인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

나. 보고·기타

- 시·도 및 축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보고 사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학교우유급식실적보고(월보)	시·도	매익월 20일한	가 26 - 60
학교우유급식보조금지급실적 보고(월보)	축협중앙회	매익월 20일한	가 26 - 60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급식신청 자격

- 보조급식 : 초등학생중 극빈학생 또는 불우학생
- 일반급식 : 보조급식을 제외한 일반학생(초·중·고등학교 등)

나. 급식대상자 선정

- 보조급식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불우 초등학생을 추가 선정
 - * 급식보조금 지급대상 : 2000.11~2001.2 기간중 기 급식 실시학생과 2001.3~2001.10 기간중 급식대상 선정 학생
- 일반급식
 - 자담으로 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다. 기타사항

- 급식품목 : 백색시유
- 급식규격 및 가격
 - 초등학교 : 200ml를 기준하여 235원(상한가)
 - 중·고등학교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 단, 도서벽지는 분유급식 가능 : 22g 120원

(별표 1)

2000 학교우유 보조급식 시·도 지원계획

(단위 : 명/일, 천원)

구 분	급 식 대 상 인 원			보 조 금
	보조급식	일반급식	계	
서 울	13,000	714,000	727,000	611,000
부 산	3,400	450,000	453,400	159,800
대 구	10,100	123,000	133,100	474,700
인 천	1,900	259,000	260,900	89,300
광 주	5,000	100,000	105,000	235,000
대 전	2,800	146,000	148,800	131,600
울 산	700	106,000	106,700	32,900
경 기	13,600	94,000	107,600	639,200
강 원	13,900	168,000	181,900	653,300
충 북	16,500	126,000	142,500	775,500
충 남	17,000	165,000	182,000	799,000
전 북	34,000	82,000	116,000	1,598,000
전 남	26,000	229,000	255,000	1,222,000
경 북	17,000	270,000	287,000	799,000
경 남	7,400	240,000	247,400	347,800
체 주	2,700	43,000	45,700	126,900
합 계	185,000	3,315,000	3,500,000	8,695,000

※ 연간 200일('99.11~2000.10까지) 급식 기준

(별표 2) : 시·도지사 농림부 보고서식

학교우유급식실적보고(월)

○○시·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당월		개소	명	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계							
누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계							

※ 보조금액은 교부결정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방비 보조등은 일반급식란에 기재
 ※ 학생수는 당월 및 누계 인원을 해당기간중 누계 개념으로 작성하되
 학교수는 누계 개념으로 작성하지 말것

(별표 3) : 축협중앙회의 농림부 보고서식

학교우유급식 보조금실적보고(월)

1. 시·도별 보조금 지급실적

시도별	당 월			누 계			비 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개교	명	원				

2. 급식유업체별 보조금 지급실적

유업체별	당 월			누 계			비 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개교	천명	천원				

※ 보조금액 = 학생수 × 급식단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사무관 김동훈, 이상수)입니다.

1. 목적

- 생산자단체의 소비촉진홍보, 조사연구, 소비자 및 생산자교육등을 통한 축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축산업 발전
-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수급 및 소비 정보제공을 통해 축산업의 균형성장 도모
- 축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도모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92-'96	'97	'98	'99	2000 (예산안)	2001-2004
사업량(개소)		10	1	2	3	3	
사업비	계	백만원 1,514	153	329	3,001	3,600	
	보 조	474	51	110	997	1,200	
	자부담	1,040	102	219	2,004	2,40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년
- 사업대상자
 -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로서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 지원내용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축산물 수급 및 소비에 대한 조사 연구
 - 생산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 지원규모
 - 협회가 조성한 자조금 총액의 50% 범위내 보조지원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응 자		
자조금	개소	백만원					
지원사업	3	3,600	1,200	1,200	-	-	2,4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5)
- 한국낙농육우협회(02-588-7055)
- 대한양돈협회(02-553-3942-7)
- 대한양계협회(02-588-7651-4)

다. 사업시행

- 추진방식 : 자조금 구성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에 적합한 사업 추진
- 추진내용 : 사육조절, 수매비축·판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

< 행정 사항 >

- 생산자 단체(협회)는 자조금에 관한 200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 까지 농림부에 제출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사업추진
- 축협중앙회는 생산자단체(협회)의 보조금 신청시 항목별 승인내용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 고

보 고 내 용	보 고 기 간
○ 자조금 사업운영계획 승인요청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보고서식 붙임1)	○ 2000.1월말 까지 ○ 익년 1월말 까지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부

나. 신청자격

-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다. 신청절차

-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은 축산자조금의 계속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2000.3.31일까지 목적 및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2001년 예산요구액 및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

축산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1. 사업추진기관 :
2. 대 표 자 :
3. 사업기간 : 2000. ~ 2000.
4.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계 획(A)			실 · 적(B)			B/A (%)
	보 조	자 담	계	보 조	자 담	계	
합 계							

상기와 같이 2000년 축산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금액을 제출합니다.

2000.

(사) 협회장(인)

농림부장관 귀하